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485-01

#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2016. 11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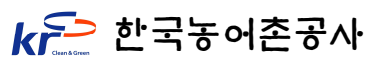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2016. 11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1월

연구기관 : 강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김승근

연구원 도현학

연구원 변경화

연구원 서재형

관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단장 박병태

부장 김기엽

차장 서인국



## <요 약 문>

### 1. 연구 목적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고령자 및 노인독거가구의 증가, 농촌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의 취약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농촌지역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적 노인복지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기존 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제안되었음
- 이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여 농촌고령자의 복지 향상과 공동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2015년도 시행한 시범사업인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연구임. 본 시범사업에서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145개소(공동생활홈 66개소, 공동급식시설 54개소, 작은목욕탕 2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음
-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시범사업의 지원 목적에 맞게 적절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2.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2015년도 시행한 시범사업인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연구로서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145개소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조성된 고령자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과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였음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과 관련한 미국, 일본, 유럽 내 국가 등의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현황 분석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건축계획적 진단 평가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이용 및 거주 후 평가 및 분석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향 설정
  - 사후관리 방안
  - 연계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 3. 시범사업의 성과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율은 평균 86.7%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동생활홈의 경우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마을에서는 여건에 따라 부부용, 남녀거주 가능한 유형, 다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유형 등 새로운 모델이 적용되고 있음
- 본 시범사업에서 국비와 더불어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고령자 공동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있으며, 이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 본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으며, 이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가 형성되어, 지역의 특성과 지자체의 역량에 맞는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 마을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주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는데 기여함.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이 마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시범사업은 마을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방치된 건물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농촌건축문화를 새롭게 변화시켰음
-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 분야가 다른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4.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확산을 위한 제언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시설조성사업과 운영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마을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범위와 권역단위나 면단위의 중규모 공동시설로 분리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본 시범사업을 통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농촌고령자 뿐만아니라 농촌지역의 복지라는 틀 안에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노하우가 형성되었으므로, 중앙정부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마을단위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중앙정부에서는 권역단위나 면단위에서 복합시설로서의 복지사업의 모델을 창출하여, 대상과 범위에 따라 복지프로그램의 운용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 본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주거·영양·위생·복지 기능이 집적화된 시설에서 노인·장애인·유아·유학생 등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 기능의 거점형 공동시설의 도입을 제안함



## 〈 차 례 〉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1) 연구내용 .....	4
(2) 연구방법 .....	5

### 제2장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개요

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유형별 개념 .....	11
(1) 공동생활홈 .....	11
(2) 공동급식시설 .....	14
(3) 작은목욕탕 .....	15
2. 시범사업의 추진 개요 .....	18
(1) 시범사업의 추진 내용 .....	18
(2) 시설물 유형별 세부사업 특징 .....	23
(3) 시범사업의 대상지 선정 .....	26
(4) 소결 .....	31
3. 고령자 공동시설 국외 사례 .....	33
(1) 미국의 고령자시설 정책과 제도 .....	33
(2) 유럽의 고령자시설 정책과 제도 .....	36
(3) 일본의 고령자시설 정책과 제도 .....	50
(4) 국외 사례에서 나타난 시사점 .....	58

### 제3장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현황분석

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 .....	63
(1) 지역별 시범사업 참여 현황 .....	63
(2) 시범사업 추진 현황 .....	68
(3) 소결 .....	73

<b>2.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b> .....	<b>75</b>
(1) 시설 유형별 운영 및 이용자 현황 .....	75
(2) 시설 유형별 관리주체 현황 .....	90
(3) 연계프로그램 운영 현황 .....	94
(4) 운영규정 현황 .....	102
(5)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식조사 .....	122
(6) 소결 .....	125
<b>3. 건축계획적 진단평가</b> .....	<b>127</b>
(1) 시설물의 건축적 현황 .....	128
(2) 공동생활홈의 공간기능 평가 .....	134
(3) 무장애디자인 적용현황 .....	144
(4) 시설물의 경관평가 .....	150
(5) 소결 .....	152
<b>4. 주민 만족도 조사</b> .....	<b>154</b>
(1) 만족도 조사개요 .....	154
(2) 이용 및 거주 후 평가 .....	159
(3) 이용 및 거주 전후 비교 .....	188
(4) 소결 .....	193

## **제4장 시범사업 평가 및 성과 제고 방안**

<b>1. 시범사업 성과분석</b> .....	<b>199</b>
(1) 시범사업의 성과 .....	199
(2) 운영관리측면에서 성과 및 문제점 도출 .....	201
(3) 시설측면에서 성과 및 문제점 도출 .....	203
(4)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205
(5)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 .....	213
(6) 소결 .....	216

<b>2.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향 설정</b> .....	<b>218</b>
(1) 사업의 재원 검토 .....	218
(2)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대상 검토 .....	220
(3) 사업추진 및 절차 .....	224
(4) 건축기준 및 적정 사업비 도출 .....	233
(5) 농촌건축 전문가 참여제도화 .....	242
(6) 거점형 농촌고령자 공동생활홈의 제안 .....	246
(7) 소결 .....	249
<b>3. 사후관리 방안</b> .....	<b>251</b>
(1) 사업선정 후 모니터링 및 컨설팅 .....	251
(2) 효과적 운영관리 체계 .....	252
(3) 사업성과의 선순환체계 .....	254
(4) 소결 .....	255
<b>4. 연계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 방안</b> .....	<b>256</b>
(1) 중앙부처의 관련사업 .....	256
(2)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와의 공동사업 포함)의 관련사업 .....	261
(3) 고령자 공동시설 연계 가능 의료·복지 프로그램 .....	263
(4) 의료·복지 프로그램 우수사례 .....	264
(5) 의료·복지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방안 .....	272
(6) 지방 내 부서 및 기관 간 협의체 운영활성화 방안 .....	273

## **제5장 요약 및 제언**

1. 시범사업의 현황 및 공동시설 현황 .....	277
2. 시범사업의 성과 .....	278
3. 시범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	279
4.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방향 .....	281
<참고문헌> .....	284
<부록 1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조사표> .....	287
<부록 2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운영관련 규정> .....	별책

## <표 차례>

<표 1-1> 조사개요 .....	7
<표 2-1> 고령자 공동주거 시설의 개념 비교 .....	11
<표 2-2> 공동생활홈의 개념 .....	12
<표 2-3> 공동생활홈의 유형 및 장단점 .....	13
<표 2-4> 공동급식시설의 개념 .....	14
<표 2-5> 공동급식시설의 유형 및 장단점 .....	15
<표 2-6> 작은목욕탕의 개념 .....	16
<표 2-7> 작은목욕탕의 유형 및 장단점 .....	17
<표 2-8> '14년 시범사업 지역별 분포현황 .....	26
<표 2-9> '15년 시범사업 지역별 분포현황 .....	28
<표 2-10> 시도별·유형별 사업 현황 .....	30
<표 2-11> 선정된 시설 수와 마을현황 .....	30
<표 2-12> 서포티브 하우스(Supportive Housing)의 유형분류 .....	35
<표 2-13> 영국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	38
<표 2-14> 독일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	39
<표 2-15> 스웨덴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	42
<표 2-16> 핀란드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	45
<표 2-17> 덴마크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	49
<표 2-18> 일본의 고령자 시설 .....	51
<표 3-1> 시·도 및 시·군별 시범사업 참여도 .....	66
<표 3-2> 읍·면별 시범사업 참여도 .....	67
<표 3-3>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포기 시설현황(2016.7.31.) .....	68
<표 3-4>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의 추진현황 (2016.7.31.) .....	70
<표 3-5>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2016.7.31.) .....	70
<표 3-6> 운영예상 시설 수 (2016.7.31.) .....	71
<표 3-7> 공동생활홈 시범사업 추진현황(2016.7.31.) .....	71
<표 3-8> 공동급식시설 시범사업 추진현황(2016.7.31.) .....	72
<표 3-9> 작은목욕탕 시범사업 추진 현황(2016.7.31.) .....	72
<표 3-10> 공동생활홈의 거주자 수 .....	77
<표 3-11> '14년 시범사업 공동생활홈 운영현황 .....	78
<표 3-12> '15년 시범사업 공동생활홈 운영현황 .....	79
<표 3-13> 공동급식시설의 이용자 수 .....	82
<표 3-14> '14년 시범사업 공동급식시설 운영현황 .....	83
<표 3-15> '15년 시범사업 공동급식시설 운영현황 .....	84
<표 3-16> 작은목욕탕 운영 현황 .....	86
<표 3-17> 작은목욕탕 목욕비 현황 .....	87
<표 3-18> 작은목욕탕 이용자 수 .....	88
<표 3-19> 작은목욕탕 운영현황 .....	89
<표 3-20> 공동생활홈 관리주체 .....	90

<표 3-21> 공동급식시설 관리주체 .....	91
<표 3-22> 작은목욕탕 관리주체 .....	93
<표 3-23> 연계프로그램 운영 현황 .....	94
<표 3-24> 공동시설별 연계프로그램 운영 내용 .....	95
<표 3-25> '14년 시범사업 공동생활홈 연계프로그램 운영실태 .....	97
<표 3-26> '15년 시범사업 공동생활홈 연계프로그램 운영실태 .....	98
<표 3-27> '14년 시범사업 공동급식시설 연계프로그램 운영실태 .....	99
<표 3-28> '15년 시범사업 공동급식시설 연계프로그램 운영실태 .....	100
<표 3-29> 작은목욕탕 연계프로그램 운영실태 .....	101
<표 3-30> 자치규약이 존재하는 작은목욕탕 .....	104
<표 3-31> 공동시설 지자체 지원내용(권장) .....	105
<표 3-32> 고흥군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예시) .....	106
<표 3-33> 회안마을 공동급식시설 운영관리지침 주요내용(예시) .....	107
<표 3-34>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주요내용(예시) .....	108
<표 3-35> 공동생활홈 조례 및 규정 현황 .....	109
<표 3-36> 공동생활홈 규약 현황 .....	110
<표 3-37>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이용자 선정 및 관리 주체 .....	122
<표 3-38>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운영비 관리 주체 .....	123
<표 3-39>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유지보수 주체 .....	123
<표 3-40>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운영프로그램 관리 주체 .....	124
<표 3-4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실질적 관리 총 책임자 .....	124
<표 3-42> 시설물의 용도 .....	130
<표 3-43>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면적 .....	131
<표 3-44> 공동생활홈의 방과 화장실의 수 .....	132
<표 3-45> 공동급식시설의 식당과 주방 배치 .....	132
<표 3-46> 작은목욕탕의 공간계획 .....	133
<표 3-47> '14년 시범사업 공동생활홈 평면개요 .....	142
<표 3-48> '15년 시범사업 공동생활홈 평면개요 .....	143
<표 3-49>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발체) .....	144
<표 3-50> 경사로 설치 유무 .....	145
<표 3-51> 경사로 안전손잡이 설치 유무 .....	147
<표 3-52> 현관입구의 non-slip 재료 사용의 유무 .....	148
<표 3-53> 변기 안전손잡이 설치 유무(1개 이상) .....	148
<표 3-54> 공동생활홈과 작은목욕탕의 안전손잡이 설치유무 .....	149
<표 3-55> 건축형태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에 대한 평가지 .....	150
<표 3-56> 건축형태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에 대한 평가 결과 .....	151
<표 3-57> 이용자 만족도의 설문지 구성 .....	155
<표 3-58> 지역별 주민 만족도 조사 대상 시설 및 설문 부수 .....	156
<표 3-59> 주민 만족도 조사 대상지 및 시설 .....	157
<표 3-60> 공동생활홈의 전반적 만족도 비율 .....	161
<표 3-61> 공동생활홈 거주 전후의 공과금 비교 .....	166

<표 3-61> 공동생활홈 거주 전후의 공과금 비교 .....	166
<표 3-62> 공동생활홈 만족도에 대한 영역별 평가 .....	166
<표 3-63> 공동급식시설의 전반적 만족도 만족율 .....	171
<표 3-64> 공동급식시설 만족도에 대한 영역별 평가 .....	176
<표 3-65> 작은목욕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비율 .....	181
<표 3-66> 작은목욕탕 만족도에 대한 영역별 평가 .....	187
<표 3-67> 공동생활홈에서의 숙박 횟수 .....	188
<표 3-68> 취침시간을 제외한 공동생활홈에서의 휴식 및 활동시간 .....	188
<표 3-69> 공동생활홈 입주 후 식사, 목욕, 청소, 세탁 횟수 변화 .....	189
<표 3-70> 공동생활홈 입주 전후 식사, 목욕, 청소, 세탁 횟수 비교 .....	190
<표 3-71> 공동급식시설 이용 전후의 식사, 반찬, 비용 비교 .....	192
<표 3-72>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만족도 평가 .....	193
<표 3-73> 공동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만족도에 대한 영역별 평가 .....	193
<표 4-1>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종합만족도 .....	199
<표 4-2>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 .....	203
<표 4-3> 시설측면에서의 문제점 .....	204
<표 4-4>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결과 .....	209
<표 4-5>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담당부서 현황 .....	212
<표 4-6> 사업 추진 시 역할분담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 .....	214
<표 4-7> 사업 내용에 따른 수행 주체 .....	214
<표 4-8> 사업 세부내용에 따른 수행 주체 .....	215
<표 4-9>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재원검토 .....	219
<표 4-10>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대상 .....	223
<표 4-1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관련 단계별 이수기준(안) .....	226
<표 4-12>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관련 사업성 검토지표(안) .....	227
<표 4-13> ‘특화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추진절차(안) .....	229
<표 4-14> 사업추진 단계별·주체별 개선 방향 .....	230
<표 4-15> 서류심사 평가지표(안) .....	232
<표 4-16> 현장심사 평가지표(안) .....	233
<표 4-17> 마을단위 공동생활홈의 적정 규모 산정 .....	235
<표 4-18> 유사사업의 공사비 산출사례 .....	236
<표 4-19> 2017년 적용 공동생활홈 면적당 공사비(안) .....	237
<표 4-20> 공동생활홈 신축 사업비(안) .....	237
<표 4-21> 공동생활홈 리모델링 사업비(안) .....	237
<표 4-22> 2017년 적용 공동급식시설 면적당 공사비(안) .....	238
<표 4-23> 공동급식시설 리모델링 사업비(안) .....	238
<표 4-24> 2017년 적용 작은목욕탕 면적당 공사비(안) .....	239
<표 4-25> 작은목욕탕 신축 사업비(안) .....	239
<표 4-26>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건축비, 유지보수비, 운영관리비 담당주체별 구성비의 평균 .....	241
<표 4-27> 100%를 기준으로 한 건축비, 유지보수비, 운영관리비 담당주체별 구성비 .....	242

<표 4-28>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양적인 소요량(지자체 공무원 설문) .....	247
<표 4-29>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위치 기준 .....	247
<표 4-30> 공동생활홈의 비교 및 시설물의 개요 .....	248
<표 4-3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주요 내용 .....	251
<표 4-32>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	253
<표 4-33>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관련 마을규약 주요 내용 .....	254
<표 4-34> 공동생활홈 성과평가 및 성과지표 .....	254
<표 4-35> 공동급식시설 성과평가 및 성과지표 .....	255
<표 4-36> 작은목욕탕 성과평가 및 성과지표 .....	255
<표 4-37>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개요 .....	257
<표 4-38>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사업 .....	262
<표 4-39> 고령자 공동시설 연계 가능 의료·복지 프로그램사업 .....	263
<표 4-40> 진천군 소득지원사업 현황 .....	266
<표 4-41> 소외계층 노인지원사업 현황 .....	266
<표 4-42> 노인행사 지원사업 현황 .....	267
<표 4-43> 노인사회참여 활동지원사업 현황 .....	268
<표 4-44> 경로당 및 복지관 지원사업 현황 .....	268
<표 4-45> 치매 및 재가노인지원사업 현황 .....	270
<표 4-46> 노인돌봄 프로그램 현황 .....	270
<표 4-47>치매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 현황 .....	271
<표 4-48>경로당 활성화 사업 현황 .....	271
<표 5-1>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종합만족도 .....	278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내용 .....	5
<그림 1-2> 단계별 추진 내용 .....	6
<그림 2-1> '15년 시범사업의 추진체계 .....	22
<그림 2-2> 2014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대상 마을 .....	27
<그림 2-3> 2015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대상 마을 .....	29
<그림 2-4> 필라델피아의 CCRC(샤논델) .....	36
<그림 2-5> 쉼터드 하우스(Shelterd Housing) .....	37
<그림 2-6> 케어 홈(Care Home) .....	38
<그림 2-7> 독일의 요양시설 .....	40
<그림 2-8> 스웨덴의 고령자주택 .....	41
<그림 2-9> 스웨덴 고령자주택의 내부 .....	43
<그림 2-10> 스웨덴의 그룹홈 .....	43
<그림 2-11> 그룹홈의 개실 내부 .....	44
<그림 2-12> 핀란드 서비스하우스의 평면 .....	46
<그림 2-13> 핀란드 서비스하우스 개인실 단위평면 .....	47

<그림 2-14> 핀란드 노인홈 사례-1 .....	47
<그림 2-15> 핀란드 노인홈 사례-2 .....	47
<그림 2-16> 덴마크 고령자주택(호스홀름) .....	49
<그림 2-17> 덴마크 고령자주택(호스홀름)의 내부 .....	49
<그림 2-18> 덴마크 프라이엠의 내부 .....	50
<그림 2-19> 일본의 생활지원하우스(야마쿠니) .....	53
<그림 2-20> 일본 쉐어 가나자와(Share Kanazawa)의 배치도 .....	55
<그림 2-21> 일본 쉐어 가나자와(Share Kanazawa) .....	56
<그림 2-22> 일본 쉐어 가나자와(Share Kanazawa) 내의 고령자 임대주택 내부 .....	56
<그림 2-23> 일본 쉐어 가나자와(Share Kanazawa) 내의 고령자 임대주택 평면도 .....	56
<그림 2-24> 일본 쉐어 가나자와(Share Kanazawa) 본관 휴게실에서의 외부경관 .....	56
<그림 2-25> 일본 아지무마을 Mini-공중목욕탕 .....	57
<그림 2-26> 일본 요시오카 마을 작은목욕탕 .....	57
<그림 3-1> 지역별 사업대상 분포 .....	63
<그림 3-2> 시설 유형별 분포 .....	63
<그림 3-3> 연도별 사업대상지 분포 .....	64
<그림 3-4> 연도별 시설 분포 .....	64
<그림 3-5> 지역별 시설유형의 분포 .....	64
<그림 3-6> 연도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대상지역 분포 .....	65
<그림 3-7> 공동생활홈의 운영현황 .....	75
<그림 3-8> 공동생활홈의 운영유형 .....	75
<그림 3-9>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된 공동생활홈 .....	77
<그림 3-10> 공동급식시설의 운영현황 .....	80
<그림 3-11> 공동급식시설의 미운영 사례 .....	80
<그림 3-12> 공동급식시설의 운영유형 .....	81
<그림 3-13> 공동급식시설의 운영유형에 있어서 절충형 사례 .....	81
<그림 3-14> 작은목욕탕의 운영현황 .....	85
<그림 3-15> 작은목욕탕의 이용유형 .....	85
<그림 3-16> 물건마을의 작은목욕탕 평면도 .....	87
<그림 3-17> 목욕이용권 .....	87
<그림 3-18> 공동급식시설이 존재하는 마을에 선정되어 활용도가 낮은 사례 .....	92
<그림 3-19> 시설유형별 자치규약의 유무 .....	102
<그림 3-20> 자치규약이 존재하는 시설의 연도별 현황 .....	104
<그림 3-2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규모 .....	128
<그림 3-22>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조성현황 .....	129
<그림 3-23> 공동생활홈의 유형 분포 .....	134
<그림 3-24> 주간에 경로당으로 활용되는 독립침실형 .....	136
<그림 3-25> 경로당으로 활용되는 공동거주형 .....	137
<그림 3-26> 공동생활홈의 혼합형 사례 .....	138
<그림 3-27> 마을 공동공간으로 이용되는 공동생활홈 .....	138
<그림 3-28> 공동생활홈의 일부 공간이 다른 공동시설의 로 이용되는 사례 .....	139



<그림 3-29> 공동생활홈의 기타 유형 .....	139
<그림 3-30> 공동생활홈의 유형에 따른 평가 .....	140
<그림 3-31> 거주자 수에 따른 공동생활홈의 면적 평가 .....	141
<그림 3-32> 거주자 수에 따른 공동생활홈의 화장실 수에 따른 평가 .....	141
<그림 3-33> 경사로 설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사례 .....	146
<그림 3-34> 공동생활홈 거주자 성별 .....	159
<그림 3-35> 공동생활홈 거주자 연령대 .....	159
<그림 3-36> 공동생활홈 대상마을 내 거주기간 .....	159
<그림 3-37> 공동생활홈의 평면유형 .....	159
<그림 3-38> 공동생활홈 거주자의 마을 거주 이유 .....	160
<그림 3-39> 공동생활홈 입주 이유 .....	160
<그림 3-40> 공동생활홈 거주자의 건강상태 .....	161
<그림 3-41> 마을에서 참가하는 프로그램 .....	161
<그림 3-42> 공동생활홈 입지 및 공간구성에 대한 평가 .....	162
<그림 3-43> 공동생활홈 정서 및 친밀감에 대한 평가 .....	163
<그림 3-44> 공동생활홈 안전에 대한 평가 .....	164
<그림 3-45> 비상시 연락방법의 유무 .....	164
<그림 3-46> 공동생활홈 영양 및 위생에 대한 평가 .....	165
<그림 3-47> 공동생활홈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 .....	165
<그림 3-48> 공동급식시설 이용자의 성별 및 연령 .....	168
<그림 3-49> 공동급식시설 이용자의 마을 거주기간 및 거주이유 .....	168
<그림 3-50> 공동급식시설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마을 내 역할 .....	169
<그림 3-51> 공동급식시설 이용 전 동반 식사자 및 급식시설 방문 동행자 .....	169
<그림 3-52> 공동급식시설까지 소요시간 .....	170
<그림 3-53> 공동급식시설까지 이동수단 .....	170
<그림 3-54> 공동급식시설에서의 식사 인원수 및 비율 .....	170
<그림 3-55> 식사방식 및 급식방식 .....	171
<그림 3-56> 공동급식시설 입지 및 공간구성 평가 및 수납공간 부족 사례 .....	172
<그림 3-57>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정서 및 친밀감에 대한 평가 .....	173
<그림 3-58> 공동급식시설 안전에 대한 평가 .....	173
<그림 3-59> 공동급식시설 이용자의 비상시 대처 상황에 대한 서술형 분류 .....	174
<그림 3-60> 공동급식시설 영양에 대한 평가 .....	175
<그림 3-61> 공동급식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 .....	175
<그림 3-62> 작은목욕탕 이용자의 성별 및 연령대 .....	178
<그림 3-63> 작은목욕탕 이용자의 마을 거주기간 및 거주이유 .....	178
<그림 3-64> 작은목욕탕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마을 내 역할 .....	178
<그림 3-65> 작은목욕탕 이용자의 직업 유무 및 거주하는 가족 유형 .....	179
<그림 3-66> 작은목욕탕 이용 시 동행자 .....	179
<그림 3-67> 작은목욕탕까지 소요 시간 .....	180
<그림 3-68> 작은목욕탕까지 이동 수단 .....	180
<그림 3-69> 현재 목욕비의 적정성 .....	180

<그림 3-70> 마을별 목욕비 비교 .....	180
<그림 3-71> 적정목욕비 및 마을별 적정목욕비 제안 .....	181
<그림 3-72> 작은목욕탕 입지 및 공간구성에 대한 평가 .....	182
<그림 3-73> 작은목욕탕 정서 및 친밀감 평가 .....	183
<그림 3-74> 작은목욕탕 안전에 대한 평가 .....	184
<그림 3-75> 작은목욕탕 이용시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 .....	184
<그림 3-76> 작은목욕탕에서 안전하지 않은 사례(작은목욕탕) .....	185
<그림 3-77> 작은목욕탕 위생 및 설비에 대한 평가 .....	185
<그림 3-78> 작은목욕탕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 .....	186
<그림 3-79> 공동급식시설 이용 전후 .....	191
<그림 3-80> 작은목욕탕 이용 전 목욕 장소 .....	192
<그림 3-81> 작은목욕탕 이용 후 목욕 횟수 .....	192
<그림 4-1> 고창군 군유마을 공동생활홈의 개인실 .....	206
<그림 4-2> 공동생활홈의 커뮤니티공간과 개인공간 .....	209
<그림 4-3> 시범사업 지자체 담당부서 .....	211
<그림 4-4>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의식 .....	213
<그림 4-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 .....	226
<그림 4-6>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건축비 담당주체에 대한 의견 .....	240
<그림 4-7>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담당주체에 대한 의견 .....	240
<그림 4-8>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운영관리 담당주체에 대한 의견 .....	241
<그림 4-9> 농촌 건축전문가로서 총괄계획가 활동 사례 .....	243
<그림 4-10>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총괄계획가의 평가 결과 .....	244

## 제1장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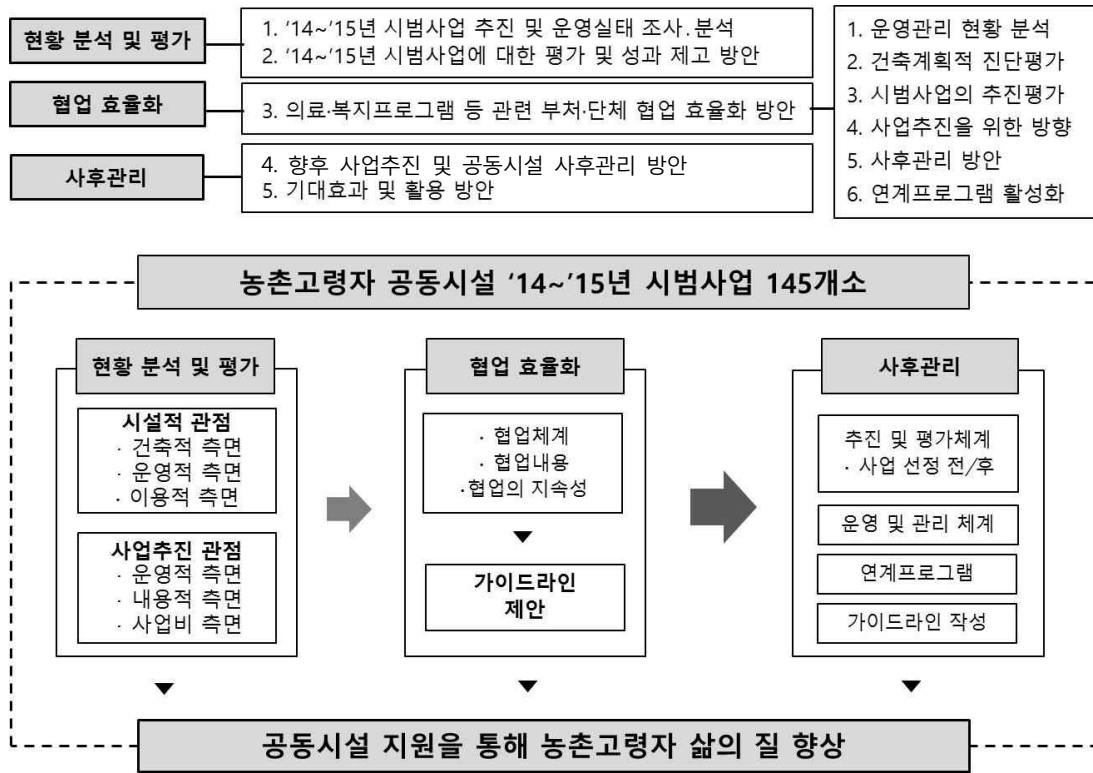
## 1. 연구배경 및 목적

-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과의 소득격차 확대, 다문화 가정의 증가, 핵가족화로 인하여 독거노인의 급증 등 사회 환경 변화와 함께 복지 부분에서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누적되고 있음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주택의 노후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 등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불규칙·불균형한 식사로 영양의 불균형, 목욕시설 및 수세식 화장실 보급 저하로 인하여 주거·영양·위생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 농촌 지역에는 마을회관, 경로당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공동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나, 시설 조성 후 20년~30년 이상이 경과되어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고 이용이 불편하여 제 기능을 상실한 채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을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로 전환한다면, 고령자의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시설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임
- 이러한 농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여 농촌고령자의 복지향상과 공동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4년~2015년도 시범사업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음
  - ‘14~’15년 시범사업을 통하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145개소(공동생활홈 66개소, 공동급식시설 54개소, 작은목욕탕 2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음
-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시범사업의 지원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실태 현황분석을 통해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의 추진방향을 재설정하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은 농촌의 초고령화 및 과소화, 독거노인의 증가 등 농촌 고령자의 열악한 거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확산하는데 의의가 있음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조사 및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관계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음
  - 복지적 측면에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확산을 위하여 주거복지와 관련한 정부정책과 농촌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프로그램 연계방안을 위하여 복지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함
  - 지자체별 사업 추진 및 운영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일반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음
  
-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사업의 확장성, 운영의 적정성 및 체계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이용 및 거주 후 평가로서 시범사업 마을주민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 농촌고령자 복지, 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지속 확산 등을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농촌지역의 건축문화 및 농촌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동시설의 경관 평가를 델파이기법으로 평가함
  - 시범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총괄계획가 5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본 사업 추진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주민,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현장조사와 병행하였음
  - 복지, 예산 및 사업비, 사업의 지속 및 확산 측면
  - 유형별 공동시설 전수조사
  - 공동시설의 경관평가
  - 사업 추진 시의 평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총괄계획가 인터뷰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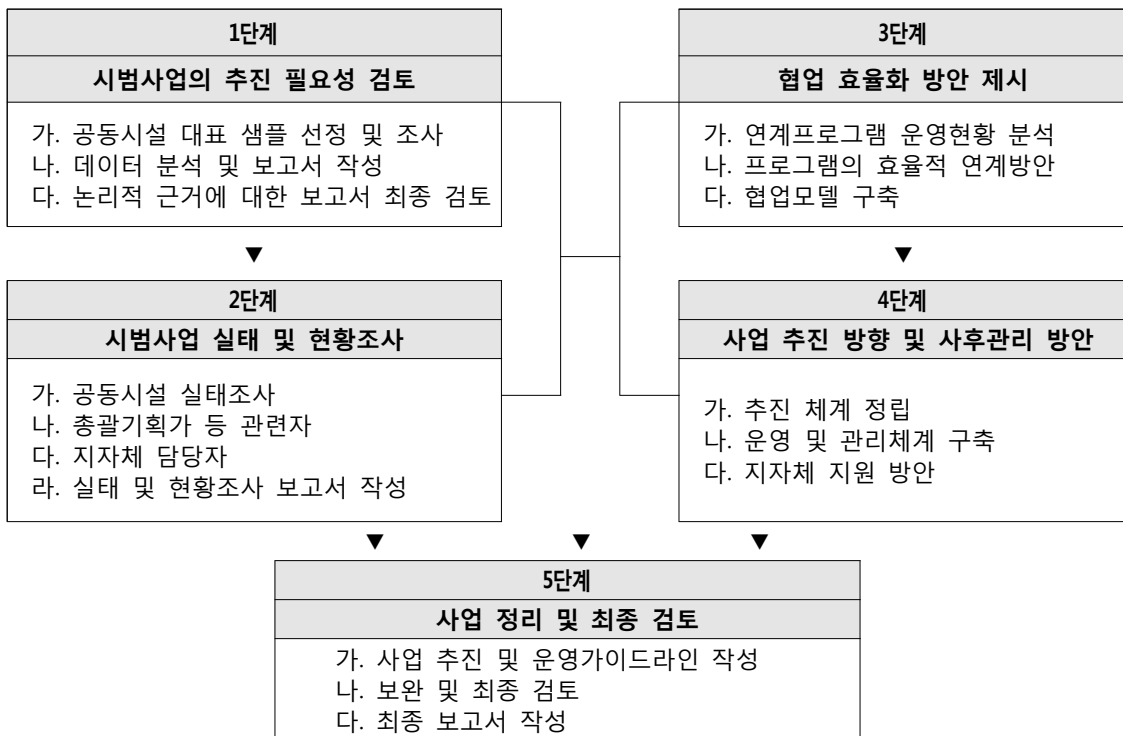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내용

## (2) 연구방법

-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는 총 5단계로 진행하였음
- 시범사업 전체에 대해 공동시설의 측면, 지자체 측면, 관련 전문가 관점에서 실태와 현황을 조사·분석하는 내용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였고, 협업효율화 방안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각각 단계별로 진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 작성과 최종검토를 마지막 5단계에서 진행하였음
- 본 연구용역은 '14~'15년 진행된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본 사업 추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무엇보다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한 현황을 명확히 분석해야 함.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현황 분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진행하였음
- 시범사업 현황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임
  - 따라서 145개 공동시설에 대해서 대표적인 조사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실태

및 현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2단계에서는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실태 및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음. '15년 시범사업 대상 공동시설 중 '16년 3월에 준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진행하였음



<그림 1-2> 단계별 추진 내용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본 사업 추진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주민,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현장조사와 병행하였음
  - 농촌고령자 복지, 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지속 확산 등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6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음
  - 유형별 공동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인터뷰는 105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53개소의 시설물에서 총 320부의 설문지 및 인터뷰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이와 같은 조사는 2016년 3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 시설물의 운영시기 등의 기준일은 2016년 7월 31일로 함



- 공동시설의 경관 평가는 58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전문가 9인이 참석한 가운데 델파이기법으로 진행하였으며, 2016년 4월 24일에 실시하였음
  - 시범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총괄계획가 5인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으며,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5일에 걸쳐 실시하였음
-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인터뷰 조사,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델파이기법 등으로 진행하였음
- 현장조사는 2016년 3월 30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진행되었음

&lt;표 1-1&gt; 조사개요

조사내용	조사개요	조사방법	수집데이터	조사기간
복지, 예산 및 사업비, 사업의 지속 및 확산		자료 및 문헌조사, 인터뷰조사	-	항시
		행정전문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55부	3월 30일 ~ 4월 20일
공동지원시설의 실태 및 현황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	53개소, 320부	3월 26일 ~ 7월 31일
공동지원시설의 경관평가		델파이기법	58개소(전문가 9인)	4월 24일
사업진행의 평가		총괄계획가 대상 인터뷰	총괄계획가 5인	4월 18일~ 5월 5일



## 제2장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개요

---

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유형별 개념
2. 시범사업의 추진 개요
3. 고령자 공동시설 국외 사례



## 제2장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개요

### 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유형별 개념<sup>1)</sup>

- 본 연구는 '14~'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조성된 공동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과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유형 중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

#### (1) 공동생활홈

-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거시설은 다양한 개념 및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
  - 공동생활주거, 그룹 홈, 노인 홈, 경로 홈, 농어촌 소외계층 복합주거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집합주거, 노인주택, 노인공동생활주택, 공동생활홈 등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으며, 좀 더 광의적인 범위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양로원(양로시설) 등도 공동주거시설의 유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고령자 공동주거시설과 관련한 여러 용어를 통하여 그 개념을 살펴보면, 고령자 공동주거시설은 '시설(Facility)'과 '주거(Home 또는 House)'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되고 있음(표 2-1)

<표 2-1> 고령자 공동주거 시설의 개념 비교

구분	시설 (Facility)	주거 (Home 또는 House)
개념	고령자에 대한 공공, 의료, 케어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거주하는 공공 및 민간의 복지시설 개념	고령자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 공간적 주거개념
종류	공동생활시설(Community Living Facilities) 그룹 홈(Group Home) 노인홈(Senior's Home) 실버타운(Silver Town)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 경로 홈(Home for the Elderly)	농어촌 소외계층 복합주거시설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노인집합주거(Senior's Apartment House) 노인공동생활주택(Senior's Community Living House) 공동생활홈(Community Living Home)

1) 김승근 외,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3.12 pp.13~19. 김진환 외,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건축계획기준 개발,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4.12, pp.13~20. 김진환 외,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기획설계 및 유형별 운영모델 개발,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5.12, pp.15~21. 재정리

- 공동생활홈(Community Living Home)이라는 용어는 2007년부터 (사)한국농촌건축학회와 (재)다솜동지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진 농어촌 집 고쳐주기 “희망 家 꾸기 사업” 추진과 2011년부터 농어촌 유희시설을 활용한 공동생활홈 조성을 통해 <공동생활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됨.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프로그램 생산을 통해 주민과 교류하는 등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써 시도되었으며, 점차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sup>2)</sup>
- 특히, 김승근(2013)은 공동생활홈(Community Living House)의 정의를 ‘고령자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유형’으로, 개념적 범위에서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제시하고 있음<sup>3)</sup>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사랑의 집 독거노인 무료임대주택, 노인보금자리 등도 명칭만 다를 뿐 기능면에서 본다면 공동생활홈과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표 2-2> 공동생활홈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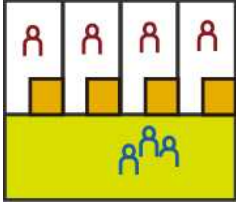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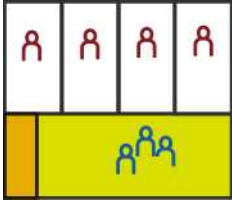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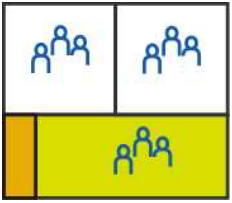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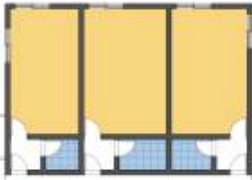


구분	내용
개념	고령자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유형으로, 노인복지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을 포함하는 개념
건축법상의 용도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유사 관련용어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노인집합주거(Senior's Apartment House), 노인공동생활주택(Senior's Community Living House)

- 관련 용어에서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있음
- '14~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유형으로 공동생활홈을 포함하고 있음

2) 김승근, 재생을 통한 농어촌 마을형 공동생활 홈 조성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5권 1호(통권48호), 2013. 2, p 22.  
 3)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사랑의 집 독거노인 무료임대주택, 노인보금자리 등도 명칭만 다를 뿐 기능면에서 본다면 공동생활홈과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 공동생활홈의 유형은 거주공간과 공동생활공간 및 취사공간을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의 개념과 장단점은 <표 2-3>과 같음

&lt;표 2-3&gt; 공동생활홈의 유형 및 장단점

유형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
이미지			
비고	□ 개인생활공간 ■ 공동생활공간 ■ 부엌		
설명	시설 내에서 취침과 취사를 개별적으로 영위하는 유형	시설 내에서 취침은 개별적으로 하나, 취사는 공동으로 영위하는 유형	시설 내에서 취침과 취사 모두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유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개인 프라이버시 확보에 가장 용이</li> <li>② 기존의 서로 다른 생활습관에 대응</li> <li>③ 성별 생활공간의 구분 및 분리가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프라이버시 보호에 어느 정도 용이</li> <li>② 개인공간과 공공공간의 밸런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li> <li>③ 관리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여 유지관리가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존의 경로당과 유사하여 친근함이 있음</li> <li>② 개인공간과 공공공간의 밸런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li> <li>③ 초기 건축비가 저렴하고,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음</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거비 및 난방비의 부담이 다소 큼</li> <li>② 실의 한정에 의해 거주가능 인원이 제한적임</li> <li>③ 건축비가 많이 소요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거비 및 난방비의 부담이 다소 있음</li> <li>② 실의 한정에 의해 거주가능 인원이 제한적임</li> <li>③ 건축비가 다소 소요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프라이버시 확보 불리</li> <li>② 가사노동의 분배가 어려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li> <li>③ 구성원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해결이 어려움</li> </ul>
사례도면			
비고	■ 방 ■ 거실 ■ 주방 ■ 화장실		

## (2) 공동급식시설

- 급식시설은 음식의 조리와 식사, 배식 등을 위해 마련된 식당, 주방, 창고 등의 관련시설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학교나 공장 등에서 단체의 식사를 위해 제공되는 일련의 급식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임
- 최근에는 공공의 복지센터와 민간단체(NGO, NPO, 종교단체 등)를 중심으로 저소득계층 및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임
- 농촌마을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기존 공동시설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마을 자체적으로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형태의 공동급식이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형태의 공동급식시설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농촌 독거노인의 영양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로서 중요한 시설로 부각되고 있음
- '14~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유형으로 공동급식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공동급식시설을 김승근(2013)이 제시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마을 또는 일정의 공동체 또는 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공동급식시설'이라 정의하고, 특히,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보건진료소 등의 마을 공공시설 등에서 시설 내 또는 별도로 조리 및 식사 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로 정의함<표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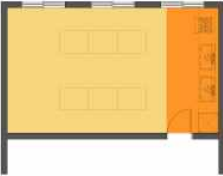



<표 2-4> 공동급식시설의 개념

구분	내용
개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마을 또는 일정의 공동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로서 조리 및 식사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
건축법상의 용도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사 관련용어	경로식당(경남 의령), 공동급식소(전북 완주), 마을 공동식당 등



- 공동급식시설의 유형은 식사공간의 형태에 따라 좌식의 밥상에서 식사를 하는 좌식형과 의자의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테이블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개념 및 장단점은 <표 2-5>와 같음

<표 2-5> 공동급식시설의 유형 및 장단점

유형	좌식형	테이블형
사례 도면		
비고	<span style="color: yellow;">■</span> 식당 <span style="color: orange;">■</span> 주방 <span style="color: blue;">■</span> 화장실	
관련 이미지		
설명	좌식의 밥상에서 식사를 하는 유형	입식의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유형
장점	① 기존의 전래식 식사습관에 대응 ② 전래의 바닥난방에 대응가능 ③ 다양한 공간으로의 활용이 가능	① 관절 등 노환을 배려한 식사가능 ② 취사노동의 경감효과 있음 ③ 방문객 등의 대응에 편리
단점	① 관절 등 노환에 대한 배려 미비 ② 취사노동에 경감효과 미비 ③ 방문객 등의 대응에 어려움	① 다른 용도로의 공간활용에 어려움 ② 전래의 식사습관에 대응 불리 ③ 가구류 등 시설비가 다소 소모

### (3) 작은목욕탕

- 목욕탕은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목욕장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영업시설이자 생활편의시설의 하나임
- 최근 농촌 지역에는 인구감소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민간이 운영하는 공중목욕탕 운영 및 유지의 어려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농촌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작은 목욕탕’은 전라북도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책으로 작은 규모의 공중목욕탕을 건립하면서 명명한 용어로서, 그 의미는 ‘남녀가 격일제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목욕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sup>4)</sup> (故정기용건축가가 무주군 안성면 사무소에 처음 도입함)
- 이와 비슷한 개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장날목욕탕’이 있는데, 장날목욕탕은 읍면단위의 농촌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장날에만 문을 여는 목욕탕을 병설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중목욕탕으로, 문을 여는 시기만 다를 뿐,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은 목욕탕과 운영시스템이 매우 유사함
-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은 지자체 등 공공의 지원에 의해 목욕탕을 건립하여 농촌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위생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읍면소재지에 작은목욕탕을 건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표 2-6> 작은목욕탕의 개념

구분	내용
개 념	남녀가 격일제 등의 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목욕탕으로, 욕탕, 샤워기, 탈의실 등 목욕서비스 설비를 마련하고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건축법상의 용도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사 관련용어	장날목욕탕, 공중목욕탕 등

- 작은목욕탕은 이용형태에 따라 남녀구분 없이 하나의 목욕공간을 요일제 또는 격일제로 운영하는 남녀혼용 유형과 남녀를 구분하여 목욕공간을 상시 2개로 운영하는 남녀구분 유형으로 구분되며, 작은목욕탕 조성 마을의 이용수요와 건립비용, 건축현황 등 제반여건에 따라 적정유형을 판단하여 설치하고 있음. 각 유형별 개념 및 장단점은 다음 <표 2-7>과 같음

4) 김승근 외, 재생을 통한 농어촌 마을형 공동생활 홈 조성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5권 1호(통권48호), 2013. p 19.

&lt;표 2-7&gt; 작은목욕탕의 유형 및 장단점

유형	남녀혼용	남녀구분
사례 도면		
비고	■ 탕 ■ 찜질방 ■ 탈의실 ■ 화장실	
관련 이미지		
설명	남녀구분 없이 하나의 목욕공간을 요일제 및 격일제로 운영하는 유형	남녀를 구분하여 목욕공간을 상시 2개로 운영하는 유형
장점	① 공사비가 적게 소요 ② 유지 및 관리비가 적게 소요 ③ 가구류 등 시설비가 저렴	① 성별을 명확하게 구분 가능 ② 목욕탕 공간이 비교적 여유로움 ③ 운영일이 알기 쉬움
단점	① 성별구분이 안되어 불안감이 있음 ② 목욕탕 공간이 다소 협소 ③ 남녀 운영일이 알기 어려움	① 건축비가 많이 소요 ② 유지 및 관리비가 많이 소요 ③ 가구류 등 시설비가 많이 소요

## 2. 시범사업의 추진 개요

### (1) 시범사업의 추진 내용

#### ①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의료기술의 진보에 따라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로의 산업 및 경제구조 집중화 현상에 의해 젊은층의 인구유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농촌지역에는 고령자 및 노인독거가구의 증가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취약한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질병 등으로 우울증, 자살, 고독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 농촌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 기준, 183만명으로 농촌지역 전체 인구의 20.9%에 이르며, 65세 이상 독거가구는 44만명으로 13.3%에 달함
  - 인구 10만명 당 65세 이상 노인자살률 비교 : 충남 123.3명, 서울 65.1명
- 주택의 노후화, 수선 및 거주비용의 부담으로 겨울철 난방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불규칙하고 불균형적인 식사는 심각한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농촌지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2.1%로 도시지역 7.7%의 3배에 이르며, 노인가구의 목욕시설·수세식 화장실 보급률도 낮은 실정임
  - 농촌지역 난방비는 도시지역의 3배('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건강수준('12, 통계청) : 농촌주민 43.8%가 나쁘다고 생각(도시 24.3%)
  - 목욕시설이 없는 가구('10, 통계청) : 농촌 2.1%, 도시 0.4%
-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농촌이 과소화 및 한계마을로 변화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농촌지역 내 고령자가 공동으로 생활·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고령자의 고독감 완화와 삶의 질을 개선하여, 농촌의 한계마을이나 과소화마을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농촌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4년부터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하게 됨

## ②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

-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방향 모색
  - 농촌 지역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공동시설은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고, 활용이 저조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유휴 공동시설의 비율 또한 매우 높은 실정임(유휴시설과 빈집은 마을 정주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음)
  -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창고 등 유휴공동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시설 활용 및 정주환경의 개선을 도모함
    - \* 마을회관 건축연수('12, 농촌경제연구원) : 건축한지 20년 이상 비율 20.0%
    - \* 유휴 공동시설 비율('12, 농촌경제연구원) : 마을회관 24.4%, 노인정 2.5%
  -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조성되고 있는 농촌 공동시설은 체계적인 운영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시설의 유휴화, 기능 상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
  -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합의에 따른 유지관리, 수혜자 선정, 이용료 부과 등 시설의 운영 관리 시스템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 주민자치회(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등)가 주체가 되어 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도록 유도
    - \* 공동시설의 운영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동체회사 등의 참여를 유도함
- 고령자를 감안한 입지선정 및 설계
  - 농촌 지역은 고령자 비율이 높아 이용편의를 위한 입지선정이 중요하므로, 고령자의 접근성과 동선을 감안하여 공공시설이 밀집한 마을 또는 읍면소재지의 중심부에 공동시설을 설치
    - \* 부지 확보의 용이성을 이유로 마을 외곽에 시설물 구축하는 행위 지양
  -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Design) 또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 \* 무장애디자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건물에서의 장애를 제거하는 디자인(노약자의 안전 측면 강조)
    - \* 유니버설디자인: 최대한 많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디자인(모든 사람의 편의성 측면 강조)
- 복지 의료 문화 등 체감형 서비스 연계
  - 농촌 지역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와 달리 넓은 지역의 원격지 마을에서 적은 인구가 산재하여 입지하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복지, 의료, 문화 등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곤란함

- 고령자가 모이는 공동시설에 의료(방문진료 등), 교육(한글교실 등), 문화(요가, 손공예 등)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 효과 극대화
  - \* 정부, 지자체의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연계하여, 농협(농가주부모임), 사회복지관 등 지역 민간기관과도 협력
- 복지 의료 문화 서비스 연계를 위해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
  - \* 지자체 내 농정, 복지, 문화부서간 협의체 구성토록 하는 등 협업 촉진
- 마을 공동체 기반의 운영·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가 합의하여 유지관리, 수혜자 선정, 이용료 부과 등 시설 운영·관리 시스템을 고안하도록 하였음
- 공동시설에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지자체 내 농정·복지·문화 등 부서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공동시설에 복지·의료·문화 서비스의 연계 등 협업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 공동시설 유형별 모델개발 및 설계기준 가이드라인 보급
  -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무장애디자인(Barrier-Free Design) 및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노약자 친화적 건축물을 보급하고자 하였음
  - 거주 후 평가(POE)를 통해 고령자 공동시설의 확산과 보급형 유형의 설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주민수요를 반영한 공동체 운영모델의 발굴 및 고령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건축계획이 확산될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전문가)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사업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주민 요구에 대응하는 최적의 공동시설 모델을 발굴·확산하고자 하였음

### ③ 시범사업의 의의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은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의 지원을 통해 농촌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의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하였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 (고령 농어업인의 영양개선),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고령화 문제의 극복으로 대안적

노인복지 모델 창출에 초점이 있으나, 공동급식시설과 작은목욕탕은 농촌주민 전체가 복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체감형 복지 모델 창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시범사업의 성과만을 강조하지 않고, 주민의 요구에 대해 지자체가 사업을 준비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지역별 총괄계획가를 지정함으로써 주민·지자체·전문가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음
  -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의 시설 구축을 위하여 사업시행 단계에서 마을별 수혜자, 이용자, 관리자 현황을 파악한 후 시설물의 규모를 산정하는 등 공동시설의 활용 및 유지관리까지 고려하고자 하였음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신청 이전단계부터 전문가 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추진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행정-전문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 공동생활홈의 경우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수혜자가 소수로 제한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혜자 선정 시에는 마을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합의를 중요시하였음
  - 공동생활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입주자 선정 후, 마을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뒷받침 되어야 함
- 공동급식시설과 작은목욕탕은 마을 구성원 전체가 복지 수혜 대상이 되므로, 사용계획, 운영주체, 유지관리계획 등을 결정함에 있어 이용 대상이 되는 전체 구성원의 호응, 공감대 및 참여를 중요시하였음
  -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과도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민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시설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과 지자체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합의 노력이 요구됨

#### ④ 사업 기간

- 2014년~2015년(2년간)

#### ⑤ 사업비 및 지원규모

- 사업비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역별 시설물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지방비 추가 투입 가능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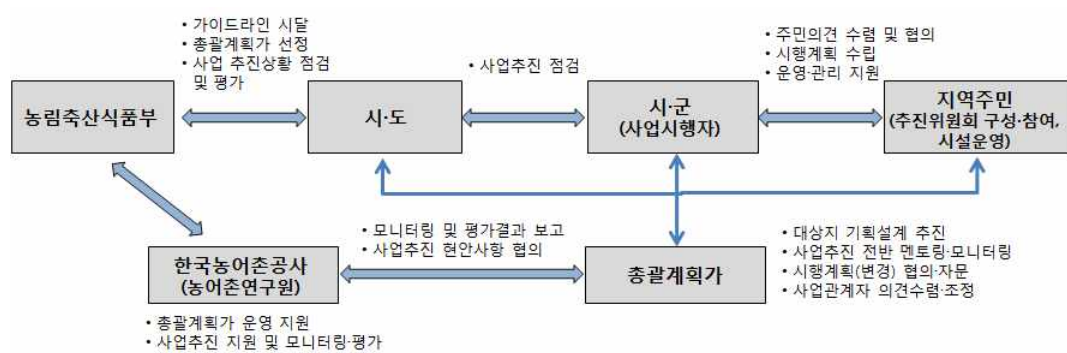
- 공동시설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설계비, 건축공사비, 감리비, 안전진단비용 등 지원
-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시범사업 공동시설 유형별 지원규모

- 공동생활홈 : 개소당 평균 120백만원(국고 60백만원, 지방비 60백만원)
- 공동급식시설 : 개소당 평균 50백만원(국고 25백만원, 지방비 25백만원)
- 작은목욕탕 : 개소당 평균 200백만원(국고 100백만원, 지방비 100백만원)

⑥ 추진절차

- 수요자, 접근성, 유희시설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마을)가 대상지 선정 및 기획을 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성을 살린 창의적 모델 발굴을 위한 전국단위 공모로 추진하였음
-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주관 및 예산지원 아래 사업시행자는 시·군 으로서 주민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사업계획 및 설계, 준공 후 운영·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함
- 전문성 강화 및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총괄계획가제도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15년 시범사업에서는 기획설계업무까지 수행토록하여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그림 2-1> '15년 시범사업의 추진체계



## ○ 주요추진과정

## (가) 사업공모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 공모지침 시달(농식품부)
- 시장·군수는 공모지침에 따라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
-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폐교, 창고, 빈집 등 유휴시설의 적극 활용을 권장

## (나)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제안서 검토, 전문가 자문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 선정(농식품부)
- 주민자치회(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등)가 주체가 되어 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
- 부지확보 여부, 시설물 규모, 주민참여도 등 시범사업 추진여건이 충족된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

## (다) 기본계획·실시설계 및 지역별 총괄계획가 위촉

- 각 도별로 농촌건축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
-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 법적 협의사항 이행
- 주변경관과 어울리고 농촌건축의 디자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촌 경관에 적합한 계획 수립
- 기본계획, 실시설계, 시설물 배치 등을 총괄계획가와 협의
- '15년에는 총괄계획가가 기획설계를 수행하여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 (라) 사업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2) 시설물 유형별 세부사업 특징

## ① 공동생활홈

## ○ 시설물의 개념 및 제한조건

- 농촌에 거주하는 둘 이상의 고령자(가구)가 모여 식사, 취침 등의 주거생활이 가능한 시설 또는 주택으로 한정함
- 마을·지자체 등 공동체가 소유·이용하는 시설로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권리는 제한됨
- 독립거주형의 경우, 특정인에게 매매·소유(분양)·임차권 등을 부여할 수 없음
- 마을공동체 등이 자치적으로 시설 운영을 담당

- 시설물(하드웨어) 구축 측면
  - 성별에 따른 공간 구분(방, 욕실 등) 및 공용공간의 마련을 통하여 공동생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게 함
  - 마을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동시설물의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 현재 사용 중인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할 경우, 마을회의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공동생활 공간과 분리하도록 함
  - 빈집을 활용할 시 지자체·마을회 등에서 소유하거나 장기 임대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지원을 허용함
  - 공동거주형으로 설치할 경우 개인별 수납장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무장애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함
  
- 운영(소프트웨어)적 측면
  -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 주민·거주자 합의에 의한 자체 협약·규약이 요구됨
  - 전기·수도 사용료, 이용료 징수, 화재보험 가입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② 공동급식시설

- 시설물의 개념 및 제한조건
  -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내 또는 별도로 조리 및 식사 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로 한정함
  - 식재료 조달, 조리, 식사제공 등은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도록 함
  - 시설의 소유 및 이용은 마을공동이며, 음식점 등 영업용 식당으로 사용은 불가함
- 시설물(하드웨어) 구축 측면
  - 마을회관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권장함
  - 예상 급식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시설 규모, 설비의 종류·수량 등을 결정하도록 함
  - 조리구역과 식사구역을 구분하고 식자재 보관시설 별도로 마련하도록 함
  - 농번기와 농한기 급식수요가 다를 것에 대비하여 계획 시 칸막이 벽 등과 같은 유동적 공간의 확보가 요구됨
  - 무장애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함
- 운영(소프트웨어)적 측면
  - 급식시설의 이용방안 및 운영 규칙 수립하도록 함
  - 식자재 조달, 조리, 식사제공 등은 원칙적으로 마을주민 또는 단체가 부담하며 가사도우미,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 ③ 작은목욕탕

- 시설물의 개념 및 제한조건
  - 읍면소재지 등 농촌중심지에 소규모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한정함
  - 욕탕, 샤워기, 탈의실 등 목욕서비스를 위한 설비 마련이 요구됨
  - 운영 및 관리는 지자체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음
  - 민간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없는 읍면지역으로 한정하여 지원함
- 시설물(하드웨어) 구축 측면
  - 욕탕, 샤워시설, 탈의실, 화장실 등 기능에 충실한 적정규모로 공간을 계획함
  - 남녀 요일제·격일제 사용 등 효율적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공기열원히트펌프, 태양광, 태양열 등과 같은 에너지절감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건축면적을 130㎡ 이내로 제한함
  - 읍·면사무소, 복지회관, 보건지소 등 공공시설에 증축 또는 인접한 곳에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무장애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함
- 운영(소프트웨어)적 측면
  -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성별에 따른 교대 이용 및 합리적인 운영시간을 설정하여 운영비 최소화하도록 함
  - 적정요금 징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의 운영관리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 공공근로자, 자활근로자, 자원봉사자, 마을부녀회, 노인회 등을 연계함으로써 인건비의 절감을 유도함
  - 주기적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 고장 및 노후화에 대비하도록 함

### ④ 공통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양질의 건축계획을 위해 총괄계획가(MP) 운영
- 민간전문가를 사업기획·실행·사후관리까지 사업추진 전과정에 참여·조정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특성, 농촌경관, 노약자를 배려한 공동시설 구축을 도모
- 시범사업 추진 전 과정에 조정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선발하여 도별 1~2명씩 지정하여 운영
- 건축설계도서 심의, 시공과정 점검, 기관 간 연계, 주민합의(협약), 운영체계, 법령 등 분야별 자문 및 정보제공

### (3) 시범사업의 대상지 선정

<표 2-8> '14년 시범사업 지역별 분포현황

시도	시군	읍면	마을명	시설종류	시도	시군	읍면	마을명	시설종류
세종 (1)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	작은목욕탕	경북 (18)	경산시	압량면	의송마을	공동급식시설
						강원 (3)	영월군	북면	공기2리
홍천군	화촌면	대평마을	공동생활홈	고령읍					
경기 (2)	이천시	신둔면	수하1리	공동급식시설		김천시	지례면	삼실마을	공동급식시설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충북 (2)	영동군	용화면	평촌마을	공동급식시설		문경시	동로면	적성3리	공동생활홈
							진천군	광혜원면	회안마을
충남 (4)	서천군	한산면	마양리마을	공동생활홈		상주시	외서면	연봉마을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가곡마을	작은목욕탕
	청양군	목면	지곡리	작은목욕탕		성주군	선남면	관화3리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전북 (14)	고창군	공음면	군유마을	공동생활홈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작은목욕탕
									군산시
	김제시	금산면	봉은마을	공동생활홈		의성군	가음면	가산3리	공동급식시설
	무주군	적상면	치목마을	공동생활홈		칠곡군	북삼읍	어로1리	공동급식시설
	적상면	성내마을	공동급식시설	거창군		신원면	대현마을	공동생활홈	
					부안군				위도면
	완주군	삼례읍	원후상마을	공동생활홈	남해군	삼동면	내산마을	공동생활홈	
	장수군	천천면	돈촌마을	공동생활홈			사천시	축동면	가산마을
				공동급식시설	사남면	연천마을			
	정읍시	감곡면	원삼마을	공동급식시설	용현면	금문마을	작은목욕탕		
								진안군	안천면
	곡성군	석곡면	죽산마을	공동급식시설	의령군	가례면	개승마을	공동급식시설	
나주시									동강면
	공동급식시설	통영시	산양읍	연명마을	공동생활홈				
영암군	학산면					독천마을	공동생활홈	하동군	북천면
		서호면	장촌마을	작은목욕탕	함양군				
완도군	청산면	도청마을	공동생활홈	함양군		함양읍	삼휴마을	공동생활홈	
					장성군				동화면
함평군	월야면	진하마을	작은목욕탕	해남군	송지면	미야마을	공동생활홈		
								제주 (1)	서귀포시



<그림 2-2> 2014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대상 마을

<표 2-9> '15년 시범사업 지역별 분포현황

시도	시군	읍면	마을명	시설종류	시도	시군	읍면	마을명	시설종류							
세종	-	-	-	-	전남 (8)	보성군	복내면	봉촌마을	공동생활홈							
강원 (2)	인제군	북면	원통6리	공동생활홈		장흥군	대덕읍	연평마을	공동생활홈							
	영월군	중동면	직동1리	공동생활홈		함평군	월야면	백야마을	공동생활홈							
경기 (2)	영천군	백학면	노곡장수마을	공동생활홈		완도군	생일면	유촌마을	공동생활홈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마을	공동급식시설		광양시	광양읍	본정마을	공동급식시설							
충북 (8)	제천시	한수면	송계마을	공동생활홈		경북 (18)	상주시	이안면	양범마을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영주시	단산면	육대4리	공동생활홈			
	진천군	이월면	송현2리	공동생활홈			청송군	진보면	진안1리				공동생활홈			
				음성군	소이면					충도4리	공동생활홈	청송읍	거대마을	공동급식시설		
	음성읍	초천1리	비석마을							공동급식시설	부동면			설티마을	공동급식시설	
			영동군	용산면	매금마을					공동생활홈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공동생활홈
매곡면	개춘마을	공동급식시설					달산면	인곡리	공동생활홈							
		충남 (5)	공주시	사곡면	운암2리				공동생활홈	지품면	신안리			공동급식시설		
보령시	주산면					증산1리	공동생활홈	병곡면	거무역리					작은목욕탕		
						논산시	취암8동							철길너머마을		공동급식시설
연무읍	동산2리							공동급식시설	김천시							농소면
		전북 (15)	김제시	황산면	두월마을	공동생활홈	부항면	월곡리		작은목욕탕						
장수군	천천면					박곡마을			공동생활홈	구미시	장천면			오로1리		공동생활홈
							계남면	희평마을	공동생활홈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작은목욕탕
고창군	심원면		두어마을	공동급식시설	예천군	풍양면			효갈마을	공동생활홈						
				남원시			산동면	대상마을		공동급식시설	성저리			작은목욕탕		
덕과면	덕동마을		공동급식시설						통영시	사랑면				진촌마을		공동생활홈
			임실군	강진면			백련마을	공동생활홈			사천시	서포면	구평마을		공동생활홈	
신평면	원천마을				작은목욕탕	창녕군		대지면	소림마을	공동생활홈						
			순창군	구림면	통안마을		공동생활홈			남지읍	남곡마을	작은목욕탕				
무주군	적상면					내창마을	공동생활홈	남해군	남면			무지개마을	공동생활홈			
			과목마을	공동급식시설	거창군		가북면			중촌마을	공동생활홈					
완주군	소양면			오성마을		공동급식시설		합천군	덕곡면		장리마을	작은목욕탕				
			제주 (4)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공동급식시설		하동군	화개면	검두마을	공동생활홈	
조천읍	선흘2리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우도면					연평리	작은목욕탕						
한림읍	상명리	작은목욕탕														



<그림 2-3> 2015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대상 마을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14~'15년(2년간) 동안 총 145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됨<sup>5)</sup>

- '14년 총 72개소 : 공동생활홈 33, 공동급식시설 26, 작은목욕탕 13

- '15년 총 73개소 : 공동생활홈 33, 공동급식시설 28, 작은목욕탕 12

<표 2-10> 시도별·유형별 사업 현황

'14년 시범사업 시도별 대상지 현황					'15년 시범사업 시도별 대상지 현황				
시도	계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시도	계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계	72	33	26	13	계	73	33	28	12
세종	1	-	-	1	세종	-	-	-	-
경기	2	-	1	1	경기	2	1	1	-
강원	3	3	-	-	강원	2	2	-	0
충북	2	-	2	-	충북	8	4	4	-
충남	4	2	1	1	충남	5	3	2	0
전북	14	7	7	-	전북	15	6	8	1
전남	9	5	2	2	전남	8	4	3	1
경북	18	6	8	4	경북	18	7	6	5
경남	18	10	4	4	경남	11	6	2	3
제주	1	-	1	-	제주	4	-	2	2

○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된 마을의 수는 106개에 해당됨

<표 2-11> 선정된 시설 수와 마을현황

	2014		2015		계	
	마을 수	시설 수	마을 수	시설 수	마을 수	시설 수
1개시설이 선정된 마을	56	56	58	58	104	104
2개시설이 선정된 마을	5	10	6	12	11	22
3개시설이 선정된 마을	2	6	1	3	3	9
	63	72	67	73	106	145

5)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 '14~'15년(2년간), 당초 152개소가 선정되었으나 7개소의 사업포기 및 취소로 인하여 사업비가 투입된 시설은 최종 145개소가 해당됨

- '14년 당초 선정된 시설 수 - 총 75개소 : 공동생활홈 35, 공동급식시설 26, 작은목욕탕 14

- '15년 당초 선정된 시설 수 - 총 77개소 : 공동생활홈 35, 공동급식시설 28, 작은목욕탕 14



#### (4) 소결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고령자 및 노인독거가구의 증가, 농촌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의 취약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농촌지역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적 노인복지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기존 사례 연구<sup>6)</sup>등을 토대로 마련되었음
- 공동생활이 외로움·불안감 감소 등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경제·환경·안전 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노인 공동생활방식의 확산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시범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본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성을 살린 창의적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였고, 고령자를 감안한 입지선정 및 설계(무장애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체 기반의 운영·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시도를 하는 등 향후 공동시설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음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거점으로 복지·의료·문화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부처간·지자체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유도하였고, 주민수요 반영 및 공동체 운영모델 발굴, 고령자를 위한 건축설계 확산 등을 위해 총괄계획가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의 시도는 높이 평가되어야 함
- 선진형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자체·총괄계획가 등 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분담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의견충돌이 예상됨
  - 공동시설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관계자 역량강화 및 협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본 사업 추진 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시설물에 대한 제한조건은 공동생활홈의 경우 마을·지자체 등 공동체가 소유·이용하는 시설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권리는 제한하고, 특히 독립거주형의 경우, 특정인에게 매매·소유(분양)·임차권 등을 부여할 수 없음. 공동급식시설의 경우는 시설의 소유 및 이용은 마을공동이며, 음식점 등 영업용 식당으로 사용은 불가하고, 작은목욕탕의 경우는 민간이 운영하는 목욕장이 없는 읍

6) 김승근 외,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3

면지역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음

- 본 시범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14~'15년(2년간) 동안 총 145개로 '14년 72개소와 '15년 73개소 시설물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1개 유형의 시설이 선정된 마을은 104개, 2개 유형의 시설이 선정된 마을은 22개, 그리고 3개 유형의 시설이 전부 선정된 경우는 9개 마을로 나타남

### 3. 고령자 공동시설 국외사례7)

- 20세기 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는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세기 중반부터는 식생활의 향상, 의학의 발달, 복지정책 등에 의해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급속한 핵가족화와 저출산 등에 의해 고령화 사회로 진행하게 되었음
-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어 감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 노인부양 비용 증가 등 국가의 노동생산성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지만,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 내부적으로는 독거가구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1960년대부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룹 홈 또는 노인 홈 등 의료 및 케어 서비스가 공존하는 주거복지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대응해 왔으며, 현재는 고령자 공동체 생활에 기반을 두고 하드 및 소프트웨어의 양면에서 대응이 가능한 공동 생활공간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어 거의 완성기에 이르고 있음

#### (1) 미국의 고령자시설 정책과 제도

- 미국 최초의 고령자 관련 법령은 고령자법(Older Americans Acts)으로 1965년 제정되었으며, 연방정부의 보건사회복지성(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내에 고령사회 관리국(Administration on Aging)을 설치하여 고령자 복지에 관한 조사, 고령자 서비스에 관한 연수계획의 수립,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고령자 프로그램 구축 등의 업무를 시작하였음
- 고령자법에 의한 고령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 고령자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한편, 연방정부의 고령사회 관리국을 중심으로 주(州) 단위에는 고령복지국을 두고, 각 지역단위에는 지역고령자국을 설치하였으며, 이 지역고령자국이 각 지역의 비영리 단체(NPO) 등에 위탁하여 해당 고령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7) 김승근 외,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3.12 pp.32~58. 재정리

- 2000년에는 가족 간병인 지원 프로그램(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이 추가되면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간병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고령자 영양 프로그램(Nutrition Program for the Elderly)으로 대표되는 영양 서비스 프로그램(Nutrition Services Program)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현재, 고령자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재택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고령자 시설의 지원으로 구분됨. 재택생활을 지원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고령자 지역 서비스, 고령자 재택서비스, 퇴직 고령자 지역 프로그램, 가족 간병인 지원 프로그램, 고령자 영양서비스 등이 있고, 시설지원은 그룹 홈(Nursing Home) 등과 같이 고령자 시설에 있어서 장기요양시설 음부즈맨 제도 등이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국 내 고령자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고령자의 약 90%는 지역사회에서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거주하고 있고, 약 10%는 서포티브 하우스(Supportive Housing) 또는 그룹 홈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서포티브 하우스와 그룹 홈의 입소자 비율은 각각 50%정도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서포티브 하우스는 일반적으로 식사 서비스, 고령자 이동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등과 같이 고령자 제반 서비스가 제공되는 집합주택을 지칭하며, 고령자 전용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고령자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인도 더불어 입주가 가능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표 2-13>
- 그룹 홈(Group Home)은 일반적으로 중증의 환자에 대한 간호 서비스 또는 재활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시설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는 주로 널싱 홈(Nursing Home)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즉, ‘주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설’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룹 홈에서는 간호사, 요양사 등을 중심으로 하여 통원으로 불가능한 의료 및 간호가 이루어지며, 저소득층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거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자기부담으로도 이용이 가능함
- 최근에는 그린하우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용자 복지를 고려하여 지역에 밀착한 소형시설이나 주(州)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AL(Assisted Living)의 시스템을 일부 도입한 형태의 그룹 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시설에서는 민간재단 등의 자금 지원을 통하여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추구하는 곳도 등장하고 있음

<표 2-12> 서포티브 하우스(Supportive Housing)의 유형분류

구분	시설명	개요
고령자 전용	Section 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연방정부가 주도한 유일의 고령자 전용주택</li> <li>• 입주자격 : 62세 이상, 연 수입이 지역평균의 반 이하</li> <li>• 서비스 : 생활지원, 간호서비스 등</li> <li>• 특징 : 장기 입주자가 많으며, 최근에는 서비스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의 관련 복지시설과 연계 협력</li> </ul>
	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연방정부가 주도한 유일의 고령자 전용주택</li> <li>• 입주자격 : 62세 이상, 연 수입이 지역평균의 반 이하</li> <li>• 서비스 : 생활지원, 간호서비스 등</li> <li>• 특징 : 장기 입주자가 많으며, 최근에는 서비스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의 관련 복지시설과 연계 협력</li> </ul>
고령자 외 입주 가능	AL (Assisted Liv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의료 및 간호 서비스형 고령자 주거시설</li> <li>• 입주자격 : 저소득층 고령자</li> <li>• 서비스 : 각 주(州)별로 서비스를 재량에 맡김</li> <li>• 특징 : 1970년대 후반에 성립되어 네덜란드 그룹 홈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입주자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중요시함</li> </ul>
	Residential Care Home & Family Care 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5~6인의 고령자가 거주하는 민간 주거시설이며, 가족형의 경우에는 5인 미만임</li> <li>• 입주자격 : 저소득층 고령자, 보호관찰이 필요한 자</li> <li>• 서비스 : 간호 서비스</li> <li>• 특징 : 보통의 주택의 형태도 있고, 대규모 시설의 형태도 존재하며, 2~4인의 공동생활이 일반적인 형태</li> </ul>



외관



로비



집회·오락실

식당(카페테리아)



운동시설(실내수영장)

개인 생활공간(거실)

<그림 2-4> 필라델피아의 CCRC(샤논델)

## (2) 유럽의 고령자시설 정책과 제도

- 유럽지역의 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5년부터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진행하여 왔으며,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과 더불어 노인복지 및 고령자 시설에 관한 정책과 제도가 더욱 발달하고 있음
- 유럽의 복지대국으로는 영국을 필두로 하여, 독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이 대표적이고,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시설’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진화·정착하고 있음

### ① 영국(United Kingdom)

- 영국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음. 1908년에는 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 1911년에는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그리고 20년대와 30년대에는 산업재해보상법과 실업보험법도 뒤이어 제정되기에 이르렀음

- 당시 제정된 노령연금법은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20년 이상 영국에 거주한 자로서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였고, 국민보험법은 수혜자 본인 부담을 근거로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사회보험 방식이었음
- 그러나 당시에 실시되었던 이러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들은 타 제도와의 연계성의 결여, 제도 자체의 결함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 상태여서 운영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음
- 영국에 있어서 고령자를 위한 근대적 복지서비스 정책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로 1946년에 국가의료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이 제정되면서 전 국민에게 무료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이어 1948년에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과 국가보조법(National Assist Act)을 제정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월케어, 보청기, 보행보조기구, 병상용 침대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였음
- 1960년대까지는 주로 의료 및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정책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커뮤니티 케어는 고령자들을 가급적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지역사회에 그대로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발된 개념임

-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주거형식은 셸터드 하우스(shelterd Housing)임. 셸터드 하우스는 어디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노인보호주택으로, 지역 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적게는 10인, 많게는 20인 정도가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림 2-5> 셸터드 하우스(Shelterd Housing)

- 입주대상자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으로, 세탁, 청소 등의 가사노동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노쇠현상이 심한 고령자들의 경우는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가사지원센터에서 파견되는 홈 헬퍼의 도움을 받음. 매월 일정액의 주택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수당으로 충당됨

- 한편, 고령자를 위한 요양시설의 대표적인 용어는 케어 홈(Care Home)으로 지칭됨. 케어 홈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하는 경우에는 NPO 또는 NGO 등의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림 2-6> 케어 홈(Care Home)

<표 2-13> 영국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구분	시설명	개요
주거 시설	셸터드 하우스 (shelterd hou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정부가 주도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지역 또는 마을 단위의 고령자 전용주택</li> <li>• 입주자격 :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우선</li> <li>• 서비스 : 가사지원, 간호사 파견, 식사배달, 교통편의 제공 서비스 등</li> <li>• 특징 :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후반 동안 임대용 노인보호주택 건설이 이루어졌으나, 영국의 경제위기 이후 점차로 민영화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음</li> </ul>
요양 시설	케어 홈 (Care 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주로, 치매 및 노인병 환자의 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 및 민간 요양시설</li> <li>• 입주자격 : 치매 및 노인병 환자, 보호관찰이 필요한 자</li> <li>• 서비스 : 의료 및 간호 서비스</li> <li>• 특징 : 대부분 중규모 이상의 큰 형태로, 개인거주공간과 공공거주공간으로 구분하여 구성되며, 가사, 조리, 세탁, 수선 등의 담당 스태프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운영의 효율을 도모</li> </ul>

## ② 독일(Germany)

-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 정부는 경제부흥에 몰두하여 국가를 재건하는데 국력을 집중하였으므로 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은 유럽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비교적 늦은 1970년대부터임



- 이후, 독일 정부가 고령자 등을 위하여 요양보험을 도입한 것은 1994년으로, 2005년까지 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의 정비, 요양시설의 지원, 치매 및 노인병 대책강화, 고령자 연금지원, 각종 고령자 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있음
- 노인요양 및 고령자 관련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은 ‘개인 생활의 존엄성 확보 및 자기의사 결정’, ‘가정에서의 요양’, ‘요양이 필요하지 않도록 예방 및 자각’, ‘보험 적용범위의 합리화’ 등으로 요약됨.
- 고령자 주거시설의 유형을 ‘요양형태’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2-14>와 같음

&lt;표 2-14&gt; 독일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구분	시설명	개요
주거 시설	노인용 주거 (Altenwohnung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용 전용주거시설</li> <li>· 입주자격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li> <li>· 서비스 : 요양실, 레스토랑, 매점, 은행 등 시설이 병설하여 입지</li> <li>· 특징 : 주로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형 노인주거로서 일정한 월세와 관리비 등이 요구되며, 공동체 커뮤니티를 제공</li> </ul>
	세대복합형 주거 (Jung-Alt- Wohngemeinscha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고령자와 학생, 고령자와 젊은층이 같이 거주하면서 상호간에 생활을 돕는 현대적 주거형태</li> <li>· 입주자격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li> <li>· 서비스 : 특별히 없음</li> <li>· 특징 : 주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자와 젊은 세대의 활동시간대가 다른 점에 착안하여 구성된 프로젝트에 의해 이루어진 주거시설로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li> </ul>
요양 시설	노인요양시설 (Station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주로 치매 및 노인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 요양시설</li> <li>· 입주자격 : 24시간 보호관찰이 필요한 자</li> <li>· 서비스 : 요양실, 미용원, 식당, 카페 등</li> <li>· 특징 : 입지적으로 도심이나, 주요 간선도로에 입지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게 되었고, 건물 내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 요양시설</li> </ul>
	단기체재요양시설 (Kurzzeitpfle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주로 노인병 환자가 단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공공 요양시설</li> <li>· 입주자격 : 보호관찰이 필요한 자</li> <li>· 서비스 : 요양실, 미용원, 식당, 카페 등</li> <li>· 특징 : 일시적으로 케어를 요구하는 노인병 환자가 자택에서 필요한 경우 입거를 하거나, 노인요양시설로 입거를 위하여 대체로 잠시 머무르는 요양시설</li> </ul>

- 독일의 대표적인 고령자 주거시설은 노인용 주거(Altenwohnungen)임.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주거시설로서 입주하면 주택 내에 요양실, 레스토랑, 매점, 은행 등 각종 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병설하였음. 주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형 노인주거로서 일정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요구하며, 공동거주를 통한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개념의 주거시설임
-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고령자 주거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세대 복합형 주거(Jung-Alt-Wohngemeinschaft)가 있음. 고령자와 학생, 고령자와 젊은 세대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상호간에 생활을 돕는 현대적 주거형태로서 입주자격은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해야 함. 주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자와 젊은 세대의 활동시간대가 다른 점에 착안하여 구성된 프로젝트에 의해 이루어진 주거시설로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입주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 요양시설의 대표적인 유형은 일반적인 노인요양시설(Stationar)과 단기체제요양 시설(Kurzzeitpflege)로 구분됨



노인요양시설(Stationar)



노인요양시설의 집회·오락실



단기체제요양시설 (Kurzzeitpflege)



단기체제요양시설의 개인실

<그림 2-7> 독일의 요양시설

- 일반적인 노인요양시설은 주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치매 및 노인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 요양시설이며, 단기체재요양시설은 일시적으로 케어를 요구하는 노인병 환자가 자택에서 필요한 경우 입거를 하는 경우나, 노인요양 시설로 입거를 위하여 대체로 잠시 머무르는 요양시설임

### ③ 스웨덴(Sweden)

- 스웨덴은 유럽 여러 국가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정책 및 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서 특히, 고령자 복지는 1950년대 초에 시작됨

- 1950년대에 뮌헨에 있는 한 고령자 전용주택에 살던 고령자의 고독사를 계기로 고령자의 요양과 복지문제가 화두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스웨덴 정부에서는 정부기관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고령자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정에서 요양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조사를 행하여, 이 결과를 위원회 보고서(Åldringsvårdsutredningen föreslog i sitt betänkande, 1956)로 작성하였음

- 이후 1974년에는 노인 홈 등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고, 1992년 에델의 개혁에 의해 노인요양 및 고령자 관련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비한 결과, 지역단위에서 의료치료 후 신체장애자 및 고령자 요양 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비되었음

- 또한 이와 동시에 고령자에 대한 대책은 재택요양을 기본으로 하고, 각종 방문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음

- 스웨덴의 대표적인 고령자 주거시설을 살펴보면<표 2-15>, 주거시설로는 고령자 주택(Seniorboende), 고령자 주택+65(Seniorboende+65), 서비스하우스(Servicehys)가있고, 요양시설로는 노인 홈(Ålderdomshem), 그룹 홈(Gruppboende), 슈크헴(Sjukhem) 이 있음

- 고령자 주택은 근래에 시니어하우스라고 불리며, 고령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되, 개인생활이 확보 되도록 하는 공동주택으로,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방문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짐. 주택의 경영은 공동주택조합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민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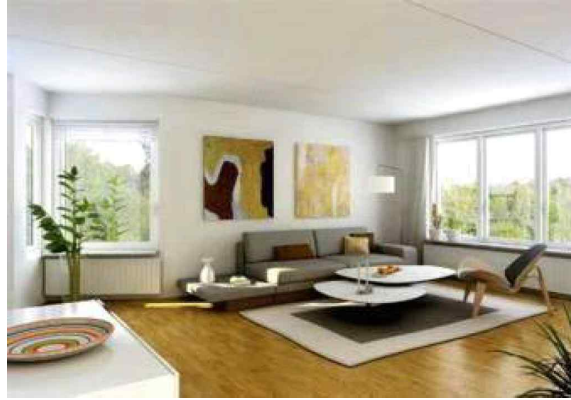
<그림 2-8> 스웨덴의 고령자주택

경영하는 경우도 있음. 기본적으로 주택은 개인소유가 됨

<표 2-15> 스웨덴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구분	시설명	개요
주거 시설	고령자 주택 (Seniorboen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념 : 근래에는 시니어하우스라고 불리며, 고령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되, 개인생활이 확보되도록 하는 공동 주택</li> <li>입주자격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li> <li>서비스 : 각종 생활편의시설 입지, 방문 서비스</li> <li>특징 : 주택의 경영은 공동주택조합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민간에서 경영하는 경우도 있음. 기본적으로 주택은 개인소유</li> </ul>
	고령자 주택+65 (Seniorboende+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념 : 퇴직 후, 고령의 독신자 및 부부의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형태</li> <li>입주자격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로서 65세 이상</li> <li>서비스 : 각종 생활편의시설 입지, 방문 서비스</li> <li>특징 : 고령자의 공동생활과 편의증대를 위하여 공용 홀을 크게 설정하고, 요양기능을 강화하여 홈 헬퍼 등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의 주택임</li> </ul>
	서비스하우스 (Serviceh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념 : 개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시설 내 일부의 휴게실이 이용가능한 시설로서, 시설 내에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음</li> <li>입주자격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li> <li>서비스 : 각종 생활편의시설 입지, 방문 서비스</li> <li>특징 : 서비스 하우스에서 케어를 받으려면 사전에 인정을 받아야 하고, 본인의 신체장애에 대한 설비가 부착되어 있음</li> </ul>
요양 시설	노인 홈 (Ålderdomsh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념 : 공동생활 체제로서 24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고, 개인공간의 소유가 가능하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 및 휴게를 할 수 있는 요양시설</li> <li>입주자격 : 24시간 보호관찰이 필요한 자</li> <li>서비스 : 요양실, 케어센터, 회의실, 식당, 카페 등</li> <li>특징 : 입주자는 임대료를 내고, 식대, 관리비 등은 연금 등을 통하여 지급</li> </ul>
	그룹 홈 (Gruppboen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념 : 작은 규모의 아파트로서 공동부엌, 식당, 그리고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 내에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음</li> <li>입주자격 : 치매환자</li> <li>서비스 : 공동부엌, 식당, 휴게실 등</li> <li>특징 : 주로, 6~9인의 공동생활을 기본으로 하고, 각종 노인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의료 및 복지 직원이 상주하여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시설</li> </ul>
	슈크헴 (Sjukh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념 : 중증의 치매환자 전용 시설</li> <li>입주자격 : 중증 치매환자</li> <li>서비스 : 의료시설, 휴게공간 등</li> <li>특징 : 중증의 치매환자 보호시설</li> </ul>

- <고령자 주택+65>는 고령자 주택에서 발전한 형태로, 퇴직 후, 고령의 독신자 및 부부의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시설임. 입주자격은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로서 65세 이상이고, 고령자의 공동생활과 편의증대를 위하여 공용 홀을 크게 계획하는 것이 특징임. 또한 요양기능을 강화하여 홈 헬퍼 등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의 주택임



<그림 2-9> 스웨덴 고령자주택의 내부

- 서비스 하우스는 개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시설 내 공용으로 설치된 휴게실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주거시설로서, 시설 내에 케어를 담당하는 24시간 근무직원이 있는 점이 특징임. 서비스 하우스에서 케어를 받으려면 사전에 병중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각 실에는 입주자의 신체장애를 고려한 각종 설비가 부착되어 있음
- 노인 홈은 공동생활 체제로서 24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고, 개인공간의 소유가 가능하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 및 휴게를 할 수 있는 요양시설임. 입주자는 임대료를 내고, 식대, 관리비 등은 연금 등을 통하여 지급하며, 개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시설 내 일부의 휴게실은 이용가능한 시설로서, 시설 내에는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점이 특징임
- 그룹 홈은 작은 규모의 아파트로서, 공동부엌, 식당, 그리고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 내에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시설로 주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내부 시설로는 공동부엌, 식당, 휴게실, 취미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6~9인의 공동생활을 기본으로 하며, 각종 노인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직원이 상주하여 24시간 케어하고 있음



<그림 2-10> 스웨덴의 그룹홈

- 슈크헴은 그룹 홈에서 거주하는 노인병 및 치매환자보다 증세가 심각한 중증의 치매환자 전용시설임. 내부 시설 및 운영형태는 그룹 홈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나 의료부문이 특히 강화된 시설임



<그림 2-11> 그룹홈의 개실 내부

#### ④ 핀란드(Finland)

- 핀란드의 고령자 복지는 이웃 국가인 스웨덴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북유럽형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스웨덴과 차별화된 내용으로는 NPO 등의 민간에 의한 고령자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이 대부분이고, 고령자 주택 및 그룹 홈 등의 내부공간의 면적이 비교적 넓게 계획되어 있음
- 또한, 스웨덴의 경우, 에텔의 개혁(1992년)에 의해 제도적으로 「시설」이라는 개념을 폐지하고, 고령자 관련시설을 전부 특별주택으로 일원화하는 시책으로 전환을 도모한 반면, 핀란드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시설」과 「고령자주택(일명, 서비스 하우스)」의 이원체제로 정비하였다는 점이 특징임
- 핀란드에 있어서 고령자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1984년의 발타바(VALTAVA) 개혁과 1993년의 세제개혁을 들 수 있음
- 발타바 개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역할분담의 재구축, 시설 케어로부터 탈 시설케어(오픈케어)로의 이행축진을 도모한 것으로 북유럽형의 복지국가로서 기반을 만들게 된 개혁임
- 세제개혁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고령자 서비스 제공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결정하게 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재택 케어 및 서비스 등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음
- 핀란드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시설 및 서비스 제공 외에 민간사업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 활동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서 슬롯머신협회(RAY)30)가 있음. 이 협회는 의료복지를 비롯하여, 고령자 복

지분야인 서비스하우스 및 그룹 홈 등의 건설·운영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 핀랜드의 대표적인 고령자 주거시설을 살펴보면<표 2-16>, 주거시설로는 고령자 주택(일반주택), 서비스하우스가 있고, 요양시설로는 노인 홈 또는 케어형 서비스하우스, 장기요양시설 등이 있음
- 고령자 주택은 고령자가 기존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주택에 거주하여 오랫동안 살아 온 터전과 마을커뮤니티를 노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대부분의 주택은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 고령자 생활환경을 보다 더 고려하고 있으며, 주로 방문 케어서비스가 운영됨

<표 2-16> 핀랜드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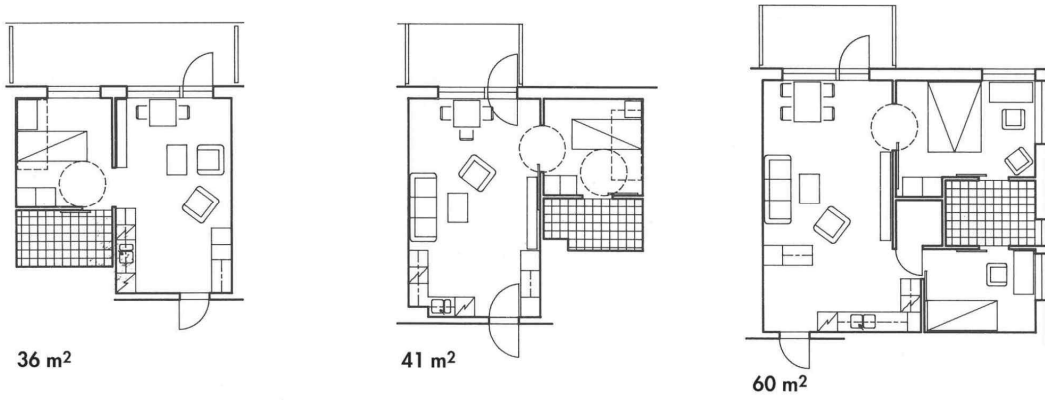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개요
주거 시설	고령자주택 (일반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일반적인 개인주택으로 고령자가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이며,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각종 시설이 설치</li> <li>• 입주자격 : 해당사항 없음</li> <li>• 서비스 : 방문 케어서비스</li> <li>• 특징 : 오랫동안 살아 온 마을커뮤니티를 노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음</li> </ul>
	서비스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주로 공동주택의 형태가 일반적이며,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개인주호에 거주하면서, 시설 내 일부의 편의시설이 설치</li> <li>• 입주자격 : 고령자로서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 또는 부부</li> <li>• 서비스 : 케어 서비스 시설이 별도로 근처에 위치</li> <li>• 특징 : 이용자가 연금, 월세보조, 케어수당 등에 의한 개인수입으로 월세와 케어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이 비용이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되며, 생활공간의 면적에 따라 제반 비용이 다르게 책정</li> </ul>
요양 시설	노인 홈 (그룹 홈) 또는 케어형 서비스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기본적으로 공동생활 체제(단독주택의 형태도 있음)로 24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고, 개인공간이 확보되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 및 휴게를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주택</li> <li>• 입주자격 : 24시간 보호관찰이 필요한 자로 주로 치매 및 노인병 환자</li> <li>• 서비스 : 요양실, 케어센터, 회의실, 공동주방 및 식당, 카페 등</li> <li>• 특징 : 입주자는 임대료를 내고, 식대, 관리비 등은 연금 등을 통하여 지급</li> </ul>
	장기요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중증의 고령 병자를 대상으로 의료 및 복지 케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로서, 시설 내에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음</li> <li>• 입주자격 : 중증의 고령병자로서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li> <li>• 서비스 : 의료케어, 복지케어 등</li> <li>• 특징 : 주로 병실단위의 6~9인의 공동생활을 기본으로 하고, 각종 노인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의료 및 복지 직원이 상주하여 장기간에 걸쳐 케어가 가능한 시설</li> </ul>

- 서비스하우스는 주로 공동주택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개인주호와 공동으로 생활하는 커뮤니티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음. 면적이 다른 유럽지역의 서비스하우스에 비해 매우 넓고, 시설 내 편의시설을 배치하여 편의성을 강화하였음. 케어시설 등은 서비스 하우스 인근에 인접하여 위치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공공시설이 있는 입지에 주로 설치하는 점이 특징이며, 이용자가 연금, 월세보조, 케어수당 등에 의한 개인수입으로 월세와 케어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되며, 생활공간의 면적에 따라 제반 비용이 다르게 책정됨
- 노인 홈 및 케어형 서비스하우스는 북유럽형 노인 홈과 동일한 개념의 시설 또는 주택으로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노인 홈의 개념이 정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음. 기본적으로 공동생활 체제(단독주택의 형태도 있음)로 24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고, 개인공간이 확보되며, 공동식당에서 식사 및 휴게를 할 수 있음. 시설 운영은 입주자의 임대료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의해 이루어짐.
- 한편 장기요양시설은 중증의 고령 병자를 대상으로 의료 및 복지 케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로 일반적인 의료요양시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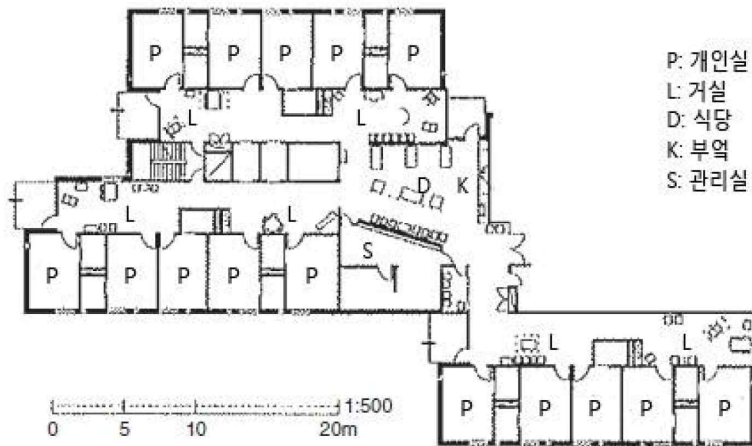


<그림 2-12> 핀란드 서비스하우스의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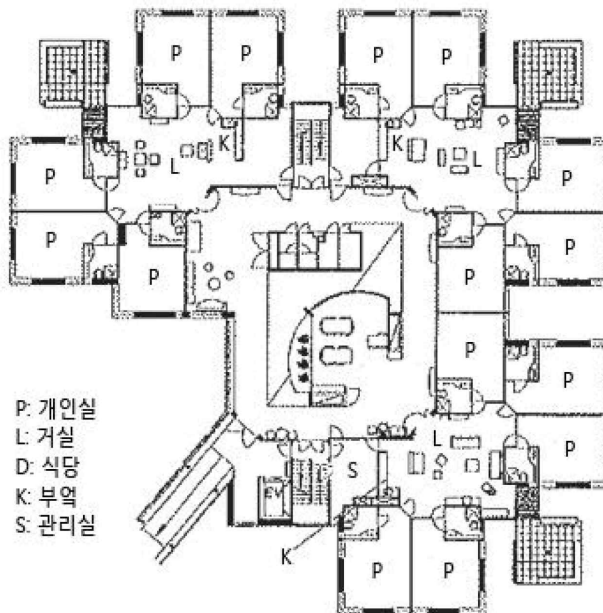




<그림 2-13> 핀란드 서비스하우스 개인실 단위평면



<그림 2-14> 핀란드 노인홈 사례-1



<그림 2-15> 핀란드 노인홈 사례-2

### ⑤ 덴마크(Denmark)

- 덴마크는 1970년대부터 고령화가 시작되어 1978년에는 고령화율이 14%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의료시설 및 프라이엠 (Plejehejm)<sup>8)</sup> 등의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의 사회적 입원이 국가차원에서 문제화되기 시작하였음. 즉 시설에 의한 케어는 고령자의 고립화를 촉발하고, 자립화를 저해한다는 중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임
- 1979년에 이러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덴마크 정부에서는 「고령자 정책위원회(Aeldrekommisjonen)」를 설치하고,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화에 대한 해결과 자립화 촉진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고령자정책을 발굴·모색하게 됨
- 제1회 고령자정책위원회 보고서(1979년)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자 정책의 골자는 “거주기능”과 “케어기능”을 분리하고, “과도한 케어는 고령자를 거꾸로 병들게 한다”라는 개념을 정리하였음. 즉 “자립지원(Help to Self-Help)”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1988년에는 「생활지원법」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하여 프라이엠의 신규 건설이 금지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고령자 거주시설을 「고령자주택」으로 일원화하여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시스템이 완비된 양질의 고령자 주택 건설에 힘을 쏟기 시작하였음
- 이와 더불어, 기존 의료 및 요양시설을 의료 및 케어 스테이션으로 규정하고 지역에 개방하여 활용하는 데이 서비스(Day Service)를 확충하면서, “거주기능”과 “케어기능”의 공존을 도모하고 있음
- 덴마크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관련 시설은 주거시설로서 고령자주택, 그리고 요양시설로서 보호주택, 프라이엠(장기요양시설)으로 구성되어 있음<표 2-17>
- 고령자 주택은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와 매우 비슷한 개념으로 설정된 주택으로 일반 개인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고령자가 기존에 살고 있던 공동주택이나 지역에 거주하는 형태이며,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배리어프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의료 및 복지케어는 주로 지자체 또는 민간의 데이케어 시설을 연계·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음

8) 재택 케어를 받아도 자택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고령자를 위한 요양시설로 특별노인요양원에 해당됨

- 보호주택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고령자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시설로 고령자 단독주거단지 및 공동주택의 형태가 있으며,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개인 거주공간에 거주하면서 일부의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그림 2-16> 덴마크 고령자주택(호스홀름)

<그림 2-17> 덴마크 고령자주택(호스홀름)의 내부

<표 2-17> 덴마크의 대표적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분류

구분	시설명	개요
주거 시설	고령자 주택(일반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일반적인 개인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고령자가 기존에 살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형태이며,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베리어프리 시스템을 적용한 주택</li> <li>• 입주자격 : 해당사항 없음</li> <li>• 서비스 : 주로, 방문 케어서비스</li> <li>• 특징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적 자립지원의 개념을 적용한 주거시설로서, 기존 마을커뮤니티를 유지하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음</li> </ul>
요양 시설	보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단독주거단지 및 공동주택의 형태가 있으며,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개인 거주공간에 거주하면서, 일부의 편의시설이 설치</li> <li>• 입주자격 :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고령자 또는 환자</li> <li>• 서비스 : 케어 서비스 시설이 인접하여 위치</li> <li>• 특징 : 이용자가 연금, 월세보조, 케어수당 등에 의한 개인수입으로 월세와 케어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이 비용이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li> </ul>
	프라이엄 (장기요양시설) 너싱 홈 (Nursing 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중증의 고령 병자를 대상으로 의료 및 복지 케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로서, 시설 내에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상주함</li> <li>• 입주자격 : 중증의 고령병자로서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li> <li>• 서비스 : 의료케어, 복지케어 등</li> <li>• 특징 : 단독입원실에서 6~9인 단위의 공동입원실로 다양하게 구성되며, 각종 노인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의료 및 복지 직원이 상주하여 장기간에 걸쳐 케어가 가능한 시설</li> </ul>

- 프라이엠(장기요양시설)은 중증의 고령병자를 대상으로 의료 및 복지 케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로서, 시설 내에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요양시설임



<그림 2-18> 덴마크 프라이엠의 내부

### (3) 일본의 고령자시설 정책과 제도

#### ① 고령자시설

- 일본은 1963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로 전국적으로 노인거주시설의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음. 즉 종래의 양로원과 양로시설을 특별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정비노인홈(A형, B형) 등으로 재편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요양시설 위주의 정비를 실시하였음
- 그러나 노인 홈 등의 요양시설 위주의 정비는 대부분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농촌지역의 고령자를 위한 정책은 매우 미흡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과소지역 또는 농어촌의 노인이 이용을 위하여 1990년부터 소규모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인 ‘고령자생활복지센터’를 창설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음
- 고령자 생활복지센터는 거주기능, 케어 지원기능, 지역교류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고령자의 생활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중심지역에 건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고령자 생활복지센터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역교류기능 부분이 제외된 채 거주기능과 케어서비스 기능만을 복합한 형태로 많이 건립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데이 서비스 부분이 통상 요양보험이 지급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거주기능과 케어 지원기능이 분리되었음
- 현재의 고령자 생활복지센터는 거주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명칭도 생활지원하우스로 개칭되는 등 과소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형태의 주거시설로서 정착하고 있음

&lt;표 2-18&gt; 일본의 고령자 시설

구분	시설명	개요
주거 시설	실버하우징 (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념 : 기존의 고령자끼리 모여 사는 방식이 고령화 사회를 지향하는 것과 다른 방향임을 인지하고, 일반인과 같은 단지 또는 지역에 노인 전용의 주택을 건립한 주거시설</li> <li>입주자격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li> <li>서비스 : 각종 생활편의시설, 휴게실, 의무실, 방문 서비스</li> <li>특징 : 노인 전용주택에는 30가구당 1명의 전문 요양사가 배치되어 케어서비스를 강화한 시설로, 그 외에도 각종 고령자 서비스가 존재함</li> </ul>
	시니어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념 : 일반적으로 고령자 주택으로 불리며, 고령자 개인이 소유하여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주택</li> <li>입주자격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로서 65세 이상</li> <li>서비스 : 식당, 라운지, 프런트, 주차장 등 편의시설</li> <li>특징 : 고령자의 공동생활과 지역커뮤니티 증진</li> </ul>
	생활지원 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념 :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안한 고령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형태의 시설</li> <li>입주자격 : 60세 이상의 고령자</li> <li>서비스 : 규모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이 달리 설치됨</li> <li>특징 : 장기거주와 단기거주로 나누어 운영되며, 본인의 수입 또는 예금으로 각자 임대료, 식대, 관리비 등을 지불하여 생활 하는 형태임</li> </ul>
요양 시설	(특별) 양호노인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념 : 신체, 건강상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항상 의학적 케어가 필요하고 자택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기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공동요양시설(건강 정도에 따라 특별과 일반으로 구분)</li> <li>입주자격 :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으로 보호관찰이 필요한 자</li> <li>서비스 : 요양실, 케어센터, 회의실, 식당, 카페 등</li> <li>특징 : 입주자는 임대료를 내고, 식대, 관리비는 연금 등을 통하여 지급</li> </ul>
	그룹 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념 : 한 시설에 치매환자가 약 5~9인이 공동으로 입실하여 생활하는 시설</li> <li>입주자격 : 치매환자</li> <li>서비스 : 공동부엌, 식당, 휴게실 등</li> <li>특징 : 시설 내에 개인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자택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며, 전문 스태프가 항상 대기하여 케어를 함.</li> </ul>
	케어하우스 (경비노인홈 및 유료 노인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념 : 고령자를 수용하여 일상생활의 편익을 제공(A형)하거나, 이용자가 스스로가 이용료를 부담하여 자취할 수 있을 정도로 간호하는 시설(B형), 그리고, 급식과 일상생활상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유료노인홈)</li> <li>입주자격 : 60세 이상 고령자</li> <li>서비스 : 데이케어 서비스 등</li> <li>특징 : 양호 노인홈과 비교할 때 의료서비스 등은 미약하나, 복지 정책 차원에서 지원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li> </ul>

- 일본에 고령자 주거관련 시설은 크게 주거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되며, 주거시설에는 실버하우징(또는 실버타운), 시니어 주택, 생활지원하우스가 있고, 요양시설에는 특별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그룹 홈, 케어하우스(경비노인홈 A형, 경비노인홈 B형, 유료노인홈) 등이 존재함
- 실버하우징(또는 실버타운)은 기존의 고령자끼리 모여 사는 방식이 고령화 사회를 지향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임을 인지하고, 일반인과 같은 단지 또는 지역에 노인 전용 주택을 건립한 주거시설로서, 30가구당 1명의 전문 요양사가 배치되어 케어서비스를 강화한 시설임
- 시니어주택은 일반적으로 고령자주택 또는 고령자용 주택으로 불리며, 고령자 개인이 소유하여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개념임. 입주대상자는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으로, 식당, 라운지, 프런트,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 고령자의 공동생활과 지역커뮤니티 증진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 생활지원하우스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안한 고령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형태의 시설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단지 및 건물 규모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이 달리 설치되고, 시설의 이용은 장기거주와 단기거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본인의 수입 또는 예금으로 각자 임대료, 식대, 관리비 등을 지불 하여 생활하는 형태임
- 양호노인홈은 입주자의 건강 정도에 따라 일반 또는 특별 양호노인홈으로 구분되며, 신체, 건강상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항상 의학적 케어가 필요하고 자택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이용하는 공동요양시설임. 입주자격은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으로 보호관찰이 필요한 자로, 입주자는 임대료를 내고, 식대, 관리비 등은 연금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
- 그룹홈은 한 시설에 치매환자 약 5~9인이 공동으로 입실하여 생활하는 시설로, 시설 내에 개인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자택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며, 전문 스태프가 항시 대기하여 케어를 하고 있음
- 케어하우스는 경비노인홈 또는 유료노인홈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고령자를 수용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A형)하거나,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료를 부담

하여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간호하는 시설(B형), 그리고, 급식과 일상생활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유료노인홈)이 있음. 양호노인홈과 비교할 때 의료서비스 등은 미약하나, 복지정책 차원에서 지원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그림 2-19> 일본의 생활지원하우스(야마쿠니)

## ② 종합복지측면에서의 고령자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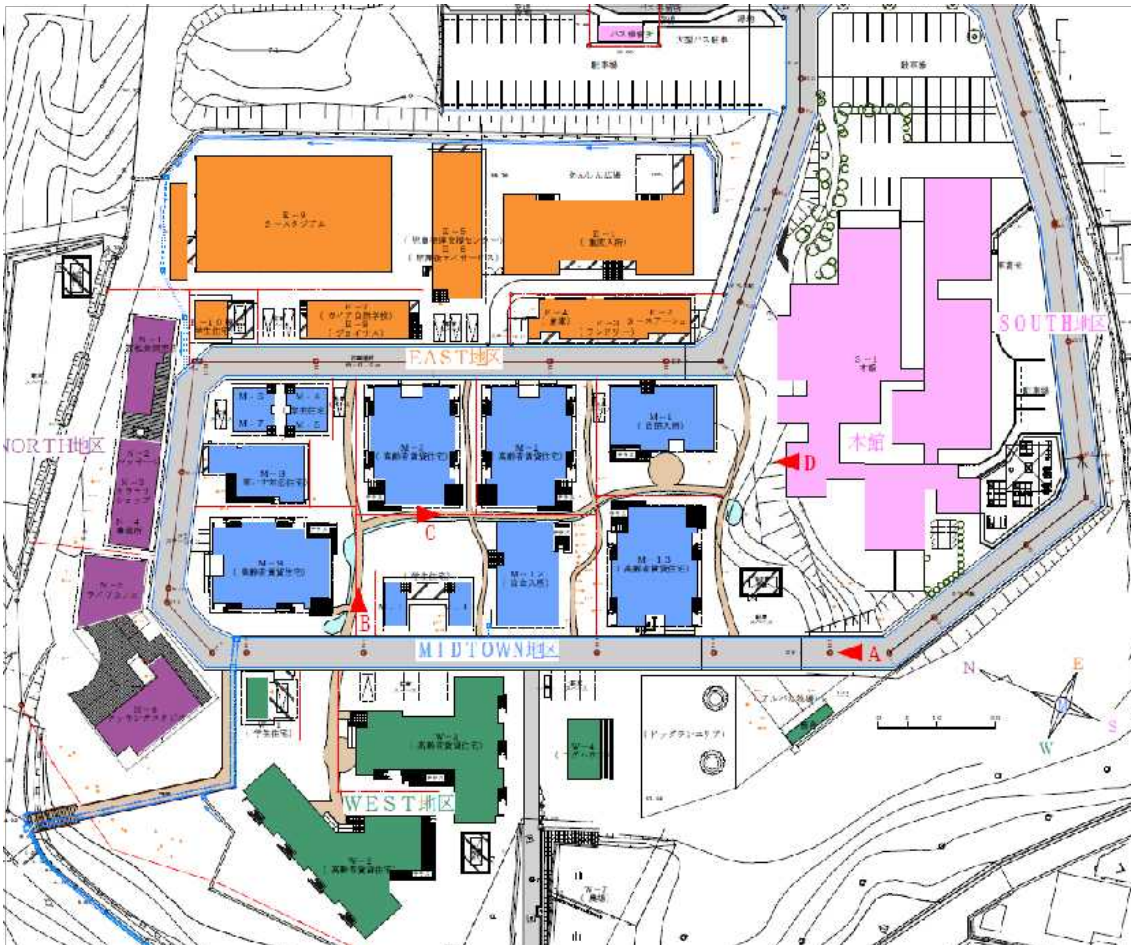
- 이용 대상자를 분리하여 시행되는 복지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금까지의 복지시설은 주변 마을과의 관계성이 희박하고 사회와의 교류가 적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 지금까지의 이러한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웨어 카나자와(Share Kanazawa)는 ‘보살피는 사람과 보살핌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아닌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사실은 보살피고 있다’라는 관계 형성을 지향하는 종합복지시설임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2014년 준공하였고, 일본의 고령자시설에서 가장 선도적인 모델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 웨어 카나자와의 형성배경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아동입소시설 등을 운영해 온 시설주가 시설노후화로 인해 새로운 장소를 모색하던 중, 단일 용도가 아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여러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마을을 계획하고 설계자에게 의뢰하였음. 부지는 국립병원이 있던 장소로 폐원이 되고 난 후 시간이 경과해 황폐해졌지만, 부지주변의 잡목림과 부지 내에 남아있던 수목이 오히려 지역일대에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음
- 웨어카나자와(Share Kanazawa)의 입주자 구성
  - 주요용도 : 아동복지시설, 서비스제공 고령자임대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 아동입소시설 : 유아·중도(重度)동 22명, 자폐동 9명, 자립동 8명
  - 서비스제공 고령자임대주택 : 32호
  - 학생주택 : 아트리에 겸 학생주택 2호, 학생주택 6호
  - 본관 : 고령자 데이서비스 15명, 생활개호 10명
  - 아동발달지원센터 : 아동발달지원센터 10명, 방과후 등 데이서비스 10명, 방

과 후 보육시설 40명

-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하거나 가벼운 보호가 필요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생활상담원이 상주하여 안부확인과 생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웨어 카나자와는 ‘교류’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어울리는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고령자, 어린이, 학생 등의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방과 후 보육시설, 목욕탕, 매점 등)을 가진 25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장애인과 일반인, 고령자와 학생까지 누구나 생활할 수 있는 일종의 복지타운 형태로 구성되었음. 다양한 공간들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 서비스 제공 고령자임대주택 : 면적 43㎡정도의 1LDK형(1 Living-Dining-Kitchen형, 시설구비원룸형) 임대주택으로 공동공간은 적당한 거리에서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함
  - 고령자 데이서비스시설 : 당일이용 복지시설로 식사, 입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호서비스와 레크레이션과 같은 생활기능향상 서비스 제공
  - 생활개호시설 : 일상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관한 상담지원을 하고, 창작활동과 생산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신체기능과 생활능력향상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 아동입소시설 :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세 개의 건물 안에서 4개의 유닛으로 나뉘어져 생활하고 있음. 세 개의 건물은 부지 내에 분산·배치되어 학생과 고령자 및 이웃주민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발달지원센터·방과 후 등 데이서비스시설 : 아동발달지원센터는 아이들 성장에 불안을 안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고, 나아가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함
  - 출산전후 케어하우스 : 임신과 육아상담, 건강상담을 하는 시설로 이곳을 거점으로 아기와 어른 모든 세대가 연결되어 건전하고 건강해지도록 지원함
  - 방과 후 보육시설 : 지역에 사는 일반아동이 다니는 방과 후 보육시설로서 NPO법인이 입주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음
  - 학생주택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1DK주택으로 웨어카나자와 내에서 월 30시간을 자신들의 특기를 살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입주조건으로 약 3만엔이라는 비교적 싼 월세로 생활할 수 있음
  - S스타디움(아동발달지원센터 지도훈련실) : 지붕이 있는 실내형 스타디움으로 아이들이 운동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지역주민들의 스포츠활동도 이루어짐
  - 공중목욕탕 : 지하 600m에서 솟아나오는 천연온천



- 와카마츠 공동매점 : 거주자 스스로가 ‘우리가 만드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운영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가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공간이 ‘와카마츠 공동매점’임. 쉐어 카나자와에 사는 고령자와 학생이 물건의 입고부터 판매까지 담당하고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건은 스스로 갖추고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편리하고 유연성 있는 가게로 인근 지역의 이벤트정보 등을 게시하고, 주민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서도 이용됨
- 그 외에도 세탁소, 빨래방, 맛사지숍(점포운영 외에 신체 케어 활동이 요구되는 고령자 데이서비스시설과 서비스제공 고령자임대주택으로 출장을 가기도 함), 카페, 요리 스튜디오, 도그런(dog run :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임장소) 등과 같이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공간들은 주민들의 교류와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중요한 가치가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림 2-20> 일본 쉐어 가나자와(Share Kanazawa)의 배치도

- 1) 하단의 건물 중의 2동 (W-2, W-3), 중앙부분의 건물 중의 5동(M-2, M-3, M-8, M-9, M-13)이 고령자임대주택임
- 2)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한 레스토랑, 공중목욕탕, 생활개호시설, 고령자데이서비스시설, 배식센터의 기능이 있는 본관(S-1)이 이 쉐어 카나자와의 핵심 공간임



<그림 2-21> 일본 웨어 가나자와(Share Kanazawa) 내의 고령자 임대주택



<그림 2-22> 일본 웨어 가나자와(Share Kanazawa) 내의 고령자 임대주택 내부



<그림 2-23> 일본 웨어 가나자와(Share Kanazawa) 내의 고령자 임대주택 평면도



<그림 2-24> 웨어 가나자와(Share Kanazawa)

본관 휴게실에서의 외부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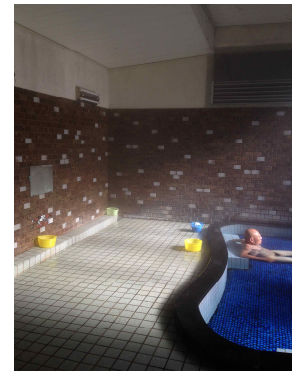
- 2014년 준공한 이후, 일본 복지시설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 Good Design 상, 중부건축상(제 46회 일본부분 특별상), 니시가와현 디자인전에서 니시가와 도지사상, 이시가와 경관대상, 가나자와도시문화상, 의료복지건축상 등을 수상 함

## ② 목욕탕

- 일본 오이타현 아지무마을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미니 공중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음
-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에 따라 농가민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 방문객들이 농가에서 민박을 하기 전에 미니 공중목욕탕에서 간단한 샤워를 하고, 민박 농가로 이동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목욕탕에는 목욕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하는 등 아지무마을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목욕탕 사용료는 우리나라 화폐기준 약 3천원 정도에 해당됨
- 일본 돗토리현 요시오카 마을에서는 10세기에 발견된 온천을 활용하여 온천문화를 즐기는 관광명소로 유명한 마을이었으나, 정작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 없어 주민회의를 통해 조성되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 1층에 로비와 휴게공간, 남탕-여탕의 작은목욕탕이 위치해 있고, 2층은 다목적 회의실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목욕비는 우리나라 화폐기준 약 3천원 정도에 해당됨



<그림 2-25> 일본 아지무마을  
Mini-공중목욕탕



<그림 2-26> 일본 요시오카 마을 작은목욕탕

#### (4) 국외 사례에서 나타난 시사점

-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고령자복지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령자 거주시설 및 케어서비스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음. 현재는 ‘시설’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을 기반으로 고령자 공동체 생활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하드 및 소프트웨어의 양면에서 대응이 가능한 형태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미국은 연방정부가 주도한 고령자 전용주택과 고령자 케어 기능이 부가된 서포티브 하우스로 발전하다가, 최근에는 그린하우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용자 복지를 고려하여 지역에 밀착한 소형의 시설이나 지방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AL(Assisted Living)의 시스템을 일부 도입한 형태의 그룹 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일부 시설에서는 민간 재단 등의 자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와 시설이 복합된 복지서비스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유럽지역의 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5년부터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과 더불어 노인복지 및 고령자 시설에 관한 정책과 제도가 더욱 발달하고 있음
- 유럽의 복지대국인 영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까지 주로 의료 및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정책이 주로 이루어져 오다가, 최근에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주거형식은 셸터드 하우스(shelterd housing)으로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
- 독일의 대표적인 고령자 주거시설은 노인용 주거이며, 최근 새로운 개념의 고령자 주거시설의 한 유형은 세대복합형 주거가 있음. 세대복합형 주거는 고령자와 학생, 고령자와 젊은 세대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상호간에 생활을 돕는 현대적 주거형태로, 주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자와 젊은 세대의 활동시간대가 다른 점에 착안하여 구성된 프로젝트에 의해 이루어진 주거시설로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입주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 스웨덴은 유럽 여러 국가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정책 및 제도

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서, 특히, 고령자 복지에 관한 출발은 195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감. 고령자 주택은 근래에 시니어하우스라고 불리며, 고령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되, 개인생활이 확보되도록 하는 공동주택으로,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방문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짐. 주택의 경영은 공동주택조합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민간에서 경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핀란드의 고령자 복지는 이웃 국가인 스웨덴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북유럽형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시설」과 「고령자주택(일명, 서비스 하우스)」의 이원체제로 정비하였음. 특히 고령자 주택은 고령자가 기존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주택에 거주하여 오랫동안 살아 온 터전과 마을커뮤니티를 노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부분의 주택은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구현되어 있어 고령자 생활환경을 보다 더 고려하고 있으며, 주로 방문 케어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 덴마크에서는 “거주기능”과 “케어기능”을 분리하고, “과도한 케어는 고령자를 거꾸로 병들게 한다”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자립지원”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1988년에 「생활지원법」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 고령자 거주시설을 「고령자주택」으로 일원화하여 배리어프리 시스템이 완비된 양질의 고령자 주택 건설에 힘을 쏟는 한편, 기존 의료 및 요양 시설을 의료 및 케어 스테이션으로 규정하고 지역에 개방하여 활용하는 데이서비스(Day Service)를 확충하면서, “거주기능”과 “케어기능”의 공존을 도모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 및 유럽의 고령자 정책 및 제도의 장점을 종합하여 받아들여 발전시켜 오다가, 1990년부터 소규모 다기능 노인 복지시설인 ‘고령자 생활복지센터’를 창설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음. 고령자 생활복지센터는 거주 기능, 케어 지원기능, 지역교류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고령자의 생활 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이며, 2000년부터는 생활지원하우스로 개칭되는 등 과소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형태의 주거시설로서 자리를 잡고 있음
- 2014년 준공된 웨어 카나자와(Share Kanazawa)는 이러한 소규모 다기능 노인 복지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장애인과 일반인의 구분을 없애고 다양한 연령층과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재편하여, 복지실현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음

데, 이는 독일의 세대복합형 주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상과 같이, 국외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시사점을 고찰해 보면 고령자 주거 시설은 몇 가지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첫째, ‘주거(거주기능)’와 ‘시설(케어기능)’을 이원체제(핀란드)로 분리하여 운영 혹은 공존체제(덴마크)로 운영하는 것이고, 둘째, 오랫동안 살아온 마을 커뮤니티나 지역단위를 기반으로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으며, 셋째, 고령자시설이 단순히 고령자들만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세대복합형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으며, 넷째는 자립과 자력으로의 생활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임
- 중요한 것은 거주와 시설을 분리한 이원화체제로 정비한 이유는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거주와 케어의 기능이 공존하는 체제와 광의적으로는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즉 본 시범사업에서 추진하는 마을단위의 공동생활홈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음
- 마을과 소규모 지역단위보다 좀 더 큰 규모의 고령자시설에 대한 독일과 일본에서는 세대 간의 차이가 없는 세대융합형에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서, 격리가 아니라 협동과 공생, 그리고 자력으로의 생활을 유도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공동생활홈이 단지 마을단위에서만 한정 할 것이 아니라, 고령자들이 지금까지의 생활해 오는 지역의 범위를 파악하여, 세대융합과 다기능 시설들을 계획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 범위 내에 고령자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주거와 케어를 일치시키면서도 편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세대들과 소통하면서 지역밀착형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파악됨
- 일본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목욕탕의 경우는 위생시설로서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자원의 아이템으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촌고령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로서의 역할이 보다 크고, 지역밀착형 복지의 실천이라는데 의의가 있음

## 제3장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현황분석

---

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
2.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3. 건축계획적 진단평가
4. 주민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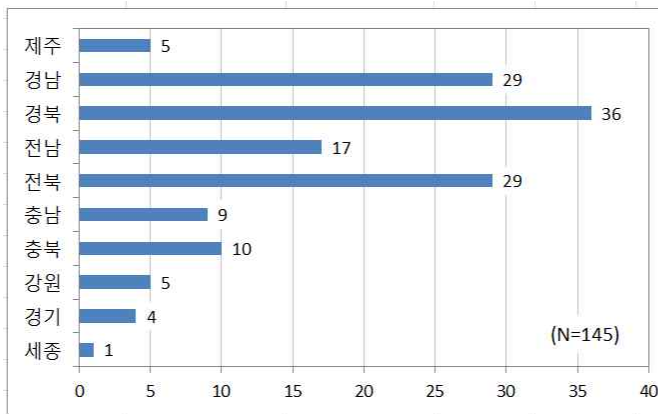


## 제 3장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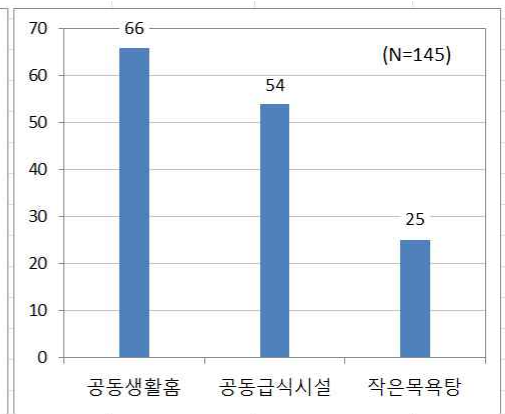
### 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

#### (1) 지역별 시범사업 참여 현황

- '14년과 '15년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공동시설의 수는 총 152개소였으나 사업을 포기 혹은 사업을 반납한 경우가 7개소('14년 3개소, '15년 4개소)로서,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은 총 145개소에 해당함
-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0개 지역에서 총 145개소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경북이 가장 많은 36개소(24.8%), 다음은 경남과 전북이 각각 29개소(20.0%)가 분포하여, 전체사업 중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종은 1개소, 경기도가 4개소, 제주가 5개소로 나타남
- 시설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생활홈이 66개소(45.5%)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급식시설이 54개소(37.2%), 그에 반해 작은 목욕탕은 25개소(17.2%)로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이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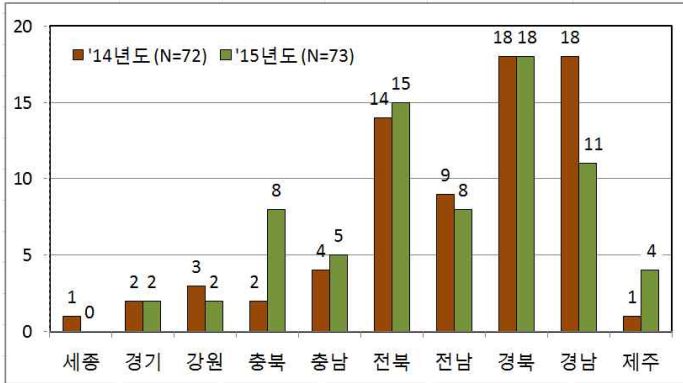
<그림 3-1> 지역별 사업대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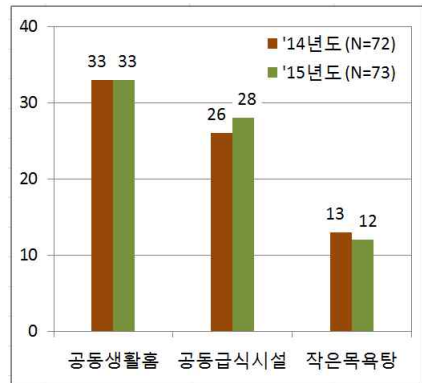
<그림 3-2> 시설 유형별 분포

- 연도별 사업대상지 분포를 살펴보면,
  - '14년도와 '15년도에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충북, 경남, 제주로서, 충북과 제주의 경우는 '15년도에 사업대상지가 많아진 반면, 경남은 '15년도에 사업대상자의 수가 감소하였음
  - 그 외의 지역은 '14년도와 '15년도에 동일하거나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유형별 시설 수는 '14년도와 '15년도에 동일한 수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도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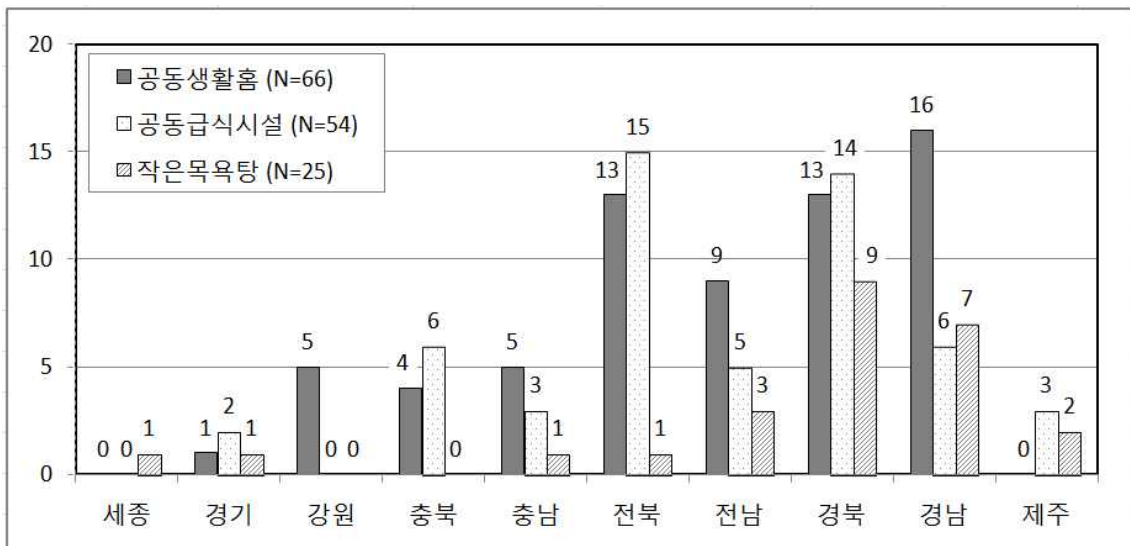


<그림 3-3> 연도별 사업대상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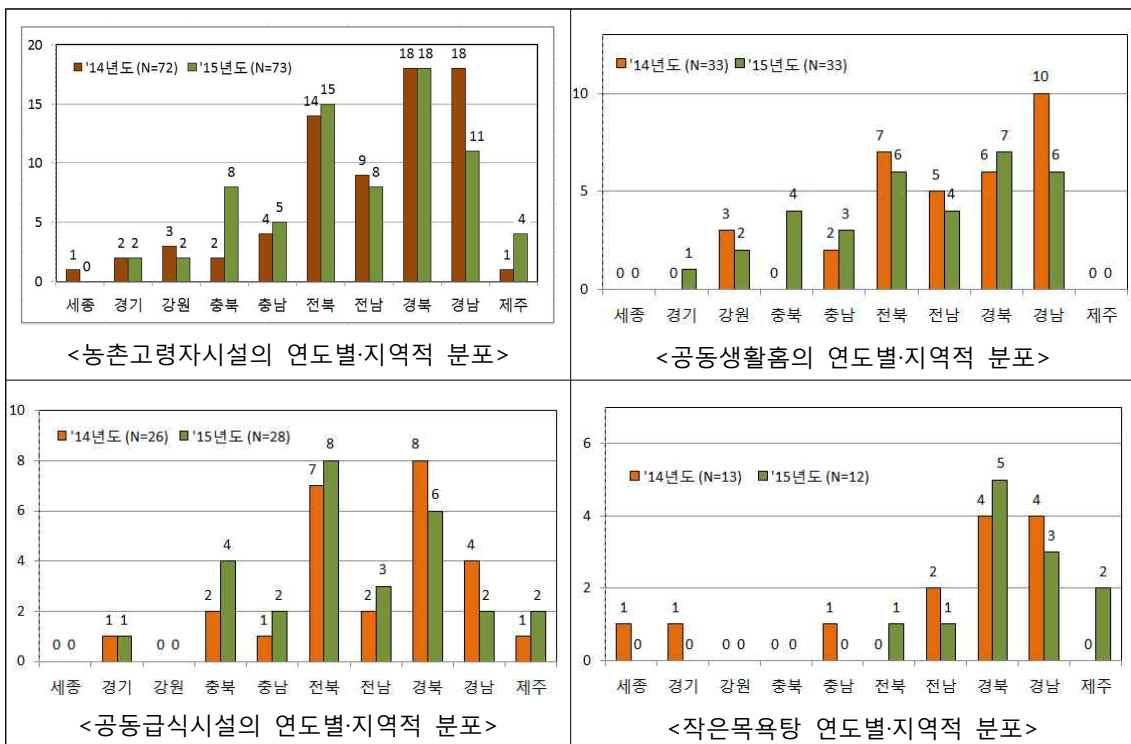
<그림 3-4> 연도별 시설 분포

- 사업대상지별 시설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 전국 10개 지역에 있어서, 3개 유형의 시설이 모두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6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며, 4개 지역(세종, 강원, 충북, 제주)은 1개 또는 2개 유형의 시설이 추진되고 있음
  - 먼저 3개의 시설 중, 1개 유형만의 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세종과 강원으로서 세종은 작은목욕탕 사업만 진행되고 있으며 강원은 공동생활홈 사업만 추진되고 있음
  - 충북과 제주도는 2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충북의 경우는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이고, 제주도는 공동급식시설과 작은목욕탕 사업으로 나타남



<그림 3-5> 지역별 시설유형의 분포

- 시설유형별로 사업대상지의 분포를 살펴보면,
  - 공동생활홈의 경우 66개소 중, 경남이 16개소(24.2%), 전북과 경북이 각각 13개소씩(19.7.2%), 전남 13개소(13.6%) 순으로 많으며, 이 4개 지역이 총 77.3%를 차지하고 있음
  - 공동급식시설은 총 54개소 중, 전북이 14개소(27.8%), 경북이 14개소(25.8%)로 나타나, 이 2개 지역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작은목욕탕의 경우는 총 25개소 중, 경북이 9개소(36.0%), 경남이 7개소(28.0%)로 나타나, 경북과 경남지역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대상의 총 145개 중,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4개 지역에 있어서 시설유형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전남은 3개 시설의 요구가 골고루 나타난 반면, 전북의 경우는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이 가장 많이 나타났음
  - 경북의 경우는 작은목욕탕이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반면, 경남은 공동생활홈이 많이 나타났음
  
- 사업유형과 연도별, 사업대상지의 분포를 살펴보면, 시설의 수 전체에 차이를 보이는 충북과 경남은 공동생활홈에서 '14년도와 '15년간에 차이가 나타났음



<그림 3-6> 연도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대상지역 분포

- 공동생활홈의 경우는 세종과 제주는 '14년도와 '15년도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충북과 경남을 제외한 다른 8개 지역에서의 차이는 매우 근소한 차이임
  - '14년도와 '15년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충북과 경남으로, 충북은 '15년도에 공동생활홈이 증가한 반면, 경남은 '15년도에는 감소함
  - 공동급식시설은 경북과 경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15년도에 시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음
  - 작은목욕탕은 '15년도에 증가한 지역은 전북과 제주로서, 두 지역 모두 '14년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15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었음. 그러나 사례수가 적어 전체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 우리나라 농촌지역 시·군의 수는 137개이며, 이중 '14년과 '15년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촌지역 시·군의 수는 74개로서,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비율은 54%로 나타남
- 본 시범사업이 '14년도와 '15년도에 연속 선정된 시·군의 수는 23개로서 우리나라 전체 농촌지역 시·군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약 16.8%에 해당하고, 74개를 기준으로 하면 약 31%로 나타났음

<표 3-1> 시도 및 시군별 시범사업 참여도

구 분	농촌지역 시·군 수	시·군의 참여도					미참여	비고
		참여율(%)	소계	14년	15년	연속선정		
부산광역시	1	0.0	0	0	0	0	1	표본작음
대구광역시	1	0.0	0	0	0	0	1	표본작음
인천광역시	2	0.0	0	0	0	0	2	표본작음
울산광역시	1	0.0	0	0	0	0	1	표본작음
세종특별자치시	1	100.0	1	1	0	0	0	표본작음
경기도	15	33.3	5	3	2	0	10	-
강원도	15	26.7	4	3	3	2	11	-
충청북도	11	36.4	4	2	4	2	7	-
충청남도	15	40.0	6	2	4	0	9	-
전라북도	13	92.3	12	10	8	6	1	-
전라남도	21	66.7	14	8	9	3	7	-
경상북도	23	69.6	16	11	9	4	7	-
경상남도	18	55.6	10	9	7	6	8	-
제주특별자치도	2	100.0	2	1	1	0	0	표본작음
합계(평균)	137	(54.0)	74	50	47	23	63	

- 표본이 10개 미만인 지자체(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전라북도가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4년도와 '15년도에 중복해서 참여한 비율도 높게 나타남. 반면, 참여율이 가장 낮은 26.7%의 참여율을 보인 지자체는 강원도이며, 강원도를 포함하여 참여율이 50% 미만인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로 나타났음
- 본 시범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의 관계에서는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시범사업 참여율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사업의 참여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들의 의지와 관심에 의해 달라지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별 불균형을 불러올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여짐
- 본 시범사업의 참여율을 읍·면 단위로 살펴보면, 전국 1,413개의 읍·면 중에서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122개로 조사되었음

&lt;표 3-2&gt; 읍·면별 시범사업 참여도

구 분	농촌지역		시범사업 참여 읍·면				미참여 읍·면		비고
	시·군 수	읍·면 수	소계	14년 참여	15년 참여	연속 선정	미참여 읍·면 수	미참여율 (%)	
부산광역시	1	5	0	0	0		5	100.0	표본작음
대구광역시	1	9	0	0	0		9	100.0	표본작음
인천광역시	2	20	0	0	0		20	100.0	표본작음
울산광역시	1	12	0	0	0		12	100.0	표본작음
세종특별자치시	1	10	1	1			9	90.0	표본작음
경기도	15	141	5	3	2		136	96.5	
강원도	15	119	6	3	3		113	95.0	
충청북도	11	102	8	2	6		94	92.2	
충청남도	15	161	8	3	5		153	95.0	
전라북도	13	159	20	11	11	2	139	87.4	
전라남도	21	229	17	9	9	1	212	92.6	
경상북도	23	238	31	16	16	1	207	87.0	
경상남도	18	196	21	13	8		175	89.3	
제주특별자치도	2	12	5	1	4		7	58.3	표본작음
합계(평균)	137	1,413	122	62	64	4	1,291	(91.4)	

- 전북 무주군 적상면은 '14년과 '15년을 합하여 5개의 시설이 선정되어 가장 적극적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 장수군 천천면과 경남 통영시 산양읍<sup>9)</sup>이 각각 4개의 시설이 선정되어 추진하였음
  - 본 시범사업에서 2개 시설 이상 추진한 읍·면은 7개로서, 본 사업 뿐만 아니라 타사업의 참여율이 누적되는 경우에는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즉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부서별,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면서 동일한 시설이 다른 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함
  - 본 시범사업에서는 잘 갖추어진 공동급식시설이 이미 마을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례가 있었음
  
- 전라남도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도비 2천만원과 시·군비 2천만원을 매칭하여 4천만원을 지원하는 '2016년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사업을 편성하였음. 소규모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소를 선정하는 공모사업에 12개 지역이 신청하여 관심이 높게 나타나, 지자체에서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짐
  - 연구를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결과 많은 지자체에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시범사업이 2년만에 종료되어 지자체 및 주민들의 실망감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음

## (2) 시범사업 추진 현황

### ① 사업포기

- 당초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동시설의 수는 총 152개였으나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을 반납 혹은 취소된 경우가 7개('14년 3개, '15년 4개)로서,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은 총 145개에 해당함

<표 3-3>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포기 시설현황(2016.7.31.)

시설	'14년			'15년			'14년~'15년	
	총 시설	사업 포기	사업비 투자	총 시설	사업 포기	사업비 투자	사업 포기	사업비 투자
공동생활홈	35	2	33	35	2	33	4	66
공동급식시설	26	0	26	28	0	28	0	54
작은목욕탕	14	1	13	14	2	12	3	25
합계	75	3	72	77	4	73	7	145

9) 경남 통영시 산양읍의 경우 추도마을(섬)에서 3개 유형의 시설이 선정되었음

- 사업을 포기한 7개 시설은 본 시범사업에 있어서 약 4.6% 정도 해당됨
  - 시설유형별로 보면, 공동생활홈 4개, 작은목욕탕 3개로 나타남
  -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 1개, 강원 2개, 충남 1개, 전남 2개, 경북 1개로 나타남
  - 선정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첫째, 사업 선정 당시에 마을에서의 협의가 부족하여, 선정 이후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합의(예, 공동시설물 선정, 입주자 선정, 운영방식 등)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 내의 추진 동력이 상실한 경우로 나타났음
  - 사업을 포기한 두 번째 이유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경우임. 이는 마을 내의 리더들의 이해부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기도 함. 따라서 사업 신청당시에 마을주민들이 이해하였던 내용과 선정된 이후에 사업을 실행할 단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마을 내에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② 사업비의 지원시설

- 사업포기를 한 7개 시설을 제외하여 사업비가 투자된 145개소 시설물의 추진 현황(2016. 7. 31 기준)을 보면,
  - 미운영 : 사업비가 투자되어 시설물은 완공되었으나, 시설물 폐쇄, 입주기피, 입주포기 등의 이유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거나 혹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 따라서 시설물의 관리는 필요한 상태
  - 공사 중/예정 : 현재 공사 중 혹은 설계 중에 있는 상황으로서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
  - 운영 한 달 미만 : 시설물은 완공 되었으나 본격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운영이 한 달 미만인 경우(거주 후 평가에서 평가대상에서 제외<sup>10)</sup>)가 해당함. 특히 공동생활홈이나 작은목욕탕의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공동생활홈과 작은목욕탕은 하절기보다 동절기에 사용이 집중되므로 하절기에 완공이 된 경우에도 동절기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작을 늦추고 있음
  - 운영 중 : 한 달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

10) 일반적으로 주민 만족도 평가 및 거주 후 평가(POE)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이용(거주)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점검·평가하는 측면에서 최소 1년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본 조사에서는 성과 점검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운영실적을 보유한 시설을 조사대상지로 선정하였음

<표 3-4>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의 추진현황 (2016.7.31.)

시설	'14년					'15년					총 시설
	총 시설	미 운영	공사 중 / 예정	운영 한달 미만	운영 중	총 시설	미 운영	공사 중 / 예정	운영 한달 미만	운영 중	
공동생활홈	33	3	0	1	29	33	2	3	12	16	66
공동급식시설	26	1	1	1	23	28	1	2	3	22	54
작은목욕탕	13	1	1	1	10	12	0	2	5	5	25
합계	72	5	2	3	62	73	3	7	20	43	145

③ 운영현황

- 145개 시설 중, 현재 운영 중인 경우는 105개로서 약 72.4% 해당됨
  - 운영이 한달 미만인 23개소는 동절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므로 128개소 (88.3%)가 2017년 이전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sup>11)</sup>
  - 운영되지 않는 8개소는 시설유형, 거주자 상황, 마을 여건 등의 다양한 사유가 나타남
  
- 운영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공동급식시설로서 83.3%(45개소)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공동생활홈 68.2%(45개소), 작은목욕탕 60%(15개소)으로 나타남
  - 즉 사업이 선정되어 시설물의 완공과 운영시기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 되는 사업이 작은목욕탕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반면, 공동급식시설은 신축보다는 건축물 내부 리모델링으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시설물에 비하여 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1) 시설유형별 사업포기와 미운영 시설물 15개소를 살펴보면, 공동생활홈이 9개, 공동급식시설 2개, 작은목욕탕 4개로 나타남. 이를 단순히 시설수로만 파악하면 공동생활홈이 가장 많으나, 유형별 시설 수를 기준으로 보면 공동생활홈이 12.9%(9개소), 공동급식시설이 3.7%(2개소), 작은목욕탕이 14.3%(4개소)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운영 비율은 작은목욕탕이 높음

<표 3-5>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2016.7.31.)

시설	'14년				'15년				'14년~'15년	
	시범사업 선정시설	사업 포기 및 미운영 시설			시범사업 선정시설	사업 포기 및 미운영 시설			사업포기 및 미운영 시설	시범사업 선정시설 총계
		사업포기	미운영	합계		사업포기	미운영	합계		
공동생활홈	35	2	3	5	35	2	2	4	9	70
공동급식시설	26	0	1	1	28	0	1	1	2	54
작은목욕탕	14	1	1	2	14	2	0	2	4	28
합계	75	3	5	8	77	4	3	7	15	152



- 최종적으로 미운영인 시설수를 제외한 약 94.5%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함

<표 3-6> 운영예상 시설 수 (2016.7.31.)

시설	'14년			'15년			시범사업 대상시설	운영예측	
	대상 시설	미운영	운영 가능	대상 시설	미운영	운영 가능		시설 수	%
공동생활홈	33	3	30	33	2	31	66	61	92.4
공동급식시설	26	1	24	28	1	27	54	52	96.3
작은목욕탕	13	1	12	12	0	12	25	24	96.0
합계	72	5	67	73	3	70	145	137	94.5

- 공동생활홈의 추진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표 3-7> 공동생활홈 시범사업 추진현황(2016.7.31.)

시설	'14년					'15년					운영시설 수 (총시설 수)
	총 시설	미 운영	공사중 /예정	운영 한달 미만	운영 중	총 시설	미 운영	공사중 /예정	운영 한달 미만	운영 중	
세종	-	-	-	-	-	-	-	-	-	-	0 ( 0 )
경기	-	-	-	-	-	1	-	-	1	0	0 ( 1 )
강원	3	-	-	-	3	2	-	-	2	0	3 ( 5 )
충북	-	-	-	-	-	4	-	-	1	3	3 ( 4 )
충남	2	-	-	-	2	3	-	-	1	2	4 ( 5 )
전북	7	1	-	-	6	6	-	-	2	4	10 (13)
전남	5	-	-	-	5	4	1	2	-	1	6 ( 9 )
경북	6	1	-	-	5	7	-	1	3	4	9 (13)
경남	10	1	-	1	8	6	1	-	2	2	10 (16)
제주	-	-	-	-	-	-	-	-	-	-	0 ( 0 )
합계	33	3	0	1	29	33	2	3	12	16	45 (66)

○ 공동급식시설의 추진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표 3-8> 공동급식시설 시범사업 추진현황(2016.7.31.)

시설	'14년					'15년					운영시설 (총시설)
	총 시설	미 운영	공사중 /예정	운영 한달 미만	운영 중	총 시설	미 운영	공사중 /예정	운영 한달 미만	운영 중	
세종	-	-	-	-	-	-	-	-	-	-	0 ( 0)
경기	1	-	-	-	1	1	-	-	-	1	2 ( 2)
강원	-	-	-	-	-	-	-	-	-	-	0 ( 0)
충북	2	-	-	-	2	4	1	-	-	3	5 ( 6)
충남	1	-	-	-	1	2	-	-	1	1	2 ( 3)
전북	7	-	-	-	7	8	-	1	-	7	14 (15)
전남	2	-	-	-	2	3	-	-	-	3	5 ( 5)
경북	8	-	1	-	7	6	-	1	-	5	12 (14)
경남	4	1	-	1	2	2	-	-	-	2	4 ( 6)
제주	1	-	-	-	1	2	-	-	2	0	1 ( 3)
합계	26	1	1	1	23	28	1	2	3	22	45 (54)

○ 작은목욕탕의 추진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표 3-9> 작은목욕탕 시범사업 추진 현황(2016.7.31.)

시설	'14년					'15년					운영시설 수 (총시설 수)
	총 시설	미 운영	공사중 /예정	운영 한달 미만	운영 중	총 시설	미 운영	공사중 /예정	운영 한달 미만	운영 중	
세종	1	-	-	-	1	-	-	-	-	-	1 ( 1)
경기	1	-	-	-	1	-	-	-	-	-	1 ( 1)
강원	-	-	-	-	-	0	-	-	-	0	0 ( 0)
충북	-	-	-	-	-	-	-	-	-	-	0 ( 0)
충남	1	-	-	-	1	0	-	-	-	0	1 ( 1)
전북	-	-	-	-	-	1	-	1	-	0	0 ( 1)
전남	2	-	-	-	2	1	-	-	-	1	3 ( 3)
경북	4	1	1	-	2	5	-	-	2	3	5 ( 9)
경남	4	-	-	1	3	3	-	1	1	1	4 ( 7)
제주	-	-	-	-	-	2	-	-	2	0	0 ( 2)
합계	13	1	1	1	10	12	0	2	5	5	15 (25)

### (3) 소결

- '14년과 '15년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공동시설의 수는 총 152개였으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혹은 사업을 반납한 경우가 7개('14년 3개, '15년 4개)로서,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은 총 145개에 해당함
-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0개 지역에서 경북이 가장 많은 36개소(24.8%), 다음은 경남과 전북이 각각 29개소(20.0%)가 분포하여, 전체사업 중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종은 1개소, 경기도가 4개소, 제주가 5개소로 낮게 나타남
- 사업대상 총 145개 중,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4개 지역에 있어서 시설유형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전남은 3개 시설의 유형이 골고루 나타난 반면, 전북의 경우는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이 많이 나타났음
  - 경북의 경우는 작은목욕탕이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반면, 경남은 공동생활홈이 많이 나타났음
  - 사업유형과 연도별, 사업대상지에서 충북은 '15년도에 공동생활홈의 요구가 증가한 반면, 경남은 '15년도에는 감소함
-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시·군의 수는 137개에 해당하며, '14년과 '15년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촌지역 시·군의 수는 74개로서,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비율은 54%로 나타남
  - 본 시범사업이 '14년도와 '15년도에 연속 선정된 시·군의 수는 23개로서 우리나라 전체 농촌지역 시·군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 약 16.8%에 해당하고, 74개를 기준으로 하면 약 31%로 나타났음
- 시범사업 참여율을 읍·면 단위로 살펴보면, 전국 1,413개의 읍·면 중에서 선정된 지역은 122개로, 나머지 1,291개의 읍·면지역은 농촌고령자를 위한 공동시설지원에 선정되지 못함. 이는 전국의 91.4%의 읍·면지역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145개소 대상시설 중 미운영 시설 수를 제외한 137개소인 약 94.5%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함
- 사업포기의 7개 시설과 미운영 8개 시설인 총 15개 시설은 약 10% 정도로 해

당되며, 사업 신청 및 선정 단계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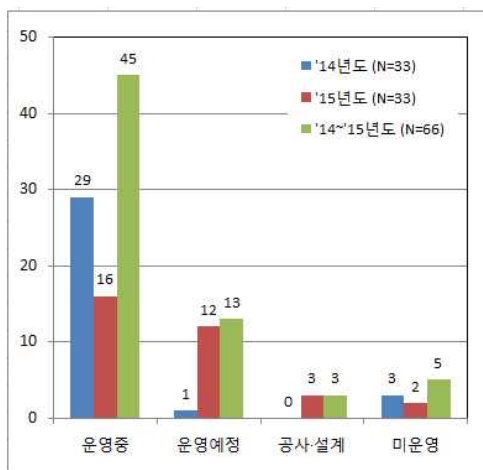
- 사업을 포기한 7개시설의 지역은 경기 1개, 강원 2개, 충남 1개, 전남 2개, 경북 1개로 나타남
- 선정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첫째, 사업 선정 당시에 마을에서의 협의가 부족하여, 선정 이후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합의(예, 공동시설물 선정, 입주자 선정, 운영방식 등)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 내의 추진 동력이 상실한 경우로 나타났음
- 사업을 포기한 두 번째 이유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경우임. 이는 마을 내의 리더들의 이해부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기도 함. 따라서 사업 신청당시에 마을주민들이 이해하였던 내용과 선정된 이후에 사업을 실행할 단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마을 내에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2.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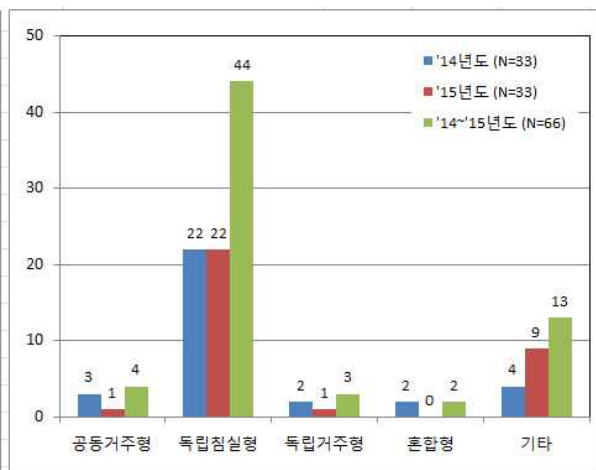
### (1) 시설 유형별 운영 및 이용자 현황

#### ① 공동생활홈

-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14년도~'15년도의 총 66개소 중, 운영 중인 것은 45개소(68.2%), 운영 예정 중인 것은 13개소(19.7%), 미운영인 것은 5개소(7.6%), 공사 중이거나 설계 단계에 있는 것은 3개소(4.5%)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14년도의 총 33개소 중, 운영 중인 것은 29개소(87.9%), 미운영인 것은 3개소(9.1%), 운영 예정 중인 것은 1개소(3.07%)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사 중이거나 설계 단계에 있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음
  - 반면, '15년도의 경우는 총 33개소 중, 운영 중인 것은 16개소(48.5%), 운영 예정 중인 것은 12개소(36.4%), 공사 중이거나 설계 단계에 있는 것은 3개소(6.1%), 미운영인 것은 2개소(6.1%) 순으로 나타났음
  - '15년도에 선정된 경우에 운영예정, 공사 중이거나 설계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나, 이는 향후에 운영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연도별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됨
  - 공동생활홈에서의 거주는 주로 동절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시점이 4월~7월이므로 완공이 되었으나, 동절기 때까지 운영을 미루고 있는 경우도 나타났음
  - 미운영의 경우, 5개 사례가 나타났는데, 주거비의 부담으로 입주를 기피하는 경우가 3사례, 운영비의 부족과 공동생활홈의 위치가 불편하여 입주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1사례씩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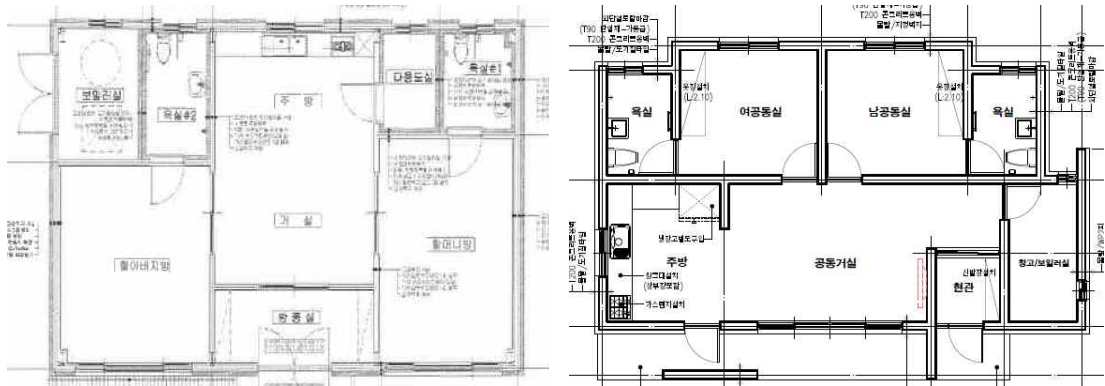
<그림 3-7> 공동생활홈의 운영현황



<그림 3-8> 공동생활홈의 운영유형

- 운영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총 66개소 중, 시설 내에서 취침과 취사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공동거주형이 4개소(6.1%), 시설 내에서 취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나 취사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독립침실형이 44개소(66.7%), 취침과 취사를 개별적으로 영위하는 독립거주형이 3개소(4.5%), 앞의 3가지 유형이 혼합된 형태가 2개소(3.0%), 그 외 기타유형이 13개소(19.7%)로 나타남
  - 혼합형 중, 1사례는 독립침실형과 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을 계획한 경우이며, 다른 한 사례는 남녀공간을 분리하여 계획하면서 남성을 위한 공간은 공동거주유형으로 여성을 위한 공간은 독립침실형으로 계획하였음
  - 기타의 대부분은 거주공간으로서 공동생활홈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시설이나 경로당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공동생활홈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분석됨
  
- '14년도와 '15년도를 비교해보면, 공동거주형, 독립침실형, 독립거주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기타의 경우에서 차이가 나타남.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공동생활홈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파악됨
  - '14년도에 선정된 공동생활홈의 운영유형을 조사한 보고서<sup>12)</sup>에 의하면, 공동거주형이 가장 많은 66.7%로 나타났는데, 이 보고서에서 공동거주형이 많이 나타난 이유를 “기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기본 난방시설의 보수, 도배, 화장실 보수 등 적은 예산으로도 시설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동생활홈이 마을의 공동시설을 재활용하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였던’이라는 인식이 남아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공간에서의 생활을 “개별적인 거주”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예전의 공간처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취침이 가능한 공간”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지면서 ‘개인공간’이 아니라 ‘공동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림 3-9>와 같이, 공동생활홈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을 회의실이나 경로당으로 이용하기 위해 할아버지방·할머니방 혹은 남자용·여자용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공동생활홈은 개인 거주자의 사적생활이 보장된 공간임을 사업의 시작단계에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마을 주민들이 공유한 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2) 김진환 외,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기획설계 및 유형별 운영모델 개발,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5, 12, pp.53~55.



<전북 김제시 황산면 두월마을 공동생활홈>

<경북 영덕군 달산면 인곡리마을 공동생활홈>

<그림 3-9>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된 공동생활홈

- 공동생활홈의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현재 <운영 중> 인 45개소를 기준으로 하여 총 274명으로 조사되었음. '14년 선정된 공동생활홈이 2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평균 약 5.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5년의 경우에는 운영 중인 16개소에 104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공동생활홈이 완공 되었으나, 아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운영 예정>을 포함해서 본다면, '14년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15년도에는 12개소가 존재하고 있음. 이 중 거주자가 정해진 공동생활홈을 포함하면, '14년 선정된 공동생활홈에는 175명, '15년 선정된 경우는 147명이 거주하고 있음
- 공동생활이 <운영 중>인 경우에 거주자 수가 0명(충남 서천군 마양리마을) 혹은 10명 이상인 경우는 일상적인 거주 공간이 아니라 마을의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임
- 거주자 수의 평균치인 6.5를 기준으로 <운영 중>인 공동생활홈에 거주하는 경우를 보면, '14년도에는 29개소 중 7개소로 24%에 해당하지만, '15년도에는 15개소 중 7개소로 46%에 이르고 있음. 이는 공동생활홈이 운영되고 1년 정도 지나면서 마을에서 이 시설물의 기능이 '거주를 위한 사적공간'인지 '마을의 공동공간'인지가 정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짐

<표 3-10> 공동생활홈의 거주자 수

구분		' 14년도	' 15년도	합계
현재 운영 중인 공동생활홈	거주자 수 (명)	170	104	274
	시설 수 (개소)	29	16	45
	평균 (명)	5.9	6.5	6.1
이용자의 수가 정해져 있는 <운영 예정>이 포함된 공동생활홈	거주자 수 (명)	175	147	322
	시설 수 (개소)	30	25	55
	평균 (명)	5.9	5.6	5.8

<표 3-11> '14년 시범사업 공동생활홈 운영현황

시도	시군	읍면	마을명	운영유형	거주자 수	운영현황	비고
강원	영월군	북면	공기2리	독립침실형	5	운영 중	남녀 공간 분리
	홍천군	화촌면	대평마을	독립침실형	5	운영 중	
	인제군	서화면	서화2리	혼합형	3	운영 중	부부용 공간
충남	서천군	한산면	마양리마을	공동거주형	0	운영 중	경로당 이용
		기산면	황사리마을	공동거주형	5	운영 중	
전북	진안군	안천면	증리마을	독립거주형	3	운영 중	
	김제시	금산면	봉은마을	독립침실형	8	운영 중	경로당 이용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	독립침실형	10	운영 중	
	고창군	공음면	군유마을	독립침실형	0	미운영	운영비 부족
	완주군	삼례읍	원후상마을	독립침실형	5	운영 중	
	장수군	천천면	돈촌마을	기타	8	운영 중	급식시설과 공유
	무주군	적상면	치목마을	기타	6	운영 중	남녀 거주가능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마을	독립침실형	2	운영 중	
	장성군	동화면	안곡마을	독립침실형	2	운영 중	
	해남군	송지면	미야마을	기타	16	운영 중	경로당 이용
	나주시	동강면	월송마을	기타	6	운영 중	
	영암군	학산면	독천마을	독립거주형	5	운영 중	
경북	예천군	하리면	우곡마을	독립침실형	5	운영 중	욕실 부속형
	상주시	외서면	연봉마을	독립침실형	7	운영 중	
	성주군	선남면	관화3리	독립침실형	3	운영 중	
	문경시	동로면	적성3리	독립침실형	5	운영 중	
	고령군	쌍림면	안박실마을	독립침실형	5	운영 중	남녀거주 가능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독립침실형	0	미운영	주거비 부담으로 입주기피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이부마을	공동거주형	5	운영 중	경로당 이용
	고성군	개천면	청동마을	독립침실형	5	운영 중	욕실부속형
	의령군	화정면	보천마을	독립침실형	3	운영 중	
	남해군	삼동면	내산마을	독립침실형	5	운영 중	
	사천시	축동면	가산마을	독립침실형	20	운영 중	경로당화
	거창군	신원면	대현마을	혼합형	0	미운영	남녀 공간 분리 ·위치선정의 부적절
	하동군	북천면	방화마을	독립침실형	8	운영 중	
	통영시	산양읍	연명마을	독립침실형	5	운영 중	경로당 이용
			추도마을	독립침실형	5	운영예정	
함양군	함양읍	삼휴마을	독립침실형	5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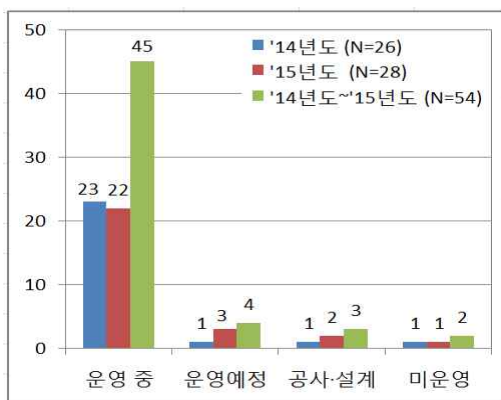


&lt;표 3-12&gt; '15년 시범사업 공동생활홈 운영현황

시도	시군	읍면	마을명	운영유형	거주자 수	운영현황	비고
경기	연천군	백학면	노곡장수마을	공동거주형	미정	운영예정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6리	독립침실형	4	운영예정	
	영월군	중동면	직동1리마을	독립침실형	4	운영예정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마을	독립침실형	미정	운영예정	
	진천군	이월면	송현2리마을	독립침실형	2	운영 중	
	음성군	소이면	충도4리마을	독립침실형	5	운영 중	
음성읍		초천1리마을	독립침실형	3	운영 중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2리	독립침실형	4	운영예정	
	보령시	주산면	증산1리	독립침실형	5	운영 중	경로당 이용
		주산면	주야1리	기타	7	운영 중	마을공동시설로 이용
전북	김제시	황산면	두월마을	기타	8	운영 중	경로당 이용
	무주군	적상면	내창마을	기타	7	운영 중	경로당 이용
	장수군	천천면	박곡마을	기타	8	운영 중	경로당 이용
		계남면	희평마을	독립침실형	3	운영예정	
	임실군	강진면	백련마을	기타	7	운영예정	경로당 이용
	순창군	구림면	통안마을	기타	8	운영 중	경로당
전남	보성군	복내면	봉춘마을	독립침실형	5	운영 중	
	장흥군	대덕읍	연평마을	독립침실형	미정	공사·설계	
	함평군	월야면	백야마을	독립거주형	0	미운영	주거비 부담으로 입주기피
	완도군	생일면	유촌마을	독립침실형	미정	공사·설계	
경북	구미시	장천면	오로1리마을	기타	7	운영 중	경로당 이용
	상주시	이안면	양범마을	독립침실형	5	운영 중	
	영주시	단산면	옥대4리	독립침실형	4	운영예정	
	청송군	진보면	진안1리	독립침실형	4	운영예정	
	영덕군	영덕읍	천천리	독립침실형	5	운영 중	
		달산면	인곡리마을	기타	미정	운영예정	
예천군	풍양면	효갈마을	독립침실형	미정	공사·설계		
경남	통영시	사랑면	진촌마을	기타	15	운영 중	부역이 공동급식시설로 이용
	사천시	서포면	구평마을	독립침실형	0	미운영	주거비 부담으로 입주기피
	창녕군	대지면	소림마을	독립침실형	10	운영 중	공간이 협소함
	남해군	남면	무지개마을	독립침실형	7	운영예정	
	하동군	화개면	검두마을	독립침실형	6	운영예정	
	거창군	가북면	중촌마을	독립침실형	4	운영 중	

## ② 공동급식시설

-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14년도~'15년도의 총 54개소 중, 운영 중인 것은 45개소(83.3%), 운영 예정인 것은 4개소(7.4%), 공사 중이거나 설계 단계에 있는 것은 3개소(3.7%), 미운영인 것은 2개소(3.7%),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14년도의 총 26개소 중, 운영 중인 것은 23개소(88.5%), 운영 예정, 공사 중·설계 중, 미운영인 것이 각각 1개소씩으로 조사되었음
  - '15년도의 경우는 총 28개소 중, 운영 중인 것은 22개소(78.6%), 운영 예정 중인 것이 3개소(10.7%), 공사 중이거나 설계 단계에 있는 것이 2개소(7.1%), 미운영인 것은 1개소(3.6%) 순으로 나타났음
  - '15년도에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 운영예정, 공사 중이거나 설계단계에 있는 경우가 나타났으나, 이는 향후에 운영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판단됨
  - 공동급식시설은 마을 주민들의 공동사용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존재하는 공동시설의 리모델링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식이므로 공동생활홈이나 작은목욕탕과 달리 사업 포기 및 반납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 공동급식시설은 마을에서 공사이전까지 사용 중인 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야 하므로 공사착수 및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음
  - 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를 보면, 마을 리더가 교체되면서 이전 리더가 진행한 사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공동급식시설이 방치되어 있거나, 이미 마을에 공동급식시설이 존재하여 새롭게 조성된 공동급식시설을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공동생활홈이나 작은목욕탕의 사업과 달리, 공동급식의 경우는 마을에서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시설의 중복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그림 3-10> 공동급식시설의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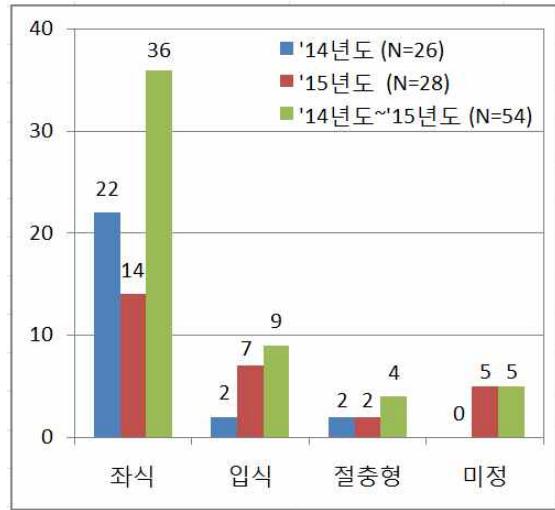


<그림 3-11> 공동급식시설의 미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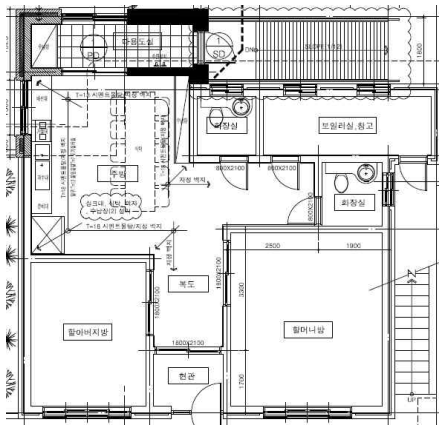
○ 운영유형을 보면, '14년도~'15년도의 총 54개소 중, 좌식형이 36개소(66.7%), 테이블을 사용하는 입식형이 9개소(16.7%), 좌식과 입식을 절충한 형식이 4개소(7.4%)로 나타났으며, 미운영인 경우나 준공이 되지 않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5사례로 나타났음

- 좌식과 입식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14년도에는 좌식형이 많았으나, '15년도에는 입식형이 많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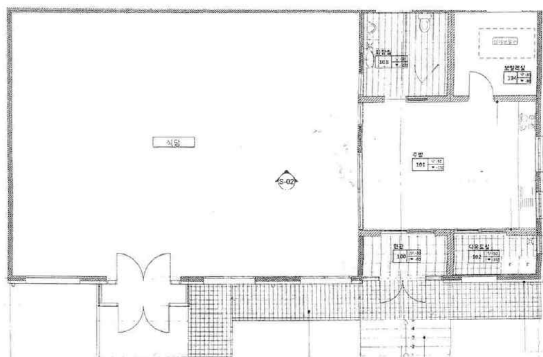
- 절충형의 경우는 2가지 방식이 나타났는데, <그림 3-13, (a)>와 같이 기본적으로 좌식형 공간에 식사테이블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입식형이 소규모 그룹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



<그림 3-12> 공동급식시설의 운영유형



공동급식시설의 운영유형에 있어서 절충형 사례(a)



공동급식시설의 운영유형에 있어서 절충형 사례(b)

<그림 3-13> 공동급식시설의 운영유형에 있어서 절충형 사례

- 반면 <그림 3-13, (b)>의 경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공간에 좌식형의 식사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그림 3-13 (a)>와 달리 좌식형 공간이 소규모그룹의 식사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으며, 식사인원이 많을 시에는 테이블이 배치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됨. 식사시간 외에는 테이블을 한쪽 구석에 정리하여, 강당 및 마을의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 공동급식시설의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시범사업 2년간 일 이용자의 수는 총 1,608명으로 하루 평균 23.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월을 기준으로 보면 20,545명으로 월 평균 477.8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14년도와 '15년도를 비교해 보면, 일 평균 이용자 수는 '14년도에는 25명, '15년도는 22.4명으로 '14년도가 하루 2.5명이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월 이용자를 보면, '14년도의 평균은 465.7명이며, '15년도에는 490.5명으로 '15년도가 월 평균 24.8명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13> 공동급식시설의 이용자 수

이용자 구분		' 14년도	' 15년도	합계
일 이용자	총 이용자 수 (명)	575	493	1,068
	시설 수	23	22	45
	평균 (명)	25.0	22.4	23.7
월 이용자	총 이용자 수 (명)	10,245	10,300	20,545
	시설 수	22	21	43
	평균 (명)	465.7	490.5	477.8

- 공동급식시설은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주로 농한기(동절기)에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공동급식시설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이용대상자가 고령자에 한정되어 있거나, 오히려 마을전체의 공동급식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
  - 이용자가 마을 전체로 확산된 경우는 공동급식시설이 개선되어 이용자가 증가하게 된 것임. 마을회의 운영비가 급식시설에 지원되지만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됨
  - 공동급식이 고령자에 한정된 경우에는 공동급식시설이 개선되기 전에는 노인정 지원비로 운영되고 있음
- 당초 공동급식시설의 취지는 농번기의 급식 활성화이었지만, 실제로 농번기에 활성화되는 사례는 극히 적게 나타났음. 이유는 마을 주민 모두가 바쁜 시기

이므로 식사를 준비할 인력이 부족함. 따라서 농번기에 공동급식시설의 활성화  
 화를 위해서는 농번기만이라도 가사도우미와 같은 보조인력의 지원이 필요함

<표 3-14> '14년 시범사업 공동급식시설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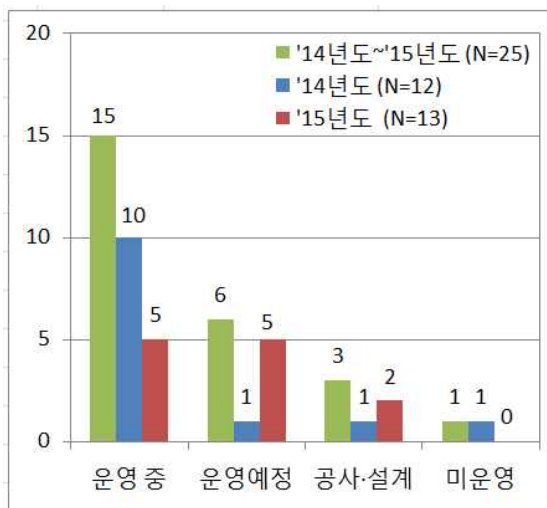
시도	시군	읍면	마을명	운영유형	일이용자	월이용자	운영현황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하1리	좌식형	15	300	운영 중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안마을	입식형	18	540	운영 중
	영동군	용화면	평촌마을	좌식형	30	120	운영 중
충남	서천군	한산면	마양리마을	절충형	30	900	운영 중
전북	진안군	안천면	중리마을	좌식형	20	600	운영 중
	정읍시	감곡면	원삼마을	좌식형	30	600	운영 중
	군산시	옥서면	장전마을	좌식형	15	450	운영 중
	남원시	이백면	초동마을	좌식형	30	700	운영 중
	장수군	천천면	돈촌마을	좌식형	10	200	운영 중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	좌식형	20	600	운영 중
적상면		성내마을	좌식형	20	600	운영 중	
전남	곡성군	석곡면	죽산마을	절충형	40	800	운영 중
	나주시	동강면	월송마을	좌식형	20	-	운영 중
경북	청송군	진보면	세장마을	좌식형	30	450	운영 중
	의성군	가음면	가산3리	좌식형	20	500	운영 중
	김천시	지례면	삼실마을	좌식형	10	300	운영 중
	경산시	압량면	의송마을	좌식형	25	500	운영 중
	칠곡군	북삼읍	어로1리	좌식형	20	375	운영 중
	문경시	영순면	왕태마을	좌식형	15	450	운영 중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입식형	9	270	운영 중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좌식형	-	-	공사설계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개승마을	좌식형	50	750	미운영
	사천시	사남면	연천마을	좌식형	8	150	운영 중
	하동군	북천면	방화마을	좌식형	20	600	운영 중
	통영시	산양읍	추도마을	좌식형	-	-	운영예정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좌식형	120	240	운영 중

<표 3-15> '15년 시범사업 공동급식시설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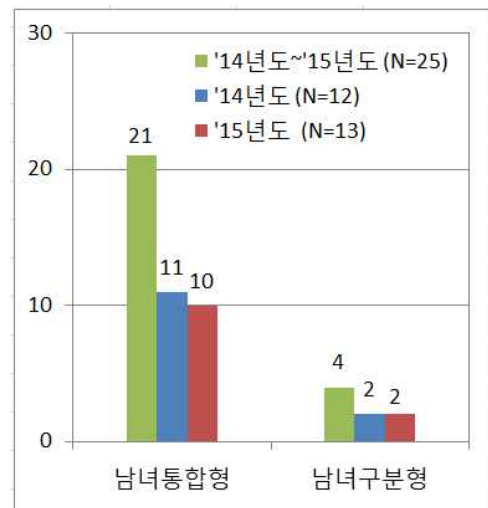
시도	시군	읍면	마을명	운영유형	일이용자	월이용자	운영현황
경기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마을	좌식형	40	800	운영 중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마을	-	-	-	미운영
	영동군	용산면	매금마을	좌식형	30	600	운영 중
	영동군	매곡면	개춘마을	좌식형	25	100	운영 중
	음성군	소이면	비석마을	절충형	10	300	운영 중
충남	논산시	취암8동	철길너머마을	절충형	30	800	운영 중
		연무읍	동산2리	미정	35	900	운영예정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상마을	좌식형	40	900	운영 중
		덕과면	덕동마을	좌식형	30	700	운영 중
	완주군	소양면	오성마을	입식형	-	-	공사설계
	무주군	적상면	초리마을	입식형	20	600	운영 중
		적상면	괴목마을	좌식형	20	600	운영 중
	장수군	천천면	박곡마을	좌식형	5	30	운영 중
		계남면	희평마을	좌식형	3	10	운영 중
고창군	심원면	두어마을	좌식형	25	750	운영 중	
전남	순천시	상사면	서정마을	입식형	40	500	운영 중
	광양시	광양읍	본정마을	입식형	30	600	운영 중
	영암군	영암읍	회의촌마을	좌식형	15	300	운영 중
경북	청송군	청송읍	거대마을	좌식형	25	500	운영 중
		부동면	설티마을	좌식형	25	625	운영 중
	영양군	일월면	섬촌마을	입식형	15	300	운영 중
		지품면	신안리	입식형	25	700	운영 중
	영덕군	달산면	용전리마을	좌식형	15	45	운영 중
	예천군	풍양면	효갈마을	미정	-	-	공사설계
경남	통영시	사랑면	진촌마을	입식형	7	-	운영 중
	하동군	화개면	검두마을	좌식형	18	540	운영 중
제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미정	-	-	운영예정
		조천읍	선흘2리	미정	-	-	운영예정

### ③ 작은목욕탕

-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14년도~'15년도의 총 25개소 중, 운영 중인 것은 15개소(60.0%), 운영 예정인 것은 6개소(24.0%), 공사 중이거나 설계 단계에 있는 것은 3개소(12.0%), 미운영인 것은 1개소(4.0%), 순으로 나타남
  - 작은목욕탕은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과 달리 운영예정과 공사·설계 중인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이 신축이며, 리모델링이라 할지라도 설비 등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 판단됨
  - 연도별로 살펴보면, '14년도 총 13개소 중, 운영 중인 것은 10개소(76.9%), 운영 예정, 공사 중·설계 중, 미운영인 것이 각각 1개소씩으로 조사되었음
  - '15년도의 경우는 총 12개소 중, 운영 중인 것과 운영 예정인 것이 각각 5개소(41.76%), 공사 중인 것이 2개소(16.7%), 미운영은 나타나지 않았음
  - 목욕탕의 경우는 설계, 착공, 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요구되고,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과 달리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15년도에 선정된 경우는 일정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운영현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용유형을 보면, 총 25개 중, 욕탕이 하나 존재하여 남녀가 동시간에 사용할 수 없는 남녀통합형이 21개소(84.0%), 남녀구분형은 4개소(16.0%)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남녀통합형과 남녀구분형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마을의 규모와 목욕탕의 위치, 이용자의 수에 따라 목욕탕의 규모와 형태, 운영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3-14> 작은목욕탕의 운영현황



<그림 3-15> 작은목욕탕의 이용유형

- 현재 운영 중인 목욕탕을 대상으로 욕탕수와 운영일을 정리해 보면, 5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음<sup>13)</sup>
  - 진하마을, 물건마을, 남곡마을을 제외하여 욕탕이 하나로 사용기간을 남녀로 구분하여 이용되고 있음
  - 목욕탕 사업의 경우, 초기 시설비용과 운영비용이 고가이므로 이에 대한 운영 및 유지 방식에 대하여 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계획할 필요가 있음
  - 마을의 규모가 작을수록 운영일 수가 적으며, 가장 적게 개장하는 경우는 주 1회 개장하여 오전과 오후시간을 구분하여 남녀가 이용하고 있음
- 이용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남녀 이용일을 구분하여 홀수일·짝수일제나 격일제로 개장하고 있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진하마을의 경우는 면소재지에 목욕탕을 설립하게 되고 이용자 수가 많아 욕탕이 2개이며 항상 개장을 하고 있음
  - 경남 남해군 물건마을의 경우는 비록 리 단위 설치되었으나 매일 개장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공간에 욕탕을 2개 설치하지 않고 하나는 샤워실로 설치하여, 온수공급을 위한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매일 이용할 수 있게 함. 운영방식은 욕탕과 샤워실을 홀짝제로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게 되고, 여름철에도 이용이 가능하게 됨

<표 3-16> 작은목욕탕 운영 현황

구분	현재 운영 중인 목욕탕			공사 중이거나 한달 미만의 시범적 운영
	개장일	남녀 이용일	마을명	
1	주 1일	오전/오후	우금리	가곡마을, 추도마을, 원천마을, 월곡마을, 성저리, 진촌마을, 상명리, 연령리
	주 2일	남녀 일일씩	도계리, 지곡리, 연호2리, 나림마을, 장리마을	
	주 4일	번갈아 가며, 남녀 2일씩	장촌마을, 금문마을, 조화리	
	주 5~6일	남녀 홀짝일	현동리, 예지리, 입석리마을, 거무역리마을	
2	주 6일, 매일	항시 이용	진하마을, 물건마을(탕1-샤워실)	남곡마을

13) 현재 공사 중이거나 목욕탕 운영을 가을부터 개시하기 때문에 운영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설계도면을 통하여 욕탕의 수를 통하여 개장일을 유추하였음





<그림 3-16> 물건마을의 작은목욕탕 평면도

- 목욕비는 고령자 기준, 무료에서 4,000원까지로 나타났다. 월정액권이 활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보면, 1개월에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일수를 계산하면 700원까지로 조사됨
  - 목욕탕은 고령자 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일반성인들도 이용하므로, 이용자에 따라 목욕비에 차등을 두고 있음
  - 본 조사대상에서는 도계리[3,000원(일반성인), 2,000원(13세 이하)], 입석리마을[500원(초등학생)], 이 외의 마을에서도 현재의 목욕비보다 작거나 무료로 나타났다

<표 3-17> 작은목욕탕 목욕비 현황

납부방식	목욕비	시설 수	비고
	무료	1	
회당납부	1,000~4,000원	12	금문마을 :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
정액권활용	10,000원 (15회) 20,000원 (30회)	2	물건마을 : 일회사용권과 정액권 이용의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함

- 입석리마을의 경우, 월 10,000원의 정액권으로 이용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많게는 월 15회까지도 목욕이 가능하고, 목면 지곡리는 청양군에서 발행한 5,000원 목욕이용권을 사용하여 1회 목욕을 하면, 2,500원 이용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마다 목욕비는 다양함

- 대체적으로 고령자의 목욕비보다 높은 금액은 일반성인인 경우에 해당하고, 어린이나 신체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무료 또는 할인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는 주민의 특성에 따라 목욕비에 차등을 두면서 마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복지를 스스로 실현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음



<그림 3-17> 목욕이용권

- 복지적인 측면에서 목욕탕사업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처한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목욕탕이용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주민들의 실정을 가장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마을단위에서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음. 목면 지곡리 목욕탕의 예를 들면, 남편이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이 불가능하여 부인이 목욕을 시켜주어야 하는 형편에서, 목욕탕 마감한 시간 전에 그 부부를 위해 목욕탕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마을단위에서만 실천할 수 있는 복지라고 파악하고 있음
- 작은목욕탕 총 17개를 대상(운영 중인 목욕탕과 시범 운영한 목욕탕 포함)으로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월 8,710명으로 월평균 512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14년과 '15년도를 비교하면 월평균 약 80여명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전남 월야면 진하마을의 목욕탕 이용자 수의 영향이라 보아짐. 진하마을의 목욕탕('14년도 선정)은 월야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남녀구분형태로 매일 운영하고 있음

<표 3-18> 작은목욕탕 이용자 수

이용자 구분		'14년도	'15년도	합계
월 이용자	총 이용자 수 (명)	5,470	3,240	8,710
	시설 수	10	7	17
	평균 (명)	547	462.8	512.3

&lt;표 3-19&gt; 작은목욕탕 운영현황

시도	시군	읍면	마을명	선정연도	이용유형	운영현황	이용자 수 (명/월)	목욕비 1회(원)	비고
세종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	14년	남녀통합형	운영 중	70	1,000	
경기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14년	남녀통합형	운영 중	100	1,000	오전/오후
충남	청양군	목면	지곡리	14년	남녀통합형	운영 중	300	2,500	
전남	함평군	월야면	진하마을	14년	남녀구분형	운영 중	3900	1,000	
	영암군	서호면	장촌마을	14년	남녀통합형	운영 중	40	1,000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14년	남녀통합형	운영 중	500	3,000	
	칠곡군	지천면	연호2리	14년	남녀통합형	운영 중	80	0	
	상주시	외서면	가곡마을	14년	남녀통합형	미 운영	-	-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14년	남녀구분형	공사설계	-	-	
경남	의령군	지정면	나림마을	14년	남녀통합형	운영 중	300	3,000	
	남해군	삼동면	물건마을	14년	남녀구분형	운영 중	100	4,000	20,000(월)
	사천시	용현면	금문마을	14년	남녀통합형	운영 중	80	3,000	자발적 납부
	통영시	산양읍	추도마을	14년	남녀통합형	운영 예정	-	-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마을	15년	남녀통합형	공사설계	-	-	
전남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15년	남녀구분형	운영 중	50	2,000	
경북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마을	15년	남녀통합형	운영 중	1400		10,000(월)
	김천시	부항면	월곡마을	15년	남녀통합형	운영 예정	-	-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마을	15년	남녀통합형	운영 중	200	2,000	
	예천군	용궁면	성저리	15년	남녀통합형	운영 예정	450	0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15년	남녀통합형	운영 중	1000	2,000	
경남	통영시	사랑면	진촌마을	15년	남녀통합형	운영 예정	60	-	시범운영
	창녕군	남지읍	남곡마을	15년	남녀구분형	공사설계	-	-	
	합천군	덕곡면	장리마을	15년	남녀통합형	운영 중	80	1,000	
제주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15년	남녀통합형	운영 예정	-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5년	남녀통합형	운영 예정	-	-	

## (2) 시설 유형별 관리주체 현황

### ① 공동생활홈

- 공동생활홈의 관리주체를 보면, 66개소 중 59개소(89.4%)가 마을자치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면사무소와 마을의 교회가 관리하는 경우는 각각 1개소씩, 운영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도 5개소로 나타남
  - 공사·설계 중의 경우,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것은 완공 이후에 주체를 결정하면 되지만, 사업비가 투자되어 완공 되었음에도 미운영 되는 경우에는 건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관리주체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 보아짐

<표 3-20> 공동생활홈 관리주체

관리 주체		미운영	공사중/예정	한달미만 운영시설	현재 운영 중 시설물	합계
마을 자치회	공동생활홈 거주자대표	0	0	0	1	1
	공동생활운영위 등 관련 자치회	0	0	1	8	9
	마을(자치)회	2	0	10	28	40
	노인회	0	0	1	4	5
	부녀회	0	0	0	1	1
	마을영농회	0	0	1	3	4
면사무소		1(구평마을)	0	0	0	1
기타		1(군유마을)	0	0	0	1
운영관리 주체의 미확정		1	3	0	0	4
합계		5	3	13	45	66

- 마을회에서 공동생활홈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마을리더 중 이장이 대부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장은 마을주민들의 배경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마을 이장이 2년마다 교체되면서 이전 이장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현장조사에서 발견됨
  - 마을 이장과의 인터뷰에서 공동생활홈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귀찮은 일을 떠맡았다는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으며, 때로는 “전 이장이 한 거라 잘 모른다” 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응답하는 사례도 있었음. 그리고 공동생활홈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현관열쇠를 이장과 노인회장만 갖고 있어, 여름철 냉방비 때문에 낮에는 공동생활홈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사례도 발견되어, 관리를 마을에서 담당하는 취지에서 오히려 벗어난 경우도 발견되었음

## ② 공동급식시설

- 공동급식시설의 관리주체를 보면, 54개소 중 50개소(90.9%)가 마을자치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곳도 1개소 조사되었음
  - 운영관리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3개소의 경우는 현재 준공되지 않은 1개소와 조사시점에서 완공이 완료되어 공동급식을 실시한 적이 없는 '15년도에 선정된 2개소에 해당됨. 이 2개소는 마을회에서 관리할 계획이 있어, 공동급식시설은 대부분이 마을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21> 공동급식시설 관리주체

관리 주체		미운영	공사중/예정	한달 미만 운영시설	현재 운영 중 시설물	합계
마을 자치회	공동급식시설 추진위원회	0	0	0	1	1
	마을공동체협의회	0	1	0	0	1
	마을회	2	1	2	39	44
	부녀회	0	0	0	1	1
	영농회	0	0	0	3	3
(군)직영		0	0	0	1	1
운영관리 주체의 미확정		0	1	2	0	3
합계		2	3	4	45	54

- 공동급식시설의 운영 및 관리가 마을회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면서 마을 구성원 모두에게 수혜가 돌아가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특별한 마을 행사나 대규모 마을행사에서만 공동급식시설이 이용되어 활용도가 낮은 사례가 나타났음
  - 즉 마을 공동시설이므로 마을회에서 절차적인 측면이 강조되거나 마을 이장의 허가가 있어야 사용될 수 있기도 함
- 공동급식시설이 마을 주민 모두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이지만, 운영 및 관리를 마을회가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면서, 마을 이장의 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일부 있어 공동급식시설이 불필요한 마을이 선정되는 사례가 나타났음
  - 즉 정부재정 지원사업의 선정여부가 마을이장의 능력으로 평가되면서, 마을에 이미 공동급식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재정 지원사업을 무작정 따고 보자', 그리고 선정된 후에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일 년에 몇 번 사용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 시에 사용한다'는 마을의 사례도 있었음. 따라서 이러한 마을은 사업 신청이나 선정단계에서 걸러져야 할 것임



<전북 심원면 두어마을>

배치도(항공사진)에서 보면, (B)는 (구)마을회관으로서 이미 급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실제로 마을의 행사 등은 이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본 시범사업에서 A건물의 1층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었음. 현장방문 결과, 일년에 1~2회 정도만 사용하고 있음

<그림 3-18> 공동급식시설이 존재하는 마을에 선정되어 활용도가 낮은 사례

- 공동급식시설을 위한 운영비는 대부분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공동급식시설은 마을 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외부의 지자체나 단체 등에서 마을 내로 유입되는 지원금이 마을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 있음
  - 운영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급식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 외지에 있는 자녀들이 마을행사 등에 참석하여 마을찬조금을 마을운영비에 포함하여 이를 활용하기도 함
  - 식사재료는 주로 마을 내에서 생산되는 채소 등을 자체적으로 보급하기도 하고, 마을에서 생산되지 않는 식자재는 마을운영비에서 구입하고 있음

### ③ 작은목욕탕

- 작은목욕탕의 관리주체를 보면, 25개소 중 18개소(60.0%)가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위탁관리, 지자체(면, 군)에서 관리, 그리고 의용소방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관리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곳은 현재 공사 중이거나 설계단계에 있는 2개소로서 완공된 이후에 관리주체가 결정될 것이라 판단됨
- 작은목욕탕의 경우, 사업추진 초기에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높았으나, 초기시설비용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2억으로 추진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함. 따라서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규모 축소, 값 싼 자재 이용, 사업 포기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단위에서 시설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lt;표 3-22&gt; 작은목욕탕 관리주체

관리주체		미운영	공사중/ 예정	한달 미만 운영시설	현재 운영 중 시설물	합계
마을 자치회	마을회	1	1	6	8	16
	목욕탕 운영위원회	0	0	0	1	1
	면 주민자치위원회	0	0	0	1(월야면)	1
사회단체 위탁		0	0	0	1(장군면)	1
위탁관리(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0	0	0	1(지곡면)	1
의용소방대		0	0	0	1(서호면)	1
지자체(면, 군) 운영위원회		0	0	0	2	2
관리주체 미확정		0	2	0	0	2
합계		1	3	6	15	25

- 작은목욕탕은 수요를 예측하여 사후 운영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규모로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이 시설물을 구축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났음
  - 유지관리비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목욕탕을 폐쇄하거나, 온탕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자체에 유지관리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작은목욕탕은 다른 공동시설에 비해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더 요구되고, 유지관리비가 더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규모를 계획하고, 신청 및 선정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전남 함평군 월야면의 작은목욕탕의 경우는 사업비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자체장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음
  - 경남 남해군 물건마을의 경우는 남녀구분형으로 계획하면서, 남녀욕탕을 2개 만들지 않고, 하나를 샤워실로 계획하여 온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였음
- 작은목욕탕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는 마을의 규모가 커서 이용자 수가 확보되었거나 군(면)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있으므로 목욕탕은 마을의 규모나 이용자의 수를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목욕탕은 운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운영지침 지자체 조례가 마련되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후 조치와 관리가 필요함

### (3) 연계프로그램 운영 현황

- 본 시범사업의 고령자시설에서 연계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은 총 128개소 중 56개소(43.8%)로 조사되었음<sup>14)</sup>
- 연계프로그램 유무에 있어서 한 개의 프로그램이라도 운영이 되는 곳을 살펴 보면, 공동생활홈의 경우, 58개소 중 30개소(51.7%)로 나타났으며, 공동급식시설의 경우는 49개소 중 21개소(42.9%), 작은목욕탕의 경우는 21개소 중 6개소(23.8%)로 나타났음

<표 3-23> 연계프로그램 운영 현황

시설유형 (운영되는 시설 수)		연계프로그램 하나라도 운영되는 시설 수
공동생활홈	58	30
공동급식시설	49	21
작은목욕탕	21	5
합계	128	56

- 연계 프로그램의 내용은 문화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의 총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복지·건강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관련한 체조, 수지침, 요가, 치매예방, 부황뜨기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과 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방문 건강서비스, 이동건강진료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여가·문화프로그램은 사물놀이, 노래교실, 문예교실, 공예교실, 꽃꽂이, 미술, 9988여가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음
  - 그 외 기타 프로그램으로는 무더위 쉼터, 현장포럼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수는 118개로서 이 중 복지·건강 프로그램이 78개(66.1%)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여가프로그램이 36개로서 약 30.1%로 조사되었음
  - 본 시범사업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보건소와 연계된 건강 유지 프로그램과 건강 진단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14) 운영 중인 시설과 운영예정(시설이 완공되어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단계)인 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 여가·문화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교실이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진행되고 있는 연계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경로당, 기존의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래교실, 요가, 체조 등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장소 또한 기존 마을회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를 제외하고 본 시범사업의 대상인 공동시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lt;표 3-24&gt; 공동시설별 연계프로그램 운영 내용

시설유형		복지·건강 프로그램 (수)	여가·문화 프로그램 (수)	기타 프로그램 (수)	합계
공동생활홈	58	44	24	2	70
공동급식시설	49	29	9	1	39
작은목욕탕	21	5	3	1	9
합계	128	78	36	4	118

- 연계프로그램의 운영사례에 있어서,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작은목욕탕에서는 복지회관의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복지회관에서 제공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작은목욕탕 무료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월야면 작은목욕탕의 경우, 주변의 다목적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복지프로그램에 참가한 고령자에게도 목욕탕 이용티켓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추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건강증진 프로그램 진행의 사례로는 전남 영암군의 경우 작은목욕탕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 생활체조, 요가 등의 연계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 당 연간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연계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 작은목욕탕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심지 내 공공시설(복지회관, 문화회관, 보건소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지원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되, 마을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복지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지자체에서는 주민 주도의 문화·복지프로그램 개발을 전제로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자체에서 개발하고 시행하는 내용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삼휴마을 공동생활홈의 거주자들이 마을을 위해 하는 활동은 쓰레기장 관리와 마을 축제 시에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는 행사를 위해 현재 (조사당시) 바리스타교육을 받고 있었음. 주민들은 이러한 사례를 여가·문화 프로그램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거주자들이 마을에서 입은 혜택을 되갚는 차원에서의 단순한 노력봉사로 받아들이고 있음
- 마을에 이러한 고령자 공동지원 시설의 전·후에 문화·복지프로그램의 변화가 없는 곳이 대부분인데, 기존 지방자치단체 지원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마을의 여건에 맞는 주민 주도의 새로운 문화·복지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lt;표 3-25&gt; '14년 시범사업 공동생활홈 연계프로그램 운영실태

시도	시군	마을명	관리주체	연계프로그램		
				복지·건강 프로그램	여가·문화 프로그램	기타
강원	영월군	공기2리	마을회	실버체조,	사물, 난타	-
	홍천군	대평마을	노인회	요가, 보건소방문건강	어르신체조, 노래교실	-
	인제군	서화2리	공동생활홈 운영위원회	요가, 보건소방문건강	-	-
충남	서천군	마양리마을	공동생활홈 운영자	-	노인교실, 문예교실	무더위 쉼터
		황사리마을	공동생활홈 운영자	-	노인교실, 문예교실	무더위 쉼터
전북	진안군	종리마을	마을자치회	-	음악교실	-
	김제시	봉은마을	노인회	건강체조	-	-
	부안군	대리마을	마을지역 공동체	-	-	-
	고창군	군유마을	교회	-	-	-
	완주군	원후상마을	마을회	-	노인여가프로그램	-
	장수군	돈촌마을	마을영농회	요가, 부황뜨기, 간단건강검진	-	-
	무주군	치목마을	마을회	-	-	-
전남	완도군	도청마을	마을회	-	-	-
	장성군	안곡마을	마을회	방문건강관리	여가프로그램	-
	해남군	미야마을	노인회	건강체조, 요가	노래교실	-
	나주시	월송마을	공동생활홈 운영위원회	건강체조	-	-
	영암군	독천마을	영암지역 자활센터	-	-	-
경북	예천군	우곡마을	부녀회	건강교실, 치매예방, 체조교실	-	-
	상주시	연봉마을	공동생활홈 운영위원회	-	-	-
	성주군	관화3리	마을회	-	-	-
	문경시	적성3리	거주자 대표	-	-	-
	고령군	안박실마을	마을회	-	-	-
	영천시	삼창리	미운영	-	-	-
경남	합천군	이부마을	마을회	-	-	-
	고성군	청동마을	마을회	방문간호사업	-	-
	의령군	보천마을	공동생활홈 운영위원회	체조교실, 이동건강진료, 고혈압당뇨교실	-	-
	남해군	내산마을	마을회	-	-	-
	사천시	가산마을	공동생활 가정운영위원회	-	-	-
	거창군	대현마을	마을회	-	-	-
	하동군	방화마을	마을회	요가,	노래교실, 미술치료 프로그램	-
	통영시	연명마을	마을회	-	-	-
		추도마을	마을회	-	-	-
함양군	삼휴마을	마을회	-	-	-	

<표 3-26> '15년 시범사업 공동생활홈 연계프로그램 운영실태

시도	시군	마을명	관리주체	연계프로그램		
				복지·건강 프로그램	여가·문화 프로그램	기타
경기	연천군	노곡장수마을	마을회	-	-	-
강원	인제군	원통6리	공동생활홈 운영위원회	요가, 보건소방문건강	-	-
	영월군	직동1리마을	마을회	-	공예교실	-
충북	제천시	송계마을	마을회	-	-	-
	진천군	송현2리마을	마을회	-	9988여가 프로그램	-
	음성군	충도4리마을	마을회	-	-	-
초천1리마을		마을회	보건소 9988프로그램	-	-	
충남	공주시	운암2리	마을회	-	-	-
	보령시	증산1리	마을회	-	-	-
		주야1리	마을회	-	-	-
전북	김제시	두월마을	마을회	건강체조	-	-
	무주군	내창마을	마을회	-	-	-
	장수군	박곡마을	영농회	체육활동,	풍물교실, 교육지원	-
		희평마을	영농회	체육활동, 에어로빅, 방문진료	-	-
	임실군	백련마을	경노회	요가, 체육활동, 건강교실	노래교실	-
	순창군	통안마을	마을회	-	-	-
전남	보성군	봉촌마을	마을회	-	-	-
	장흥군	연평마을	공사 중	-	-	-
	함평군	백야마을	마을회	-	-	-
	완도군	유촌마을	공사 중	-	-	-
경북	구미시	오로1리마을	마을회	요가, 체육활동	꽃꽂이, 미술	-
	상주시	양범마을	마을회	-	-	-
	영주시	옥대4리	마을회	요가, 체육활동	꽃꽂이, 미술	-
	청송군	진안1리	마을회	-	-	-
	영덕군	천전리	마을회	요가, 체육활동	노래교실	-
		인곡리마을	마을회	요가, 체육활동	노래교실	-
	예천군	효갈마을	공사 중	-	-	-
경남	통영시	진촌마을	마을회	-	-	-
	사천시	구평마을	면사무소	웰빙건강클리닉 등 각종체험프로그램	-	-
	창녕군	소림마을	마을회	-	-	-
	남해군	무지개마을	마을회	-	-	-
	하동군	검두마을	마을회	-	노래교실	-
	거창군	중촌마을	마을회	-	-	-

&lt;표 3-27&gt; '14년 시범사업 공동급식시설 연계프로그램 운영실태

시도	시군	마을명	관리주체	연계프로그램		
				복지·건강 프로그램	여가·문화 프로그램	기타
경기	이천시	수하1리	마을회	-	요가, 사물놀이	
충북	진천군	회안마을	마을회	-	-	-
	영동군	평촌마을	마을회	-	-	-
충남	서천군	마양리마을	마을회	-	노인교실, 문예교실	무더위 쉼터
전북	진안군	중리마을	마을회	-	음악교실	-
	정읍시	원삼마을	마을회	건강체조, 수지침	-	-
	군산시	장전마을	마을회	-	-	-
	남원시	초동마을	마을회	싱싱생생 건강교실,	-	-
	장수군	돈촌마을	영농회	요가, 부항뜨기, 간단건강검진	-	-
	무주군	두문마을	마을회	-	-	-
		성내마을	마을회	-	-	-
전남	곡성군	죽산마을	마을회	요가	세라밴드	-
	나주시	월송마을	마을회	건강체조	-	-
경북	청송군	세장마을	마을회	-	-	-
	의성군	가산3리	마을회	-	-	-
	김천시	삼실마을	마을회	방문 보건 진료 건강증진	-	-
	경산시	의송마을	마을회	-	-	-
	칠곡군	어로1리	부녀회	-	-	-
	문경시	왕태마을	마을회	-	-	-
	고령군	연조리	(군)직영	-	-	-
	영천시	삼창리	- (공사·설계 중)	-	-	-
경남	의령군	개승마을	마을회 (미운영)	-	-	-
	사천시	연천마을	공동급식 추진위원회	-	-	-
	하동군	방화마을	마을회	-	-	-
	통영시	추도마을	마을회 (운영예정)	-	-	-
제주	서귀포시	신평리	마을회	요가	-	-

<표 3-28> '15년 시범사업 공동급식시설 연계프로그램 운영실태

시도	시군	마을명	관리주체	연계프로그램		
				복지·건강 프로그램	여가·문화 프로그램	기타
경기	양평군	여물리마을	마을회	헬스, 체조지도	-	-
충북	제천시	송계마을	마을회 (미운영)	-	-	-
	영동군	매금마을	마을회	-	-	-
	영동군	개촌마을	마을회	-	-	-
	음성군	비석마을	마을회	보건소 건강프로그램	-	-
충남	논산시	철길너머마을	마을회		한글교실, 노래교실	-
		동산2리	마을회 (운영예정)	체육시설	-	-
전북	남원시	대상마을	마을회	싱싱생생 건강교실	-	-
		덕동마을	마을회	싱싱생생 건강교실	-	-
	완주군	오성마을	마을공동체 협의회 (공사·설계 중)	-	-	-
	무주군	초리마을	마을회	-	-	-
		괴목마을	마을회	-	-	-
	장수군	박곡마을	영농회	체육활동,	풍물교실, 교육지원	-
		희평마을	영농회	체육활동, 에어로빅, 방문진료	-	-
	고창군	두어마을	마을회	-	-	-
전남	순천시	서정마을	마을회	-	-	-
	광양시	본정마을	마을회	-	-	-
	영암군	회의촌마을	마을회	-	-	-
경북	청송군	거대마을	마을회	-	-	-
		설티마을	마을회	-	-	-
	영양군	섬촌마을	마을회	요가, 운동교실, 건강관리교육	노래교실	-
		신안리	마을회	요가, 체육활동	-	-
	영덕군	용전리마을	마을회	요가, 체육활동	-	-
	예천군	효갈마을	마을회 (공사·설계 중)	-	-	-
경남	통영시	진촌마을	마을회	-	-	-
	하동군	검두마을	마을회	-	-	-
제주	제주시	봉성리	- 운영예정	-	-	-
		선흘2리	- 운영예정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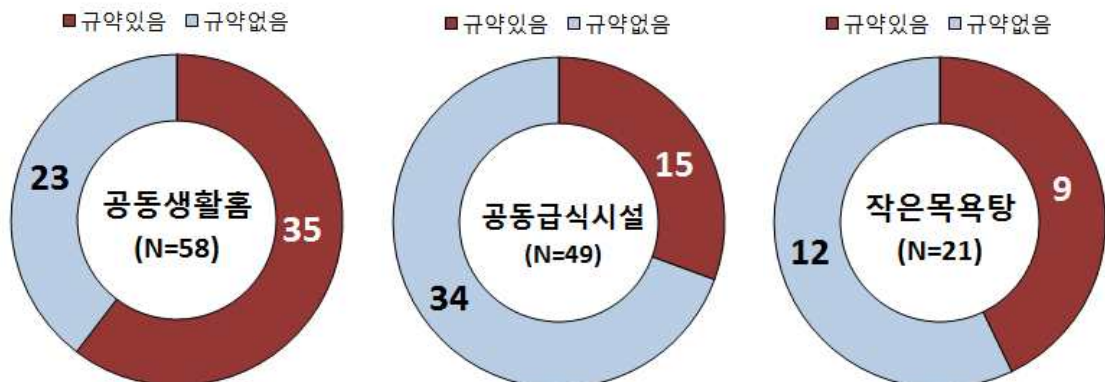
&lt;표 3-29&gt; 작은목욕탕 연계프로그램 운영실태

시도	시군	마을명	선정 연도	관리주체	연계프로그램		
					복지·건강 프로그램	여가·문화 프로그램	기타
세종	세종시	도계리	'14년	위탁관리	-	-	-
경기	포천시	우금리	'14년	마을회	체육활동	염색	-
충남	청양군	지곡리	'14년	위탁운영 (목면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	-	-
전남	함평군	진하마을	'14년	월야면 주민 자치위원회	농어촌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	-
	영암군	장촌마을	'14년	서호면 의용소방대	요가	-	-
경북	김천시	예지리	'14년	목욕탕 운영위원회	-	-	-
	칠곡군	연호2리	'14년	마을회	-	-	-
	상주시	가곡마을	'14년	마을회 (미운영)	-	-	-
	영천시	삼창리	'14년	- (공사·설계 중)	-	-	-
경남	의령군	나림마을	'14년	지정면	-	-	-
	남해군	물건마을	'14년	마을회	-	-	-
	사천시	금문마을	'14년	마을회	-	-	-
	통영시	추도마을	'14년	마을회 (운영예정)	-	-	-
전북	임실군	원천마을	'15년	마을회 (공사·설계 중)	-	-	-
전남	여수시	조화리	'15년	마을회	-	-	-
경북	김천시	입석리마을	'15년	마을회	-	-	-
		월곡마을	'15년	마을회 (운영예정)	-	-	-
	영덕군	거무역리마을	'15년	마을회	요가, 체력단련	노래교실	-
	예천군	성저리	'15년	마을회 (운영예정)	-	건강교실	현장포럼
	봉화군	현동리	'15년	마을회	-	-	-
경남	통영시	진촌마을	'15년	마을회 (운영예정)	-	-	-
	창녕군	남곡마을	'15년	- (공사·설계 중)	-	-	-
	합천군	장리마을	'15년	합천군	-	-	-
제주	제주시	상명리	'15년	마을회 (운영예정)	-	-	-
		연평리	'15년	마을회 (운영예정)	-	-	-

#### (4) 운영규정 현황

##### ① 시범대상 마을의 자치규약 현황

- 본 시범사업에서는 공동시설이 설치되는 마을과 시설이용자들은 원칙적으로 마을공동체 협의에 따라 유지관리, 수혜자 선정, 이용료 부과 등 시설 운영·관리 시스템을 고안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권고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로 주민 협의를 통한 운영 규약 제정·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자체는 시행계획에 명시된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는 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공동시설의 자치규약의 유무에 대하여 점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음. 자치규약의 유무를 검토하기 위한 시설의 수는 조사시점(2016.7.31.)을 기준으로 운영 중과 운영예정인 시설물로 구분하였음
  - 규약이 마련된 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공동생활홈, 작은목욕탕, 공동급식시설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시설 수 128개소 중 59개소인 46.1%가 자치규약이 마련되어 절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동생활홈의 경우, 58개소 중, 자치규약이 있는 경우가 35개소로 60.3%의 마을에서 자치규약이 마련되어 있음
  - 공동급식시설의 경우, 49개소 중, 15개소인 30.6%의 마을에서 자치규약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작은목욕탕의 경우, 21개소 중, 42.8%인 9개소가 규약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19> 시설유형별 자치규약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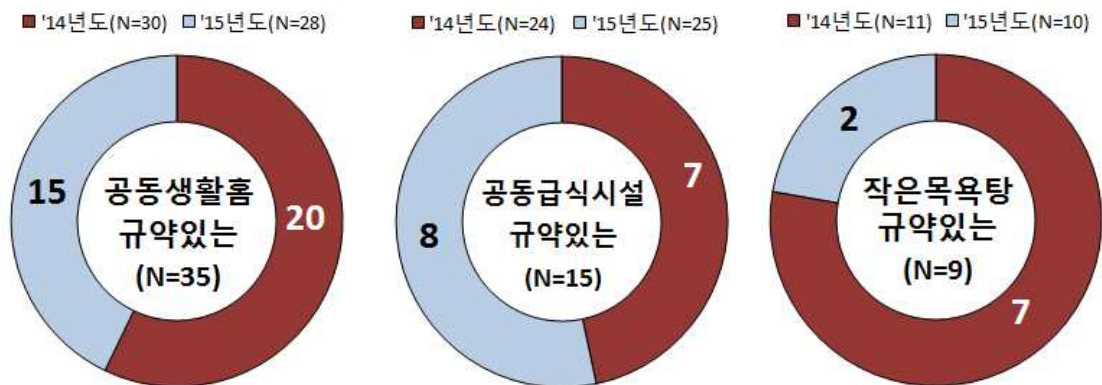
- 공동생활홈의 경우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을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시설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다른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자치규약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공동급식시설의 경우는 모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규약이 존재하는 마을은 1/3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유는
  - 공동급식시설은 마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행사이므로 굳이 본 사업 때문에 규약을 새로이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하거나,
  - 지금까지 자치규약이 없이도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행사들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급식도 이미 주민들 간에 정례화 된 사안 중의 하나이므로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된다는 인식,
  - 이러한 여건에서 새롭게 규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취지와 필요성을 마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마을의 리더들도 자치규약이 필요는 하지만, 굳이 규약을 만들기 위해 조용한 마을에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나타났음
- 작은목욕탕의 경우는 공동급식시설과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동시설이지만, 목욕탕은 ‘목욕’이라는 개인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관련된 자치규약이 이용자 개인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즉 자치규약은 목욕탕을 운영하는 관계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를 이용하는 개인에게는 굳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렇지만 목욕탕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자치규약이 만들어져 있으면 좋을 것이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자치규약이 존재하는 9개소를 파악해 보면, 위탁, 지자체(면, 군) 등에서 운영하는 곳이 5개소임
  - 운영관리주체가 마을회인 경우가 4개로 나타났는데, 운영예정인 곳이 2개소로 이곳은 일정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2개소의 경우는 운영관리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sup>15)</sup>
  - 자치규약이 존재한다면 운영관리가 효율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마을회가 운영관리의 주체가 될 경우에는 운영관리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5) 경남 용현면 금문마을의 경우는 목욕탕의 폐쇄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함

<표 3-30> 자치규약이 존재하는 작은목욕탕

시도	시군	읍면	마을명	선정연도	운영관리 주체
세종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	'14년	위탁관리
충남	청양군	목면	지곡리	'14년	위탁운영(목면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전남	함평군	월야면	진하마을	'14년	월야면 주민 자치위원회
	영암군	서호면	장촌마을	'14년	서호면 의용소방대
경남	의령군	지정면	나림마을	'14년	지정면
	사천시	용현면	금문마을	'14년	마을회
	통영시	산양읍	추도마을	'14년	마을회 (운영예정)
		산양면	진촌마을	'15년	마을회 (운영예정)
전남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15년	마을회

- 자치규약이 존재하는 공동시설에 있어서 '14년도와 '15년도를 비교한 결과,
  - 공동생활홈의 경우, 35개소 중, 20개소는 '14년도에 선정된 마을임. '14년도에 선정된 공동생활홈 30개소 중, 66.7%의 마을이 해당되며, '15년도에 선정된 마을의 경우는 28개소 중 53.6%가 자치규약이 만들어져 있음. '15년도에 선정된 마을의 경우는 운영예정인 경우가 12개소 존재하여,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자치규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음
  - 공동급식시설의 경우는 자치규약이 만들어진 마을이 총 '15개소임. '14년에 선정된 24개소 중 29.2%인 7개소가 자치규약이 존재하며, '15년도에 선정된 25개소 중 8개소인 32.0%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작은목욕탕의 경우는 9개소에서 자치규약이 존재하는데, 그 중 7개소가 '14년도에 선정된 경우이며, 2개소는 '15년도에 선정된 마을에 해당함



<그림 3-20> 자치규약이 존재하는 시설의 연도별 현황

② 조례 및 자치규약의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2015)」에서는 각 시설유형별 지자체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b>&lt;공통사항&gt;</b>	
○ 마을 및 시설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을공동체 협의에 따라 유지관리, 수혜자 선정, 이용료 부과 등 시설 운영·관리 시스템을 고안하여 자율적으로 운영</li> <li>- 주민자치회(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등)가 주체가 되어 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도록 유도</li> <li>- 필요 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동체회사 등 지역 내 봉사 단체 또는 주요 활동 단체 협조를 얻어 운영·관리</li> <li>- 각 시설별로 주민 협의를 통한 운영 규약 제정·이행</li> <li>- 마을 및 주민들은 고령자 공동시설의 목적 외 사용, 사유화 등에 유의하여 시설을 이용</li> </ul>
○ 지자체(시·군·구,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는 시행계획에 명시된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는 지 지속 점검</li> <li>- 시설물의 기능유지,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위생환경에 관한 관리 등을 위한 수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관리</li> <li>-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개인 사유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및 주민에 대한 교육,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문제 확인 시 시정 조치 등 관련 규정을 이행</li> <li>- 지자체는 공동시설 유형별 조례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에 철저</li> <li>- 마을 자체 운영·관리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예산 및 관계 부처 사업 등을 확인하여 지원 방안 검토</li> <li>-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시설 유형별 고령자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li> </ul>
<b>&lt;표 3-31&gt; 공동시설 지자체 지원내용(권장)</b>	
구분	주요내용
공동생활홈	1. 전기료·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 2. 냉난방비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 4.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5.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
공동급식시설	1. 취사도구 구입지원 2. 부식비 일부 보조 3. 시설정비 보조
작은목욕탕	1. 운영보조금 지원 2. 시설정비 보조 3. 각종 지자체 문화·복지프로그램 연계

**<시설별 지자체(시·군·구, 읍·면) 역할>**

- 공동생활홈
  - 지자체는 마을 운영 위원회의 원활한 공동생활홈 유지·관리를 위해 연계 프로그램 제공 및 기타 지원방안 발굴
  - 공동생활홈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권장
  - 분기별로 시설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여 시설의 목적 외 사용, 이용 실태 등을 확인·관리
- 공동급식시설
  - 지자체는 마을 운영 위원회의 원활한 공동급식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연계 프로그램 제공 및 기타 지원방안 발굴
  - 공동급식시설 운영 및 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권장
- 작은목욕탕
  - 지자체는 원활한 작은목욕탕의 유지·관리를 위해 연계 프로그램 제공 및 기타 지원방안 발굴
  -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권장

**<시설유형별 규약 예시>**

- 공동생활홈
  - 주민 협의를 통해 공동생활홈 운영 및 시설물 관리 규약 등 마련
  - 공동생활홈 거주자가 지켜야 할 내용 등을 담은 공동생활규약 마련
  - 입소자 입주 확인 및 운영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미이용 실태 등 점검

<표 3-32> 고흥군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예시)

구분	주요내용
제01조(목적)	- 관련 법 근거기준 및 조례제정 목적
제02조(정의)	- 입소자 기준 등 조례 상 사용 용어의 뜻
제03조(설치기준)	-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준
제04조(등록신청 및 절차)	- 등록 주체, 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
제05조(지원기준)	-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경비의 지원 범위
제06조(지원시기)	- 경비 항목별 지원시기
제07조(시설물관리)	- 생활안전관련 보험가입, 관리주체선정, 재산매각관련 규약
제08조(지원중단 및 취소)	-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생활관 지정 취소 사유
제0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책무 등)	- 입소자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 및 역할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 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
제11조(심의위원회 기능)	- 심의위원회의 역할
제12조(심의위원회 회의)	-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기준
제13조(준용)	- 보조금 교부 및 집행과 관련된 준용 근거
제14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칙 제정 근거
부칙	- 조례 시행일 기준

## &lt; 공동급식시설 &gt;

- 주민 협의를 통해 공동급식시설 운영 및 시설물 관리 규약 등 마련
- 식자재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 및 조달은 마을 운영기금을 통한 자체 조달, 지자체 지원, 봉사단체 지원 등으로 운용
- 식자재는 당일 급식량에 맞춰 전량을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식자재 보관창고를 활용하여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신선도 등을 체크
- 음식조리는 마을 부녀회가 총괄하며, 주민 대상의 급식봉사 외 마을 방문객 이용 시 발생하는 수입은 급식담당 인건비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 음식 제공은 시기 및 대상 등 마을의 실정에 맞춰 부녀회가 마을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

&lt;표 3-33&gt; 회안마을 공동급식시설 운영관리지침 주요내용(예시)

구분	주요내용
제01조(명칭)	- 본 지침의 명칭
제02조(목적)	- 지침 제정 목적
제03조(의무)	- 시설 관련자의 의무 규정
제04조(지침과 변경)	- 지침 변경 절차
제05조(운영)	- 운영 및 급식준비 주체, 시설개방기준, 식재료 준비원칙
제06조(업무 및 역할)	- 운영 및 급식준비 주체의 업무 역할
제07조(관리)	- 시설의 관리비 지출기준, 비상 시 대책, 출입문 개폐 기준
제08조(소화기, 소화장구)	- 소화기 및 소화장구 비치 범위 및 담당자 의무
제09조(화재예방)	- 화재 예방을 위한 개별적 화기류 사용 규제
제10조(오물수거)	- 오물수거 기준
제11조(위생)	- 위생관리 및 시설파손에 대한 변상 기준
제12조(청소)	- 청소 주체 및 역할
제13조(보험의 가입)	- 사고에 의한 손해방지 방안
제14조(기타)	- 지침 외 사항에 대한 적용 기준 및 절차
제15조(세부사항)	- 세부사항 의결 방법
제16조(분쟁의 해결)	- 분쟁해결 절차 및 기준
부칙	- 지침 시행일 기준 등

○ 작은목욕탕

- 운영위원회를 통해 작은목욕탕 운영 및 시설물 관리 규약 등 마련
- 작은목욕탕 이용요금은 조례에 정한 금액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 및 이용계층의 경제적 상황, 합리적 시설운영 등을 고려하여 적정요금 안 결정 가능
-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는 사전에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
- 운영자는 목욕탕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며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감독사항을 이행
- 지자체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의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목욕장의 수질관리와 위생 관련사항은 관계 규정이 정한 기준 준수

<표 3-34>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주요내용(예시)

구분	주요내용
제01조(목적)	- 조례 제정 목적
제02조(정의)	- 조례 상 사용 용어의 뜻
제03조(명칭 및 위치)	- 군 운영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04조(운영 및 주체)	- 운영 주체 및 위탁가능범위
제05조(개장시간)	- 시설 개장시간 안내
제06조(이용료 징수 등)	- 이용료 납부 기준
제07조(이용료 면제)	- 이용료 면제자 기준
제08조(입욕권의 교부 등)	- 입욕권 서식 및 운영자 의무
제09조(이용자의 금지)	- 시설 이용금지 기준
제10조(행위의 제한)	- 시설 내 행위제한 범위 및 운영자 권리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 및 위원 위촉 대상
제12조(위원회의 기능)	- 시설관련 위원회의 역할
제13조(위원의 임기)	- 위원회의 임기 기준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의 직무 범위
제15조(회의)	- 위원회 회의구분 및 소집기준
제16조(위탁운영)	-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기간, 시설 운영비 총당기준
제17조(수탁자 선정)	- 수탁자 선정 절차 및 기준
제18조(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의 의무이행 범위 및 내용
제19조(위탁계약 해지 등)	- 위탁계약 해지 사유
제20조(안전관리)	- 시설관리 근거 법에 따른 보험 가입사항
제21조(손해배상 등)	- 이용자 및 수탁자의 손해배상 기준
제22조(지도감독)	- 시설 관리 및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제23조(준용)	- 조례 규정 외 사항에 대한 준용 근거
제24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칙 제정 근거
부칙	- 조례 시행일 및 경과조치, 다른 조례 개정 내용

## ③ 시범대상 마을의 조례 및 자치규약의 내용 분석

- 본 시범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2015)」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례 및 규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수령한 자료를 분석함
- 공동생활홈에 대한 조례 33건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 ‘공동생활홈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가장 단순한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 28가지 사례로 나타났으며,
  -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는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1사례,
  - 입주자 부담비용을 금액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1사례,
  - 운영비의 사용범위를 규정한 것이 3사례로 나타남
  - 본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변화가 있지만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지자체별로 조례의 내용 범위가 통일되지 않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제정된 조례가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라든가, 수정의 내용과 절차 등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단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라’라는 상황임
  -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자체의 조례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할 사안과 지역에서 담아내야 하는 사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조례 제정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lt;표 3-35&gt; 공동생활홈 조례 및 규정 현황

조례의 내용	빈도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음	28
입주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음	1
입주자부담이 금액으로 적시되어 있음	1
운영비 규정이 있음	3
계	33

- 공동생활홈의 자치규약에 대한 2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7건은 위탁협의회서<sup>16)</sup>로서, 이를 제외한 19건의 자치규약을 대상으로 내용을 파악하였음

16) 위탁협의회서의 내용은 공동생활홈의 관리를 마을회의 위탁하는 내용임

- 공동생활홈의 운영에 대한 단순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규약이 6사례이며,
- 규약에 공동생활홈에서 거주할 경우 ‘입주자의 부담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것이 11사례, 구체적으로 입주자 부담 금액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도 1사례 나타났음. 앞서 공동생활홈의 미운영 경우 중, 입주자부담에 대한 거주자의 이해 부족으로 입주기피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약에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짐
- 공동생활홈의 운영비에 대해 적시되어 있는 경우는 1사례 밖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3-36> 공동생활홈 규약 현황

규약의 내용	빈도
운영에 대한 단순한 규약	6
규약에 운영비 규정 있음	1
규약에 ‘입주자 부담 있음’이라고 적시되어 있음	11
규약에 입주자 부담 금액이 적시되어 있음	1
계	19

- 공동급식시설의 자치규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항을 기계적으로 도입하여 마을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이유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규약을 지자체(군)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마을에 배포하게 되면서 지자체(군) 내의 모든 마을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고,
  - 공동급식은 기존에 마을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이므로 자치규약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실제로 공동급식시설은 이전에 운영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을의 여건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규약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아짐
  - 본 사업은 마을회에서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등 마을회의 역할이 사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가 사업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수동적인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자치규약의 내용에도 마을의 실정과 여건이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됨
- 작은목욕탕은 공동생활홈이나 공동급식시설과 달리 지자체·위탁·마을회 등의 관리주체가 상대적으로 다양하므로, 운영관리를 위해서도 조례, 자치규약, 위탁협약서의 3종류의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조례의 내용에서는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8건 중 4건의 조례에서는 목욕비 지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음

#### ④ 마을내의 자치규약에 대한 종합검토

- 자치규약에 있어서 공통된 사항을 보면,
  - 자치규약을 마을 내에서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마을에 배포하는 방식을 띠고 있음
  - 공동생활홈은 본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서도 새롭게 조성되는 사안이고, 마을 주민이 입주자가 되면서 운영관리에 대한 마을리더의 역할이 커지면서 자치규약의 내용이 마을마다 조금씩 차이를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공동급식시설의 경우는 본 사업 이전부터 마을에서 진행되어온 경우가 많아 지자체에서 만들어져 배포된 규약 자체 일반적이고 마을에서도 관심이 많지 않아 마을의 특성과 여건이 반영이 되지 않아 마을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 작은목욕탕의 경우는 지자체·위탁·마을회 등의 관리주체가 상대적으로 다양하므로, 운영관리를 위해서도 조례, 자치규약, 위탁협약서의 3종류의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공동시설에 대한 마을의 자치규정이 없는 경우의 마을 리더들의 의견은
  - 자치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자치규정이 없지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음
  - 자치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굳이 자치규정을 만들지 않아도 마을의 행사 등 진행이 되는데, 굳이 새로운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공동시설에 대한 마을의 자치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규정은 있지만 규정대로 실행하기 힘들거나, 규정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대응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본 시범사업은 마을단위에서의 주체적인 진행 여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사업이므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러한 운영규정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공동생활홈의 자치규약 예

### 외삼포1리 노인공동생활홈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강원도-홍천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촌면 외삼포1리 노인공동생활홈(이하 "공동생활홈"이라 한다) 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공동생활홈 운영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공동생활홈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입·퇴소자 준수사항
  3. 공동생활홈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입주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입주자의 입소비 및 관리·운영비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동생활홈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해당 관리자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후원금품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③ 공동생활홈 시설의 장은 노인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마을운영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노인회장이 임명하며, 노인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마을의 이장, 반장, 개발위원
  2. 마을의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장년회장
  3.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마을 주민
- ③ 위원회 위원장은 마을의 노인회장이 한다.
-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마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하며 그 직을 그만둘 경우 위원에서 해임된 것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부위원장과 간사위원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4조(위원장의 임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4. 신규 입소자를 선정할 경우
  5. 입소자 수칙을 위반하여 입소자를 퇴소시킬 경우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위원회 명예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마을운영위원회 위원직을 그만둘 경우에는 당연 해촉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운영규정의 개정)**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③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 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공동급식시설의 자치규약 예

**공동급식시설운영 마을규약(안)****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약의 명칭은 “세장리 공동급식시설운영 마을규약(이하 ‘마을규약’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마을규약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급식시설을 운영·유지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규약의 변경)** 본 마을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회 총회에서 제23조에 규정한 총회결의방법에 따라 변경한다.

(주) 규약변경을 마을총회에서 정한 결의방법에 따라 함으로서 규약 변경 시 마을주민들이 모두 인지하도록 하여 임원들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도록 함

**제3조(주민의 권리)** 권역주민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 ① 공동시설, 공간 등 공유공용부분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 ②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만 18세 이상)
  - 1.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권
  - 2. 회장 및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다만,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 3. 권역자치규약의 제, 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 4.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대표회의에 의견을 진술권리 및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권
  - 5. 18세 미만은 원하는 경우 권역총회 참관 허용(의결권 없음)
- ③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권리
- ④ 기타 주민이 권리를 주장하여 총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제9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권역의 번영과 권역 구성원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자치규약과 총회에서 결정한 의결사항 준수
- ② 공동의 활동 및 사업을 문란하게하거나 또는 방해 금지
- ③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의 금지
- ④ 주민의 편안한 공동생활을 우선한 공동시설물의 설치
- ⑤ 공동재산 및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제반 시설물의 보호 및 무단사용 금지
- ⑥ 공동기금 조성 및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의 지출
- ⑦ 본 규약에 의한 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가하여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

## 제 2 장 임 원 구 성

**제10조(임원)** 공동급식시설의 안정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마을대표 1인
- ② 총무 1인
- ③ 노인회장 1인

- ④ 부녀회장 1인
- ⑤ 청년회장 1인
- ⑥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공석이 발생했을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며 선출시 주민이 아닌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① 마을대표와 총무, 감사는 총회에서 재적주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정족수에 미달되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득표자 2인을 상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정족수에 미달된 경우 3차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수로 선출할 수 있다.
- ② 노인회장은 노인회에서, 부녀회장은 부녀회에서 청년회장은 청년회에서 선출한다.

(주) 임원의 피선출권을 주민에 한하도록 하여 자격시비를 방지하고자 함.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 ① 자진사퇴한 경우
- ② 제1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총회결의에 의해 해임되는 경우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으며 이미 선출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 ⑥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⑦ 고의·중과실 등으로 본 권역자치규약을 위반한 때
- ⑧ 각종 공사업체·용역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을 한 때
- ⑨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총회에 불참한 때
- ⑩ 주민 중 과반수가 불신임 서면동의 한 경우

**제14조(임원의 직무)**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수해야한다.

- ① 마을대표는 마을 대표하고 재산을 보전·관리하고, 마을에 관한 업무를 총괄 운영하며 총회를 소집한다.

- ② 총무는 총회의 서무와 회계를 담당하고 마을대표가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 ③ 마을대표는 공동급식시설을 종합적으로 운영 . 관리한다.
- ④ 노인회장은 공동급식시설의 전반적인 식사제공과 시설의 운영관리 등으로 인한 주민간 분쟁을 조정한다.
- ⑤ 부녀회장은 공동급식시설의 식사 조리를 총괄하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 ⑥ 청년회장은 공동급식시설의 식자재 조달을 총괄하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 ⑦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 권역총회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감사 결과 부정 및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일
  - 4. 감사의 회의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역대표가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접 회의를 소집하는 일
  - 5. 그밖에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임

### 제 3 장 공동시설의 운영 . 관리

제16조(공동시설의 운영관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사업으로 구성된 공동급식시설은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한다.

제17조(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의 정수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위원장 1인과 총무 1인 및 감사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운영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관리위원 중 마을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운영관리위원은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다만, 총무는 회장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인준하며, 행정서무를 담당한다.

제18조(운영관리위원회의 업무) 공동급식시설의 운영 . 관리에 있어 운영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공동급식시설의 이용계획 수립
- ② 공동급식시설을 이용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공동작업의 선정
- ③ 공동급식시설의 보수 및 신축.개축.증축 결정
- ④ 공동급식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기금의 적립

⑨ 공동급식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권역 주민 간 분쟁 조정

⑩ 공동급식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사항의 결정

**제19조(운영관리위원의 직무)** 운영관리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운영위원장은 공동급식시설의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 ② 총무,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꼼꼼히 준비상황과 진행 상황을 관리 감독한다. 단, 돌발 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위원장에게 알리고 차후 회의에 상정하여 해결한다.
- ③ 총무는 전체 진행일지나 사업비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여 마을 내 마을게시판에 게시한다.
  1. 사업 초기에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체크하여 경제적 손해와 주민 간 오해가 없도록 한다.
  2. 총무는 입출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동기금의 사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단, 정기회의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④ 부녀회장은 공동급식시설의 식사 조리를 총괄하며 먹을거리 자원을 개발한다.
- ⑤ 노인회장은 공동급식시설의 전반적인 식사제공과 시설의 운영관리 등으로 인한 주민간 분쟁을 조정한다.
- ⑥ 청년회장은 공동급식시설의 식자재 조달을 총괄하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재산의 관리)** 재산은 마을대표 및 총무가 총괄·관리한다.

**제21조(마을공동기금)** ① 마을대표는 공동급식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권역공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1. 규약과 총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할 것
  2. 기금의 출납은 출납부에 반드시 기록할 것
  3. 출납부는 마을대표, 총무의 책임하에 작성·관리할 것
- ③ 마을공동기금의 수입은 주민회비, 찬조금, 수익사업출연금(운영관리위원회 출연금 포함)으로 한다.
- ④ 마을공동기금은 다음 각 호 사유로 지출한다.
  1. 총회 운영경비
  2. 공동급식시설 유지관리비(전기비, 수도세 등)

3. 운영관리위원회, 부녀회 . 노인회 . 청년회 등 운영지원금

4. 공동축제 및 각종 행사 운영경비

제22조(회비) 공동급식운영 회비는 가구당 정액(10,000원)의 회비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회계의 일반원칙)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공정 타당한 회계 관습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예산) 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결산) ①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산 공시사항에는 예금현황, 미수관리비, 사용료 등 잡수입관리, 예비비사용,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관련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결산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의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한다.

④ 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 제 5 장 보 칙

제27조(기록보존) 권역대표는 권역운영에 관한 각종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세부사항) 본 규약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권역총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관한 조치) 이 규약시행과 동시에 종전 마을자치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까지 승계한다.

제3조(규약준수) 상기 규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마을대표와 임원은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한다.



## ○ 작은목욕탕 자치규약 예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5.08.05 조례 제19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연면적 165㎡ 이하인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3.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5. “미취학아동”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령군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일 등)** ① 목욕탕 운영일, 개장시간, 휴무일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5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1,000원 이상 4,000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결정하며, 수급자·장애인·미취학아동·노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의령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목욕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 1. 목욕탕이 소재한 면의 기관·사회단체장
  - 2. 목욕탕이 소재한 면리의 이장 대표
  - 3. 목욕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면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3. 목욕탕 운영일, 개장시간, 휴무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제3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 ②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 3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목욕탕의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관련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54호, 2015.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식조사

### ① 조사세부개요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본 사업 추진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 면접,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음. 본 항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사항 중, 공동생활시설의 운영관리적인 측면에 대한 5개 질문에 대한 분석 내용임
  - 설문방식 : 메일을 통한 온라인
  - 설문기간 : 2016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 회수설문지 : 55부
-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질문 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이용자 선정 및 이용자 관리 주체
  - 질문 2.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운영비 관리 주체
  - 질문 3.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시설물 유지보수 주체
  - 질문 4.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활용한 운영프로그램의 관리 주체
  - 질문 5.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실질적 관리 총 책임자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이용자 선정 및 관리에 적합한 주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현재는 마을자체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6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군/구, 읍/면/동·이용자 대표 순으로 나타났으나, 마을자체에서 담당하는 것 이외는 큰 차이가 없음
  - 그러나 향후에는 읍/면/동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7.3%에서 16.4%로 높아져, 마을자체에서도 담당해야 하지만, 읍/면/동의 역할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37>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이용자 선정 및 관리 주체

이용자 선정과 관리 주체	현재		향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시/군/구	5	9.1	4	7.3
읍/면/동	4	7.3	9	16.4
마을자체 (이장, 마을회 등)	35	63.6	31	56.3
위탁기관	0	0	0	0
이용자대표	4	7.3	4	7.3
기타	2	3.6	3	5.4
무응답	5	9.1	4	7.3
계	55	100.0	55	100.0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운영비 관리 주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현재는 마을자체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4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군/구, 이용자 대표 순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향후에는 마을자체와 읍/면/동의 담당에 대해서 의견이 높아지고, 시/군/구의 역할이 다소 줄어들었음
  - 이용자 대표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현재와 향후에 동일하게 나타남

&lt;표 3-38&gt;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운영비 관리 주체

운영비 관리 주체	현재		향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시/군/구	9	16.4	7	12.7
읍/면/동	4	7.3	5	9.1
마을자체 (이장, 마을회 등)	27	49.0	29	52.8
위탁기관	0	0	0	0
이용자대표	8	14.5	8	14.5
기타	2	3.6	2	3.6
무응답	5	9.1	4	7.3
계	55	100.0	55	100.0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유지보수 주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현재는 마을자체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5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군/구, 읍/면/동 순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향후에는 마을자체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소하고, 시/군/구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높아져, 20.0%로 나타났음
  - 유지보수 주체에 대한 이용자 대표의 역할이 공동시설의 관리와 운영비 관리에 비해 다소 감소한 의견이 나타났음

&lt;표 3-39&gt;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유지보수 주체

유지보수 주체	현재		향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시/군/구	8	14.5	11	20.0
읍/면/동	5	9.1	5	9.1
마을자체 (이장, 마을회 등)	30	54.5	29	52.7
위탁기관	0	0	0	0
이용자대표	4	7.3	4	7.3
기타	2	3.6	2	3.6
무응답	6	10.9	4	7.3
계	55	100.0	55	100.0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있어서 운영프로그램의 관리 주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현재는 마을자체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49.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시/군/구가 담당해야한다는 의견이 21.8%로 두 주체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시/군/구의 역할이 감소하여, 대신 마을자체, 읍/면/동, 이용자대표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높아져, 마을자체, 시/군/구, 읍/면/동 순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표 3-40>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운영프로그램 관리 주체

운영프로그램 관리 주체	현재		향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시/군/구	12	21.8	9	16.4
읍/면/동	4	7.3	6	10.9
마을자체 (이장, 마을회 등)	27	49.1	29	52.8
위탁기관	0	0	0	0
이용자대표	4	7.3	5	9.1
기타	2	3.6	2	3.6
무응답	6	10.9	4	7.3
계	55	100.0	55	100.0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실질적인 관리 총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현재는 마을자체가 54.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군/구가 20%를 차지하고 있어, 두 주체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에는 읍/면/동에서의 역할이 감소하여, 마을자체, 시/군/구, 이용자 대표 순으로 총 책임 주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표 3-4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실질적 관리 총 책임자

실질적 관리 총 책임자	현재		향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시/군/구	11	20.0	12	21.8
읍/면/동	3	5.5	1	1.8
마을자체 (이장, 마을회 등)	30	54.5	33	60.0
위탁기관	0	0	0	0
이용자대표	3	5.5	4	7.3
기타	2	3.6	1	1.8
무응답	6	10.9	4	7.3
계	55	100.0	55	100.0

## (6) 소결

- 공동생활홈의 운영유형은 독립침실형이 66.7%, 공동거주형 6.1%, 독립거주형 4.5%, 혼합형 3.0%, 그리고 그 외 기타유형이 19.7%로 나타남. 기타의 유형이 많이 나타난 이유는 공동생활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착하지 못하여, 공동생활홈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마을 주민이 예전의 시설처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취침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면서 마을의 경로당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개인 거주자의 사적생활이 보장된 공간임을 사업의 시작단계에서 명확하게 하여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동급식시설은 존재하는 공동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므로 사업을 포기하여 반납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전부터 마을에서 이루어지던 경우에는 선정 시에 시설에 대한 중복성 검토가 요구됨
- 작은목욕탕의 경우, 초기시설비용이 요구되므로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규모의 축소, 저렴한 자재 이용, 사업 포기 등의 사례가 나타나며, 이후에는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함
- 공동시설 이용자 현황을 보면, 공동생활홈의 경우, 현재 <운영 중> 인 45개소에 총 27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급식시설은 하루에 총 1,608명, 월을 기준으로 보면 20,54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작은목욕탕은 월 8,710명으로 하나의 목욕탕 당 월 평균 512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관리는 마을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마을 이장이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마을 구성원의 배경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므로 공동시설의 관리주체의 책임자로서는 긍정적이라 판단됨
  - 그러나 마을 이장이 2년마다 교체되면서 이전 이장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거나 책임 회피로 인한 방치, 그리고 본인의 재임기에 치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 본 시범사업에서 연계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고령자시설은 총 128개소 중 56개소(43.8%)로 나타났으며, 연계 프로그램의 내용은 문화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의 3가지의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음. 진행되는 프로그램 수는 약 118개로서 이 중 복지·건강 프로그램이 78개(66.1%)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여가프로그램이 36개로서 약 30.1%로 나타남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마을의 자치규약은 마을 내에서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마을에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 자치규약의 내용이 마을마다 동일한 사례가 많이 있음
- 공동생활홈의 경우는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을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시설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자치규약이 다른 공동시설보다 많이 만들어짐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이용자 선정 및 관리, 운영비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운영프로그램의 관리, 그리고 공동시설의 실질적 관리 총 책임 주체에 대해서, 본 시범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모든 항목에서 마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 이 5가지 항목에 대하여 마을자체 이외에는 시/군/구, 읍/면/동, 이용자대표가 담당주체로서 적합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공동시설 이용자 선정 및 관리주체는 향후 읍/면/동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었음
  - 운영비관리에 있어서는 시/군/구의 역할이 감소하고, 이용자대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나 반면 유지보수 주체는 시/군/구의 역할을 높게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운영관리프로그램의 주체로는 향후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총 책임은 마을자체 이외에 시/군/구가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본 시범사업은 운영관리 측면에서 마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마을단위에서의 주체적인 진행 여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러한 운영관리 및 운영규정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3. 건축계획적 진단평가

- 우리나라 농촌가구의 34%가 2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가구의 44%가 30년 이상 된 70년대 이전에 건축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sup>17)</sup>
  - 주거의 시설설비 수준, 복지 및 대중교통 환경, 쓰레기처리 환경, 편의 및 문화시설의 지원 등이 도시에 미치지 못하여 주거환경 및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여전히 도시에 비해 낮음<sup>18)</sup>
  - 새마을 운동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과 무분별한 합석의 칼라강판 지붕개량으로 농촌마을의 경관은 자연과 조화되지 않은 색채, 형태, 지역성을 무시한 외관, 비용과 공사의 편리성만을 추구하여 경량샌드위치패널 등의 사용<sup>19)</sup>으로 농촌지역은 자연경관과 환경의 부조화 및 주변 정주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주택이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빈집 정비계획의 법적·절차적 문제가 복잡하고 부족한 철거비용 지원은 빈집문제를 크게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음
- 농촌관련 정책들은 지역적 특성과 상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일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성과 사업의 다양성이 저해하고 있음
  -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들이 기본계획수립, 사업시행, 역량강화사업 등에 투입되면서 추진방식에서 다양성의 빈약, 콘텐츠 개발에서 한계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지역의 숙원사업 해소, 민원해결, 선심성 행정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경구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질적인 사업성과보다 양적인 성과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강함
- 농촌지역에서는 일정수준의 건축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거나 전문인력의 고용에 따른 비용문제로 인하여, 비전문가들이 건축 관련 시공 등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상의 낮은 설계비와 감리비로 인하여 건축전문가(특히, 건축사)들이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외면하고 있음
  - 농촌주택은 우리의 중요한 자산임에도 건축과 도시의 전문가들은 농촌건축과 그 공동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지 못했음<sup>20)</sup>

17) 2010년 주거실태조사

18) KREI 현장서베이 2호,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조사 자료

19)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용미 대표 강의내용 중 일부\_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전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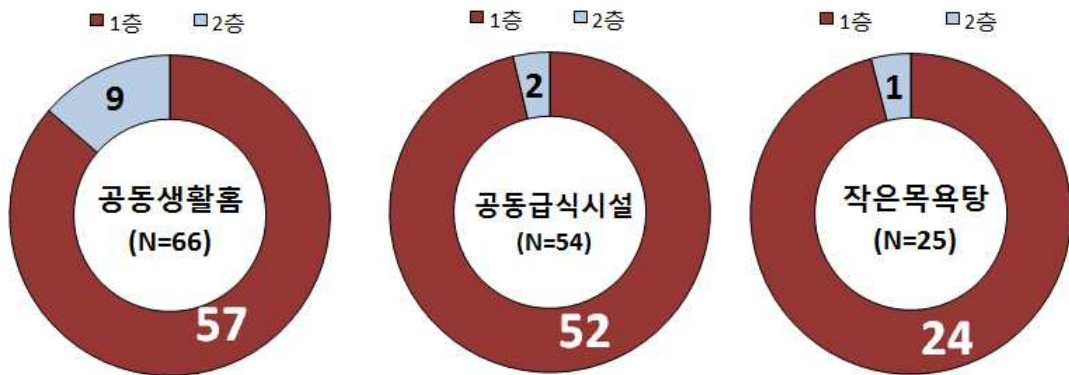
20)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김광현 교수 강의내용 중 일부\_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 농촌의 주택현황과 개선방향, 2012.

- 이에 본 절에서는 '14년~'15년도에 추진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건축 계획적 측면의 무장애디자인 현황, 경관평가, 공간적 기능을 분석함

### (1) 시설물의 건축적 현황

#### ① 시설물 규모

- 시설물의 규모를 보면 대부분이 1층으로 되어 있음
  - 공동생활홈의 경우 9개소(13.6%)가 2층에 배치되어 있어, 고령자 시설임을 감안하여 2층 배치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목욕탕의 경우 2층 건물이 한 사례 조사되었으나 2층에는 보일러실만 존재하고, 실제로 욕탕은 1층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임



<그림 3-2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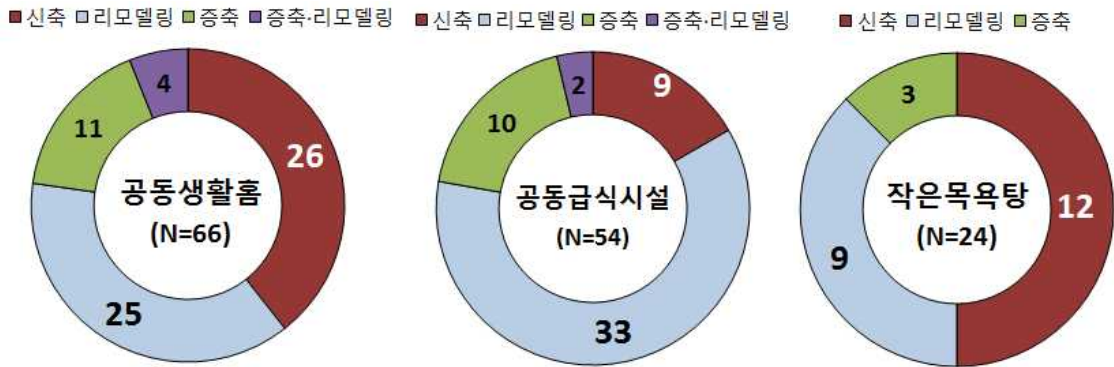
#### ② 시설물 조성 현황

- 총 144개소 중 리모델링 67개소(46.5%), 신축 47개소(32.6%), 증축 24개소(16.7%), 「증축+리모델링」이 혼합된 경우가 6개소(4.2%)로 나타나, 「증축+리모델링」을 포함하여 리모델링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본 사업이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휴시설의 재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리모델링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방치되어 있던 건물의 구조적·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업신청 당시의 리모델링 방식이 신축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나타나, 신축이 기대 이상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신축은 수치상으로는 공동생활홈이 가장 많이 나타나나 시설유형별로 보면 작은목욕탕이 50%를 차지하고 있음
  - 공동급식시설에서의 신축은 공동급식시설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공동생활홈과 동일건물 내에서 계획되고 있음

- 리모델링과 증축을 모두 합하면 약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본 사업이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이나 건축물의 재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짐

○ 시설유형별로 조성 현황을 보면,

- 공동생활홈은 신축 26개소(39.4%), 리모델링 25개소(37.9%), 「증축+리모델링」 4개소(6.1%) 순으로 신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신축 이외의 조성방식을 재활용이라 본다면 약 60%가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남
- 공동급식시설은 리모델링이 33개소(61.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동일건물 내에 공동생활과 같이 계획된 9개소(16.7%)를 제외하여 공동급식시설로만 조성된 경우는 증축과 리모델링 방식으로 나타남
- 작은목욕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신축이 많이 나타나 24개소 중 12개소인 50%가 신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물의 목적상 특징이라 볼 수 있음



<그림 3-22>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조성현황

### ③ 시설물의 용도

- 시설물의 용도는 계획상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기준이 다르며, 유휴건축물의 재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구조적·안전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공동시설 140개소 중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가 103개소(73.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택 17개소 (12.1%), 노유자시설 14개소 (10.0%), 기타시설 6개소 (4.3%)로 나타남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의 경우 노인회관, 경로당, 마을회관, 공공시설 등과 같이 마을 공동시설의 하나로서 등록되어 있으며, 작은목욕탕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내의 목욕장으로 등록되어 있음
- 공동급식시설과 작은목욕탕이 공동생활홈과 동일한 건물에서 신축되는 경우

- 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정하고 있음
- 용도가 주택인 경우는 공동생활홈에서 나타났는데, 본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리모델링의 경우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신축인 경우에 용도상 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유자시설의 경우는 본 시범사업이 「고령자 시설」임을 감안하여 무장애디자인의 적용이 이루어졌으며, 노유자시설에 대한 사업비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자체에서 나타남
  - 그 외의 기타 중 용도가 복지시설인 경우는 본 시범사업이 농촌고령자를 위한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며, 그 외 창고나 작업장의 경우에는 본 시설물들의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진행되기 이전 기존의 건물용도로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조사되었음
- 공동급식시설이나 작은목욕탕의 경우는 마을주민 모두가 이용되는 공동시설로서 용도가 시설물의 구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공동생활홈의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계획할 것인가가 계획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시설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로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본 시범사업은 건강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 리모델링의 경우는 규모가 작으므로 노유자시설로 적용하기에 과도하게 구조를 변경해야 하거나 이로 인하여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린생활시설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신축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노유자시설로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판단됨
  - 특정 지자체의 경우는 노유자시설이 아니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선택의 여지없이 노유자시설로 적용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나, 시설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3-42> 시설물의 용도

시설물의 용도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근린생활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목욕장)	35	53	49	90.7	19	95.0	103	73.6
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17	25.8	0	0.0	0	0.0	17	12.1
노유자시설	12	18.2	2	3.7	0	0.0	14	10.0
기타(복지시설, 창고, 작업장)	2	3	3	5.6	1	5.0	6	4.3
합계	66	100.0	54	100.0	20	100.0	140	100.0

## ④ 시설물의 면적

- 공동생활홈의 면적을 보면, 「50~100㎡」이 45개소(68.1%), 「100~150㎡」이 12개소(18.2%)로 85%이상이 「50~150㎡」 정도의 면적임. 50㎡ 이하도 3개소가 조사되었는데, 독립침실형이 2개소, 기타유형이 1개소로 나타났음
- 공동급식시설의 면적을 보면, 「50~100㎡」이 24개소(44.4%), 50㎡ 이하가 14개소(25.9%), 「100~150㎡」이 10개소(18.5%)로 약 90%가 150㎡이하의 면적으로 나타났음
- 작은목욕탕의 면적을 보면, 「50~100㎡」이 8개소(33.3%), 「100~150㎡」이 7개소(29.2%), 「150~200㎡」가 5개소(20.8%)로 나타났으며, 50㎡ 이하와 200㎡ 이상의 경우가 각각 2사례씩 나타났음

&lt;표 3-43&gt;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면적

구 분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빈도	%	빈도	%	빈도	%
50㎡ 이하	3	4.5	14	25.9	2	8.3
50~100㎡	45	68.2	24	44.4	8	33.3
100~150㎡	12	18.2	10	18.5	7	29.2
150~200㎡	4	6.1	4	7.4	5	20.8
200㎡ 이상	2	3.0	2	3.7	2	8.3
계	66	100.0	54	100.0	20	100.0

## ⑤ 시설유형별 세부계획

- 공동생활홈은 거주공간의 공동생활공간 및 취사공간을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개별공간인 ‘방’의 수와 공동생활공간이라 할 수 있는 거실, 부엌, 화장실에 대하여 조사함
  - 공동생활공간에 있어서 거실이 2개 이상 계획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음
  - 부엌의 경우는 독립거주형에서 개별 부엌이 계획되지만, 그 이외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다만 독립침실형에서 미니부엌(싱크대 1개)이 설치된 사례가 나타났음
  - 공동생활홈 66개소에 있어서 방의 수는 총 178개로 조사되었으며, 한 개소 당 평균 2.7개이며, 화장실은 총 122개로 한 개소 당 1.8개로 나타남

- 한 개소당 방이 2개 있는 경우가 32개소(48.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이 방이 3개인 경우가 21개소(31.8%)로 방이 2~3개인 경우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공동생활홈에 있어서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나타났는데, 이 경우는 공동생활홈을 주거용도가 아니라 마을경로당으로 이용하면서 동일 건물의 다른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 마을은 공동생활홈을 다른 기능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화장실의 수를 보면, 2개인 경우가 29개소(43.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은 1개로서 24개소(36.4%)로 화장실이 1개~2개 인 경우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화장실이 3개 이상인 경우는 독립침실형과 독립거주형에서 나타나고 있음. 특히 화장실이 5개인 경우는 독립거주형으로서 1세대와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음

<표 3-44> 공동생활홈의 방과 화장실의 수

구분	방		화장실	
	빈도	%	빈도	%
없음	0	0.0	1	1.5
1개	2	3.0	24	36.4
2개	32	48.5	29	43.9
3개	21	31.8	9	13.6
4개	6	9.1	2	3.0
5개	5	7.6	1	1.5
합계	66	100.0	66	100.0

- 공동급식시설에 있어서 공간계획은 식당과 주방배치를 조사하였으며, 두 공간의 배치를 보면, 일체형과 분리형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식사방식이 좌식형인 경우에는 일체형이 많이 나타난 반면 입식형의 경우에는 분리형이 많이 나타남

<표 3-45> 공동급식시설의 식당과 주방 배치

구분		식사방식			합계
		좌식	입식	혼합	
식당과 주방 배치	일체형	21	2	1	24
	분리형	12	9	4	25
합계		33	11	5	49

## ⑥ 작은목욕탕의 공간계획

- 작은목욕탕이 미운영 되는 1개소를 제외한 24개소에 대하여 남녀공간의 분리유무, 온탕 수, 냉탕 수, 사우나실 수를 조사함
  - 공간계획을 보면, 남녀공간이 분리되어 계획된 경우가 4개소로서 이는 남녀 분리형에 해당하며, 남녀의 사용공간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오전/오후, 홀짜일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 남녀통합형이 20개소로 나타남
  - 온탕의 설치를 보면, 작은목욕탕의 시설이 대부분 소규모이므로 온탕이 없거나 1개인 경우가 21개소로 나타남
  - 냉탕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19개로서 79%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목욕문화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입욕방식이므로 냉탕은 설치하지 않더라도 온탕은 설치하고 있음
  - 사우나실이 별도의 공간으로 계획된 곳은 총 9개소이며, 이중 2개소에는 2개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남녀공간이 분리된 유형이 4개소이기 때문임

&lt;표 3-46&gt; 작은목욕탕의 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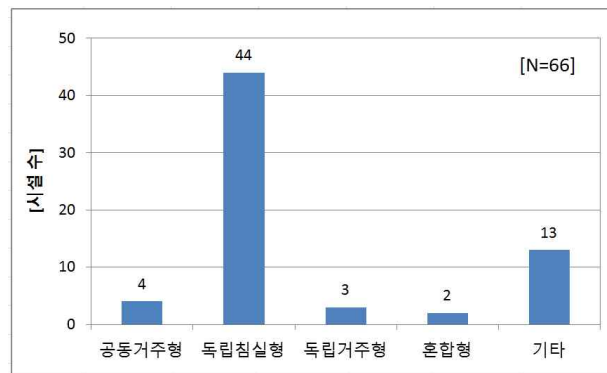
구분		빈도	구분		빈도
남녀분리 유무	분리 안됨	20	냉탕	없음	12
	분리됨	4		1개	9
2개				3	
온탕	없음	2	사우나실	없음	15
	1개	19		1개	7
	2개	3		2개	2
계		24	계		24

## (2) 공동생활홈의 공간기능 평가

- 본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동생활홈이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났음. 공동급식시설과 작은목욕탕의 경우는 다른 기능으로 사용되는 사례나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동생활홈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 ① 평면유형에 따른 평가

- 공동생활홈은 거주공간의 공동생활공간 및 취사공간을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동생활홈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였음



<그림 3-23> 공동생활홈의 유형 분포

- 운영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총 66개소 중, 공동거주형이 4개소(6.1%), 독립침실형이 44개소(66.7%), 독립거주형이 3개소(4.5%), 이러한 3가지 유형이 혼합된 형태가 2개소(3.0%), 그 외 기타 유형이 13개소(19.7%)로 나타남
- 공동생활홈의 경우 입주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독립거주형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극히 적게 나타남(3사례)
  - 독립거주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 경우에는 낮에는 마을노인 다수가 함께 사용하고 밤에는 공동생활홈 입주자만 남아 거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는 향후 공동생활홈의 기능은 상실되고 경로당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공동생활홈의 사업 취지와 달리 기존의 노후된 경로당의 개보수 또는 신축을 통하여 경로당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여과될 수 있도록 평가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독립거주형이 이상적이거나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공동생활홈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주거의 개념보다는 마을공동시설, 마을 공동공간, 커뮤니티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인식하기 때문이며, 이는 오래된 농촌마을의 관습이 몸에 배어 있으므로 나타난 현상이라 파악됨
  - 공동생활홈의 거주자들은 비록 본인의 주택이 노후화되더라도 마을 내에 본인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거주공간인 공동생활홈 거주비용의 납부는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따라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도시와 달리 본인의 주택이 동일 마을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고려하여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사적공간에 대한 공적자본이 투자되는데 있어서 사회적 반감이 작용하기 때문임.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급받는 복지자금(예, 주거급여)을 마을단위로 묶어서 지원한다면, 공적자본의 투입총액은 결과적으로 비슷해지고, 복지정책과 고령자 주거환경(정주여건) 개선되며, 더 나아가 마을의 과소화를 지연 및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 실태분석 결과, 공동생활홈의 규모는 대부분 20~30평의 리모델링이나 신축으로 나타났는데, 본 시범사업에서 공동생활홈의 사업비는 1억 2천만원 수준이며 이 정도의 사업비는 양질의 건축을 조성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됨
  
- 독립침실형은 공동거주형과 독립거주형의 절충으로 양쪽의 장단점이 섞여있는 유형으로 본 시범사업에서는 44개소(66.7%)로 가장 많이 나타났음
  - 양쪽 유형을 절충한다는 의미를 단순하게 파악하면, 공동생활홈의 개념과 가장 일치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보이므로 양쪽의 장점을 포함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가장 많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동생활홈의 생활초기단계에서는 불편함이 존재하더라도 단점을 언급하지 않고, 장점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이 유형은 양쪽의 단점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 또한 간과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장조사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단점이 도출됨
  - 공동생활홈이 주거에 대한 개념의 인식이 부족으로 인하여, 마을주민들(고령자)이 공동생활홈을 공동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공동생활홈의 입주자는 본인의 방을 열고 나오면, 공동생활공간인 거실이 마을주민들의 공동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거주형이나 경로당으로 변질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14년도에 선정된 공동생활홈의 운영유형을 조사한 보고서<sup>21)</sup>에 공동거주형이 가장 많은 66.7%로 나타난 이유

21) 김진환 외,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기획설계 및 유형별 운영모델 개발,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5, 12, pp.53~55.

가 실제 현장에서 독립침실형의 경우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 판단됨

- 이러한 상황은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마을의 공동시설을 개인의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특혜를 받는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본인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변화하게 됨
- <그림 3-24>의 경우는 독립침실형으로 주간에 경로당으로 사용되면서 입주자의 사적공간이 존재하지 않음. '14년도에 선정되어 공동생활홈으로 완료된 지 1년이 이상 경과하였지만 거주자의 개인 생활물품은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개인실은 공동물건 보관장소로 이용되고 있음[<그림 3-24> (b)]
- 공동생활홈을 관리하는 마을이장 등의 리더입장에서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동생활홈이 되어 버리므로 입주자들에게 임대료나 거주비용을 부담하라고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버림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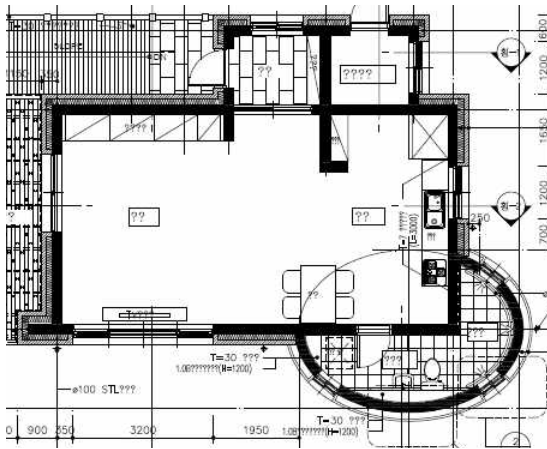


(b)

<그림 3-24> 주간에 경로당으로 활용되는 독립침실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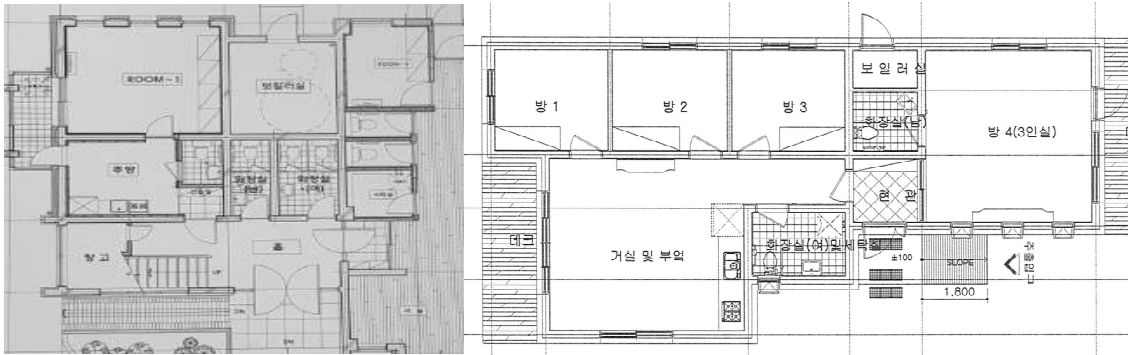
- 즉 독립침실형은 공동생활홈의 취지와 개념이 비교적 잘 반영된 유형으로 보이나, 결국에는 거주 개념이 약해지고, 거주자의 공간 소속감이 떨어지면서 마을에서는 공동시설로 변화되어갈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
- 공동거주형에 있어서는 주거의 개념이 없는 임시거처로 이용하거나 장기간의 거주는 힘들고, 원칙적으로 본 사업에서의 공동생활홈의 개념과는 동떨어진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음
- 현장조사에서도 공동거주형은 거주 개념이 가장 약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이용자들에게는 시설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 권리를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분담하기 때문에 이용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도도 높게 나타남
  - 공동생활홈을 관리하는 마을리더의 입장에서는 마을회비로 운영하고 마을회의나 모임, 행사 등을 개최하는 장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운영·관리가 가장 용이한 측면이 있음
  - <그림 3-25>은 경로당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로서, 샤워기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샤워기의 수와 샤워실 공간부족에 대한 불편함이 나타나 마을 공동시설로서 인식하고 있음이 현장조사 시 나타났음



<그림 3-25> 경로당으로 활용되는 공동거주형

- 혼합형 중, 1사례는 독립침실형과 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계획한 경우이며<그림 3-26>(a), 다른 한 사례는 남녀공간을 분리하여 계획하면서 남성을 위한 공간은 공동거주유형으로 여성을 위한 공간은 독립침실형으로 계획하였음<그림 3-2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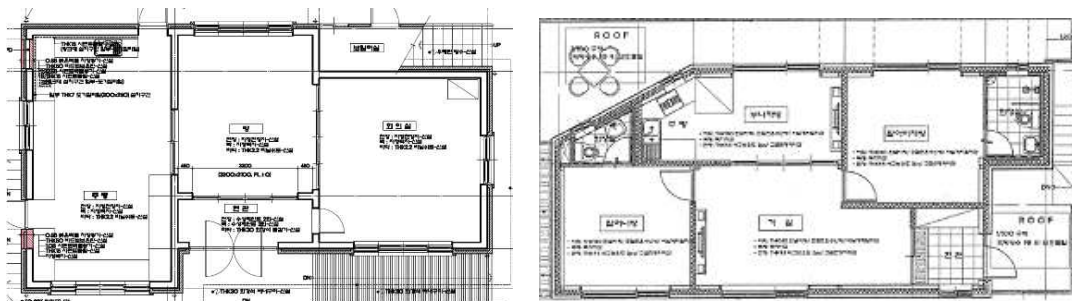
(a) 부부거주 가능 평면

(b) 남성과 여성을 분리한 형태

<그림 3-26> 공동생활홈의 혼합형 사례

○ 기타 유형의 13개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의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공동생활홈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로서 기타 유형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고 있으며, 둘째는 오히려 공동생활홈의 취지와 개념을 확장하여 고령자 뿐만 아니라 다세대용을 위한 모델이 제시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공동생활홈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시설이나 경로당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획된 사례는 대부분 경로당, 마을회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공동생활홈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됨
- <그림 3-27>(a)의 경우는 공동생활홈으로 계획되었지만, 마을 회의실과 같은 층에 배치되어 있으며, 화장실은 2층의 마을회관의 부속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례로서 공동생활홈의 기능을 할 수 없음
- <그림 3-27>(b)의 경우는 공동생활홈의 시작단계에서부터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계획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음. 공동생활홈의 평면도를 보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부녀자방으로 용도가 결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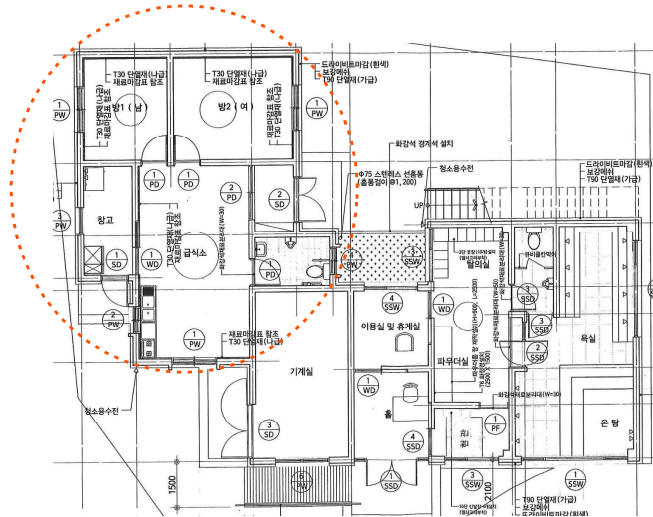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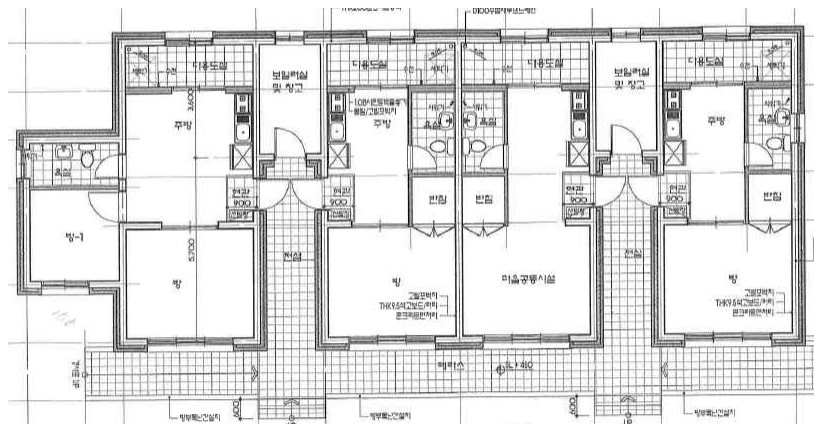
<그림 3-27> 마을 공동공간으로 이용되는 공동생활홈

- <그림 3-28>에 해당되는 마을은 본 시범사업에서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모두가 선정되었는데, 공동생활홈의 거실과 부엌이 공동급식시설로 이용되는 있음. 이는 공동생활홈의 일부공간이 다른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공동생활홈 거주자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함



<그림 3-28> 공동생활홈의 일부 공간이 다른 공동시설의 로 이용되는 사례

- <그림 3-29>는 공동생활홈을 계획하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개선의 차원으로 지방비를 투자하여 다세대용 공동생활홈을 계획한 사례임.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자 복지정책이 고령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연령, 계층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3-29>의 사례는 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이러한 방식의 공동생활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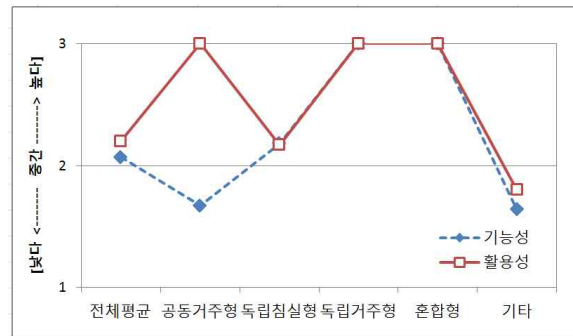


<그림 3-29> 공동생활홈의 기타 유형

○ 공동생활홈이 유형에 따라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이용되는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능성과 활용성을 평가함

- \* 기능성 평가는 공동생활홈의 취지에 맞게 활용되는가를 평가함
- \* 활용성 평가는 공동생활홈의 취지와 상관없이 활용되는 정도를 평가함
- \* 공동생활홈은 현재 운영 중 45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는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능성과 활용성이 낮은 경우에 1점, 반면 높은 경우에 3점으로 단순화하여 평가함

- 평가 결과, 기능성과 활용성 둘다 높게 평가된 유형은 독립거주형과 혼합형으로 나타났으며, 공동거주형은 기능성은 낮은 반면 활용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유형은 기능성과 활용성이 모두 낮게 나타났음. 독립침실형은 기능성과 활용성 모두 중간점수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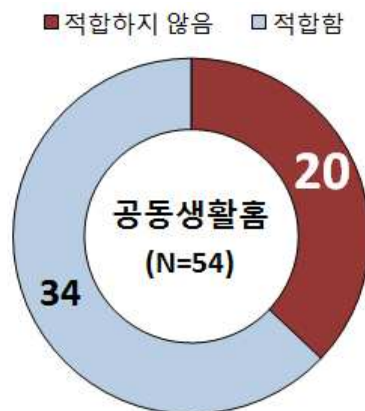
<그림 3-30> 공동생활홈의 유형에 따른 평가

- 공동거주형의 경우, 공동생활홈의 취지에 맞지 않지만 실제로는 마을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보아지며, 따라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을에 필요한 공동시설이 공동생활홈이 아닌 다른 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독립침실형은 1점과 3점으로 평가된 빈도수가 많아 기능성과 활용성에서 중간치의 평균값이 산출되었는데, 이는 공동생활홈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가 복합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라 판단됨. 공동생활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경우는 기능성과 활용성이 높게 평가된 반면 마을의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기능성은 낮고 활용성은 높게 나타났음
- 기타의 경우는 공동생활홈의 취지와 개념에 맞지 않게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기능성과 활용성이 모두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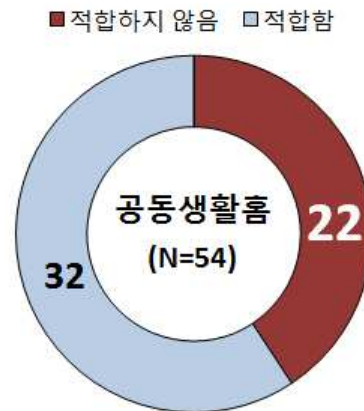
② 거주자의 수에 따른 공동생활홈의 평가

○ 공동생활홈은 마을에 존재하는 유휴시설을 재활용하여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주자의 수에 따라 요구되는 면적에 일치시켜 계획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 그리고 공동생활에 있어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화장실이므로 사용자의 수에 비례한 화장실의 수가 요구됨

- 따라서 공동생활홈 거주자 수에 따라 면적의 적합성과 화장실 수에 대하여 분석함
- 분석대상이 되는 공동생활홈은 현재 거주자가 있거나 운영예정인 경우에 거주자가 결정되어 있는 54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음
  - 적합성 여부는 본 시범사업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진행된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sup>22)</sup>에서 제안한 거주유형별 공간규모와 거주인원에 따른 화장실의 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 보고서에서 제안한 공동생활홈의 물리적 공간규모에 따라 적정 거주인원과 한계 거주인원을 기준으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54개소의 공동생활홈 중 20개소(37.0%)가 면적에 비해 거주인원이 초과되었음<그림 3-31>
  - 화장실의 수를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거주자의 수에 따른 면적에서 적합하였던 2개소의 공동생활홈에서 거주자의 수에 비해 화장실의 수가 적게 나타났다<그림 3-32>
  - 이러한 결과는 현재 농촌지역의 고령자를 위한 공동생활홈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며,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공간계획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그림 3-31> 거주자 수에 따른 공동생활홈의 면적 평가



<그림 3-32> 거주자 수에 따른 공동생활홈의 화장실 수에 따른 평가

22) 김승근 외,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3. 12, pp.176~177.  
이 보고서는 공동생활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을회관, 보건지소, 창고의 세 가지 건축물의 물리적 공간규모에 따라 적정 거주인원과 한계 거주인원을 제시하고 있음

<표 3-47> '14년 시범사업 공동생활홈 평면개요

시도	시군	마을명	면적(m <sup>2</sup> )	방 수	화장실 수	거주자 수	평면유형	운영현황
강원	영월군	공기2리	99.00	3	2	5	독립침실형	운영 중
	홍천군	대평마을	89.92	2	1	5	독립침실형	운영 중
	인제군	서화2리	154.75	5	2	3	혼합형	운영 중
충남	서천군	마양리마을	61.41	1	1	0	공동거주형	운영 중
		황사리마을	130.00	2	2	5	공동거주형	운영 중
전북	진안군	중리마을	66.24	3	3	3	독립거주형	운영 중
	김제시	봉은마을	102.45	2	2	8	독립침실형	운영 중
	부안군	대리마을	69.98	2	1	10	독립침실형	운영 중
	고창군	군유마을	102.66	4	2	0	독립침실형	미운영
	완주군	원후상마을	98.28	2	1	5	독립침실형	운영 중
	장수군	돈촌마을	121.87	2	2	8	기타	운영 중
	무주군	치목마을	91.04	2	2	6	기타	운영 중
전남	완도군	도청마을	102.00	3	1	2	독립침실형	운영 중
	장성군	안곡마을	96.99	3	2	2	독립침실형	운영 중
	해남군	미야마을	102.00	2	1	16	기타	운영 중
	나주시	월송마을	77.00	2	3	6	기타	운영 중
	영암군	독천마을	208.80	5	4	5	독립거주형	운영 중
경북	예천군	우곡마을	85.88	3	3	5	독립침실형	운영 중
	상주시	연봉마을	80.10	4	2	7	독립침실형	운영 중
	성주군	관화3리	99.63	3	3	3	독립침실형	운영 중
	문경시	적성3리	86.04	3	2	5	독립침실형	운영 중
	고령군	안박실마을	96.92	3	3	5	독립침실형	운영 중
	영천시	삼창리	107.10	5	5	0	독립침실형	미운영
경남	합천군	이부마을	158.00	3	2	5	공동거주형	운영 중
	고성군	청동마을	78.84	3	3	5	독립침실형	운영 중
	의령군	보천마을	93.25	2	1	3	독립침실형	운영 중
	남해군	내산마을	102.00	3	3	5	독립침실형	운영 중
	사천시	가산마을	100.00	2	1	20	독립침실형	운영 중
	거창군	대현마을	99.00	4	2	0	혼합형	미운영
	하동군	방화마을	66.00	4	2	8	독립침실형	운영 중
	통영시	연명마을	54.76	2	1	5	독립침실형	운영 중
		추도마을	51.85	2	1	5	독립침실형	운영예정
함양군	삼휴마을	99.17	3	1	5	독립침실형	운영 중	



&lt;표 3-48&gt; '15년 시범사업 공동생활홈 평면개요

시도	시군	마을명	면적(m <sup>2</sup> )	방 수	화장실 수	거주자 수	평면유형	운영현황
경기	연천군	노곡장수마을	74.14	2	2	미정	공동거주형	운영예정
강원	인제군	원통6리	143.28	5	2	4	독립침실형	운영예정
	영월군	직동1리마을	98.04	3	2	4	독립침실형	운영예정
충북	제천시	송계마을	42.00	2	1	미정	독립침실형	운영예정
	진천군	송현2리마을	197.01	3	1	2	독립침실형	운영 중
	음성군	충도4리마을	79.77	3	1	5	독립침실형	운영 중
초천1리마을		36.00	2	2	3	독립침실형	운영 중	
충남	공주시	운암2리	68.66	2	1	4	독립침실형	운영예정
	보령시	증산1리	88.00	2	2	5	독립침실형	운영 중
		주야1리	32.00	1	0	7	기타	운영 중
전북	김제시	두월마을	88.50	2	2	8	기타	운영 중
	무주군	내창마을	83.07	2	2	7	기타	운영 중
	장수군	박곡마을	74.50	2	2	8	기타	운영 중
		희평마을	74.50	2	2	3	독립침실형	운영예정
	임실군	백련마을	85.90	2	3	7	기타	운영예정
	순창군	통안마을	92.16	2	2	8	기타	운영 중
전남	보성군	봉촌마을	82.00	3	2	5	독립침실형	운영 중
	장흥군	연평마을	67.86	2	1	미정	독립침실형	공사·설계
	함평군	백야마을	174.00	4	4	0	독립거주형	미운영
	완도군	유촌마을	91.10	3	1	미정	독립침실형	공사·설계
경북	구미시	오로1리마을	116.60	2	2	7	기타	운영 중
	상주시	양범마을	97.25	2	1	5	독립침실형	운영 중
	영주시	옥대4리	89.10	3	1	4	독립침실형	운영예정
	청송군	진안1리	59.00	2	2	4	독립침실형	운영예정
	영덕군	천천리	73.21	2	2	5	독립침실형	운영 중
		인곡리마을	88.53	2	2	미정	기타	운영예정
예천군	효갈마을	84.98	3	1	미정	독립침실형	공사·설계	
경남	통영시	진촌마을	73.40	2	1	15	기타	운영 중
	사천시	구평마을	412.58	5	3	0	독립침실형	미운영
	창녕군	소림마을	72.55	3	1	10	독립침실형	운영 중
	남해군	무지개마을	99.00	4	2	7	독립침실형	운영예정
	하동군	검두마을	105.57	3	1	6	독립침실형	운영예정
	거창군	중촌마을	51.20	2	1	4	독립침실형	운영 중

### (3) 무장애디자인 적용현황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은 건축법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사회복지시설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생활의 안전성을 증진하여야 함
  - 노인주거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를 보면, 시설의 고령친화 정도가 높으면 안전사고 발생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7년 캐나다 보건성에서도 가정 내 낙상의 주원인을 시설 환경적 요인으로 규정한 바 있음<sup>23)</sup>
  - 노인의 안전사고(집안 내 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 경험률을 살펴보면 노인의 3.0%가 1년간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가 4.5%로 노인부부가구 2.2%와 자녀동거가구 2.9%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남<sup>24)</sup>
  - 노인의 25.1%가 1년간 낙상을 경험하였고, 이중 63.4%는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낙상이유 중 시설적 요인이 43.4%를 차지함<sup>25)</sup>

<표 3-49>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발췌)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23) 유종욱, 노인주거 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요인 분석을 통한 시설기준 제안에 관한 건축 계획적 연구, 2012

24) 보건복지부,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2014, 508~509쪽

25) 보건복지부, 전계서, 510~513쪽, 시설적 요인의 내용은 바닥이 미끄러워서(26.8%),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5.8%), 보도나 문의 턱의 걸려서(8.8%), 경사가 급해서(1.6%), 조명이 어두워서(0.4%) 등

- 본 시범사업은 공동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2층에 위치하여 이용에 불편한 경우도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고령자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을 감안하여 향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안전 및 편의시설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시범사업은 농촌고령자 공동지원 시설로서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디자인이 요구됨.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무장애디자인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시설 입구의 경사로, 경사로의 안전손잡이, 현관 입구의 미끄럼방지 재료의 사용, 화장실 변기의 안전손잡이 설치 유무를 파악함
- ① 시설 입구 경사로 설치 유무
- 시설물 입구에 경사로 설치유무를 조사한 결과, 총 144개소 중 대지와 시설물의 레벨이 동일하여 경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14개소(9.7%)로 나타났으며,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는 곳은 86개소로 59.7%로 조사되었음. 경사로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44개소(30.6%)로 나타나 경사로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판단됨

&lt;표 3-50&gt; 경사로 설치 유무

시설물 유형	경사로 설치 유무	빈도	%
공동생활홈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19	28.8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음	43	65.2
	대지와 건축물 레벨이 동일함	4	6.1
	합계	66	100.0
공동급식시설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20	37.0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음	27	50.0
	대지와 건축물 레벨이 동일함	7	13.0
	합계	54	100.0
작은목욕탕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5	20.8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음	16	66.7
	대지와 건축물 레벨이 동일함	3	12.5
	합계	24	100.0
합계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44	30.6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음	86	59.7
	대지와 건축물 레벨이 동일함	14	9.7
	합계	144	100.0

- 시설물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동급식시설이 20개소(37.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공동생활홈의 경우는 19개소(28.8%), 작은목욕탕의 경우는 5개소(20.8%)로 나타남
  - 공동급식시설의 경우 리모델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설물 내부 계획에만 중점을 두면서 외부의 경사로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경사로 설치의 본래의 의미가 퇴색된 사례도 나타남.
  - <그림 3-33> (a)의 경우는 비록 경사로가 설치되었으나, 슬로프의 경사가 높아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움
  - <그림 3-33> (b)의 경우는 경사로 자체는 이용이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현관입구의 문턱이 높아 경사로의 흐름이 시설물의 내부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임
  - 이러한 사례들은 비록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경사로 설치의 의미에는 부적합하게 되어 있어, 단지 경사로 설치 자체만 계획할 것이 아니라, 경사로 설치의 취지에 부합되었는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a)



(b)

<그림 3-33> 경사로 설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사례

② 경사로 안전손잡이 설치 유무

- 경사로의 안전손잡이 설치유무를 조사한 결과, 총 144개소 중 대지와 시설물의 레벨이 동일하여 경사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안전손잡이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14개소(9.7%)에 해당함. 경사로의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75개소로 52.1%로 나타났음. 앞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86개소(59.7%)로 조사되었는데, 경사로가 설치된 곳에 안전손잡이가 없는 경우가 11개소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안전손잡이의 설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55개소로 38.2%로 나타나 설치가 요구된다고 판단됨

- 시설물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비율로 살펴보면, 공동급식시설이 53.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공동생활홈은 31.88%, 작은목욕탕의 경우는 20.8%로 나타났음
- 공동급식시설의 경우 리모델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설물 내부 계획에만 중점을 두면서 외부의 경사로 설치와 함께 안전손잡이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lt;표 3-51&gt; 경사로 안전손잡이 설치 유무

시설물 유형	경사로 안전손잡이 설치 유무	빈도	%
공동생활홈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21	31.8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41	62.1
	대지와 건축물 레벨이 동일하여 설치할 필요없음	4	6.1
	합계	66	100.0
공동급식시설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29	53.7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18	33.3
	대지와 건축물 레벨이 동일하여 설치할 필요없음	7	13.0
	합계	54	100.0
작은목욕탕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5	20.8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16	66.7
	대지와 건축물 레벨이 동일하여 설치할 필요없음	3	12.5
	합계	24	100.0
합계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55	38.2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75	52.1
	대지와 건축물 레벨이 동일하여 설치할 필요없음	14	9.2
	합계	144	100.0

### ③ 현관입구의 Non-Slip 재료의 사용

- 현관입구의 미끄럼방지 재료의 사용유무를 조사한 결과, 총 144개소 중, 미끄럼 방지 재료가 사용된 곳은 130개소로 90.3%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설에서 미끄럼 방지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미끄럼방지 재료 사용에 대하여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작은목욕탕이 가장 많은 95.8%로 나타났는데, 이는 목욕탕이 물을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이에 대하여 더 고려하여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의 경우 약 10% 정도가 미끄럼 방지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시설에 대한 배려가 요구됨

<표 3-52> 현관입구의 non-slip 재료 사용의 유무

시설물 유형	현관입구의 바닥재료의 미끄러움	빈도	%
공동생활홈	미끄러운 재료가 사용됨	7	10.6
	미끄럽지 않은 재료가 사용됨	59	89.4
	합계	66	100.0
공동급식시설	미끄러운 재료가 사용됨	6	11.1
	미끄럽지 않은 재료가 사용됨	48	88.9
	합계	54	100.0
작은목욕탕	미끄러운 재료가 사용됨	1	4.2
	미끄럽지 않은 재료가 사용됨	23	95.8
	합계	24	100.0
합계	미끄러운 재료가 사용됨	14	9.7
	미끄럽지 않은 재료가 사용됨	130	90.3
	합계	144	100.0

④ 변기 안전손잡이 설치 유무(1개 이상)

- 고령자 시설 내 화장실의 변기 안전손잡이의 설치유무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2개 이상 계획된 경우가 있으므로,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하였음.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총 134개소 중, 99개소(73.9%)가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시설유형별로 안전손잡이 설치를 비율로 살펴보면, 작은목욕탕이 75.0%(18개소), 공동급식시설이 72.2%(39개소), 공동생활홈이 63.6%(42개소)로 나타났음

<표 3-53> 변기 안전손잡이 설치 유무(1개 이상)

시설물 유형	변기 안전손잡이 설치 유무	빈도	%
공동생활홈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42	63.6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24	36.4
	합계	66	100.0
공동급식시설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39	72.2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5	9.3
	합계	44	100.0
작은목욕탕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18	75.0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6	25.0
	합계	24	100.0
합계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99	73.9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35	26.1
	합계	134	100.0

\* 공동급식시설 내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10개소이므로 공동급식시설의 수는 44개소임

## ⑤ 그 외 무장애 디자인 적용 현황

- 3개 유형의 고령자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 이외에 시설 유형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동생활홈의 경우는 세면대의 안전손잡 설치 유무와 작은목욕탕의 경우에는 탕안으로 들어갈 때의 안전손잡이 설치유무를 조사함
  - 공동생활홈의 경우 세면대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3개소로 4.5%로 매우 미비하게 나타났음
  - 작은목욕탕의 경우, 온탕 안으로 들어갈 때 안전손잡이의 설치는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lt;표 3-54&gt; 공동생활홈과 작은목욕탕의 안전손잡이 설치유무

시설물 유형	안전시설 설치 내용	내용	빈도	%
공동생활홈	세면대의 안전손잡이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63	95.5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3	4.5
		합계	66	100.0
작은목욕탕	냉온탕 안전손잡이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14	58.3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10	41.7
		합계	24	100.0

## ⑥ 무장애디자인 적용현황에 대한 소결

- 전체적으로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무장애디자인이 계획되어 있음. 고령자시설의 배리어프리 설치는 가능한 적용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다만, 건축시공 예산이 적은 이유로 인하여 예산에 맞추어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설치가 안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나타남
- 따라서 이동이 잦은 현관과 거실과 같이 사용빈도가 높고 고령자 신체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화장실 등에는 주요 시설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그리고 그 외의 시설까지도 설치를 의무화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4) 시설물의 경관평가

##### ① 진단 및 조사의 개요

- 진단 목적 : 2014~2015년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건축형태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용도 및 기능에 대한 적합성 등을 진단함으로써 농촌지역 건축문화와 정주환경의 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② 건축형태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 ○ 진단내용 및 조사방법

- 평가대상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58동  
(공동생활홈 28동, 공동급식시설 23동, 작은목욕탕 7동)
- 평가 내용 : 건축물의 규모, 색채, 재료
- 평가자 : 건축학과 교수 및 국내·외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전문가 9인
- 평가기법 : 델파이기법<sup>26)</sup>
- 평가방식 : 평가대상 시설물들을 화상을 통하여 형태 및 규모, 색채 및 재료 등이 농촌지역의 주변경관과 어울리는데 대하여 평가지에 체크함
- 평가척도 : 7단계 척도법

<표 3-55> 건축형태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에 대한 평가지

평가항목	↩ 부정적이다			보통	↪ 긍정적이다		
	1	2	3		4	5	6
주변 경관과 형태 및 규모는 어울린다							
주변 경관과 색채 및 재료는 어울린다							
(총평)주변 경관과 전체적으로 어울린다							

######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건축적 개선방향

- 대상 및 방법 : 총괄계획가의 인터뷰

##### ③ 건축형태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에 대한 평가 결과

- 7점 만점을 기준으로 볼 때, 중간값인 4점을 못 미치는 2.6이하로 낮게 평가 되어,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의 경관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26)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은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 및 미래예측을 위한 기법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음. 이것은 추정하려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에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시설유형별, 평가내용 항목별로 차이가 없음
-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지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면 총괄계획가가 참여한 '15년도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으며, 공동생활홈에서 그 경향이 나타남
  - 공동급식시설은 리모델링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건축물 외관에 대하여 총괄계획가의 참여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작은목욕탕은 '15년도 평가대상 시설물이 없음
- 평가 후 자유토론에서 '평소 알고 있었던 농촌건축의 일반적인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 결론적으로 본 시범사업으로 마을경관(정주여건)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건축의 재료와 시공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판단됨

&lt;표 3-56&gt; 건축형태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에 대한 평가 결과

시설물	전체			'14년도 선정된 시설물			'15년도 선정된 시설물		
	총평	형태 및 규모	색채 및 재료	총평	형태 및 규모	색채 및 재료	총평	형태 및 규모	색채 및 재료
전체	2.35	2.53	2.43	2.28	2.44	2.38	2.46	2.67	2.50
공동생활홈	2.40	2.60	2.44	2.23	2.37	2.36	2.61	2.86	2.54
공동급식시설	2.33	2.49	2.44	2.38	2.55	2.42	2.28	2.40	2.46
작은목욕탕	2.21	2.38	2.35	2.21	2.38	2.35			

## ④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건축계획적 개선방향

- '건축형태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에 대한 델파이기법의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하여, 총괄계획가로서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한 건축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낮게 책정된 사업비로 인하여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이나 농촌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현실화가 요구됨
  -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업비를 좀더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 집행의 방식에도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의 건축문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총괄계획가의 자율적 위상을 높여줌으로써 각 지자체별로 흔히 발생하는 관행적 업무태도, 정책과 제도에 대한 자의적 해석, 공무원들의 간섭과 요구 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함
  - 농촌지역에 적합한 건축전문가의 선정·양성·발굴, 일관성 있는 농촌건축정책의 시행, 농촌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등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건축 관련 업무를 총괄·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중앙부처에 배치될 필요가 있음
  - 총괄계획가의 역할강화 측면에서는 농촌지역의 건축문화 향상과 거주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건축전문가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개괄적으로 총괄계획가들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의 개선과제로 ‘일관성 있는 정책 및 제도’,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주인의식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의 필요성 및 내실화’,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강화’, ‘일관성 있는 정책 및 제도’를 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건축적 측면에서는 ‘총괄계획가의 역할강화’와 ‘농촌 건축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사업예산의 확보’를 강조함

## (5) 소결

- 본 시범사업의 대상 공동시설 들은 대부분 1층 규모이나 2층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고령자 시설임을 감안하여 본다면 2층 배치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무장애디자인의 적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무장애디자인이 계획되어 있음. 고령자시설의 배리어프리 설치는 가능한 적용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다만, 건축시공 예산이 적은 이유로 인하여 예산에 맞추어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설치가 안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나타남
- 시설물의 용도는 계획상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기준이 다르며, 유희건축물의 재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구조적·안전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에 의하면 고령자 시설의 용도는 노유자시설로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본 시범사업은 건강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 리모델링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므로 노유자시설로 적용하기에는 과도하게 구조를 변경해야 하거나 이로 인하여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린생활시

실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신축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노유자시설로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판단됨

- 공동생활홈의 평면은 총 66개소 중, 공동거주형이 4개소(6.1%), 독립침실형이 44개소(66.7%), 독립거주형이 3개소(4.5%), 그리고 이러한 3가지 유형이 혼합된 형태가 2개소(3.0%), 그 외 기타 유형이 13개소(19.7%)로 나타남
- 공동생활홈의 경우 입주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독립거주형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극히 미비하게 나타남
  - 독립거주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 공동생활홈의 목적과 달리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음
  - 이러한 공동생활홈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주거의 개념보다는 마을공동시설, 마을공동공간, 커뮤니티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인식하기 때문이며, 이는 오래된 농촌마을의 관습이 몸에 배어 있으므로 나타난 현상이라 파악됨
  - 공동생활홈의 거주자들은 비록 본인의 주택이 노후화되더라도 마을 내에 본인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거주공간인 공동생활홈 거주비용의 납부는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 공동생활홈의 물리적 공간규모에 따라 적정 거주인원과 한계 거주인원을 기준으로 적합성을 검토하면, 37.0%의 공동생활홈이 면적에 비해 거주인원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를 위한 공동생활홈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은 건축형태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본 시범사업으로 마을경관(정주여건)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낮게 책정된 사업비로 인하여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이나 농촌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현실화가 요구됨
- 농촌지역의 건축문화 향상과 거주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적합한 건축전문가를 선정·양성·발굴이 요구되며, 건축전문가의 참여 제도를 통하여 총괄계획가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함. 그리고 일관성 있는 농촌건축정책의 시행, 농촌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등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건축 관련 업무를 총괄·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중앙부처에 배치될 필요가 있음

## 4. 주민 만족도 조사

### (1) 만족도 조사개요

#### ① 조사대상

- '14~'15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시설 총 145개소
  - 연도별 : '14년 72개소, '15년 73개소
  - 시설유형별 : 공동생활홈 66개소, 공동급식시설 54개소, 작은목욕탕 25개소

#### ② 조사내용

- 공통 : 이용자 및 거주자의 일반적 사항, 시설 이용 및 거주 전후 변화, 전반적 만족도
- 공동생활홈 : 입지 및 공간구성, 정서 및 친밀감, 안전, 위생 및 영양, 유지관리 및 운영
- 공동급식시설 : 입지 및 공간구성, 정서 및 친밀감, 안전, 영양, 유지관리 및 운영
- 작은목욕탕 : 입지 및 공간구성, 정서 및 친밀감, 안전, 위생 및 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
- 조사의 내용은 시설유형별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나, 시설의 특성 상 안전, 위생, 영양 부분에서 다르게 구성됨

#### ③ 설문 및 인터뷰 내용과 평가 방법

- 이용자 정보, 시설물 이용(거주) 전후에 대한 사항 : 선택형
- 이용 및 거주 만족도 : 5단계 척도법

#### ④ 조사방법

- 공동생활홈 : 인터뷰 조사표에 따라 조사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직접조사
- 공동급식시설 : 마을이장, 노인회장, 운영위원장 등 마을의 리더를 통한 설문조사 (직접배포 후 직접수거 또는 우편회수)
- 작은목욕탕 : 마을이장, 노인회장, 운영위원장 등 마을의 리더를 통한 설문조사 (직접배포 후 직접수거 또는 우편회수)

#### ⑤ 만족도 조사 대상 시설물의 현황 (2016.7.31. 현재)

-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총 145개소 중 중, 미운영, 공사 중(혹은 예정), 운영이 한달 미만인 시설물은 총 40개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만족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총 105개소가 해당됨<표 3-5>참조

&lt;표 3-57&gt; 이용자 만족도의 설문지 구성

내용		문항 수			질문유형 및 평가척도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이용자 정보	개요	7	7	7	선택형
	이용 및 거주특성	8	8	8	선택형
만족도 평가	입지 및 공간구성	11	11	11	5점 척도 방식의 선택형
	정서 및 친밀감	7	7	7	
	안전	1	1	1	
	공동생활홈 : 위생 및 영양 공동급식시설 : 영양 작은목욕탕 : 위생 및 설비	8	8	8	
	유지관리 및 운영	7	7	7	
	전반적인 만족도	1	1	1	
전후 비교를 사항		6	6	5	선택형, 기술형
계		43	43	49	

- 조사 대상지 선정 기준 : '16년 3월 기준 준공 후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준 시점에서 미준공 혹은 준공은 완료하였으나 운영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sup>27)</sup>
- 조사 가능한 105개 시설물[<표 3-4> 참조] 중에서 53개의 고령자 시설에서 총 320부의 인터뷰지와 설문지가 수령되어, 주민 만족도 평가의 최종 분석데이터가 됨<sup>28)</sup>
  - 따라서 조사가 가능 시설물 105개를 기준으로 할 때, 51.4%의 시설물이 평가됨
  - 공동생활홈 : 설문지 89부(25개소)
  - 공동급식시설 : 설문지 135부(18개소)
  - 작은목욕탕 : 설문지 96부(10개소)
- 하나의 시설물에서만 지나치게 많은 설문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의 시설물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공동급식시설과 작은 목욕탕의 경우에는 하나의 시설물에 설문지 수를 10개 내외로 한정하였으며, 공동생활홈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입주자 전원을 인터뷰 대상으로 하였음

27) 일반적으로 주민 만족도 평가 및 거주 후 평가(POE)는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이용(거주)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점검·평가하는 측면에서 최소 1년 이상을 권장함. 본 조사에서는 성과 점검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운영실적을 보유한 시설을 조사대상지로 선정함

28) 실제 수령한 설문지는 좀 더 많으나 최종 분석데이터로 사용한 설문지만을 집계하였음

<표 3-58> 지역별 주민 만족도 조사 대상 시설 및 설문 부수

구분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설문지 총계	
	시범사업	설문가능	설문시설수	설문부수	시범사업	설문가능	설문시설수	설문부수	시범사업	설문가능	설문시설수	설문부수	설문시설수	설문부수
세종	0	0	-	-	0	0	-	-	1	1	1	10	1	10
경기	1	0	-	-	2	2	2	21	1	1	1	11	3	32
강원	5	3	3	8	0	0	-	-	0	0	-	-	3	8
충북	4	3	0	0	6	5	3	16	0	0	-	-	3	16
충남	5	4	1	6	3	2	2	24	1	1	1	10	4	40
전북	13	10	4	13	15	14	4	21	1	0	-	-	8	34
전남	9	6	2	6	5	5	1	11	3	3	1	7	4	24
경북	13	9	7	36	14	12	2	24	9	5	3	33	12	93
경남	16	10	8	20	6	4	3	8	7	4	3	25	14	53
제주	0	0	-	-	3	1	1	10	2	0	-	-	1	10
<b>총계</b>	<b>66</b>	<b>45</b>	<b>25</b>	<b>89</b>	<b>54</b>	<b>45</b>	<b>18</b>	<b>135</b>	<b>25</b>	<b>15</b>	<b>10</b>	<b>96</b>	<b>53</b>	<b>320</b>

&lt;표 3-59&gt; 주민 만족도 조사 대상지 및 시설

구분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분석대상	설문부수	분석대상	설문부수	분석대상	설문부수
계	25개소	89	18개소	135	10개소	96
세종					장군면 도계리	10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하1리	10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11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마을	11		
강원	영월군 북면 공기2리	1				
	인제군 서화면 서화2리	2				
	홍천군 화촌면 대평마을	5				
충북			영동군 매곡면 개춘마을	3		
			영동군 용산면 매금마을	6		
			영동군 용화면 평촌마을	7		
충남	서천군 기산면 황사리마을	6	서천군 한산면 마양리마을	15	청양군 목면 지곡리	10
			논산시 취암8동 철길너머마을	9		
전북	김제시 황산면 두월마을	4	고창군 심원면 두어마을	10		
	김제시 금산면 봉은마을	3	무주군 적상면 성내마을	2		
	완주군 삼례읍 원후상마을	5	정읍시 감곡면 원삼마을	7		
	진안군 안천면 중리마을	1	진안군 안천면 중리마을	2		
전남	보성군 북내면 봉천마을	5	곡성군 석곡면 죽산마을	11	함평군 월야면 진하마을	7
	장성군 동화면 안곡마을	1				

&lt;표 이어짐&gt;

구분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분석대상	설문부수	분석대상	설문부수	분석대상	설문부수
계	25개소	89	18개소	135	10개소	96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박실마을	6	칠곡군 북삼읍 어로1리	15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12
	상주시 이안면 양범마을	5				
	상주시 외서면 연봉마을	6				
	예천군 하리면 우곡마을	6	문경시 영순면 왕태마을	9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7
	영덕군 달산면 인곡리마을	5				
	문경시 동로면 적성3리	3				
	영덕군 영덕읍 천천리	5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이부마을	1	의령군 가례면 개승마을	3	사천시 용현면 금문마을	5
	고성군 개천면 청동마을	1				
	의령군 화정면 보천마을	1				
	남해군 삼동면 내산마을	1	사천시 사남면 연천마을	1	남해군 삼동면 물건마을	10
	함양군 함양읍 삼휴마을	3				
	창녕군 대지면 소림마을	6	하동군 북천면 방화마을	4	의령군 지정면 나림마을	10
	하동군 북천면 방화마을	3				
	거창군 가북면 중촌마을	4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신평리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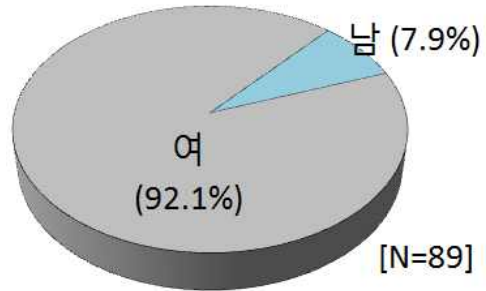


## (2) 이용 및 거주 후 평가

### 가. 공동생활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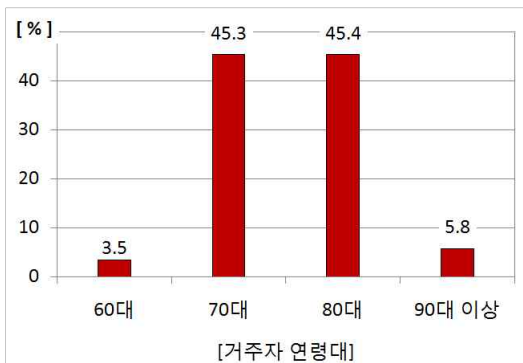
#### ① 거주자 개요

- 총 89명의 거주자 중, 남성은 7명, 여성은 82명으로 공동생활홈 거주자의 90% 이상이 여성거주자로 이루어짐
- 거주자의 연령은 70대와 80대가 각각 45%이상으로 9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이 가장 낮은 거주자는 65세이며, 가장 높은 경우는 93세이며, 평균연령은 79.4세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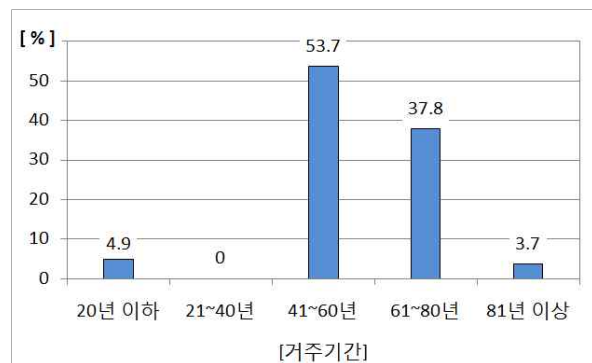


<그림 3-34> 공동생활홈 거주자 성별

- 거주기간은 40년 이상이 대부분이며, 거주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9년, 가장 긴 경우는 87년으로 평균 거주기간은 59.2년으로 나타남



<그림 3-35> 공동생활홈 거주자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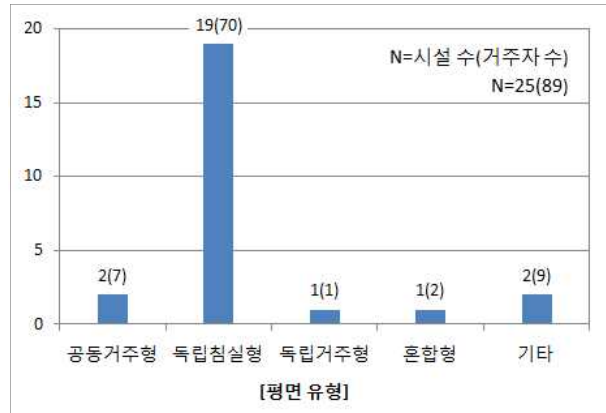


<그림 3-36> 공동생활홈 대상마을 내 거주기간

- 입주자 89명이 생활하는 25개소의 공동생활홈의 평면유형을 살펴보면, 독립침실형이 가장 많은 19개소로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동거주형과 기타유형이 2개소씩, 그리고 독립거주형과 혼합형이 1개소씩 나타났음.
  - 시설 당 평균 인터뷰 응답자를 보면, 기타가 4.5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이를 제외하면 독립침실형이 3.68명, 공동거주형이 3.5명으로 나타났으며, 독립거주형과 혼합형은 1.5이하로 나타났음<sup>29)</sup>

29) 인터뷰 응답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현재 거주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선정연도를 보면, 공동거주형과 독립거주형은 '14년 선정된 경우이며, 기타는 '15년 선정, 독립침실형은 '14년과 '15년 선정된 경우에 모두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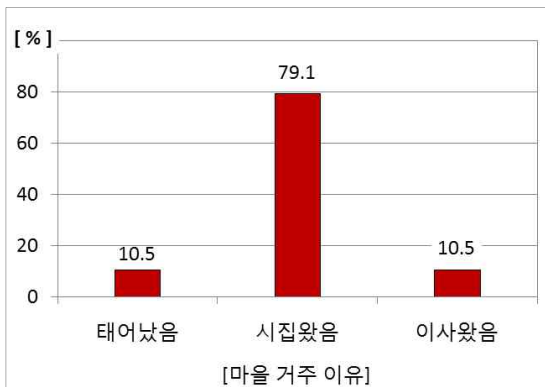


<그림 3-37> 공동생활홈의 평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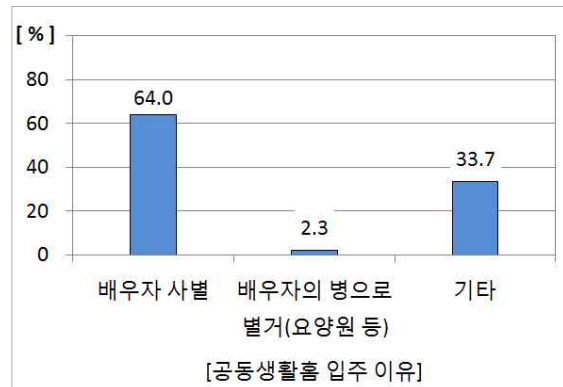
○ 마을 거주 이유에 대한 응답을 보면, <시집왔음>이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거주자가 9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라 보아지며, 이 마을에서 태어났거나 이사를 온 경우는 각각 10.5%에 해당함

○ 공동생활홈의 입주 이유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사별로 인하여 혼자인 경우가 6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병으로 인하여 별거하는 경우는 2.3%로 나타났음

- 입주 이유에 있어서 기타의 경우를 보면, 거주자가 혼자 생활하게 된 배경보다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사람 만나러”, “혼자 사는게 싫어서” 등이 약 12% 정도 나타나, 공동생활홈이 독거노인들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38> 공동생활홈 거주자의 마을 거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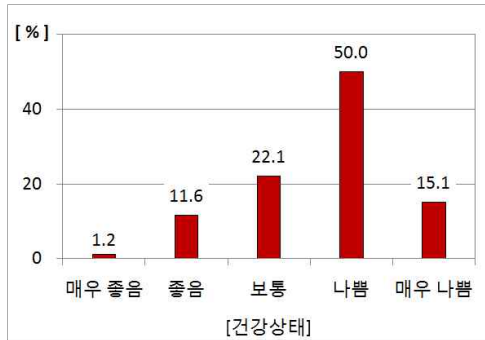
<그림 3-39> 공동생활홈 입주 이유

○ 건강상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나쁨>과 <매우 나쁨>을 합하여 약 65%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건강상태는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런 이유로 인하여 출타하는 주된 목적의 약 30%가 <병원>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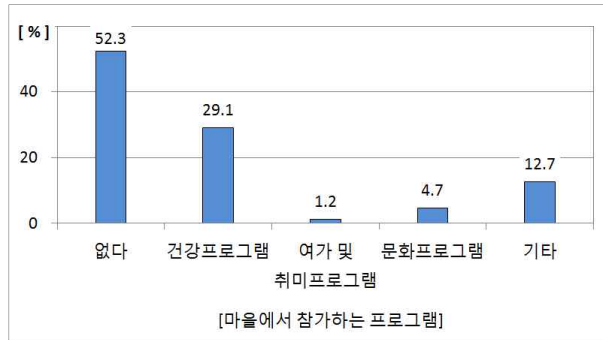
○ 공동생활홈 거주자들이 마을에서 참가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약 52% 정도

가 참가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참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나타났음



<그림 3-40> 공동생활홈 거주자의 건강상태



<그림 3-41> 마을에서 참가하는 프로그램

### ② 거주 후 평가 : 전반적 만족도

- 공동생활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5점척도의 1문항으로 평가하였을 때 4.49로 나타났으며, 이때 만족율은 91%로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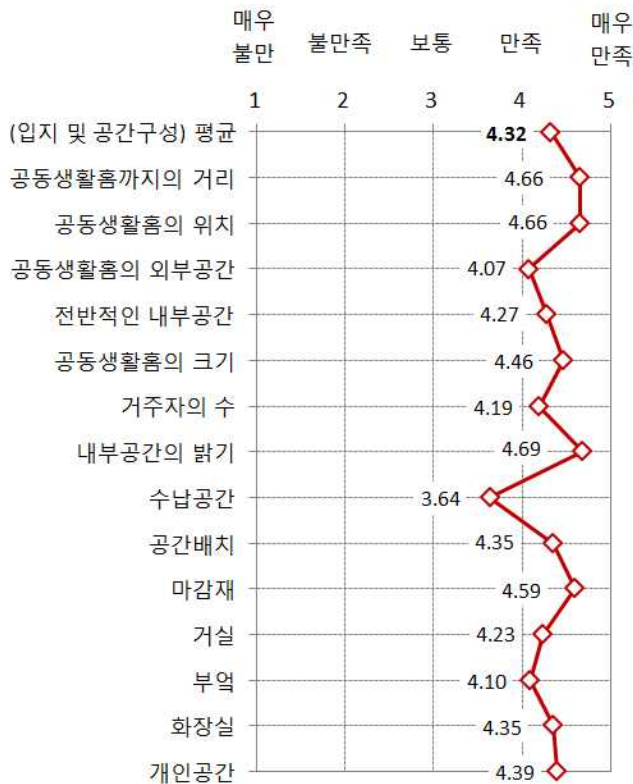
<표 3-60> 공동생활홈의 전반적 만족도 비율

구분	전반적 만족도		합계	
	빈도	만족율(%)	빈도	%
매우 만족	52	58.4	81	91.0
대체로 만족	29	32.6		
보통	8	9.0	8	9.0
불만족	0	0.0	0	0.0
매우 불만족	0	0.0		
계	89	100.0	8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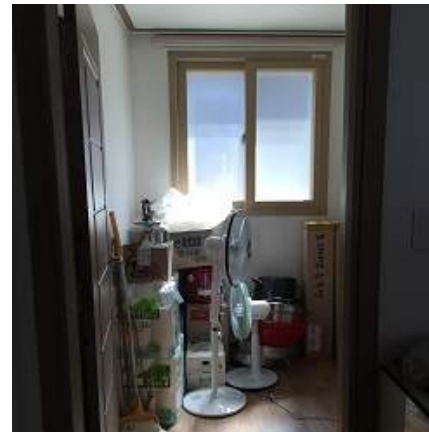
### ③ 거주 후 평가 : 입지 및 공간구성에 대한 평가

- 공동생활홈의 입지 및 공간구성과 관련한 14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5점척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은 4.40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
- 거리와 위치에 대한 평가를 보면, 4.66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마을회관 등과 같이 기존에 마을에 존재하는 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접근성이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내부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27로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내부공간 중에서 만족이 가장 낮은 항목은 수납공간으로 나타남. 수납공간에 대하여 공동생활홈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거주형>기타>독립거주형>독립침실형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 ‘1
- 사례수가 많은 독립침실형을 연도별로도 분석해 보면, 5년도 선정되어 완공된 공동생활홈의 경우 물건을 보관하거나 수납할 여유공간이 더 많음에 불구하고, '14년에 선정된 경우에서 수납공간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따라서 공동생활홈에 있어서 수납공간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공간의 규모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거주자들 간 공동생활에 대한 ‘합의’에 따라 거주공간에 대한 사적 영역의 확보에 의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판단됨



<거실구석에 쌓여둔 공동생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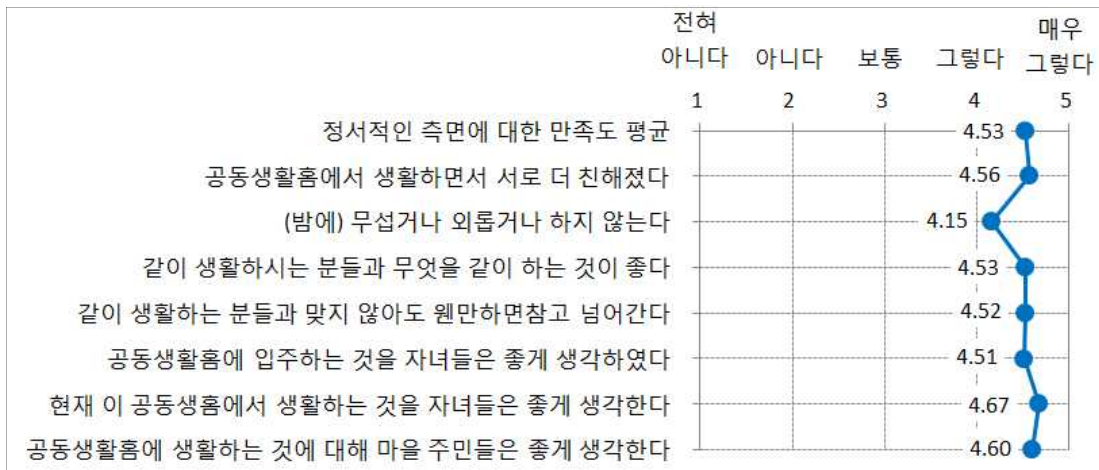
<수납공간 내의 생활용품>

<그림 3-42> 공동생활홈 입지 및 공간구성에 대한 평가

#### ④ 거주 후 평가 : 정서 및 친밀감에 대한 평가

- 공동생활홈 거주자들의 정서 및 심리적인 면과 관련한 7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은 4.53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

- 친밀도나 공동체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같이 생활하는 다른 거주자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는 편이며, 표면적으로 갈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 공동생활홈의 입주 전후에 있어서 자녀들의 인식에 대한 평가에서는 공동생활홈에 입주한 후에 자녀들이 더 좋게 생각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근소하지만 조금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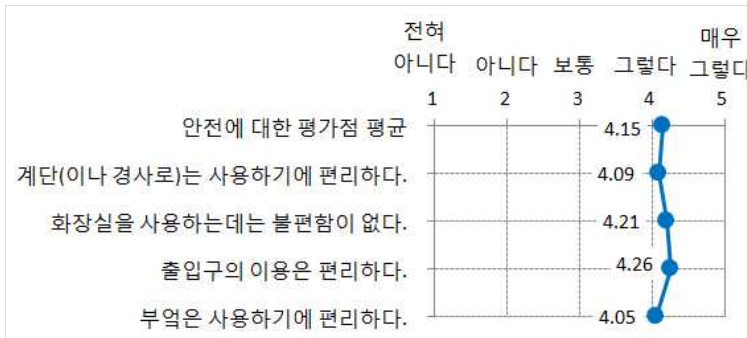


<그림 3-43> 공동생활홈 정서 및 친밀감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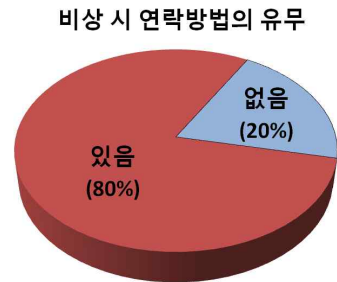
#### ⑤ 거주 후 평가 : 안전에 대한 평가

- 안전에 대해서는 계단(경사로), 화장실, 출입구, 부엌 사용에 대한 4개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각각의 항목 모두 4점 이상이며, 평균은 4.53으로 전체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4개 항목 중 부엌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는데, <입지 및 공간구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부엌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공동생활홈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거주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 부엌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보다 치밀하게 평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다른 항목과 달리 부엌의 안전에 대한 성별 비교를 보면, 부엌에 대해 공간적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엌에 대한 안전 만족도 높고, 역으로 공간적 측면에 있어서 부엌에 대한 만족감이 낮을수록 부엌의 안전 만족도도 낮게 평가하고 있음
- 갑작스런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외부에 알리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0%, <없다>는 20%로 나타남

- 연락대상은 119, 마을이장, 이웃으로 나타났으며, 연락수단으로는 전화 및 통신시설로 나타남
- 그 외에도 비상연락망을 비치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음
- 비상사태 발생이 외부에 알리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20%로 나타났다는 것은 고령자 시설의 안전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44> 공동생활홈 안전에 대한 평가



<그림 3-45> 비상시 연락방법의 유무

### ⑥ 거주 후 평가 : 영양 및 위생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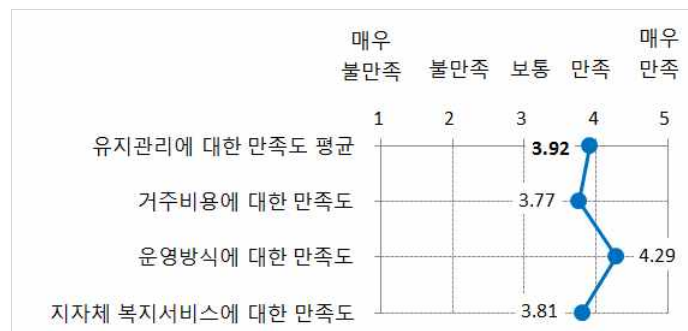
- 영양 및 위생에 대하여 식사, 목욕, 청소, 빨래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평균은 4.39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4개의 영역에 있어서는 청소가 가장 높은 만족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식사, 목욕, 빨래 순으로 나타났음
  - 가장 높은 만족을 보이는 것은 청소로 나타났는데, 공동생활홈이 최근에 준공되어 청소하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는데, 이는 주거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만족으로 파악됨
  - 목욕이나 빨래는 공동생활홈 보다는 본인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생활행위는 개인적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공동생활홈에서 목욕이나 빨래를 하게 되면 다른 거주자들에게도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음
  - 그러나 공동생활홈이 완전히 본인의 주거공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목욕이나 빨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들(행주, 수건, 걸레 등)에 대한 처리는 공동생활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공동생활홈이 기존의 마을의 공공시설을 활용하다보니 건물자체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 외부에 빨래를 건조하는 공간이 없음



<그림 3-46> 공동생활홈 영양 및 위생에 대한 평가

#### ⑦ 거주 후 평가 :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

- 공동생활홈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는 거주비용, 운영방식, 그리고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3.92로 나타났음



<그림 3-47> 공동생활홈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

- 거주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당초 공동생활홈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고령자가 주로 대상이 되었으므로 공동생활홈의 거주환경에 의한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됨
  - 공동생활홈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마을 내에 본인의 주택이 존재하므로 이중으로 거주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낮게 평가된 것이라 보아짐
- 운영방식은 공동생활홈의 거주자들 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정서적 항목 중 특히 친밀도와 공동체적 생활이 높게 평가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판단됨

-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는 공동생활홈 생활이전과 비교할 때, 절약되었다는 평가가 각각 85.4%와 88.9%로 나타남
  - 그러나 냉난비의 적당성은 53.8%와 77.0%로서 차이가 나타났음. 이는 응답자의 23.8%가 겨울철 난방기에서 적당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임
  - 전기사용료와 쓰레기처리방식은 적당하다는 의견이 83.6%, 96.0%로 각각 나타났음
-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겨울철 난방비의 해결이 가장 큰 과제라고 판단됨

<표 3-61> 공동생활홈 거주 전후의 공과금 비교

구분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				전기 사용료 적당함		쓰레기 처리방식 적당함		계	
	절약됨		적당함		절약됨		적당함							
	N	%	N	%	N	%	N	%	N	%	N	%	N	%
전혀 아니다	0	0.0	3	3.8	0	0.0	0	0.0	0	0.0	0	0.0	3	0.7
아니다	0	0.0	<b>19</b>	<b>23.8</b>	0	0.0	2	3.3	3	3.8	0	0.0	24	5.5
보통이다	12	14.6	15	18.8	7	11.1	12	19.7	10	12.7	3	4.1	59	13.4
그렇다	<b>40</b>	<b>48.8</b>	<b>20</b>	<b>25.0</b>	<b>29</b>	<b>46.0</b>	<b>23</b>	<b>37.7</b>	<b>47</b>	<b>59.5</b>	<b>48</b>	<b>64.9</b>	<b>207</b>	<b>47.2</b>
매우 그렇다	<b>30</b>	<b>36.6</b>	<b>23</b>	<b>28.8</b>	<b>27</b>	<b>42.9</b>	<b>24</b>	<b>39.3</b>	19	24.1	23	31.1	146	33.3
계	82	100.0	80	100.0	63	100.0	61	100.0	79	100.0	79	100.0	439	100.0

⑧ 거주 후 만족도 종합평가

- 공동생활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5점척도의 1문항으로 평가하였을 때는 4.49로 나타났으며, 이때 만족도는 91.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공동생활홈을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에서도 전체 평균은 4.26으로 나타나 만족하고 있음

<표 3-62> 공동생활홈 만족도에 대한 영역별 평가

평가영역	입지 및 공간구성	정서 및 친밀감	안전	위생 및 영양	유지관리 및 운영	전체 평균
평균점수	4.32	4.53	4.15	4.39	3.92	4.26



- 영역별 만족도 순위를 보면, 정서 및 친밀감 측면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다음으로 위생 및 영양, 입지 및 공간구성, 안전, 그리고 유지관리 및 운영 순으로 나타났음
  - 입지 및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수납공간의 항목이 가장 낮은 만족을 보이고 있는데, '15년도에 선정된 공동생활홈의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 따라서 공동생활홈에 있어서 수납공간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공간의 규모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거주자들 간의 공동생활에 대한 '합의'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아짐
  - 정서 및 친밀감측면에서는 공동생활홈 거주자들의 심리적 만족감, 공동거주자들 간의 친밀감, 공동생활에 있어서의 공동체감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홈 입주 후에 자녀들이 공동생활홈 입주를 더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거주자들이 인식하고 있음
  - 안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시, 119와 마을이장에게 연락하는 것이 대부분임. 따라서 이외의 방법에 대해서 좀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영양 및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부분은 습관화된 생활과 관련이 있으므로 공동생활홈 거주 전후에 있어서는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는 않았음. 다만 청소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주거환경개선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유지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거주비용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겨울철 난방비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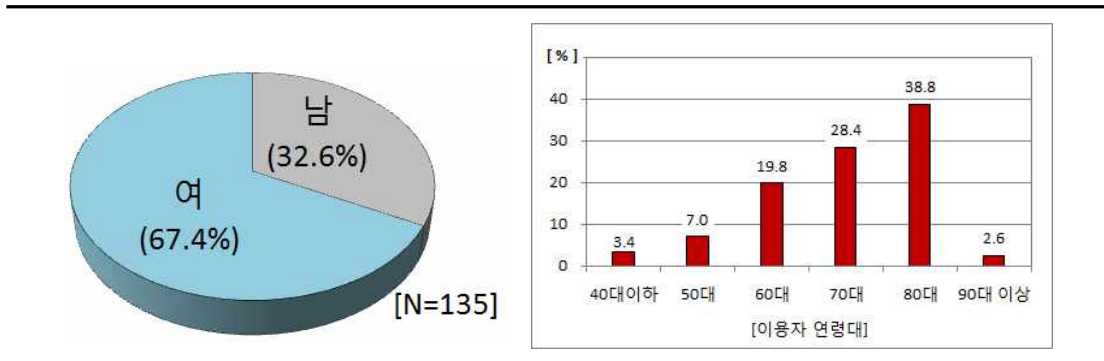
## 나. 공동급식시설

### ① 이용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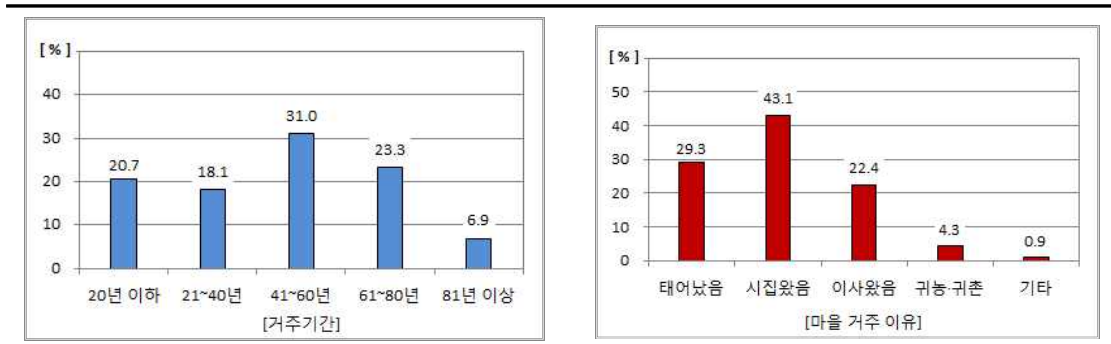
- 공동급식시설 이용자 135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44명(32.6%), 여성이 91명(67.4%)으로 구성됨
- 이용자의 연령은 80대가 가장 높은 3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70대, 6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가장 많은 이용자는 92세이며, 평균연령은 73.9세로 나타남
- 거주기간은 [41~60년]이 가장 많으며, 거주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1년, 가장

긴 경우는 86년으로 평균 거주기간은 46.7년으로 나타남

- 마을 거주 이유에 대한 응답을 보면, 여성거주자가 67%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집왔음>이 4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 마을에서 <태어났음> 29.3%, <이사왔음> 22.4%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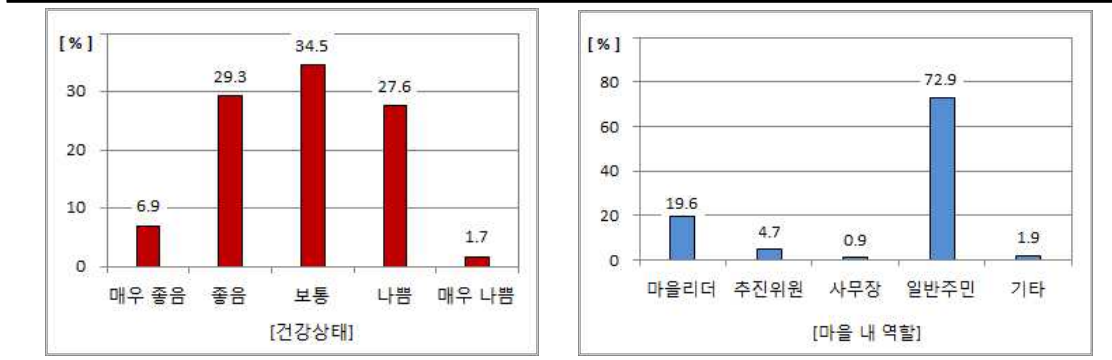


<그림 3-48> 공동급식시설 이용자의 성별 및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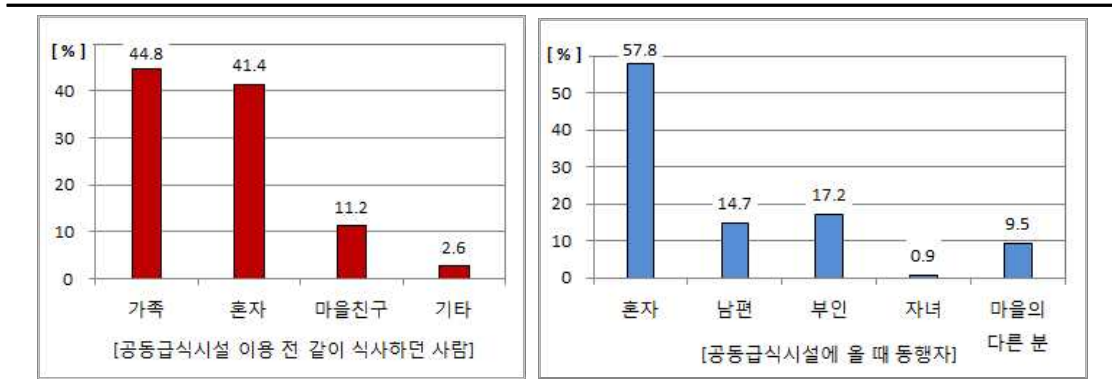
<그림 3-49> 공동급식시설 이용자의 마을 거주기간 및 거주이유

- 건강상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우 좋음>과 <좋음>, <보통>, <나쁨>과 <매우 나쁨>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볼 때, 약 1/3정도의 비율로 분산되어 있음. 이중 건강상태가 좋다는 의견이 36.2%로 조금 우세하게 나타남
- 본 설문 응답자들이 마을 내 역할을 살펴보면,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위원장 등과 같은 마을리더인 경우가 19.6%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일반주민인 경우가 72.9%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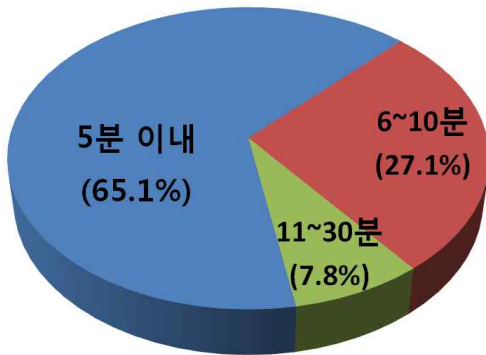
<그림 3-50> 공동급식시설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마을 내 역할

- 공동급식시설의 이용 전, 함께 식사 하였던 사람에 대한 응답을 보면, 가족이 4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혼자라고 응답한 경우도 41.4%로 나타나 공동급식의 필요성이 나타남
- 공동급식시설에 올 때 누구와 함께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혼자 오는 경우가 5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편이나 부인과 함께 온다는 경우가 31.9%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외 마을의 다른 분과 함께 급식시설에 가는 경우는 9.5%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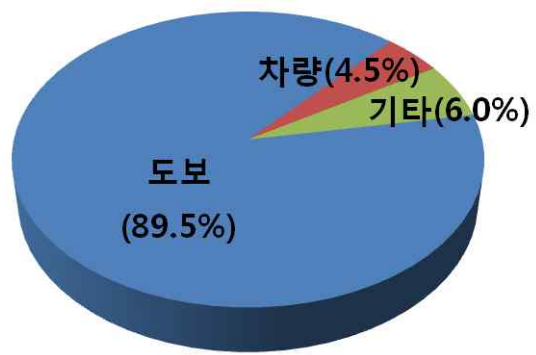


<그림 3-51> 공동급식시설 이용 전 동반 식사자 및 급식시설 방문 동행자

- 급식시설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은 0.2분에서 30분까지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은 약 6.4분으로 이용자의 90%정도가 10분 거리 정도에서 생활하고 있음
- 급식시설까지의 이동수단은 도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이 4.5%, 그 외 전동차, 자전거 등이 6%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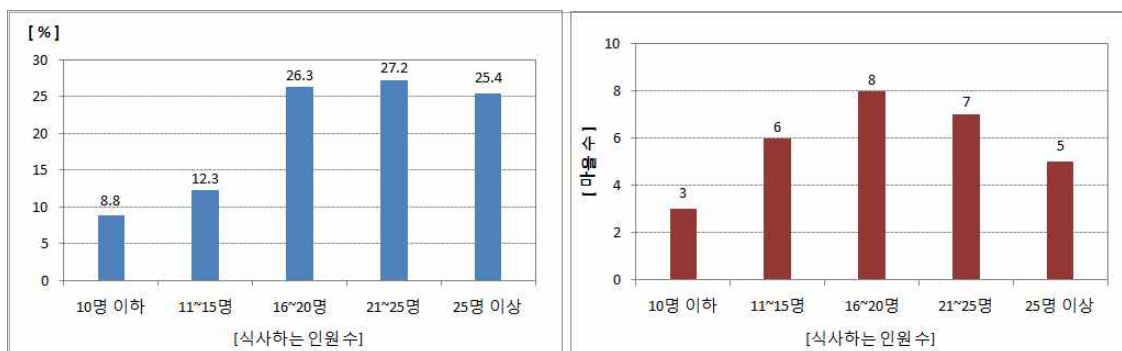
<그림 3-52> 공동급식시설까지 소요시간



<그림 3-53> 공동급식시설까지 이동수단

## ② 공동급식시설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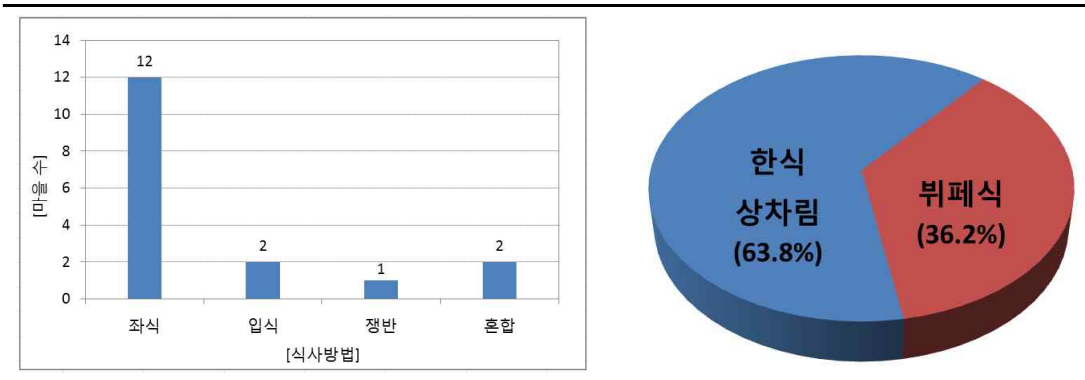
- <함께 식사하는 인원 수>에 대한 평가를 보면, 4.14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
  - 이는 당초 공간의 규모를 산정할 때부터 급식시설 이용자의 수를 일정정도 산정하여 리모델링이 이루어졌거나, 마을에 이미 존재하는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좁더라도 마을주민이 모두 함께 식사를 하려는 인식이 강하므로 공간의 규모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
  
- <함께 식사하는 인원 수>를 보면, <21~25명>단위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16~20명>, <20명 이상>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78.9%가 15명 이상이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김진환 외의 연구<sup>30)</sup>에서도 1회당 22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마을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 마을 내의 상황,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하나의 마을에서도 식사하는 인원수는 다양하게 나타남.
  - 따라서 설문 응답한 18개 마을에서 <식사하는 인원 수>는 29개의 응답이 산출되었으며, 이 중 <16~20>명이 가장 많이 나타남[<그림 3-54> (b)]



<그림 3-54> 공동급식시설에서의 식사 인원수 및 비율

30) 김진환·박중신·송서호,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4). 2015. pp.9-16.

- 식사방식을 보면, 앉아서 식사하는 <좌식>은 12개 마을, <테이블식(입식)>의 경우는 2개 마을, 이 2가지 방식이 혼용된 경우가 2개 마을에서 나타났음
  - 기타로서 <쟁반>이라고 기술한 경우가 1개 마을에서 나타났는데, 식사방식은 <쟁반>을 이용한 좌식이지만, 상을 차리고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임
  - 2014년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쟁반>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 급식시설에 적합한 비품이 부족하여 나타난 경우라고 판단됨
- 급식방식을 보면, 이용자의 약 64% 정도가 상차림 방식을 이용하고, 뷔페식은 약 36%정도로 나타났음
  - 마을별로는 11개 마을이 한식 상차림방식이고 7개 마을이 뷔페식이라 응답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한식상차림과 뷔페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림 3-55> 식사방식 및 급식방식

③ 이용 후 평가 :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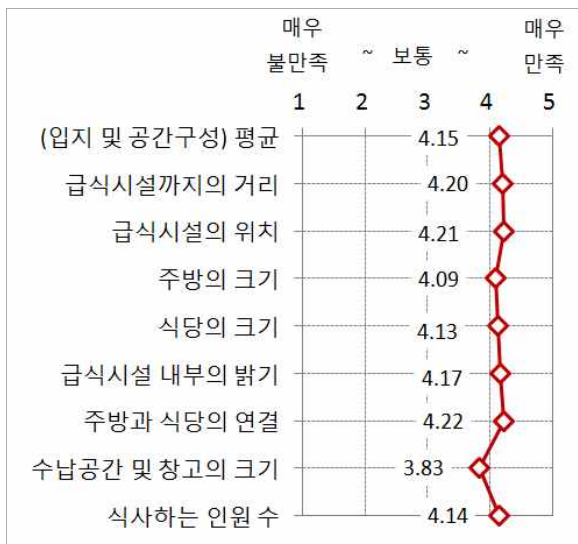
-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5점척도의 1문항으로 평가하였을 때는 4.29로 나타났으며, 이때 만족도는 83.7%로 높게 나타남

<표 3-63> 공동급식시설의 전반적 만족도 만족율

구분	전반적 만족도		합계	
	빈도	만족율(%)	빈도	%
매우 만족	61	45.2	113	83.7
대체로 만족	52	38.5		
보통	22	16.3	22	16.3
불만족	0	0.0	0	0.0
매우 불만족	0	0.0		
계	135	100.0	135	100.0

④ 이용 후 평가 : 입지 및 공간구성 만족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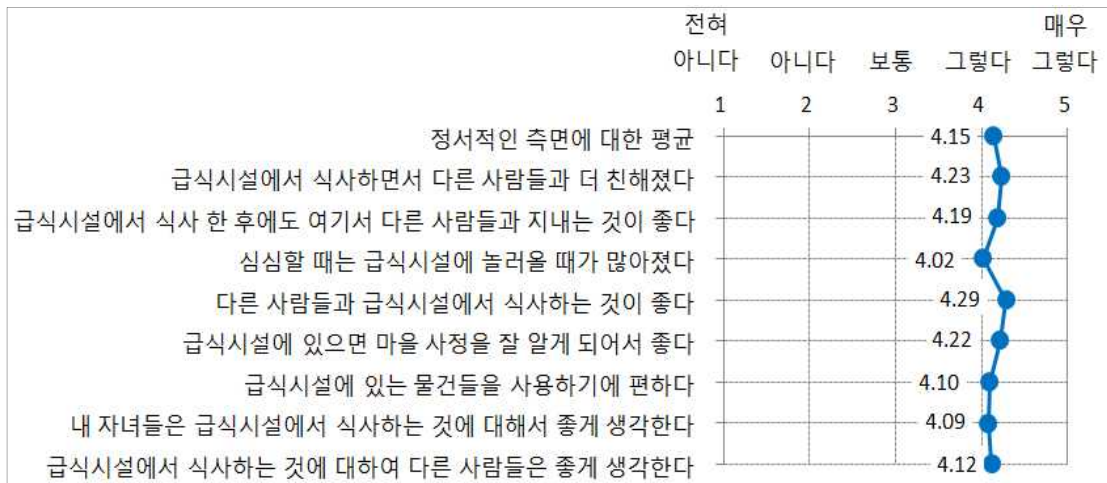
- 공동급식시설의 입지 및 공간구성의 8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은 4.15로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
- 공동급식시설까지의 거리와 위치가 4.2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음
  - 마을회관 등과 같이 마을에 존재하는 기존 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입지적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되고 있음
- 공동급식시설 내부공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수납공간 및 창고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 다음 그림의 사례에서 보면, 저장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보일러실에 식기를 보관하고 있어, 위생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따라서 급식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은 음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므로 이를 저장하는 공간도 보다 위생적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됨



<그림 3-56> 공동급식시설 입지 및 공간구성 평가 및 수납공간 부족 사례

⑤ 이용 후 평가 : 정서 및 친밀감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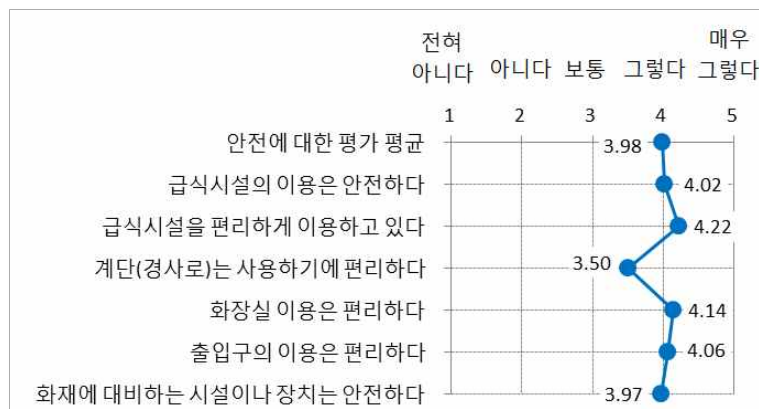
- 공동급식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정서적 측면의 8개 항목에 대하여 5점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은 4.15로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음
  - 따라서 마을 내의 공동급식시설이 마을주민들의 친밀도와 공동체 생활을 향상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3-57>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정서 및 친밀감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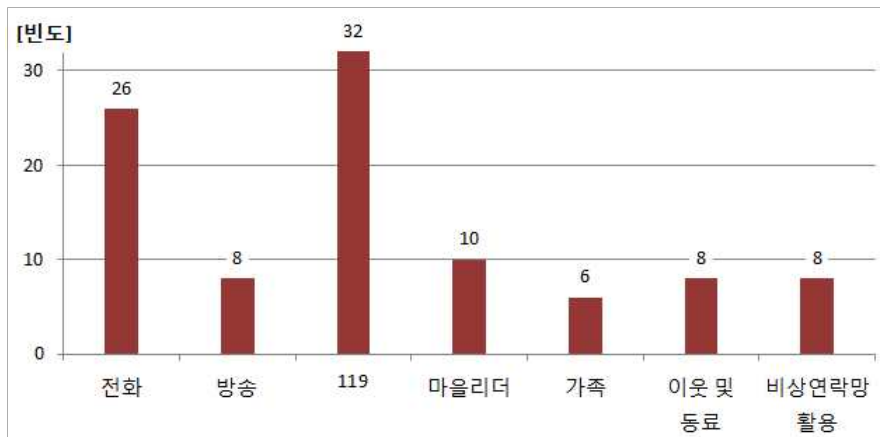
#### ⑥ 이용 후 평가 : 안전에 대한 평가

- 안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급식시설의 안전과 편리, 계단(경사로), 화장실, 출입구, 화재에 대비하는 시설이나 장치의 안전성에 대한 6개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98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6개의 평가항목 중 4점 이하는 <계단(경사로)의 사용 편리성>과 <화재에 대비하는 시설이나 장치의 안전성>의 2개 항목으로 나타남
  - 먼저 계단(경사로)에 대해서 살펴보면, 3.50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는데,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 시설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된 경사로를 보면 형식적으로 설치된 시설도 있음
  - 이는 공동급식시설은 내부공간의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외부계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3-58> 공동급식시설 안전에 대한 평가

- 급식시설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외부로 알리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98명(84.5%)의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비상시 연락 방법, 연락대상, 연락망의 활용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연락방법으로는 전화(이동통신 포함)와 방송(마을 방송시설), 연락대상으로는 119와 마을리더(마을이장, 부녀회장), 가족, 이웃 및 동료(같이 식사하던 친구 등)이 있으며, 비상연락망을 비치하여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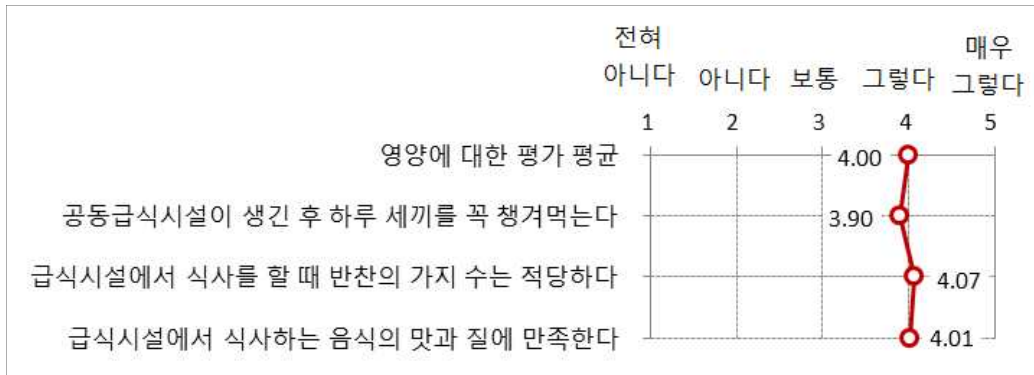


<그림 3-59> 공동급식시설 이용자의 비상시 대처 상황에 대한 서술형 분류

⑦ 이용 후 평가 : 영양에 대한 평가

- 영양에 대해서는 3개의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4.00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은 <공동급식시설이 생긴 후 하루 세끼를 꼭 챙겨 먹는다>로서 이는 이미 습관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급식시설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쉽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판단됨
- 그러나 급식시설에서의 <반찬의 가지 수>와 <음식의 맛과 질>에 대한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조금 더 높게 평가되었음
  - 이는 앞서 급식시설의 이용 전후에 대한 비교<본장의 1)절의 ③>에서 설명한 것과 식사횟수에는 변화는 없지만 반찬의 가지 수는 2가지 정도 증가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 보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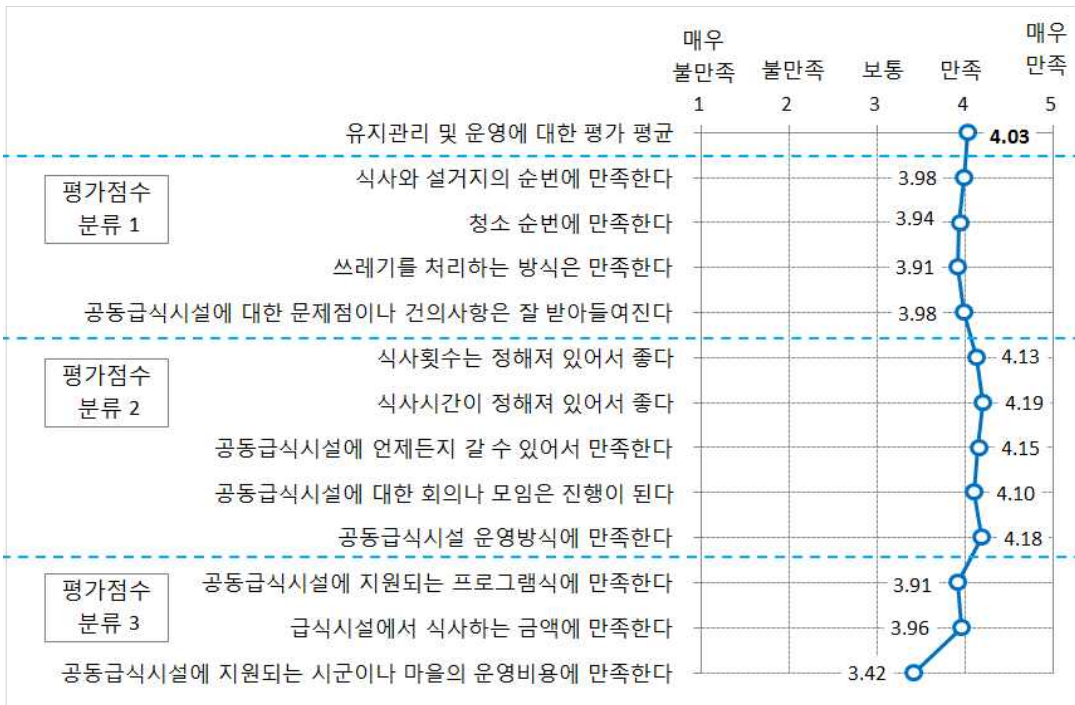




<그림 3-60> 공동급식시설 영양에 대한 평가

⑧ 이용 후 평가 :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

-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12개 항목을 5점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균은 4.03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
- 12개 평가항목을 내용과 평가점수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분류 1>의 내용은 이용자들의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며, <분류 2>는 급식시설의 규칙과 관련된 운영이며, <분류 3>은 운영비용과 지자체 프로그램 등 마을의 외부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임



<그림 3-61> 공동급식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

- 먼저 <분류 1>의 평가항목인 <식사와 설거지의 순서>, <청소순번>, <쓰레기 처리 방식>,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의 반영정도>는 전체 평균보다 낮게 평가되었음
  - 이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들은 급식시설 이용자들의 생활이나 행동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의결이나 진행에 대한 회의나 모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반면 <식사 횟수>, <식사 시간>, <급식시설의 이용일>은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회의나 모임의 진행정도>도 4점 이상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급식시설의 운영에 대한 규칙과 같은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방식에는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분류 3>의 평가항목은 <식사 금액>, <지원 프로그램>, <시군이나 마을의 운영비용>으로 전체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운영비용과 지자체 프로그램 등 마을의 외부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가 요구됨

**⑨ 이용 후 만족도 종합평가**

-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5점척도의 1문항으로 평가하였을 때는 4.29로 나타났으며, 이때 만족도는 83.7%로 높게 나타남
- 공동급식시설을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에서도 전체 평균은 4.06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64> 공동급식시설 만족도에 대한 영역별 평가

평가영역	입지 및 공간구성	정서 및 친밀감	안전	영양	유지관리 및 운영	전체 평균
평균점수	4.15	4.15	3.98	4.00	4.03	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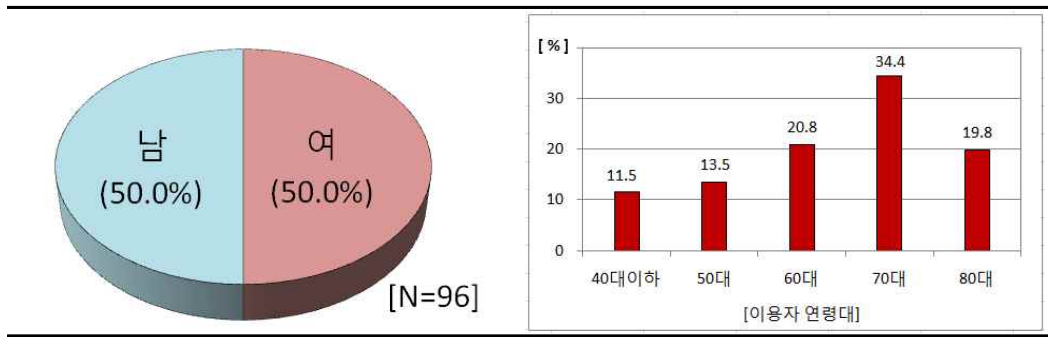
- 영역별 만족순위를 보면, 정서 및 친밀감과 입지 및 공간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지관리 및 운영, 영양, 안전 순으로 나타남
  - <입지 및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수납공간 및 창고>의 항목이 가장 낮은 만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급식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은 음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므로 이를 저장하는 공간도 보다 위생적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정서 및 친밀감>에 있어서는 마을주민들의 친밀도와 공동체 생활을 향상

-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안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계단(경사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이는 공동급식시설의 리모델링이 내부공간에 한정되어 진행하면서 외부환경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라 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시, 119와 마을이장에게 연락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나, 이외의 다른 대응방안이 요구된다고 보아짐
  - 영양 측면에서는 식사횟수는 습관화된 생활과 관련이 있으므로 공동급식시설의 이용 전후의 만족감에서는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음식의 맛과 질, 반찬의 가지 수에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급식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영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지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이용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이 낮았으나, 이 항목들이 전체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공동급식시설에 있어서 이용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회의나 모임에서 보다 철저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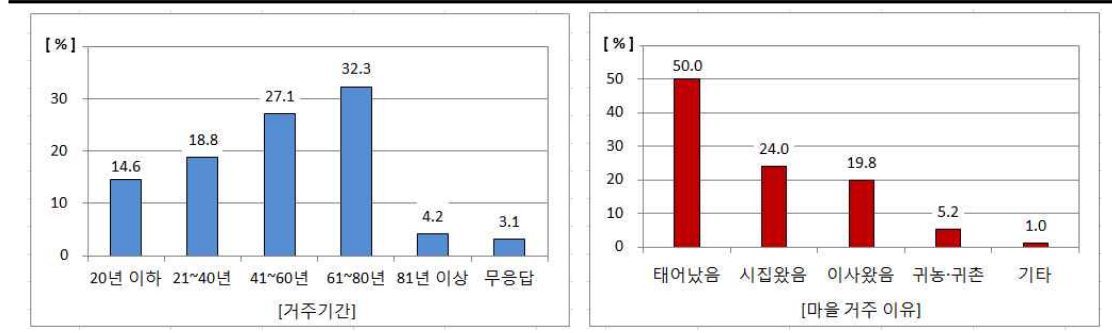
## 다. 작은목욕탕

### ① 이용자 개요

- 작은목욕탕의 이용자 성별을 보면, 남성과 여성 각각 50% 나타남
- 이용자의 연령은 70대가 가장 높은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60대, 7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40대도 11.5%로 나타남
  - 작은목욕탕 사업은 마을 구성원 전체가 복지 수혜의 대상이 되므로 연령대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설문 응답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이용자는 96세이며, 평균연령은 67.6세로 나타남
- 거주기간은 [61~80년]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41~60년]으로 41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약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1년, 가장 긴 경우는 92년으로 평균 거주기간은 50년으로 나타남
- 마을 거주 이유를 보면, 이 마을에서 태어난 경우가 50.0%로 가장 많고, <시집왔음>, <이사왔음>, <귀농·귀촌> 5.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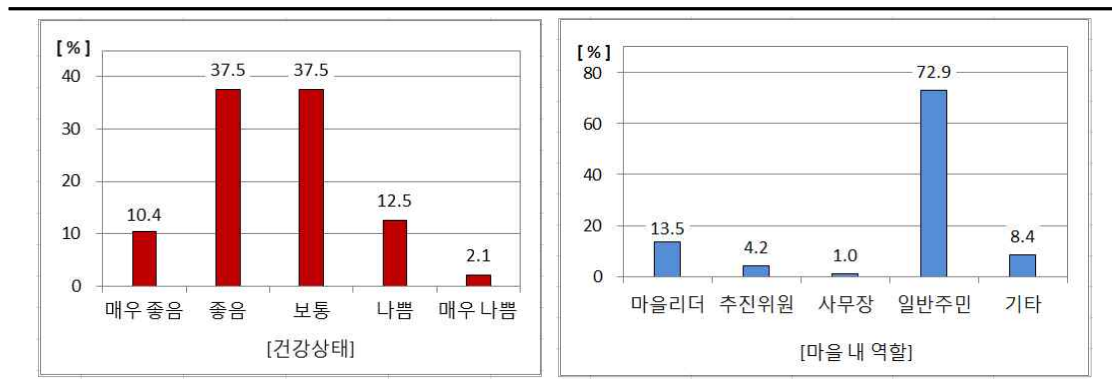


<그림 3-62> 작은목욕탕 이용자의 성별 및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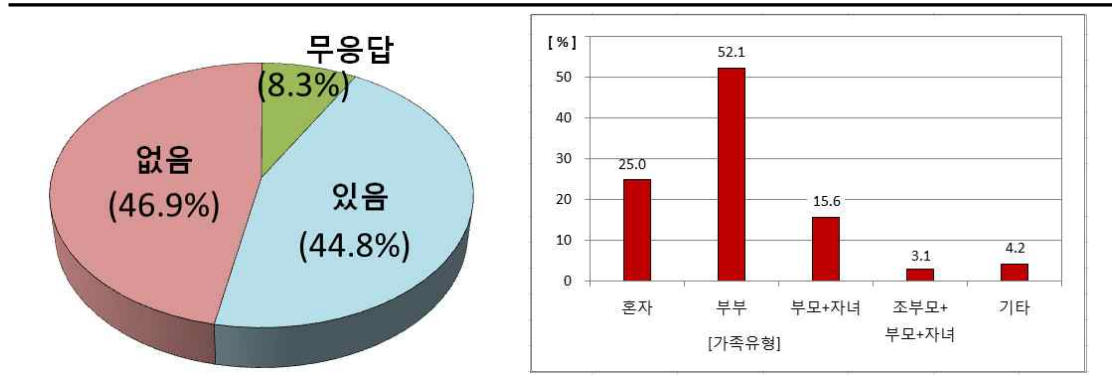
<그림 3-63> 작은목욕탕 이용자의 마을 거주기간 및 거주이유

- 건강상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좋음>과 <보통>이 각각 37.5%로 가장 많고, 다음은 <나쁨>이 12.5%로 나타났음. <좋음>, <보통>, <매우 좋음>이 약 86%로 이용자들의 건강은 보통이상으로 나타남
- 본 설문 응답자들의 마을 내 역할을 살펴보면,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위원장 등과 같은 마을리더인 경우가 18.7%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일반주민인 경우가 72.9%로 조사되었음



<그림 3-64> 작은목욕탕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마을 내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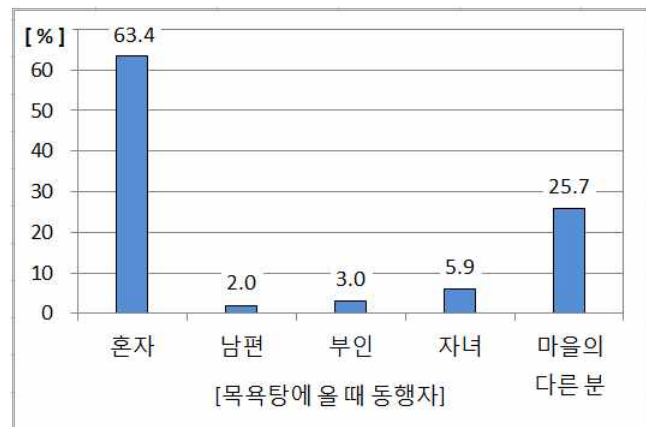
- 직업의 유무를 보면, 있음과 없음이 서로 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가족유형은 부부가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혼자라고 응답한 경우도 25%로 나타났음



<그림 3-65> 작은목욕탕 이용자의 직업 유무 및 거주하는 가족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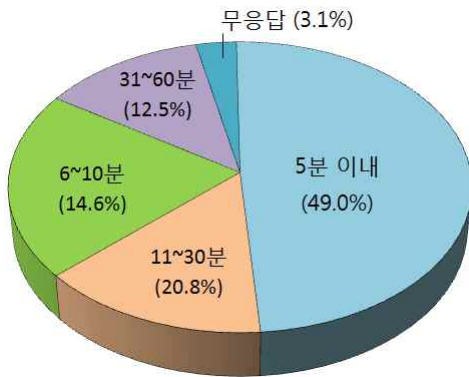
- 목욕탕에 올 때 누구와 함께 오는가에 대한 응답을 보면, 혼자 오는 경우가 6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마을의 다른 분과 온다는 응답이 25.7%를 차지하고 있음

-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는 낮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 목욕탕의 욕탕 시설이 1개로서 요일이나 날짜별로 남녀사용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가족과 관계없이 성별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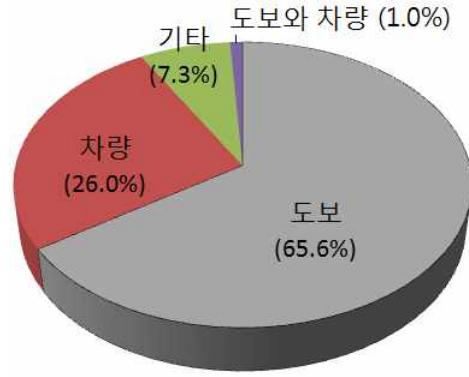


<그림 3-66> 작은목욕탕 이용 시 동행자

- 목욕탕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은 1분에서 60분까지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은 약 14.7분으로 이용자의 50%정도가 5분 거리 정도에서 생활하고 있음
- 목욕탕까지의 이동수단은 도보가 65.6%로 나타났으며, 차량도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목욕탕은 마을단위가 아니라 면소재지 마을에 위치한 경우도 있으므로 차량 비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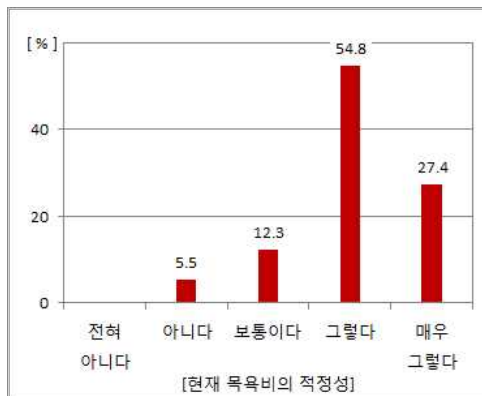
<그림 3-67> 작은목욕탕까지 소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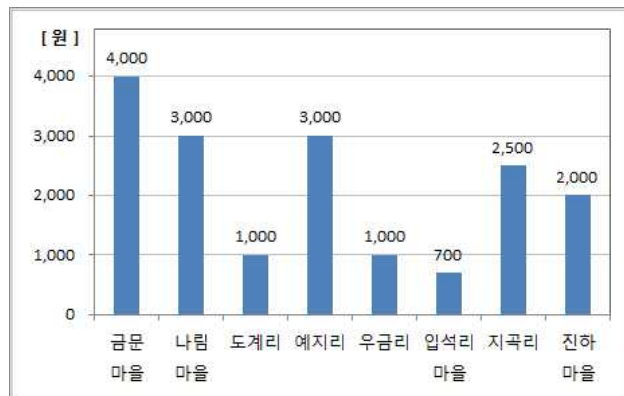
<그림 3-68> 작은목욕탕까지 이동 수단

## ② 운영현황

- 작은목욕탕의 목욕비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현재의 목욕비가 적정하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가 가장 높은 54.8%, <매우 그렇다>가 27.4%로서 현재의 목욕비가 적정하다는 평가는 82%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니다>는 5.5%로 나타났음
  -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용자가 제시한 목욕비를 살펴보면, 도계리 3인이 2,500원(현재 1,000원), 예지리 1인이 2,000원(현재 3,000원)을 적정 목욕비로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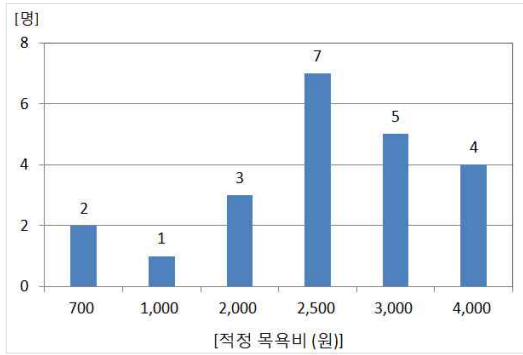


<그림 3-69> 현재 목욕비의 적정성



<그림 3-70> 마을별 목욕비 비교

- 제안된 적정 목욕비에 대해서 마을별로 살펴보면, <도계리>와 <입석리마을>은 현재의 목욕비보다 더 높은 금액이 제시되었으며, 역으로 <예지리>는 현재보다 낮은 금액, 금문마을과 지곡리는 현재의 금액과 동일하게 제시됨
  - 제안된 적정 목욕비는 700원에서 4,000원까지이며, 평균은 2,586원으로 현재의 목욕비보다 많은 금액이 제시되어, 비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위생적인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을명	현재 목욕비 (원)	제안된 적정 목욕비 평균(원)
금문마을	4,000	4,000 (■)
도계리	1,000	2,687 (▲)
예지리	3,000	2,750 (▼)
입석리마을	700	800 (▲)
지곡리	2,500	2,500 (■)
평균	2,150	2,586 (▲)

<그림 3-71> 적정목욕비 및 마을별 적정목욕비 제안

③ 이용 후 평가 :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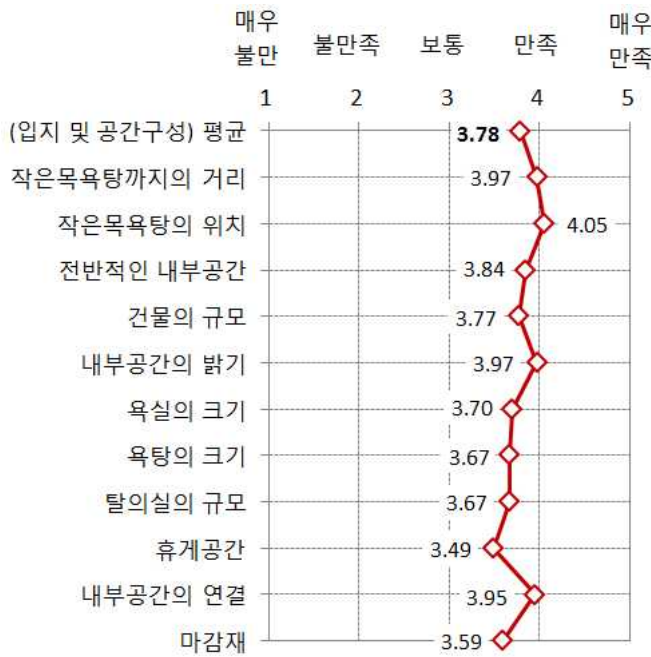
- 작은목욕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5점척도의 1문항으로 평가하였을 때는 4.16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만족율은 85.4%로 높게 나타남

<표 3-65> 작은목욕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비율

구분	전반적 만족도		합계	
	빈도	만족율(%)	빈도	%
매우 만족	32	33.5	82	85.4
대체로 만족	50	52.1		
보통	11	11.5	11	11.5
불만족	3	3.1	3	3.1
매우 불만족	0	0.0		
계	96	100.0	96	100.0

④ 이용 후 평가 : 입지 및 공간구성 만족도 평가

- 공동급식시설의 입지 및 공간구성의 11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은 3.78로 나타나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음
- 목욕탕의 위치는 4.05로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목욕탕까지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
  - 목욕탕까지 거리는 적당한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의 평균 소요시간은 53.7분으로 나타났으며, [보통]~[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17.7분~11.6분으로 나타났음
  - 입지적인 측면에서 위치는 만족하나 거리는 만족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먼단위에 위치한 목욕탕의 영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됨



<비닐시트 바닥마감재>



<화려한 무늬의 벽마감재>

<그림 3-72> 작은목욕탕 입지 및 공간구성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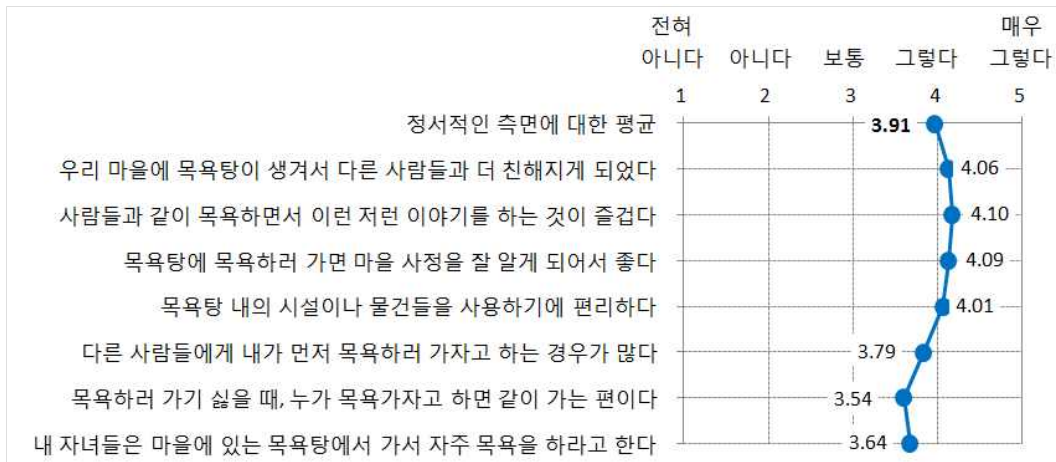
- 목욕탕의 전반적인 내부공간의 만족도는 3.84로 <목욕탕 내의 욕실, 욕탕,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이 서로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내부공간의 연결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4점 이하로 평가되었음
- 가장 낮은 만족을 보이는 항목은 <휴게공간>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마감재>로 나타남
  - 목욕탕 내부의 휴게공간 바닥마감재를 물기가 있을 때 미끄러울 수 있는 비닐시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시각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현란한 무늬와 색상의 벽지를 벽마감재로 사용한 사례가 조사되었음

⑤ 이용 후 평가 : 정서 및 친밀감에 대한 평가

- 목욕탕 이용자들의 정서 및 친밀감에 대한 7개 문항을 5점척도로 평가하여, 평균은 3.91로 나타나났음
- <만족>의 4점을 기준으로 볼 때, 평가항목은 2가지의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음
  - 4점 이상 평가된 항목들은 <목욕탕이 생겨서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목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겁다>, <목욕탕을 가면 마을사정을 잘 알게 되어 좋다>, <목욕탕의 시설이나 물건들은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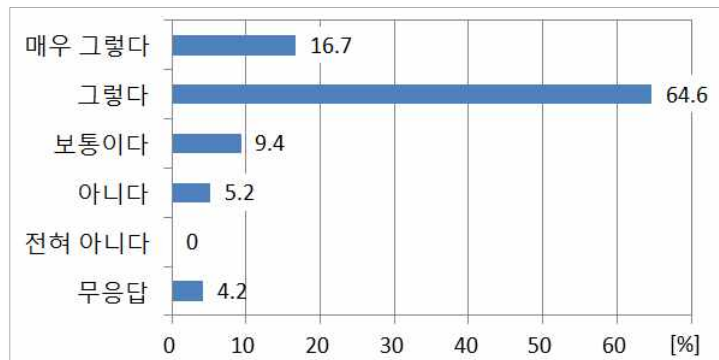
- 와 같은 항목으로서 사람들과의 친밀성이나 공동체적인 성격들을 포함하는 사항은 4점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음
-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은 <목욕 가기>를 먼저 권유하거나 <싫어도 누가 목욕을 같이 가자하면 가는 편이다>, <자녀들은 자주 목욕을 권유한다>의 항목들로서, 이 항목들의 내용은 4점 이상 평가된 항목들보다는 개인적인 영역임
- 즉, 정서 및 친밀감 측면에 있어서는 친밀감과 공동체적인 면에서는 만족하고 있는 반면 목욕이라는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서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만족감에 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
- 본 시범사업에 있어서 작은목욕탕 사업은 농촌지역의 고령자 뿐만 아니라 마을의 구성원 모두가 수혜의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마을주민들과의 친밀감과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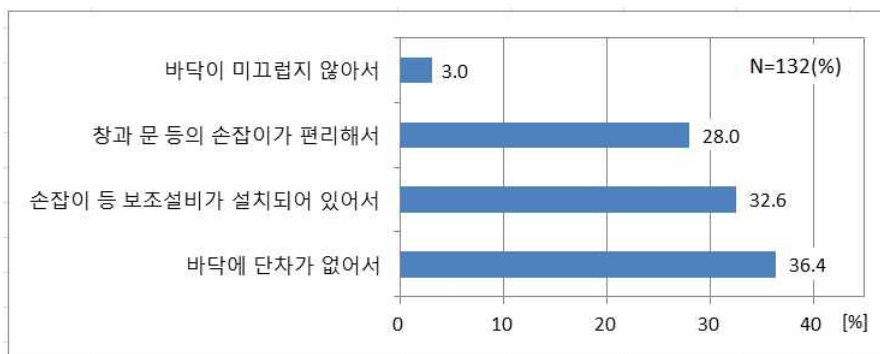
<그림 3-73> 작은목욕탕 정서 및 친밀감 평가

⑥ 이용 후 평가 : 안전에 대한 평가

- 목욕탕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1개의 문항을 5점척도를 기준 평가 할 때, 평균은 3.97로 나타났으며, 안전에 있어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응답한 경우는 76명으로 약 80.3%의 이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음
  - 그러나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5.2%로 조사되었음
  - 「전혀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음(무응답, 4명-4.2%)
- <목욕탕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한 선택형 질문에서 복수응답을 보면, 132개의 응답 중, <바닥에 단차가 없어서>가 36.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손잡이 등 보조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가 32.6%, <창과 문 등의 손잡이가 편리해서>가 28.0%로 나타났음



<그림 3-74> 작은목욕탕 안전에 대한 평가



<그림 3-75> 작은목욕탕 이용시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

- 목욕탕을 이용할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사항에 대한 서술형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4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욕탕 안으로 들어갈 때 계단바닥이 미끄러움 - <사례 1>
    - 사용초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계단바닥을 인조카펫으로 재마감
  - 욕탕안으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단차가 높거나 계단이 지나치게 많음
    - <사례 1>은 계단이 지나치게 많으며, <사례 2>는 단차가 높음
  - 휴게실의 의자가 등받이가 없는 좁은 형태 - <사례 3>
    -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 이러한 형태의 의자는 오히려 불안함
  - 출입문이 무겁고 미는 부분에 손과 발이 끼는 위험을 호소함 - <사례 4>



사례 1. 바닥 미끄럽고 계단수 많음



사례 2. 단위 높이가 너무 높음



사례 3. 등받이 없는 좁은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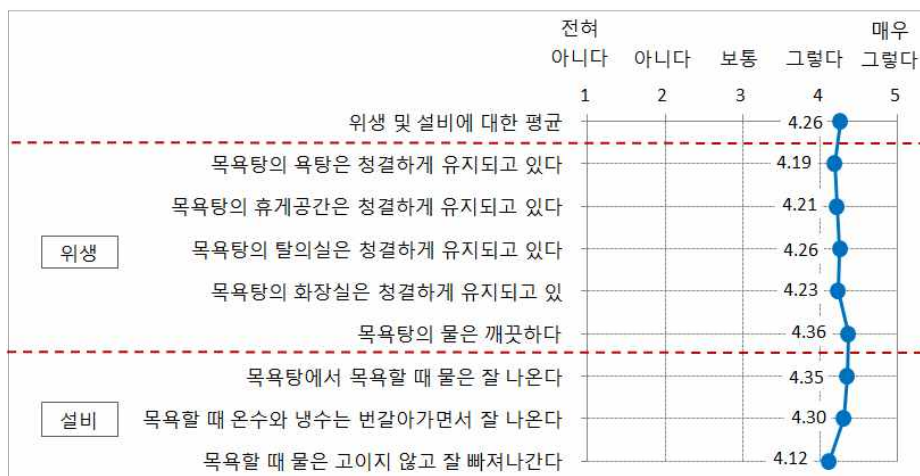


사례 4. 무거운 출입문

<그림 3-76> 작은목욕탕에서 안전하지 않은 사례(작은목욕탕)

⑦ 이용 후 평가 : 위생 및 설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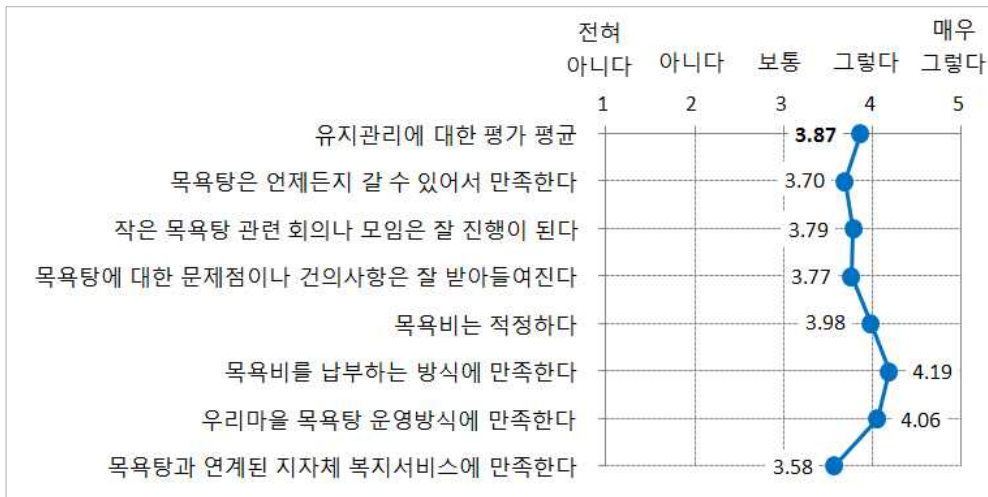
- 목욕탕의 위생 및 설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위생적 측면에서는 5개 항목, 설비적 측면에서는 3개 항목으로 총 8개 항목을 5점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균은 4.26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목욕탕의 주요 공간인 욕탕, 휴게공간, 탈의실, 화장실에 대한 청결도와 수질에 대한 항목으로 모두 만족하고 있으며, 설비적인 측면에도 급배수와 냉·온수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
- 본 시범사업이 '14년에 시작되었으므로, 조사대상의 목욕탕들 중에서 가장 일찍 개장한 목욕탕이라 할지라도 '14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운영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함. 따라서 위생 및 설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그림 3-77> 작은목욕탕 위생 및 설비에 대한 평가

⑧ 이용 후 평가 :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

- 목욕탕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7개 항목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균은 3.87로 보통보다는 높게 나타났음
- 4점 이하의 항목들을 보면, 먼저 <목욕탕을 언제든지 갈 수 있어서 만족한다>는 항목에 있어서는 본 사업에서의 목욕탕들은 항상 개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 2회 개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이라 판단됨
  - 그리고 이용자의 대부분이 일반 주민이며 면소재지 마을에 목욕탕이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관련회의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목욕탕과 연계된 지자체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낮게 평가된 것이라 판단됨
- 그러나 목욕비의 적정성과 운영방식에서는 만족하다는 평가는 이용자의 관점에서는 일정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됨



<그림 3-78> 작은목욕탕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

⑨ 이용 후 만족도 종합평가

- 작은목욕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5점척도의 1문항으로 평가하였을 때는 4.16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만족도는 85.4%로 높게 나타남
- 작은목욕탕을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에서도 전체평균은 3.96으로 나타났음

&lt;표 3-66&gt; 작은목욕탕 만족도에 대한 영역별 평가

평가영역	입지 및 공간구성	정서 및 친밀감	안전	위생 및 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	전체 평균
평균점수	3.78	3.91	3.97	4.26	3.87	3.96

- 영역별 만족순위를 보면, 위생 및 설비만 4점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는 안전, 정서 및 친밀감, 유지관리 및 운영, 그리고 입지 및 공간구성 순으로 낮게 나타났음
  - <입지 및 공간구성>의 목욕탕의 위치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마감재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음. 가장 낮은 만족이 나타난 <마감재>항목을 보면, 물기가 있을 때 미끄러울 수 있는 비닐시트를 탈의실의 바닥마감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시각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험란한 무늬와 색상의 벽지를 벽마감재로 사용한 경우가 있기도 하였음
  - <정서 친밀감>에 대한 평균은 3.91로 나타났는데, <만족>의 4점을 기준으로 볼 때, 친밀감, 공동체적인 면에서는 4점 이상으로 만족하는 반면 <목욕가기를 권유하거나 권유받는> 것과 같은 항목에서는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목욕생활은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라 여겨짐
  - <안전>에 대한 평가는 3.97로 나타났으며,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면, 욕탕 안으로 들어갈 때 계단바닥이 미끄러움, 욕탕 안으로 들어가는데 단차가 높거나 계단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휴게실에 등받이가 없는 좁은 형태의 의자, 출입문이 무겁고 미는 부분에 손과 발이 끼는 위험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타났음
  - 목욕탕의 <위생 및 설비>에 대해서는 4.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본 조사대상의 목욕탕들이 '14년과 '15년 시범사업에서 선정되어 개장 후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위생 및 설비적인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유지관리 및 운영>은 평균 3.87로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으나, 목욕비의 적정성과 납부방식, 목욕탕의 운영방식의 항목에서는 만족하고 있음
- 목욕비는 고령자 기준, 700원에서 4,000원까지이며, 평균은 2,150원으로 나타남. 마을별로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목욕비에 차등을 두어 운영되고 있기도 하는데, 이는 목욕비를 통해서 마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복지를 스스로 실현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음
  - 적정 목욕비의 제안을 보면, 현재 목욕비의 평균보다 더 많은 2,586원이 제시되어, 비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위생적인 생활을 요구하고 있음

### (3) 이용 및 거주 전후 비교

#### ① 공동생활홈

- 공동생활홈에서 <매일 숙박한다>는 응답이 56.2%로 나타났으며, 약 83% 이상이 <주 2-3회> 이상 공동생활홈에서 숙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1회>, 혹은 <아직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응답도 13% 정도로 나타났음.
- <매일 숙박>의 경우, 공동생활홈의 정착기간을 살펴보면, '14년도에 선정된 경우는 36명, '15년 선정된 경우는 14명으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농촌지역의 고령자는 도시와 달리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공동생활홈에 정착 하는데 일정정도의 시간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표 3-67> 공동생활홈에서의 숙박 횟수

횟수	N	%
매일	50	56.2
주 4~5회	13	14.6
주 2~3회	15	16.9
주 1회	4	4.5
아직 잠은 자지 않음	8	9.0
기타	3	3.4
합계	89	100.0

- 취침시간을 제외한 공동생활홈에서의 휴식 및 활동시간은 5시간 이상이 78.7%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3시간 이상을 포함하면 92%이상으로 나타났음. 비록 공동생활홈에서 숙박은 하지 않더라도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음

<표 3-68> 취침시간을 제외한 공동생활홈에서의 휴식 및 활동시간

시간	N	%
1시간 미만	1	1.1
1~3시간	2	2.2
3~5시간	12	13.5
5시간 이상	70	78.7
기타	4	4.5
합계	89	100

- 공동생활홈에서의 생활 전·후를 비교하면,
- 공동생활홈의 입주 후 식사, 목욕, 청소, 세탁 횟수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횟수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식사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반면 목욕, 청소, 세탁의 경우는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이는 목욕, 청소, 세탁과 같은 생활은 이미 습관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거주공간이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통이다]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목욕, 청소, 세탁에서 횟수가 증가한 경우의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2개의 응답만을 비교해 보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 공동생활홈 이전보다는 위생적인 면에서 개선이 되었다고 거주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짐
  - 식사와 청소 방법은 순번을 정하여 하는 것보다는 서로 공동으로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나, 주로 연령이 낮은 사람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음식습씨가 좋은 사람 혹은 건강이 가장 좋은 사람이 한다는 응답도 있음

<표 3-69> 공동생활홈 입주 후 식사, 목욕, 청소, 세탁 횟수 변화

구 분	입주 후 삼시 세끼를 꼭 챙겨 먹는다		입주 후 목욕 횟수가 늘었다		입주 후 청소 횟수가 늘었다		입주 후 세탁 횟수가 늘었다		계	
	N	%	N	%	N	%	N	%	N	%
전혀 아니다	0	0.0	2	3.5	1	1.3	1	1.9	4	1.5
아니다	1	1.2	1	1.8	6	7.7	2	3.8	10	3.7
보통이다	5	6.0	<b>24</b>	<b>42.1</b>	<b>33</b>	<b>42.3</b>	<b>24</b>	<b>46.2</b>	86	31.7
그렇다	30	35.7	9	15.8	17	21.8	5	9.6	61	22.5
매우 그렇다	<b>48</b>	<b>57.1</b>	21	36.8	21	26.9	20	38.5	<b>110</b>	<b>40.6</b>
계	84	100.0	57	100.0	78	100.0	52	100.0	271	100.0

- 공동생활홈에서 거주 후, 식사, 목욕, 청소, 세탁에 대하여 구체적인 변화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증가하였음
- 특히 식사횟수, 겨울철 목욕횟수, 청소횟수는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는데, 식사와 청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공동의 역할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인터뷰 결과, 공동생활을 하므로 식사준비와 청소를 서로 돌아가면서 하여, 실제 본인이 하는 횟수는 감소하게 되어 편리해졌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였음. 그러나 연령이 가장 낮은 거주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는 좀 피곤하다는 의견도 나타나 공동생활에 대한 서로의 관계나 친밀감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청소에 있어서 뚜렷한 증가를 보이는 것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므로 혼자서 하는 횟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횟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청소에 대해서는 횟수의 변화를 검토하기 보다는 가사노동의 절감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 판단됨. 인터뷰 결과 “집이 깨끗해서 청소가 수월해져서 좋다”, “청소기가 있어서 편하다” 등과 같이 이전 주택과 비교할 때 청소를 하는데 편리해진 점을 더 강조하고 있음
- 여름철 목욕횟수보다 겨울철 목욕횟수의 변화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는데, 여름철에는 들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공동생활홈 거주 이전이나 이후에 여전히 본인의 자택에서 목욕을 하는데 경우가 많고, 여름철에는 온수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거주 이전에도 원할 때는 언제든지 목욕이 가능하였으므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빨래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된 횟수가 주 0.02회로 매우 미비한 변화로서, 빨래를 본인의 주택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됨
- 반면 겨울철 목욕횟수의 증가는 공동생활홈 거주 이전과 이후에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본인의 주택에서 온수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동생활홈에서는 온수사용이 가능하여 변화된 것이라 볼 수 있음

<표 3-70> 공동생활홈 입주 전후 식사, 목욕, 청소, 세탁 횟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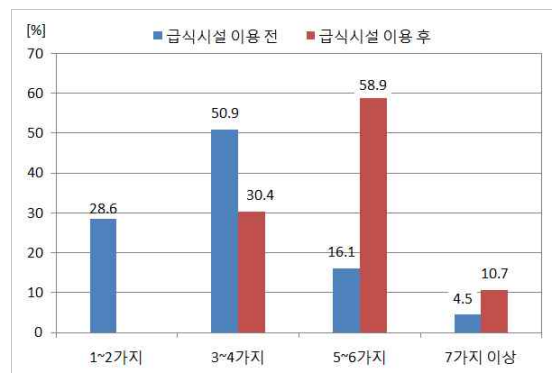
구분		결과	변화	
식사	이용 전 식사횟수(평균)	2.7회/일	0.2회/일 증가(▲)	
	이용 후 식사횟수(평균)	2.9회/일		
목욕	여름	이용 전 목욕 횟수(평균)	13.2회/월	0.1회/월 증가(▲)
		이용 후 목욕 횟수(평균)	13.3회/월	
	겨울	이용 전 목욕 횟수(평균)	3.8회/월	1.0회/월 증가(▲)
		이용 후 목욕 횟수(평균)	4.8회/월	
청소	이용 전 청소횟수(평균)	3.7회/주	0.7회/주 증가(▲)	
	이용 후 청소횟수(평균)	4.4회/주		
세탁	이용 전 빨래횟수(평균)	2.51회/주	0.02회/주 증가(▲)	
	이용 후 빨래횟수(평균)	2.49회/주		



- 공동생활홈 거주 이전과 이후의 식사, 목욕, 청소, 세탁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면, 이미 형성된 생활습관인 행위가 공동생활홈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공동생활홈에 거주하면서도 본인의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서는 뚜렷하게 증가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본 시범사업을 시행한지는 2년이며, 공동생활홈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생활홈에서 거주하면서 영양 및 위생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판단함

## ② 공동급식시설

- 공동급식시설의 이용 전후를 비교하면,
  - 식사 횟수의 경우, 1일 평균 식사횟수는 2.7회로서 급식시설 이용 전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이는 식사는 이미 형성된 습관이므로 급식시설의 유무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 판단됨
  - 그러나 반찬의 가지 수에서는 급식시설 이용 전후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급식시설 이용 전에는 1회당 3.4가지에서 이용 후에는 1회당 5.4가지로 2가지가 증가함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식시설 이용 전에는 반찬수가 <3~4가지>가 가장 많은 51%를 차지한 반면, 급식시설 이용 후에는 반찬 수가 <5~6가지>의 경우가 약 59%정도로 나타남
  - <1~2가지>의 경우는 급식시설 이용 전에는 약 29%로 조사되었으나, 시설 이용 후에는 나타나지 않아, 반찬의 가지 수는 급식시설 이용 전후에 뚜렷한 변화를 보임
- 식사비용의 변화는 이용 전 월 평균 14.8만원에서 이용 후 월 평균 11.6만원으로 3.2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동급식시설의 이용으로 농촌지역 고령자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경제적인 측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3-79> 공동급식시설 이용 전후 반찬 가지 수

<표 3-71> 공동급식시설 이용 전후의 식사, 반찬, 비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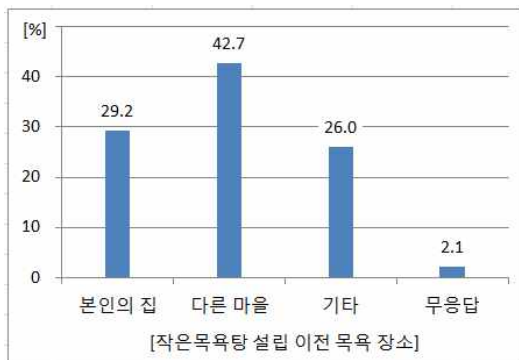
구분		결과	변화
식 사	이용 전 식사횟수(평균)	2.7회/일	0회/일 변화없음
	이용 후 식사횟수(평균)	2.7회/일	
반 찬	이용 전 반찬 가지 수(평균)	3.4가지/회	2.0가지/회 증가
	이용 후 반찬 가지 수(평균)	5.4가지/회	
비 용	이용 전 식사비용(평균)	14.8만원/월	3.2만원/월 감소
	이용 후 식사비용(평균)	11.6만원/월	

③ 작은목욕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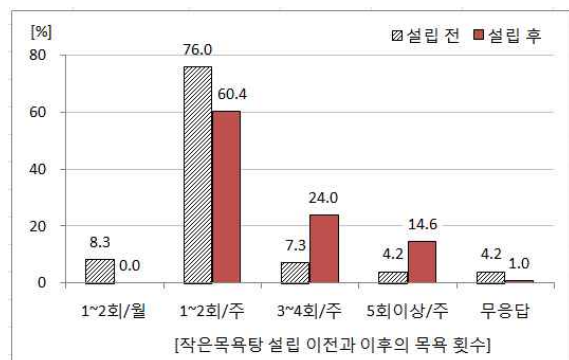
○ 마을에 목욕탕이 생기기 이전의 목욕방법에 대한 응답을 보면, <다른 마을에서 한다>가 가장 많은 3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집에서 한다>가 33.8%로 나타났으며, <기타>도 31.3%를 차지하고 있음

- 목욕탕의 설립 이전과 이후의 목욕 횟수를 비교해 보면, 설립 이전보다 10.8% 감소한 반면, <3~4회/주>와 <5회 이상/주>이 설립이전보다 20.4% 증가하였으며, 설립 이후에는 <1~2회/월>이 나타나지 않음
- 비록 <1~2회/주>가 목욕탕 설립 이후에 감소하였지만, <1~2회/월>의 감소와 <3~4회/주>와 <5회 이상/주>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목욕횟수는 증가하였음

○ <1~2회/월>를 주당으로 환산하여 목욕탕 설립 전후의 목욕횟수를 살펴보면, 평균 <1.41회/주>에서 <1.99회/주>로 변화하여 <0.58회/주>가 증가하였음



<그림 3-80> 작은목욕탕 이용 전 목욕 장소



<그림 3-81> 작은목욕탕 이용 후 목욕 횟수

#### (4) 소결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인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5점척도의 1문항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 4.31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평균 86.7%로 나타났음

<표 3-72>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만족도 평가

시설유형	전반적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평균	만족율(%)
공동생활홈	4.49	91.0
공동급식시설	4.29	83.7
작은목욕탕	4.16	85.4
평균	4.31	86.7

- 이를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에서도 전체 평균은 4.09로 나타나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73> 공동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만족도에 대한 영역별 평가

시설유형	입지 및 공간구성	정서 및 친밀감	안전	위생 및 영양 위생 및 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	전체 평균
공동생활홈	4.32	4.53	4.15	4.39	3.92	4.26
공동급식시설	4.15	4.15	3.98	4.00	4.03	4.06
작은목욕탕	3.78	3.91	3.97	4.26	3.87	3.96
평균	4.08	4.20	4.03	4.22	3.94	4.09

-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에서는 정서 및 친밀감 측면이 가장 만족도가 높고,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측면에서는 중간점수인 3점은 넘으나 만족점수인 4점 이하로 평가되었음
- 유지관리 및 운영부분은 이용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낮게 나타난 이유는 공동시설의 운영을 마을리더들이 주체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됨. 유지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짐
- 공동급식시설의 경우 반찬의 가지 수와 급식시설에서의 식사하는 음식의 맛과 질에 만족하나, 4점 이하의 평균을 보인 이유는 급식시설이 조성된 이후

- 하루 세끼를 꼭 챙겨먹는다에서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는 하루 식사의 수는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이 이미 형성된 식습관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급식시설에의 영양적인 측면은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공동급식시설에 있어서 <수납공간 및 창고>에서 낮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데, 급식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은 음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저장하는 공간도 보다 위생적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작은목욕탕의 입지 및 공간구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휴게공간에 대한 만족이 낮게 나타남
  - 목욕비는 마을별로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운영되고 있음
  - 적정 목욕비의 제안을 보면, 현재 목욕비의 평균보다 더 많은 요금이 제시되어, 비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위생적인 생활을 요구하고 있음이 파악됨
- 공동생활홈에서 거주 후, 식사, 목욕, 청소, 세탁에 대하여 구체적인 변화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증가가 나타났음
- 특히 식사횟수, 겨울철 목욕횟수, 청소횟수는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는데, 식사와 청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공동의 역할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공동생활홈 거주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변화를 보면, 이미 형성된 생활습관인 이러한 행위가 공동생활홈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공동생활홈에 거주하면서도 본인의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서는 뚜렷하게 증가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본 시범사업을 시행한지는 2년이며, 공동생활홈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완전히 정착하기 까지는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그래도 공동생활홈에서 거주하면서 영양 및 위생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판단함
- 공동급식시설의 이용 전후를 비교하면, 반찬가지수와 식사비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
- 농촌지역 마을에서는 본 시범사업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공동식사가 이루어졌지만 설비, 배수, 공간 등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있었다. 따라서 본 시범사업은 일차적으로 급식시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이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평가치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식사방식, 상차림방식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행해지던 식사공간이 정부의 지원으로 위생적이면서도 마을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

- 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찬의 가지 수에서는 급식시설 이용 전에는 1회당 3.4가지에서 이용 후에는 1회당 5.4가지로 2가지가 증가함
  - 식사비용의 변화는 이용 전 월 평균 14.8만원에서 이용 후 월 평균 11.6만원으로 3.2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동급식시설 이용 후에 반찬 가지 수의 증가, 음식의 맛과 질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서 볼 때, 급식시설이 주민들의 영양적인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됨. 물론 영양에는 식단구성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농촌에서 식단의 구성까지 면밀하게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찬 가지 수의 증가는 간접적으로 영양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작은목욕탕의 이용 전후를 비교해 보면, 마을에 목욕탕이 생기기 이전에는 다른 마을에서 목욕을 하는 경우가 35.1%를 차지하고 있어, 마을 내에 목욕탕 설립의 중요성이 나타남
- 목욕탕의 설립 이전과 이후의 목욕 횟수를 비교해 보면, 평균 <1.41회/주>에서 <1.99회/주>로 변화하여 <0.58회/주>가 증가하였음
  - 목욕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제안된 적정 목욕비는 700원에서 4,000원까지이며, 평균은 2,586원으로 현재의 목욕비보다 많은 금액이 제시되어, 비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위생적인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제4장 시범사업 평가 및 성과 제고 방안

---

1. 시범사업 성과분석
2.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향 설정
3. 사후관리 방안
4. 연계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 방안





## 제4장 시범사업 평가 및 성과 제고 방안

### 1. 시범사업 성과분석

#### (1) 시범사업의 성과

- ①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에서 실질적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14년~'15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1개월 이상 운영된 총 53개소의 고령자 공동시설의 이용자 총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1문항으로 응답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으며, 만족도는 평균 86.7%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영역별로 만족도의 평균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시범사업은 농촌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공동생활홈의 경우, 면적에 비해 거주자가 초과한 경우가 37%나타났는데, 이는 역으로 공동생활홈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라 판단됨
  - 이용자의 특성, 지역, 시설유형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인의 마을에 이러한 시설이 새롭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4-1>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종합만족도

시설명	전반적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 평균	시설 수	설문 및 인터뷰 수
	만족도	만족율(%)			
공동생활홈	4.49	91.0	4.26	25	89
공동급식시설	4.29	83.7	4.06	18	135
작은목욕탕	4.16	85.4	3.96	10	96
평균 / 합계	4.31	86.7	4.09	53	320

- 공동생활홈 입주 후 식사, 목욕, 청소, 세탁 횟수에서 전체적으로 '횟수가 증가'하여, 영양과 위생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특히 정서 및 친밀감 측면에서 높은 만족감이 나타났음
- 공동급식시설 이용으로 반찬 가지 수가 평균 3~4가지에서 5~6가지로 늘었으며, 개인별 월 평균 식사비용은 148천원에서 116천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영양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여하였음

- 마을에 목욕탕이 설치됨으로 인해 목욕횟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 작은목욕탕의 경우에는 비용을 좀 더 지출하더라도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보장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나타남
  - 마을리더가 운영 및 관리를 함으로서 고령자, 어린이, 일반 성인들의 목욕비를 차등으로 부여하고,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여 현장밀착형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음
  
- ② 농촌지역 주거복지의 새로운 유형과 방향 제시
  - 현재 농촌지역에 나타난 문제점은 고령화, 과소화, 열악한 정주환경, 유희시설의 증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본 시범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집중화형식의 하드웨어를 제시하였음
    - 특히 공동생활홈은 시범사업에서 제시한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이라는 3가지 유형을 가지고 마을의 특성에 따라 변화된 평면모델이 발견됨
    - 고령자 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유형, 남녀가 거주할 수 있는 유형, 그리고 다세대 혹은 다문화가정이 거주할 수 있는 평면이 비록 극소수이지만 나타났음. 이는 선진 사례에서 제시하는 다세대, 다계층, 다연령 지향의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의 성비 불균형의 현실에서 의의가 있음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은 지역의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한 리더들이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밀착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 ③ 각 지자체에서 농촌고령자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함
  - 시범사업 추진 이전인 '13년 12월 기준 자료<sup>31)</sup>에 의하면 전국의 공동생활홈은 684개소로서 대부분이 지자체 단체장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공동거주형의 공동생활홈이 조성되었으나, 실제 활용상에서는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공동급식시설은 시범사업 추진 이전에 전국에 326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농번기 또는 겨울철에 한정하여 기존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활용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시설적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상황이었음
    - 작은목욕탕은 전국에 14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 중 122개소가 전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전국적으로는 시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여건이었음
    - 함평군의 작은목욕탕의 경우는 목욕탕 사업비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복지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예산을 더 지원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음

31) 김승근 외,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3.12, pp.61~81.

- 본 시범사업에서 국비와 더불어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면서 고령자 공동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있어, 향후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농촌고령자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 판단됨
- ④ 마을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주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는데 기여함
-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이 마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시범사업은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유휴건물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농촌건축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기여함
- 현장방문시 마을에서 방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마을 리더나 주민들의 자부심이 더 높게 나타나 지역애착심과 자긍심이 높아지고, 향후에도 마을의 유휴건물이나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주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요소로 작용함
- ⑤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야가 다른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본 시범사업은 건축, 행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였음. 시범사업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지자체에서는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관점이 내재되어 있는 전문가들의 협업시스템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협업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제시했다 할 수 있음

## (2) 운영관리측면에서 성과 및 문제점 도출

-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공동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함에 따라, 농촌복지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제고됨
  - 특히 공동생활홈의 경우, 마을에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홈이 생겨나면서 마을 주민 모두가 사회적 부양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됨
  - 작은목욕탕의 경우, 마을에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게 목욕비를 할인 하는 등, 마을단위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복지를 마을 스스로 찾아내어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공동생활홈은 개념의 이해가 부족하여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주민들은 사업의 취지나 목적보다 그 시설을 자주 찾고 많이 이용되는 것을 잘 운영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이에 따라 운영방식과 운영비의 활용 등에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즉, 공동생활홈이 마을의 공동시설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과 유사하게 이용 또는 운영되는 경우가 있음
  - 마을리더의 역할에 따라 공동생활홈의 운영이 결정되기 때문에, 마을리더와의 관계로 인해 거주자들이 의견 등을 개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고령자 수용시설로의 오해, 익숙하지 않은 주거환경, 소수만 혜택 받는 심리적 부담, 자녀에 대한 눈치,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 등으로 입주를 기피하는 경향도 일부 발생하고 있음
  
- 공동급식시설의 경우,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공동부양을 위해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지원사업으로 공동급식시설이 조성되거나 개선되면서 마을의 공동시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이용자가 마을 전체로 확대됨
  - 이전에는 대부분 노인정 지원비로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급식시설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지자체의 추가지원 및 마을회의 지원 또는 기부금품이나 이용자 부담 등으로 해결하고 있음
  - 대부분의 급식시설은 부녀회 등의 봉사활동에 의존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부녀회 회원들의 고령화로 그러한 운영방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농번기에는 마을 주민 모두가 바쁜 시기이므로 식사를 준비해줄 인력이 부족하여 공동급식시설이 잠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음
  - 특별한 마을 행사에만 공동급식시설이 이용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경우는 공동급식의 개념이 아니라 마을공동행사의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임
  
- 작은목욕탕은 수요를 예측하여 사후 운영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규모로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이 시설물 구축으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났음
  -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온탕을 사용하지 않거나, 목욕탕을 폐쇄, 지자체에 유지관리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작은목욕탕은 다른 공동시설에 비해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더 요구되고, 유지관리비가 더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규모를 계획해야 하고, 신청 및 선정 시부터 현실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중요한 것은 운영지침 지자체 조례가 마련되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후 조치와 관리가 필요함

&lt;표 4-2&gt;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

구분	문제점
공동생활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생활홈 입주자 입주 지연 및 기피문제</li> <li>· 거주자 입주-퇴거에 대한 관리 미흡</li> <li>· 공동생활홈 운영에 마을운영비 활용</li> </ul>
공동급식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을 위한 운영비 부족</li> <li>· 부녀회 회원들의 고령화로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운영방식에 한계 노출</li> <li>· 농번기와 농한기 등 시기에 따라 운영되거나 운영되지 않는 다양한 원인발생</li> </ul>
작은목욕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절기에 휴장하는 경우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기술적인 어려움</li> <li>·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마을에서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li> </ul>
공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시설이므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함</li> <li>· 마을의 리더가 교체되었을 때 사업의 지속성에서 문제 발생</li> <li>· 마을 이장의 재임기 치적을 위해 불필요한 (정부지원 재정)사업 확보</li> <li>· 공동시설 전·후에 연계프로그램이 특별한 변화가 없음</li> <li>·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연계프로그램을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로 수용만 함</li> </ul>

### (3) 시설측면에서 성과 및 문제점 도출

- 본 사업은 마을의 유휴시설을 재활용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대상 시설물의 67%이상이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조성되어, 농촌지역의 건축문화 및 건축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음
- 공동생활홈의 경우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마을에서는 여건에 따라 부부용, 남녀거주 가능한 유형, 다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유형 등 새로운 모델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큰 성과라고 판단됨
- 공동생활홈의 경우 입주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독립거주형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매우 적게 적용됨(3사례)
  - 독립거주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처럼 전용되는 사례가 많았고, 이 경우 낮에는 마을노인 다수가 함께 사용하고 밤에 잠을 자는 것은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향후 공동생활홈의 기능은 줄어들고 경로당 형태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근본적으로 공동생활홈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마을에서 사용되고 있는 타 공동시설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4-3> 시설측면에서의 문제점

구분		문제점
공동 생활홈	독립거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음</li> <li>• 개별난방인 경우에는 난방비를 절감하고자 난방을 하지 않는 경우</li> </ul>
	독립침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거주형과 공동거주형의 단점이 내재되어 있어 거주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부족</li> <li>• 난방비 절감을 위해 본인 방을 사용하지 않고 거실에서 모여 취침</li> </ul>
	공동거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으로 이용</li> <li>• 면적에 비해 거주자의 수가 많으며 화장실이 부족함</li> </ul>
	혼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용 공동생활홈이 계획되었으나 이용이 되지 않아 방치</li> </ul>
	기타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으로 이용</li> <li>• 공동생활홈의 일부공간이 다른 공동시설로 활용됨</li> </ul>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거주형을 제외한 유형에서 면적에 비해 거주인원 초과</li> <li>• 독립거주형을 제외한 유형에서 거주자 수에 비해 화장실이 부족</li> <li>• 일부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징을 배려하지 못하고 2층에 배치</li> <li>• 입주비의 부담으로 일부에서 입주기피 발생</li> <li>• 시설물의 용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적용하는 법률의 조항이 다름</li> </ul>
공동급식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수에 비해 면적이 협소</li> <li>• 식자재 등을 수납하는 공간이 좁음</li> </ul>
작은목욕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욕 전·후를 위한 휴게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li> <li>•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건축물임에 불구하고 사업비가 적게 책정됨</li> <li>• 신축과 리모델링의 사업비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음</li> </ul>
공동사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의 경관과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li> <li>•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부분이 많지 않음</li> <li>• 무장애 또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형식적으로 적용</li> </ul>

- 공동생활홈 조성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마을에서 입주희망자를 파악하여 추진하였으나, 정작 공동생활홈이 완공된 이후에 심리적 또는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
  - 근본적으로는 공동생활홈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됨
  - 결국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기존 노후 경로당의 개보수 또는 신축 경로당의 수요 충족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선정하는 단계에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공동급식시설은 공공시설로서의 식당과 주방의 배치나 면적 등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위생과 관련된 공간이므로 식자재나 식기류를 보관하는 저장고나 창고 등 수납공간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작은목욕탕은 초기시설비용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억원으로 추진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먼저 나타남. 따라서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규모의 축소, 값싼 자재 이용, 사업 포기 등의 사례가 나타남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들이 농촌 경관과 주변환경에 조화롭지 못하는 점이 파악되었으며, 이는 작은 사업비로 추진하면서 재료비 절감, 공사비 절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판단됨
- 고령자 공동시설이므로 기본적으로 고령자 친화시설로서 무장애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하나, 질적 수준보다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기도 함

#### (4)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공동생활홈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의 이해가 부족하여 사업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본질을 왜곡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남
  - 공동생활홈을 공동거주형으로 구축한 후 취지와 달리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고, 반면에 기존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음. 이처럼 기능의 전용 또는 중복 등으로 본래의 기능까지 손상되어 공동생활홈 입주자와 주민 모두가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공동생활홈의 부역·거실이 공동급식시설 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공동생활홈 입주자들의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 공동생활홈을 주거의 개념이 아닌 임시거처, 주간보호시설, 일시적 보호시설, 다른 형태의 경로당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주간에만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남 00군의 00마을은 공동생활홈에 대한 주민의 이해 부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 선정 후 이해도가 높은 인근 마을(유촌마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충북 (A)군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활용하여 공동생활홈에 입주할 것을 권장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주거복지 혜택을 받도록 행정조치 하였음

- 전북 (B)군 (C)마을의 경우, 공동생활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부지는 마을소유이고 운영관리는 마을 내의 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2원화되어 운영비 조달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음. 현장방문 결과, 주간보호시설 혹은 복지시설의 기능으로 전용하려는 의도가 보였음



<그림 4-1> 고창군 ○○마을 공동생활홈의 개인실

- 사업비 부족에 따른 규모 축소, 값 싼 자재 선호, 사업 포기사례
  - 00군은 3가구 독립침실형 공동생활홈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배정된 예산(1억2천만원)으로는 요구가 충족되지 않아 사업을 반납하였음
  - 본 시범사업에서 정부지원금 이외에 마을 자체에서 지원금을 마련한 사례도 있음
  - 전남 함평군 백야마을은 공동생활홈의 입주 수요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부족함에 따라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음
- 대상지 선정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부적합한 입지(법적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입지)를 선정하는 사례 발생
  - 전남 00군의 경우, 마을 내 미사용 창고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은 계획도로 상에 위치한 불법건축물로 밝혀져 불가피하게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였음. 이 과정에서 입지 재선정, 주민협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적 낭비가 있었으며,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재협의 과정에서 주민 간 의견대립이 발생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음
  - 경남 00시의 경우, 고속도로가 마을 중심부를 관통하여 개설되면서 현재는 생활권이 다른 마을로 양분되었는데,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마을의 형태가 경사진 타원형을 이루게 되어, 공동생활홈이 마을 중심부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 하고, 양쪽 끝자락에서 중심부까지 약 3km가 되면서 고령자들이 도보로 접근하기에 어려운 조건에 있음
- 경남 00군의 경우, 공동생활홈이 마을에서 외져 있는 경사진 장소에 위치하게 되면서, 고령자들이 도보로 이동하기 곤란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시범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 등을 책정하였으나, 선정단계에서 신축의 경우도 다수 포함되었고, 또한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신청·선정된 지자체 중에서도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해 추진한 사례가 발생함
- 지원되는 보조금은 정해져 있는데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에 맞추기 위해 값 싼 자재 사용, 면적 축소, 기능 제한,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됨
- 2014년도의 시범사업추진은 사업이 선정된 후 총괄계획가와 기본계획수립자가 거의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총괄계획가는 자문 역할을 수행함
- 기본계획수립자는 관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용역수행자의 역량과 사업 이해도가 기본계획의 질적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처음 시도된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따라서 총괄계획가의 자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따랐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난 경우도 발생되었음
  - 그러한 과정에서 사업 이해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2015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이해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총괄계획가의 참여시기를 앞당기게 되었고, 현장조사와 주민교육 및 기획설계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활동범위를 넓히게 됨
- 2015년도의 시범사업추진은 사업 선정 후 농촌건축 전문가인 총괄계획가를 조기에 참여하게 하고, 역할과 활동범위도 확대하였으며, 이후에 기본계획수립자를 선정하였음
- 총괄계획가가 현장조사와 주민협의 과정을 거쳐 기획설계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됨
  - 따라서 주민과 지자체 및 기본계획수립자 등 사업관계자의 사업 이해도가 향상되었으며, 동시에 전문성도 강화되었음
  - 그 결과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었음
-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충분한 주민들의 이해

와 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존의 제안서를 사업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사업 준비단계에서 교육 등 역량강화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향상 및 참여의식 제고를 추진한 후에 제안서 작성이 요구됨
- 제안서 작성단계에서 총괄계획가 또는 관련 전문가에 의한 주민교육 및 주민협의를 중요하며, 참여방안과 사업추진 단계별 역할 및 공동시설 조성 이후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강화(지역 순회 등)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인식이 바로설 수 있도록 홍보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설명회 및 교육 등은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주민 및 참여 전문가 등이 함께 하도록 해야 함

○ 사업 선정 시 서류검토뿐만 아니라 대면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증한 후 최종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심어줄 필요성이 있음

○ 피난층이 아닌 2층 이상의 층에 고령자 공동시설이 설치된 사례도 있고, 그럼에도 고령자 친화형 건축요소(엘리베이터 등)가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있음

-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이용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경제적 논리(부지확보 불필요) 및 공급자(행정) 입장에서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됨
- 함평군 백야마을은 협소한 부지에 비해 입주희망자가 많은 상황에서 당초 2층으로 검토되었던 공동시설을 총괄계획가의 자문과 조정으로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1층으로 건립하였음

○ 공동생활홈 거주자간의 교류와 협력 및 공동체의식을 유도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공동거주의 장점을 상쇄시키는 사례가 있음

- 독립생활형 공동생활홈의 경우 독립된 거주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거주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교류와 협력 및 공동체의식 제고 등 공동거주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함
-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해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한 사례
- 전남 함평군 백야마을은 거주공간은 독립생활형으로 계획하고, 별도의 공동체 공간을 확보하여 거주자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였음
- 충북 초천리 공동생활홈은 독립침실형으로써 거실과 부엌을 공동공간으로 넓게 확보하고, 그 대신 각 거주자의 사적영역을 외부까지 확장시킴

	
<p>&lt;함평군 백야마을 공동생활홈 평면도&gt; 독립거주형 방식을 띠면서도 내부공간에 공용공간을 계획한 사례</p>	<p>&lt;충북 초천리 공동생활홈&gt; 공동공간인 거실과 부엌을 넓게 확보하고, 대신 개인공간을 외부로 확장한 독립침실형 사례</p>

<그림 4-2> 공동생활홈의 커뮤니티공간과 개인공간

<표 4-4>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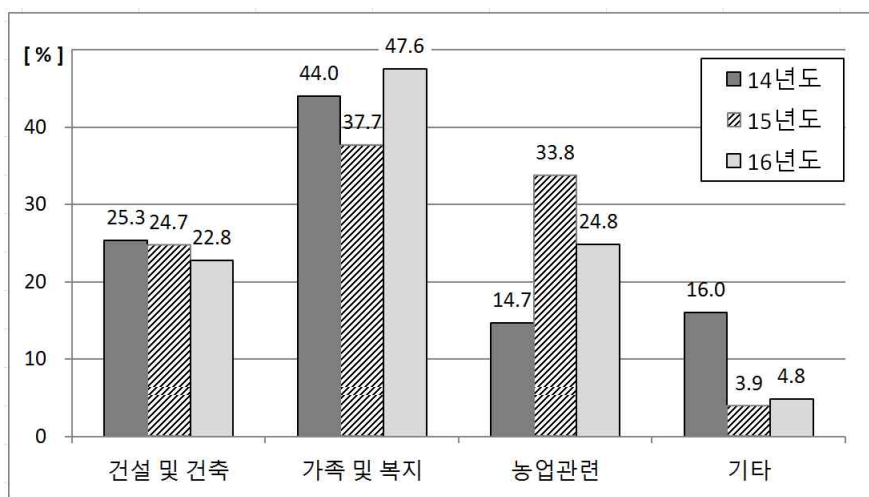
내용		결과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갈등으로 인한 사업 포기</li> <li>· 타용도로 전용, 마을경로당, 마을회관으로 이용</li> <li>· 주거의 개념이 아닌 임시거처, 주간보호시설로 이용</li> </ul>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의 칸막이로 사업추진 어려움</li> <li>· 주거기능, 마을 공동체 공간, 노인복지시설 등의 성격이 혼재되어 건축법상 용도 분류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음</li> </ul>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예측의 부족 (입주자의 수에 비해 공간규모가 작은 경우)</li> <li>· 독립거주형 공동생활홈의 경우는 공동공간(공동이용 거실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교류의 기회가 적어짐</li> <li>· 2층 이상에 배치된 공동시설의 경우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접근이 어려움</li> </ul>
기초조사 및 예비계획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행정적 검토 부실 : 사업포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해 주민갈등 또는 사업지연 유발</li> <li>·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건축행위가 불가능거나 접근성이 떨어진 장소를 대상으로 선정(건축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됨)</li> <li>· 공동급식시설을 마을 내에 중복 설치하거나,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서 너무 넓거나 좁은 공동급식시설, 사용하지 않는 여분의 주방 설치</li> </ul>
운영 관리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지원비를 공동생활홈 운영비로 전용하고 있음(주민갈등이 내재됨)</li> <li>· 입주자보다 관리자 중심의 운영이 나타남(공동생활홈의 열쇠를 마을리더들만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음)</li> <li>· 조례 또는 관련 규약이 미흡함</li> <li>· 임대료문제 (입주기피, 임대료 전용으로 인한 주민갈등, 임대료 납부에 대한 불만)</li> <li>· 공동생활홈의 퇴거자가 발생할 시 새로운 입주자를 빨리 선정하지 못하고</li> </ul>

		· 방치되어 공동생활홈 내에서 독거노인이 됨 ·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에 따른 입주자 선정 및 심리적 갈등
	입주자	· 입주자들이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나, 난방비를 지나치게 절약하여 춥게 생활하고 있었음
사업비	부족	· 신축의 경우 - 공간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질 낮은 건축자재 사용 · 예비계획 수립시에는 리모델링으로 신청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축으로 변경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질 낮은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 발생 · 리모델링의 경우 - 저급자재 사용 혹은 사업포기 · 사업 선정시 수요, 규모, 면적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함 · 공동급식시설의 경우, 소액규모로서 환경개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전면개보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전용	· 사업비의 일부를 마을의 타 공공시설의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전용
전문가	총괄 계획가	· 총괄계획가 역량 및 이해부족 · 총괄계획가 운용방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 · 해당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총괄계획가 제도
	지역 건축사	· 농촌지역의 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한 전문가의 부재로 인하여 신축의 의견이 높음(농촌지역 유희시설의 재활용이라는 사업의 취지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 공간설계의 오류(공동생활홈의 부엌·거실이 공동급식시설 공간으로 이용, 현관입구에 슬로프를 설치하였으나, 현관의 턱으로 슬로프 기능이 내부공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	정책	· 농촌관련 정책의 지나친 변화로 농촌관련 사업 때마다 사업을 따와서 건물의 용도가 계속 바뀜
	행정	· 담당자(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체로 인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됨(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가 되는 시점에서 교체됨)
	마을	· 이전 이장의 사업을 현 이장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운영관리가 안되고 방치되는 사례가 나타남

○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은 본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나타난 문제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는 사업담당부서가 통일되지 못한 문제로서 지자체에서 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보면, 농정, 건축, 복지 등 다양한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의 일관성 및 추진 방향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함
  - 2016년 2월 기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본 시범사업을 담당하였던 부서를 파악해보면, 2014년에는 31개의 부서에서 담당하였으며, 2015년에 25개의 부서, 그리고 2016년도에는 35개 부서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였음
  - 담당한 사업의 부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족·복지」와 관련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부서는 들쭉날쭉하며, 건축부서는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 담당부서가 일관성이 없이, 농정, 복지, 건축이라는 너무나도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므로 인하여, 본 사업을 이해하는데 혹은 이해시키는데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부서의 일원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반면에 담당부서가 다양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되어 사업의 다양성과 확장성 확보로 발전될 수도 있음. 결국, 지속성과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축, 복지, 노인, 가족, 보건, 지역개발 등 몇 개의 부서로 범위를 한정하고 해당 부서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그림 4-3> 시범사업 지자체 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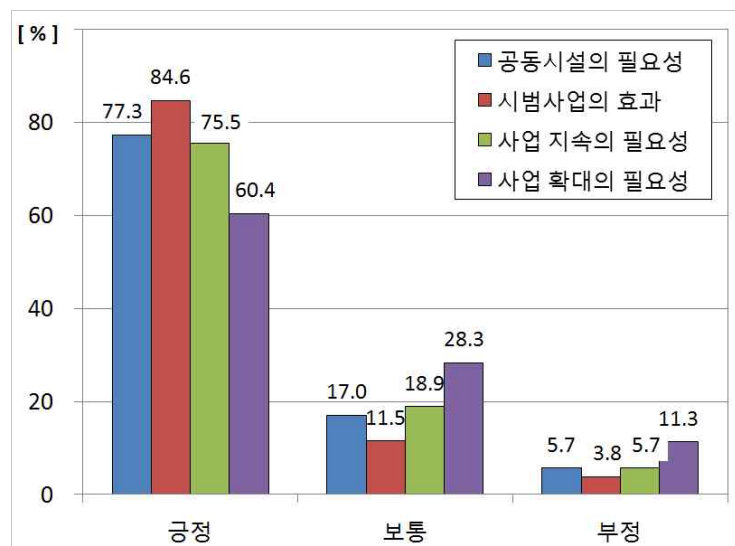
- 두 번째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교체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앞서 진행된 내용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까지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답보되는)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됨
  -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강화된 공무원이 교체됨으로 인하여 그 강화된 역량을 활용할 수 없게 됨
  - 마을에서는 새로운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면서 일의 추진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등, 진행되던 사업 중간에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 전체가 새롭게 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여건이 발생함
  -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혹은 일정정도 정착이 될 까지는 그 담당자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물론 이러한 사항은 본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업에서도 이러한 체제로 전환된다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됨

<표 4-5>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담당부서 현황

분류	14년도 담당부서	수	15년도 담당부서	수	16년도 담당부서	수
건설·건축	안전건설과	1	안전재난건설과	3	개발지원과	3
	안전재난건설과	1	지역개발건축과	1	건설개발과	4
	개발지원과	2	개발지원과	1	건설과	6
	건설과	4	건설과	4	건설교통과	4
	건설교통과	1	건설교통과	3	건설도시과	1
	건설도시과	2	도시건축과	2	건축디자인과	2
	농촌개발과	4	건축디자인과	2	도시건축과	3
	도시개발과	1	허가과	3	안전건설과	1
	도시건축과	1			안전재난건설과	4
	지역개발건축과	1			지역개발건축과	2
	주택담당	1			허가과	3
	<b>계</b>	<b>19</b>	<b>계</b>	<b>19</b>	<b>계</b>	<b>33</b>
가족·복지	여성가족과	2	경로가족과	1	노인여성아동과	2
	경로가족과	1	노인장애인과	2	노인장애인과	2
	노인팀	1	여성가족과	1	복지실	1
	노인복지팀	3	주민생활지원과	3	복지정책과	2
	복지실	1	주민행복과	1	복지지원과	1
	복지정책실	1	가족행복지원실	1	사회복지과	24
	사회복지과	6	복지지원과	1	사회복지실	3
	주민복지과	9	사회복지과	8	여성가족과	2
	주민복지실	3	주민복지과	8	주민복지과	13
	주민생활지원과	2	주민복지실	3	주민복지실	6
	주민생활지원실	4			주민생활	1
				주민생활지원과	5	
				주민생활지원실	2	
				주민행복과	5	
	<b>계</b>	<b>33</b>	<b>계</b>	<b>29</b>	<b>계</b>	<b>69</b>
농업	농업경영과	2	농업정책과	18	감귤농정과	1
	농업기술센터	3	농촌개발과	6	농업경영과	1
	농업정책과	5	농축산과	1	농업정책과	24
	감귤농정과	1	친환경농업과	1	농촌개발과	3
					농축산과	6
					친환경농업과	1
	<b>계</b>	<b>11</b>	<b>계</b>	<b>26</b>	<b>계</b>	<b>36</b>
기타	미래전략사업단	2	창조산업과	1	미래전략사업단	3
	지역공동체육성과	1	미래전략사업단	1	행정과	2
	기획감사실	4	기획예산담당관	1	지역공동체육성과	1
	기획예산담당관	3			행복나눔과	1
	행복나눔과	2				
	<b>계</b>	<b>12</b>	<b>계</b>	<b>3</b>	<b>계</b>	<b>7</b>
총계	31개부서	75	25개부서	77	35개 부서	145

### (5)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공무원 인식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역의 현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정을 알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77.3%가 긍정적으로 답하였음
  - 사업초기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공무원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농촌 지역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시범사업의 효과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자인 주민의 만족도도 높게 나왔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남
  - 시범사업의 효과에 대해 무려 84.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지금까지 있었던 농촌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이처럼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사업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함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본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음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75.5%에 달함
  - 또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은 단순한 지속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남



<그림 4-4>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인식

-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이 지속될 경우, 시범사업과 동일한 역할분담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40%로 나타남

<표 4-6> 사업 추진 시 역할분담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

응답	향후에도 시범사업과 동일한 역할분담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적합하다.	당장 공공기관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향후 2년~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역할분담을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무응답
빈도 (%)	22 (40.0)	9 (16.4)	19 (34.5)	5 (9.1)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기관별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국가(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표 4-7> 사업 내용에 따른 수행 주체

내용 따른 수행 주체	공공기관별 담당 역할							
	국가		시/도		시/군/구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수립	43	82.7	5	9.6	1	1.9	3	5.7
국가예산 확보 및 사업비 지원	46	88.5	4	7.7	1	1.9	2	3.8
사업대상 심사 및 선정	26	50.0	17	32.7	7	13.5	2	3.8

- 앞서 살펴보았듯이 농촌지역 지자체의 상당수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새로운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선업무와 세부적인 시행사항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운영관리 등 사업종료 후에도 상당부분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사업타당성 검토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조례·규정 등 사업추진 근거 마련, 사업시행조직 구성 및 자부담 사업비 조달, 기본계획·설계 및 감리·시공 등 사업의 집행, 해당 시설물의 유지보수(하드웨어 중심), 해당 시설물의 운영(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농촌의 고령화 증가에 대비한 주민 개개인의 체감형 복지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구축 지원과 지자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이어지는 역할분담이 필요함
- 지자체가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사업기획, 계획, 시행뿐만 아니라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lt;표 4-8&gt; 사업 세부내용에 따른 수행 주체

세부내용에 따른 수행 주체	공공기관별 담당 역할							
	국가		시/도		시/군/구		기타	
	N	%	N	%	N	%	N	%
사업타당성 검토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1	1.9	17	32.7	33	63.5	1	1.9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2	3.8	10	19.2	36	69.2	4	7.8
조례·규정 등 사업추진 근거 마련	9	17.3	11	21.2	31	59.6	1	1.9
사업시행조직 구성 및 자부담 사업비 조달	4	7.7	10	19.2	36	69.3	2	3.8
기본계획, 설계 및 감리, 시공 등 사업의 집행	0	0.0	8	15.4	43	82.7	1	1.9
해당 시설물의 유지보수(하드웨어 중심)	3	5.8	5	9.6	39	75.0	5	9.6
해당 시설물의 운영(소프트웨어 중심)	0	0.0	6	11.5	40	76.9	6	11.6

-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자체별로 진행할 수 있는 차별성 있는 내용들을 결합하도록 유도하는 시책도 필요하므로,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지자체에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보아지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명확히 해야 함
  - 사업 중간에 담당공무원의 교체는 사업추진에 저해가 되므로, 사업의 시작에서 정착단계까지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복지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또한 지속적인 다양한 지자체 공무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성과를 담당자가 스스로 얻어갈 수 있어야 함

## (6) 소결

- 본 시범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성과가 나타났음
  -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에서 실질적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농촌지역 주거복지정책의 새로운 유형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 각 지자체에서 농촌고령자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의 특성과 지자체의 역량에 맞는 사업을 창출하는데 토대를 마련함
  - 마을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주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는데 기여함.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이 마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시범사업은 마을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고 방치된 건물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농촌 건축문화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방식 제시하였음
  -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 분야가 다른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운영적 측면에서 성과를 살펴보면,
  -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공동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농촌복지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음
  - 특히 공동생활홈의 경우, 마을에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홈이 생겨나면서 마을 주민 모두가 사회적 부양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고 있음
  - 작은목욕탕의 경우, 마을에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게 목욕비를 할인 하는 등, 마을단위에서 할 수 있는 복지를 마을 스스로 찾아내어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시설별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면,
  - 공동생활홈은 기본적으로 개념의 이해 부족,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부족이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는 근원이 되고 있음
  - 공동급식시설이 개선되어 이용자가 증가하였고, 결국 급식시설 운영비가 부족하게 됨. 따라서 운영비의 부족에 대한 대안이 요구됨
  - 작은목욕탕의 경우는 수요를 예측하여 사후 운영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규모로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이 시설물을 구축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났음
  
-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은 본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사업담당부서가 통일되지 못하고, 사업 도중에 담당공무원이 교체됨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

-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보아지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명확히 하여 전문성과 지속성을 도모해야 함
- 사업 중간에 담당공무원의 교체는 사업추진에 저해되므로, 사업의 시작에서 정착단계까지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새롭고 차별화된 다양한 유형의 복지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자체의 공무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과를 담당자가 스스로 얻어갈 수 있어야 함

## 2.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향 설정

### (1) 사업의 재원 검토

#### ① 국가정책으로 추진

- 농촌고령자 문제가 일부 지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사안임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 노력이 필요함
  - 공동생활 홈 등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이 고령자의 우울증 감소 및 건강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음<sup>32)</sup>
  -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은 도시에 편중된 복지시설의 대안으로써 농촌지역 고령자 및 거주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함
  
- 2015 농림어업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도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38.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sup>33)</sup>
  - 농가인구는 2010년에 비해 16.1%가 감소하였고,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함
  - 농가의 고령인구 비율은 38.4%로 2010년 대비 6.6% 증가하여 전체 인구 증가율 13.2%보다 3배정도 높음
  - 연령대별 농가인구 비율은 70대 이상이 27.0%로 가장 높고, 60대가 23.3%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인구구성을 볼 때, 농촌고령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곧 우리나라의 농촌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농촌고령자의 삶의 질 저하 및 사회문제화에 대비한 복지정책 중 하나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음

#### ② 국고지원 재원의 검토

- 국고지원 재원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근거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가 있음

32) 김승근 외,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3.12.

33) 2015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2016.09.

&lt;표 4-9&gt;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재원검토

구분	지역발전 특별회계 <sup>34)</sup>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sup>35)</sup>	비 고
근거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설치목적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관리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계정 구분	- 생활기반계정 - 경제발전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임업진흥사업계정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적용대상	생활기반계정 중 지역생활권 관련 기초인프라 구축사업(시·군·구 자율 편성)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에서 정한 사업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중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지원)	문화·복지분야 기초인프라
국고보조율	70%	50%	2015년 기준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포괄보조금 ※ 일정한 범위 또는 지역의 사업이나 일정한 효과를 가져 오는 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러한 취지에 맞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충당할 포괄적인 조건으로 교부하는 보조금	특정정율보조금 ※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원조하기 위하여 그 사용처를 한정하여 지출하는 보조금(용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일반정액보조금과 대비되는 개념)	
검토	당분간 기 확립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 제고를 도모	사업 목적과 취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특회계 적용 가능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 지역발전특별회계

- 포괄보조금 형태의 지특회계는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한 지자체 자율사업이고, 기본적으로 지역생활권 기초인프라 구축사업이며, 비교적 국고보조율이 높기 때문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양적 확장에 유리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특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며, 고령자공동이용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지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특정정율보조금이

34)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2016.4.

3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법률 제12412호(2014.03.11 일부개정), 시행2015.1.1.

로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정책시행이 가능하며, 보조금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특수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농촌고령자’라는 특정계층에 대한 주거·영양·위생·복지 등의 환경을 단계적,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특수목적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농특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농촌의 고령자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복지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재원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사업추진의 추이와 성과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의 재원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대상 검토

- 대부분의 농촌지역 공동시설은 연령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 거의 모두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대상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주된 이용자인 농촌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공동시설을 별도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기 위함임
  -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음
  - 내용적 범위는 시설조성(H/W)과 운영관리(S/W)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대상을 구분한 의미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독립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때 가장 크게 나타날 것임
  - 현재(2016년 기준)와 같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특회계)의 기능별 세부사업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구축할 경우에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대상을 따로 구분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음
  - 중요한 의미는 추후 별도의 특수 목적사업으로 추진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에 있음
- 지원 또는 관리의 대상과 내용은 시대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① 시범사업 사례 분석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은 농특회계를 재원으로 농촌지역 고령자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적 노인복지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추진체계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특회계)을 모델로 일부 절차와 내용을 보완하여 적용하였음
  - 내용적 범위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능별 세부사업에 포함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형을 세분화하였음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은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으로 구성되어 시행되었음
- 공동생활홈은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의 3가지 평면유형으로 구성되었음
  -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나타난 유형은 독립거주형과 독립침실형이었으며, 공동거주형은 주거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독립침실형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침실을 3인 이상이 함께 이용할 경우는 공동거주형과 같이 일시적인 거처로 이용되거나,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과 유사한 성격으로 유용되는 경향이 나타났음
- 공동급식시설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이용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기초생활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음
  -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한 실정임
  - 좌식형과 테이블형(입식형)의 유형 구분은 마을별 여건과 습관 및 선호도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운영방식의 구분일 뿐이었으므로, 사업의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작은목욕탕의 경우도 이용대상자를 농촌고령자로 특정할 수 없었으나, 접근성 개선과 시설 현대화 등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의 이용 편의성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마을단위의 작은목욕탕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전례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을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 남녀혼용과 남녀구분에 따른 유형 구분은 이용수요, 시설비용, 유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마을형은 남녀혼용형, 거점형은 남녀구분형을 선호함

## ② 공동생활홈의 지원사업 대상

- 공동생활홈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개념과 주거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독립거주형과 독립침실형 만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거주자들의 독립성과 공동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평면구성이 요구됨
  - 시설 내에서 취침과 취사를 개별적으로 영위하는 유형인 독립거주형에서는 거주자의 독립성을 반영되므로 공동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이 요구됨
  - 시설 내에서 취침은 개별적으로 하나, 취사는 공동으로 영위하는 독립침실형의 경우는 거주자들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공간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생활홈에 대한 지원사업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함으로써 물리적, 심리적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나타나야 함
  - 공동생활홈 보급시 거주용도의 주거시설 외에 공동거실, 공동작업실, 공동텃밭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거주자들의 공동생활에 다양성이 부여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해야 함
  - 개인공간에 대한 적정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동생활규약을 현실화하여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동거주형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
  - 공동거주형은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과 유사한 기초생활기반시설임
  
- 과소화마을의 등장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생활홈을 현재의 마을단위 조성방식(마을형)에서 읍면소재지 등의 생활거점에 조성(거점형)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 시설의 대형화 및 기능의 집약 및 서비스의 집중을 통해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분산거주에 따른 관련 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주자 순환형 주거대안 모델을 창출해야 함
  - 노인·장애인·아동·유학생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의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일본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③ 공동급식시설

- 공동급식시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
  - 공동급식시설은 전형적인 기초생활기반시설이고,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복잡하지 않으며, 자생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사례가 많음



④ 작은목욕탕의 지원사업 대상

- 작은목욕탕은 수요, 편의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이용자 편의성과 운영관리를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사업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 읍면소재지 등의 생활거점에 조성(거점형)하는 작은목욕탕으로 한정
  - 유형은 지역 여건에 따라 남녀혼용형 또는 남녀구분형 선택
  
- 작은목욕탕은 수요 예측 및 유지관리 적정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시설의 규모가 결정되도록 해야 하며, 대부분 수익창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그 규모는 최소화해야 함
  -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공동화는 전 세계 농촌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시설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노약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무장애디자인 계획이 요구되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가능한 한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광(열), 지열 등을 활용한 그린에너지의 활용을 적극 권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면사무소, 보건진료소 등과 연계하여 계획함으로써 이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함

<표 4-10>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대상

구분		시범사업 (종료됨)	추후 지원 대상		
			독립된 지원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공동생활홈 (마을단위형)	독립거주형	지원	지원 가능	지원 가능	가능
	독립침실형	지원	지원 가능(조건부)	지원 가능	가능
	공동거주형	지원	-	지원 가능	가능
공동생활홈	거점형	-	검토 필요	지원 가능	가능
공동급식시설	마을단위형	지원	-	지원 가능	가능
	거점형	-	-	지원 가능	가능
작은목욕탕	마을단위형	지원	-	지원 가능	가능
	거점형	지원	지원 가능	지원 가능	가능

⑤ 내용적 범위의 구분 및 업무분담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주거·영양·위생 등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업무분

담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조성(H/W)과 운영관리(S/W)를 분리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시설조성(H/W)은 신축, 증축,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등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분야
- 운영관리(S/W)는 지역역량강화,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관장하거나 지원하는 분야

○ 시설의 조성 및 관리(H/W)는 건축부서 담당하고, 운영관리(S/W)는 복지부서 담당하는 방식을 제안함

- 시설의 조성 및 관리는 건축, 건설, 도시, 지역개발 등과 관련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권장함
- 운영관리는 복지, 노인, 여성, 가족, 주민생활 등과 관련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권장함

○ 시설조성 시에 운영관리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거나, 운영관리 과정에서 필요시 시설분야의 지원 등을 위하여 상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업무협력체계의 구축과 운영 및 각 업무 분야별 조정과 총괄관리는 기획실, 농업정책, 지역개발, 주민생활 등과 관련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권장함

### (3) 사업추진 및 절차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살펴보고자 함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높은 수준의 운영관리방안 등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위 사항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는 사업포기, 사업지연, 용도 전용, 입주기피, 운영비 추가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났음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은 편의상 현재(2016년 기준) 시행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기능별 세부사업)’, ‘특화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다른 사업과 구분된 독립적인 사업)’,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 자체사업’ 등으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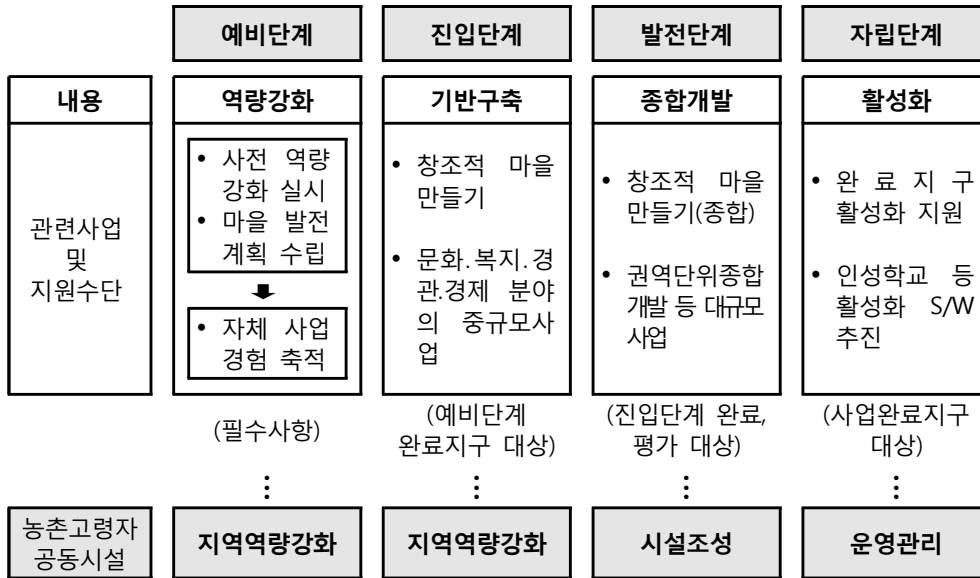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기능별 세부사업)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라야 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능별 세부사업에 포함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및 그와 유사한 공동시설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관리(S/W) 분야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 특화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추진절차와 내용을 따라야 함
- 재원이나 대분류 사업에 관계없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내용과 체계를 특화시켜 다른 사업과 구분되도록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함
  - 보편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구분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특화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이라 함
  -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내에서도 독립적인 추진체제로 추진될 수 있음
  - 이러한 사업유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따라 추후 검토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는 스스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서술하지 않음
- 다만, ‘특화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의 준용을 권장함

####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기능별 세부사업)인 경우의 사업추진 절차

- 기본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절차를 따름
- 다른 목적의 기능별 세부사업과 함께 추진될 경우, 사업선정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농촌건축’과 ‘노인복지’의 측면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함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화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의 준용을 권장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의 역량과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함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예비단계 및 진입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주민참여를 위해 체계적인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야 함
  - 진입단계에서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되, 필요시 공동급식시설 구축을 통해 훈련 효과를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공동생활홈 또는 작은목욕탕 구축은 사업비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 및 높은 수준의 운영관리방안 등을 필요로 하므로 발전단계에서 추진할 것을 권장함



<그림 4-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

②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선방안 검토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안함

<표 4-1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관련 단계별 이수기준(안)

마을역량단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관련 이수기준	비고
<b>예비단계</b>	진입단계에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이 포함된 시설조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이수 기준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관한 교육 또는 현장포럼 : 담당공무원 1명 이상과 마을 주민 10명 이상(3시간/명). 단, 동일분야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강사여야 함	현장 경험이 있는 시범사업 총괄계획가 등을 적극 활용
<b>진입단계</b>	발전단계에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이 포함된 시설조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이수 기준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관한 교육 또는 현장포럼 : 담당공무원 1명 이상과 마을 주민 10명 이상(3시간/명). 단, 동일분야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강사여야 함	
<b>발전단계 자립단계</b>	발전단계 또는 자립단계에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과 관련된 운영프로그램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이수 기준 - 시설기준의 적합성 및 운영관리방안의 합리성 평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 중, 각 단계별 이수기준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관한 사항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사업성 검토 및 평가과정에서 검토지표를 추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해당사업지구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별지로 제작하고, 누구나 작성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며, 반영비율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협의가 필요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중복되는 지표는 지양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가능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계량하도록 함

<표 4-12>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관련 사업성 검토지표(안)

평가요소 (가중치)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지표	계량	점수
사업준비 ( )	사업이해도 ( )	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가? - 사업설명회 개최여부, 공동시설의 특수성 등	정성	
	역량강화 (10)	2. 단계별 이수기준을 이행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가? - 교육 참여도, 강사의 역량 등	정량	
사업계획 ( )	기본여건 ( )	3. 사업대상 부지 또는 유휴건축물은 확보되었는가? -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정량	
	합리성 ( )	4. 입지여건, 부지 또는 유휴건축물의 상태는 양호한가? - 진입동선, 안전성 확보, 주변 환경, 노후도 등	정성	
	적정성 ( )	5. 관계법령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서를 제출하였는가? - 검토서 제출여부, 전문가의 역량 등	정량	
운영관리 ( )	사업필요성 ( )	6. 입주자 확보, 자부담 확약 등 주민들의 참여도는? - 사업추진 가능성	정량	
	운영가능성 ( )	7. 운영재원 확보방안 등 운영관리계획은 합리적인가? - 운영 의지 및 여건	정량	
<b>소계</b>				

- 사업추진 가능성과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과 관련된 사업준비과정, 사업성 검토과정, 사업시행과정 등에 농촌건축 및 노인복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번거롭지만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부분에 대해 사업성 검토과정을 별도로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건축분야 및 복지분야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사업내용 및 사업성 자문, 주민 교육, 지자체 공무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③ 특화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인 경우 사업추진 절차**

- ‘특화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만을 대상으로 삼아 사업의 내용과 체계를 특화시켜 다른 사업과 구분되도록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일컫음
  - 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명료하므로 차별화된 추진절차와 내용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구축을 목표로 함
  - 이처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만을 대상으로 사업의 내용과 체계를 특화시킨 사례는, 2014년과 2015년에 시행되었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이 유일하며, 따라서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작성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내에서도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함
  
-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건축행위가 수반되고, 궁극적으로는 농촌고령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임으로, 정책수립과정 및 사업선정과 추진과정에서 ‘농촌건축’과 ‘노인복지’의 측면이 강조되고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농촌건축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전문성 강화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바탕으로 농촌건축 및 노인복지분야 특성화
  
- 전문성 강화 방안
  - 한국농촌건축학회(농촌건축전문가를 총괄계획가 인력풀로 활용), 대한건축사협회(전국 각지에 분포된 건축사를 활용하여 시설의 질적 향상 도모), 사회복지 관련 조직(현장 여건에 적합한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등 관련 전문가단체와 업무협약
  - 인문, 복지, 지역개발, 조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총괄계획가로 구성된 중앙지원단 구성
  - 건축전문가 1~2인을 각 광역자치단체별 총괄계획가로 선정
  - 법규검토, 입지분석, 규모검토, 기술검토, 개략공사비 산정 등을 위하여 자문건축사 위촉
  - 현장의 여건과 사업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는 자문건축사 또는 총괄계획가의 사업타당성 검토 의견을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필요시, 기본계획 수립 전에 총괄계획가로 하여금 기획설계를 수행하게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음

<표 4-13> '특화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추진절차(안)

단계	항목	주체	주요 내용	사업추진과정 주요 체크리스트
기획 업무	정책 수립	농식품부 /도, 시·군	국가 정책 수립	사업 로드맵 작성, 가이드라인 작성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의 취지와 목적 및 기대효과, 사업신청 절차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수요분석, 사업비 조달계획, 연계프로그램 발굴 등
	사업비 확보	농식품부 /도, 시·군	국비 확보 지방비 확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비 분담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 준비	사업추진체계 구축	농식품부	전문가 지원조직 구성	관련단체 업무협약, 중앙지원단 및 총괄계획가 선정
		시·군·구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자문건축가 위촉	전담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건축 및 복지담당 필수) 법규검토 및 입지분석이 가능한 지역의 건축가
	사업설명회	시·군·구	주민 대상 설명회	사업의 취지와 목적, 시설 유형, 운영관리 방식 등
	지역역량강화	마을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 역량강화 의견수렴 및 협의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주민협의기구 구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 현장포럼 등 활용 수요조사, 시설조성 위치 및 규모, 운영관리계획 등
시·군·구		사업 후보지 선정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요, 예산, 추진 가능성 고려 자문 건축사 활용	
제안서 작성 (예비계획)	마을	사업추진 필요성 검토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인식 및 사업추진 의지, 수요분석, 기존 시설현황, 조성시설 이용계획 등 부지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 확보, 입주대상자 선정, 사업비 및 운영비 조달계획, 운영관리 규약 등	
	시·군·구	자문건축가 의견 첨부	법규검토서, 입지분석, 시설조성 방법 및 규모계획, 공사방식에 대한 기술검토서, 개략공사비 등	
사업 선정	심사 및 타당성 검토	농식품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로 구분, 대면심사 포함
			사업 타당성 검토	수요, 입지여건, 사업방식, 사업유형, 시설 규모, 주민 역량, 사업예산, 추진 가능성 등 종합 검토
			사업지구 선정	농식품부의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규모 고려
사업 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시·군·구	계획수립 업체선정	관계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선정
		설계자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안 작성(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등 고려)
	시행계획 수립 (실시설계)	총괄계획가	사업내용 자문 및 조정	사업 목적, 사업 여건, 주민 요구, 예산 규모 고려
		중앙지원단	기본계획 검토	입주자 확인, 전문 분야별 자문 및 기본계획 승인
	시행계획 수립 (실시설계)	설계자	시행계획 수립	실시설계안 작성(가이드라인 및 자문의견 반영) 공사비 내역서, 유지관리계획 포함
		읍·면·동	운영관리계획 수립 주민 설명회	운영주체, 운영관리규약, 복지프로그램 연계방안 등 시행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 및 협의(설계자 동참)
		총괄계획가	사업내용 자문 및 조정	기본계획 및 중앙지원단 자문의견 고려
	사업계획승인	시·군·구	사업계획검토 사업계획승인	건축계획, 유지관리계획, 운영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승인 내용을 중앙지원단에 제출
시공	시공계획 수립	시·군·구	발주(감리, 시공)	관계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감리자 및 시공업체 선정
		감리자	시공계획 검토	시공업체의 시공계획 및 공사비 집행계획 적합여부
	시공	시공업체	시공	시행계획 및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설계변경 지양)
		감리자	감리	관계법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설계변경 억제)
		시·군·구	준공(사용승인)	준공검사 체크리스트 작성
사용	사용(입주) 및 거주 후 평가	시·군·구	입주 및 사용 연계 프로그램 지원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각 부처 및 지자체 프로그램 지원(의료, 복지 등)
		총괄계획가	거주(사용) 후 평가	거주자 및 이용자의 거주(사용) 후 평가
		중앙지원단	사업보고회 개최	사업 추진 경과, 만족도 및 효과, 개선방안 등
↓				
운영 및 유지관리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는 농촌건축 및 노인 복지분야 전문성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체계로 실시되어야 함
  - 중앙지원단 활용 검토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 기초생활기반 확충·지역소득증대·지역경관개선 등 다른 기능별사업과 혼재되어 농촌중심지활성화 또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포함된 경우는 사업비 비중에 따라 심사 반영
  - 현장심사 및 대면심사 필요(사업추진 가능성 확인)
  
- 사업성 검토 및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범사업 사례를 준용하되, 총괄계획가(또는 지역건축 전문가)의 사업타당성 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제안서(예비계획서)의 내용적 범위를 기본설계 수준까지 확대한다면 사업 선정 후 추진과정에서 대상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제안서 제출시 각 지자체로 하여금 건축행위에 대한 제약조건 및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지역 건축사와 협의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향후 법적인 문제 또는 사업비 부족 등에 봉착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표 4-14> 사업추진 단계별·주체별 개선 방향

구 분	중앙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 주민	비고
기획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전략 등 사업전반에 대한 로드맵 작성</li> <li>-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작성</li> <li>- 농촌복지여성과 및 지역개발과 간의 업무범위와 역할분담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취지와 목적 이해</li> <li>- 수요분석 및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바탕으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li> <li>- 법제화 검토</li> <li>- 사업 유형에 대한 용어의 정의 필요</li> </ul>
기획 단계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li> <li>• 한국농촌건축학회(총괄계획가 인력풀) 및 대한건축사협회(자문 건축사 인력풀) 등 관련 전문가단체와 업무협의</li> <li>• 인문, 복지, 지역개발, 조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총괄계획가로 구성된 중앙지원단 구성</li> <li>• 건축전문가 1~2인을 각 광역자치단체별 총괄계획가로 선정</li> <li>- 주민 대표, 지자체 담당공무원, 참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역량교육 방안 수립 및 시행(중앙지원단 활용)</li> <li>- 지자체에서 요청할 경우 자문 및 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지자체는 농식품부가 선정한 총괄계획가 위촉</li> <li>- 지자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감안하여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복지 및 건축 부서는 필수적으로 포함)</li> <li>- 법규검토, 입지분석, 규모검토, 기술검토, 개략공사비 산정 등을 위하여 자문건축사 위촉</li> <li>- 지자체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홍보하고, 사전 조사를 통해 후보지 선정</li> <li>- 주민들은 마을 회의를 통해 추진위원회 등 주민협의체를 구성</li> <li>-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포럼, 교육, 선지지 견학 등으로 주민역량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더불어 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li> </ul>



구분	중앙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 주민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을 위하여 중앙지원단 소속 전문가 지원</li> <li>각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마련</li> <li>제안서 작성시 필요사항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화하고,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사업 제안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필요시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li> <li>제안서에는 사업 필요성과 사업추진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자문건축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li> </ul>	
선정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로 구분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면접심사 포함)</li> <li>서류심사는 마을의 물리적·인문사회적 현황과 사업계획 및 심층면접을 통해 평가</li> <li>현장실사는 제안서와 마을여건의 일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평가</li> <li>사업의 목표 및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지구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는 대상마을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음</li> <li>광역지자체는 자체 심사계획을 마련하여 부실한 제안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케 할 수 있음</li> <li>지자체 및 마을은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여야 함</li> </ul>	-심사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과 분리하여 진행(복지 및 건축 분야 중심)
사업 추진 단계	계획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괄계획가를 중심으로 주민, 지자체, 설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 구축</li> <li>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와 목적 및 내용을 재차 설명하고, 의견수렴 및 참여방안 안내</li> <li>지자체는 계획수립 업체(해당지역의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하고, 과업수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li> <li>설계자는 총괄계획가, 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수립</li> <li>지자체는 총괄계획가의 최종 검토안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세밀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계별 사업 추진은 총괄계획가와 협의 후 진행</li> <li>사업계획에 대한 최종적 검토 권한은 총괄계획가에게 부여</li> </ul>
	시공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괄계획가를 통해 현장 자문활동 및 사업내용 조정</li> <li>마을별 추진위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참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역량강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정보교류)</li> <li>운영관리 표준지침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괄계획가는 사업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문 및 조정</li> <li>지자체는 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자 및 감리자를 선정하고, 과업수행실태를 수시로 점검</li> <li>시공자 및 감리자는 시행계획(설계도서) 및 관계법률에 따라 업무수행</li> <li>지자체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li> </ul>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 지원조직 적극 운영</li> <li>중앙지원단 및 총괄계획가를 통해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거주후 평가를 실시</li> <li>중앙지원단 주관으로 사업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만족도 및 효과분석, 사후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계획에 의거 운영 및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조례 또는 규약에 따라 운영관리 추진</li> <li>의료, 복지 등 연계프로그램 지원</li> <li>중앙정부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현안에 맞게 대응 전략 수립</li> </ul>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필요

④ 특화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인 경우 평가지표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의 평가지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시범사업 추진 시에는 지자체와 해당 마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장심사 과정을 생략하였으나, 사업추진의 의지와 역량 및 가능성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제안서의 과장·허위 내용을 판별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대면심사 및 현장심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다만 심사기간의 장기화, 심사인력의 부족, 심사에 소요비용 등을 고려할 필요는 있음
  
- 서류심사는 필수 항목에 대한 반영여부와 적정여부만을 ○·× 로 평가하도록 하며, 서류심사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다음 단계인 현장심사를 실시함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한 엄격한 심사기준이 필요함
  - 필수 항목은 모두 충족해야 함
  -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표 4-15> 서류심사 평가지표(안)

항목	점검내용	구분	평가
전문성 확보	1. 제안서 작성에 건축사의 참여 여부(기본설계 계약서 확인)	필수	○, X
	2. 추진체에서의 총괄계획가 위상설정 여부		○, X
	3. 추진체에 건축전문가 참여 여부(건축사, 교수, 건축직 공무원 등)		○, X
	4. 추진체에 복지전문가 포함 여부(복지시설 운영자, 교수, 복지직 공무원 등)	필수	○, X
지자체 의지	5. 선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당해 지자체가 받을 페널티 조건 기재 여부		○, X
	6.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당해 지자체가 받을 페널티 조건 기재 여부		○, X
	7. 사업규모와 대비하여 충분한 자원조달방안이 마련되었는가?	필수	○, X
	8.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조례는 마련되었는가?		○, X
실현 가능성	9. 공사규모는 적정한가?		○, X
	10. 공사비는 적정한가?		○, X
	11. 시설 이용자 또는 입주자의 비용부담은 적정한가?		○, X
	12. 시설 이용자 또는 입주자는 비용부담에 동의하였는가?	필수	○, X
	13. 2층이상에 시설이 건축될 경우 엘리베이터를 반영했는가?	필수	○, X
	14. 접근성은 양호한가?(위치, 경사도, 도로, 지장물 등 고려)		○, X
	15. 시설조성에 법적 제도적 제약사항은 없는가?	필수	○, X
평가 기준	a. 위 점검내용에서 필수 항목 중 하나라도 X평가인 경우는 탈락 b. 위에서 필수가 아닌 항목 중 X평가 3개 이상인 경우는 탈락		X : 개

- 현장심사는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지 선정
  - 지원 대상 평가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lt;표 4-16&gt; 현장심사 평가지표(안)

항목	점검내용	점수
전문가 활용	1. 현장심사에 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는 참여했는가?	( )/5
	2. 전문가는 사업취지와 대상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 )/5
	3. 전문가로부터 기획의 의도와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가?	( )/5
	4. 주민과 지자체는 전문가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가?	( )/5
사업 이해도	5. 시범사업의 취지 및 지침을 숙지하고 있는가?	( )/5
	6. 주민과 지자체의 사업이해도와 소통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 )/5
	7. 관련된 조례 또는 규약에 대해 주민들도 숙지하고 있는가?	( )/5
	8.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전문가와 주민들은 소통하였는가?	( )/5
대상지 여건	9. 사업부지는 지침에 맞게 확보되었는가?	( )/5
	10. 시설의 위치 및 입지여건은 적절한가?	( )/5
	11. 시설은 주변 환경에 조화되도록 계획되었는가?	( )/5
추진 역량	12. 주민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은 구성되어 있는가?	( )/5
	13. 시설 이용자 및 입주자는 결정되어 있는가?(면담 확인)	( )/5
	14.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 )/5
건축 방식	15. 건축방식(신축/리모델링)과 사업비 배분은 합리적 인가?	( )/5
	16. 주변 공공시설과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였는가?	( )/5
	17. 경제성과 예술성은 반영되었는가?	( )/5
유지 관리	18. 시설 유지 및 관리를 감안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5
	19. 시설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은 충분히 마련되었는가?	( )/5
	20.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역할분담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5
	합계	( )/100

#### (4) 건축기준 및 적정 사업비 도출

##### ① 공통기준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일반적인 건축기준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sup>36)</sup>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형별 적정 사업비 기준을 마련한 필요가 있음
- 델파이기법<sup>37)</sup>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의 경관을 평가해 본 결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물이 모든 면에서 매우 낮은 평을 받음
  - 농촌다운 경관창출을 위해 전문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농촌지역에 특화된 건축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공사비 및 용역비의 현실화가 뒷받침 되어야 함
- 독거노인과 고령농업인 등 농촌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주거모델 창출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예측되는 고령화 진전에도 대비하여야 함
  - 고령자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을 감안하여 향후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안전 및 편의시설을 대폭 강화해야 함
- 농촌지역 고령자가구의 주거환경은 도시지역보다 더욱 열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이 절실한 상황임
  -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적합한 공동체형 주택모델을 개발하여 농촌지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건축기준 및 적정 사업비는 권장사항이며, 시대적 또는 사회적 여건 변화와 정책기준에 따라 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② 공동생활홈의 건축기준

- 일반적인 고려사항
  - 공동생활홈은 규모 및 입주자 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마을내 유희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방식이 바람직함

3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 2015

37)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은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 및 미래예측을 위한 기법으로 활용된다. 이 기법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추정하려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에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 공동생활홈의 구조는 안전성, 내구연한, 공간 활용성,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가 유리하며, 리모델링의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진단 및 보강이 필요함
  - 공동생활홈은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상1층 규모가 바람직하며 무장애디자인(BF)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 건축물의 형상, 외부공간의 구성, 지붕의 형태, 외부마감재료, 각종 설비 등 기타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함
  - 공동생활홈의 규모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1~2인 가구)을 기준으로 함
  - 규모에 따라 공동 거실, 창고, 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 공간 또는 가족방문 공간으로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하나, 편의상 공용면적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함
  - 건축물의 규모는 지상1층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지하층과 지상2층 이상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단실, 램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함
  - 농촌주택의 공용면적은 통상적으로 전용면적의 15~20% 범위임
- 선행연구를 통해 독거노인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평균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경제성과 주거생활 활동영역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면적은 33~44㎡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lt;표 4-17&gt; 마을단위 공동생활홈의 적정 규모 산정

구분	공동생활홈	비고
가구당 면적(㎡)	33	전용면적 기준
거주 규모	3가구	
전용면적 합계(㎡)	99	
공용면적(㎡)	15	전용면적의 15%
적정 건축규모(㎡)	114	

- 마을의 규모가 20~50호 정도인 경우에는 유희시설(빈집, 새마을창고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촌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기존 유희시설의 규모를 감안하면 3가구 기준이 적정함
- 마을의 규모가 50~120호 정도의 마을에서는 5가구 기준이 적정함

- 마을의 규모가 120호 이상이거나 3~5개 마을이 공동으로 건축할 경우는 10가구 기준이 적정함
- 읍·면 단위에 건축할 경우는 20가구 기준이 적정함

③ 공동생활홈의 적정 사업비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산정한 공동생활홈의 공사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민간 건설회사에서 건축하는 고층아파트에 적용하는 기준)’를 근간으로 산출함으로써, 정부기관에서 건축하는 소규모 저층의 고령자주택과 성격이 상이하므로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실제로 2014년~2015년 시범사업에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결과, 공사비의 부족으로 기능과 규모가 축소 또는 변형되거나 저가자재 사용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표 4-18> 유사사업의 공사비 산출사례

근거 및 출처	용도.규모	㎡ 기준 공사비(원)		비고
		신축	리모델링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 농림축산식품부, 2015.	공동생활홈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1,622,000	1,411,000	부적절 (근거 미약)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서울시, 2015.	경로당.노인정 연면적 200㎡ 기준	2,231,000		부적절 (용도 상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연면적 200㎡ 기준	2,947,000		채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연면적 400㎡ 초과	2,808,000		채택
녹색리모델링 발주 가이드라인 조달청, 2012.	공공청사 전면 리모델링 연면적 82,500㎡ 기준		1,138,524	부적절 (용도.규모 상이)
2014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조달청, 2015	기상청 기숙사 지상4층, 연면적 499.54㎡	2,467,062		채택

-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인 발행으로 노하우가 축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행실적을 근간으로 산출되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됨
  - 다만, 용도와 규모가 정확히 일치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조달청에서 발표한 ‘2014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로 보정하였음
- 리모델링 공사비는 현장여건, 건물의 노후화, 유지보수이력, 건물의 상태, 요구 성능, 공사범위 등에 따라 현격한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신축 공사비를 기준

으로 개보수 보정계수를 적용하였음

- 2012년 조달청에서 발표한 ‘녹색리모델링 발주 가이드라인’의 경우 사업의 성격은 비슷하나, 대형 공공청사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위와 같은 자료 및 분석을 바탕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생활홈의 면적당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공사비는 그 적용결과와 물가상승률 등을 분석하여 보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표 4-19> 2017년 적용 공동생활홈 면적당 공사비(안)

구분	공사 종별	공사비 (원/m <sup>2</sup> )	산출식	비고
공동생활홈 (114m <sup>2</sup> )	신축	2,707,000	(2,947,000+2,467,062)/2	평균값
	리모델링	2,355,000	신축공사비×87%(개보수 보정계수)	보정

<표 4-20> 공동생활홈 신축 사업비(안)

구분	산출식	금액(천원)	비고
공사비	114m <sup>2</sup> (규모) × 2,707,000원/m <sup>2</sup> (면적당 공사비)	308,598	
설계비	(308,598천원/1.1) × 6.235%(요율) × 110%(부가세)	19,271	건축사법
감리비	(308,598천원/1.1) × 1.567%(요율) × 110%(부가세)	4,836	건축사법
기획업무	19,271천원 × 설계대가의 8%	1,541	총괄계획가
자문비	300천원(자문) × 5회	1,500	총괄계획가
합 계		335,746	

<표 4-21> 공동생활홈 리모델링 사업비(안)

구분	산출식	금액(천원)	비고
공사비	114m <sup>2</sup> (규모) × 2,355,000원/m <sup>2</sup> (면적당 공사비)	268,470	
설계비	(268,470천원/1.1) × 6.460%(요율) × 150%(할증) × 110%(부가세)	26,014	건축사법
감리비	(268,470천원/1.1) × 1.618%(요율) × 110%(부가세)	4,344	건축사법
기획업무	26,014천원 × 설계대가의 8%	2,081	총괄계획가
자문비	300천원(자문) × 5회	1,500	총괄계획가
합 계		302,409	

#### ④ 공동급식시설의 건축기준 및 적정 사업비

##### ○ 일반적인 고려사항

- 공동급식시설은 고령자를 포함한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한다는 개념이므로 식당 및 주방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를 수용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유희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방식이 바람직하며 신축은 지양되어야 함
- 리모델링의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진단 및 보강이 필요하며, 공간 활용성과 유지관리 측면도 검토되어야 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대책도 반영되어야 함
- 공동급식시설은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상1층 규모로 건축하여야 하며, 무장애디자인(BF)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 건축물의 형상, 외부공간의 구성, 지붕의 형태, 외부마감재료, 각종 설비 등 기타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함

##### ○ 공동급식시설의 적정 사업비 산출

- 적정사업비 도출을 위한 규모는 시범사업 가이드라인(69㎡)을 기준으로 함
- 농촌고령자 공동급식시설의 적정 공사비는 통일성을 위하여 공동생활홈의 공사비를 준용하고, 이와 같이 산출된 공사비는 그 적용결과와 물가상승률 등을 분석하여 보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표 4-22> 2017년 적용 공동급식시설 면적당 공사비(안)

구분	공사 종별	공사비(원/㎡)	산출식	비고
공동급식시설 (69㎡)	신축	2,707,000	(2,947,000+2,467,062)/2	평균값
	리모델링	2,355,000	신축공사비×87%(개보수 보정계수)	보정

<표 4-23> 공동급식시설 리모델링 사업비(안)

구분	산출식	금액(천원)	비고
공사비	69㎡(규모) × 2,355,000원/㎡(면적당 공사비)	162,495	
설계비	(162,495천원/1.1) × 7.609%(요율) × 150%(할증) × 110%(부가세)	18,545	건축사법
감리비	(162,495천원/1.1) × 1.905%(요율) × 110%(부가세)	3,095	건축사법
기획업무	18,545천원 × 설계대가의 8%	2,081	총괄계획가
자문비	300천원(자문) × 5회	1,500	총괄계획가
합 계		187,716	



### ⑤ 작은목욕탕 건축기준 및 적정 사업비

#### ○ 일반적인 고려사항

- 공동목욕탕은 기능 및 구조의 특수성에 따라 신축의 경우만 고려함
- 공동목욕탕은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상1층 규모로 건축하여야 하며, 미끄럼방지 등 무장애디자인(BF)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 건축물의 형상, 외부공간의 구성, 지붕의 형태, 외부마감재료, 각종 설비 등 기타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함

#### ○ 작은목욕탕의 적정 사업비 산출

- 적정사업비 도출을 위한 규모는 시범사업 가이드라인(120㎡)을 기준으로 함
- 농촌고령자 공동목욕탕의 적정 공사비는 통일성을 위하여 마을형공동생활협의 공사비를 준용하며, 이와 같이 산출된 공사비는 그 적용결과와 물가상승률 등을 분석하여 보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표 4-24> 2017년 적용 작은목욕탕 면적당 공사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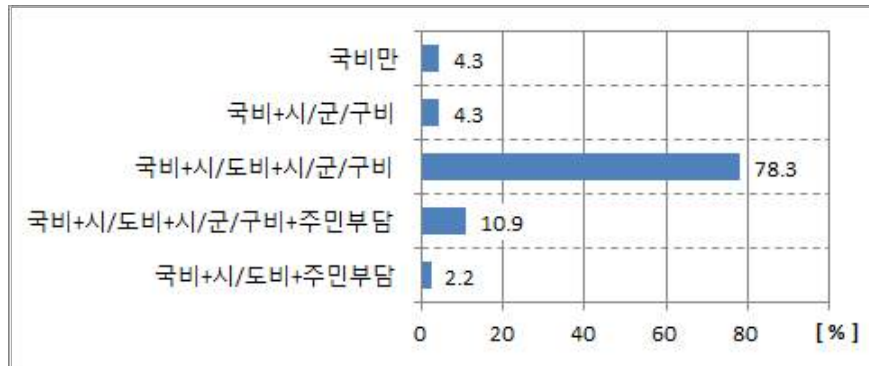
구분	공사 종별	공사비(원/㎡)	산출식	비고
공동목욕탕 (120㎡)	신축	2,707,000	(2,947,000+2,467,062)/2	평균값
	리모델링	2,355,000	신축공사비×87%(개보수 보정계수)	보정

<표 4-25> 작은목욕탕 신축 사업비(안)

구분	산출식	금액(천원)	비고
공사비	120㎡(규모) × 2,707,000원/㎡(면적당 공사비)	324,840	
설계비	(324,840천원/1.1) × 6.158%(요율) × 110%(부가세)	20,002	건축사법
감리비	(324,840천원/1.1) × 1.547%(요율) × 110%(부가세)	5,023	건축사법
기획업무	20,002천원 × 설계대가의 8%	1,600	총괄계획가
자문비	300천원(자문) × 5회	1,500	총괄계획가
합계		352,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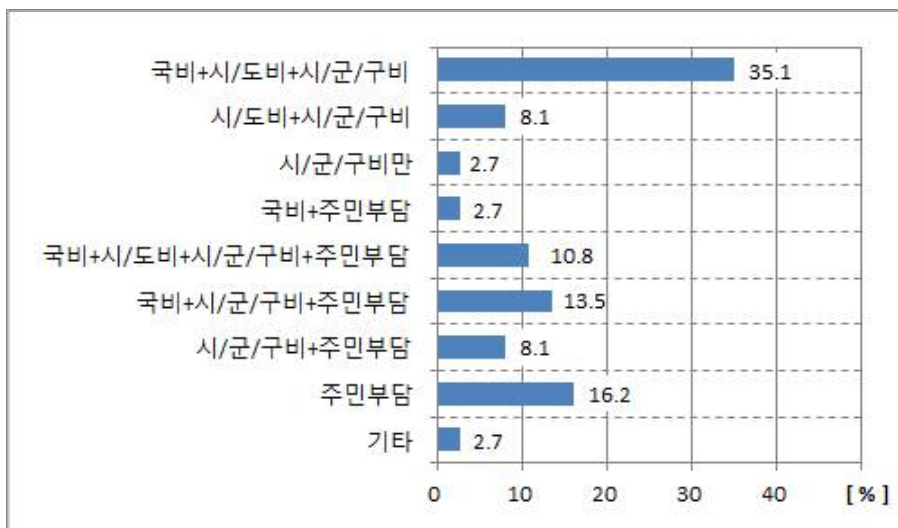
### ⑥ 적정사업비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건축비를 담당하는 주체에 대한 행정전문가들의 응답을 보면, [국비+시/도비+시/군/구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고령자 시설에 대한 건축비의 부담은 주민(마을)보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86.9%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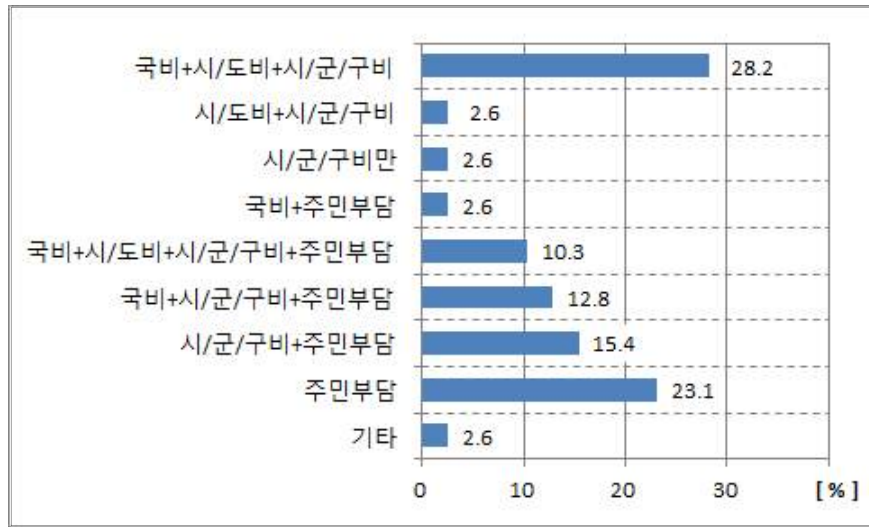
<그림 4-6>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건축비 담당주체에 대한 의견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있어서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주체에 대한 행정전문가들의 응답을 보면, [국비+시/도비+시/군/구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건축비 담당주체 의견에 비하면 낮은 비율을 보임
  - 국비와 지자체가 담당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46%를 보이고 있으며 비용의 구성비율에 관계없이 주민이 조금이라도 부담하는 경우는 약 51%임



<그림 4-7>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담당주체에 대한 의견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있어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에 대한 행정전문가들의 응답을 보면 [국비+시/도비+시/군/구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민부담으로 나타났음
  - 국비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 응답은 약 33%를 보이고 있으며 비용의 구성비율에 관계없이 주민이 조금이라도 부담하는 경우는 약 64%로 나타났음



<그림 4-8>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운영관리 담당주체에 대한 의견

- 농촌고령자 시설에 대한 건축비, 유지보수비, 운영관리비를 담당하는 주체에 대한 행정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건축비는 국비와 지자체가 담당하고, 유지보수비와 운영관리비는 지자체와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건축비, 유지보수비, 운영관리비의 담당주체별 구성비에 대한 행정전문가의 응답에서 주체별 평균을 살펴보면(응답내용을 주체별로 평균을 산출하였으므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국비가 3가지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지보수비와 운영관리비에서는 지자체와 주민부담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음

<표 4-26>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건축비, 유지보수비, 운영관리비 담당주체별 구성비의 평균

구분	시설건축비 (%)		유지보수비 (%)		운영관리비 (%)	
국비	58.70		52.48		52.38	
시/도비	20.31	43.03	25.50	60.33	21.88	67.43
시/군/구비	22.72		34.83		45.55	
주민부담	11.67		48.50		42.17	
합계 (%)	113.40		161.31		161.98	

- 이를 100% 기준으로 정리하면 건축비는 국비가 약 52%로 가장 높고, 유지보수비는 지자체가 37%, 운영관리비도 지자체가 42%로 나타났음

- 따라서 5:5로 책정된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시설조성 단계에서만 보았을 때는 적당한 것으로 보이나,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및 운영관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사업비의 비율을 일정정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표 4-27> 100%를 기준으로 한 건축비, 유지보수비, 운영관리비 담당주체별 구성비

구분	시설건축비 (%)		유지보수비 (%)		운영관리비 (%)	
국비	51.76		32.53		32.34	
시/도비	17.91	37.95	15.81	37.40	13.51	41.63
시/군/구비	20.04		21.59		28.12	
주민부담	10.29		30.07		26.03	
합계 (%)	100.0		100.0		100.0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대체로 낮기 때문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70%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특회계)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70%이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농특회계)의 국고보조율은 50%이었음
  - 동일 기능의 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국고보조율이 서로 상이하 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낮았음

### (5) 농촌건축 전문가 참여제도화

- 본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의 현실적인 상황, 지역적 특성 등 농촌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됨
  - 충북 음성군 초천리 공동생활홈의 경우 마을에 방치되었던 마을회관의 재활용에 대해 이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지역의 건축가가 부재한 상황이었음. 이는 음성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도 비슷한 여건이라 파악됨
  - 따라서 농촌지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농촌건축 전문가 양성이 요구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전문가를 양성할 수 없으므로, 농촌건축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여 총괄계획가 등을 통해 지역의 건축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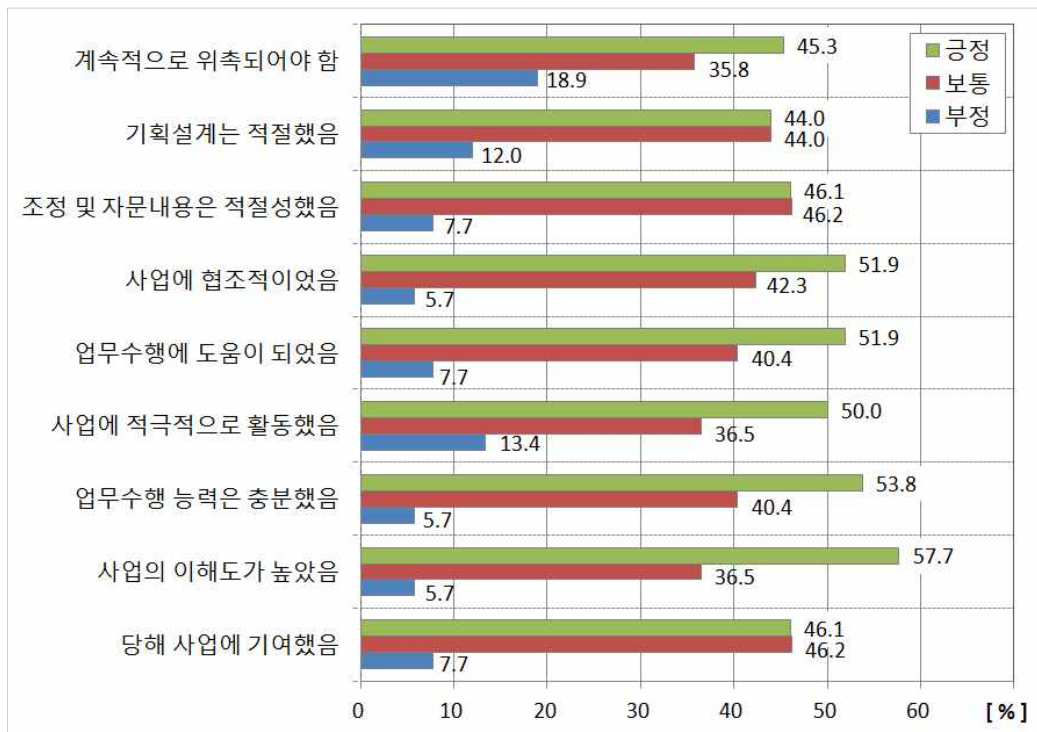


<그림 4-9> 농촌 건축전문가로서 총괄계획가 활동 사례

### ① 총괄계획가 제도의 운영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하여 민간 농촌건축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함
  - 총괄계획가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행 및 사후평가 단계까지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총괄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2014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5년 시범사업에서는 총괄계획가로 하여금 기획설계업무를 수행케 함
  - 사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부수적으로 총괄계획가의 역할과 권한 강화에도 다소 기여하였음
- 2014년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괄계획가의 역할과 권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2015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총괄계획가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함에 따라 자문내용에 대한 구속력도 여전히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주민 혹은 지자체의 생각대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음
  -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여건에서 총괄계획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주민·정부·지자체·시행업체(한국농어촌공사 등) 등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권한의 부재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음

- 주민과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역량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취지 설명 및 교육, 이해관계 조정 및 설득, 대상지 분석 및 검토 등 기본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무량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음
  - 더욱이 2015년 시범사업에서는 농촌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가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설계업무를 수행케 하였으나, 측량성과도 및 기존 건축물 도면 등 기초데이터가 미비하여 실측부터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총괄계획가 또는 농촌건축 전문가 및 복지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함
  
- 총괄계획가의 활동 여건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총괄계획가들은 앞으로도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그것이 농촌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라고 응답함
  
- 따라서 농촌고령자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에 맞는 공동시설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농촌지역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촌건축전문가의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그림 4-10>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총괄계획가의 평가 결과

## ② 농촌건축전문가 참여의 필요성

- 시범사업에서 총괄계획가제도를 경험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분석해 보면, 총괄계획가의 사업의 이해도와 업무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했고, 총괄계획가의 활동이 사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향후 사업에서도 계속적으로 위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 농촌건축전문가가 총괄계획가로 활동한 성과에 대해서는 비교대상이 없어 단편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의 참여로 인하여 사업 결과물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평가내용 중, 공무원들과의 협조성, 조정 및 자문 내용의 적절성, 기획설계(2015년 사업)의 적절성, 사업에 대한 기여도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질문의 내용을 볼 때, 총괄계획가의 조정과 자문활동을 업무에 대한 침해나 간섭 등으로 오해하여 거부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며, 사업에 참여했던 총괄계획가들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향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총괄계획가 위촉에 대해 유난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총괄계획가제도를 운영할 경우, 총괄계획가의 업무지침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공무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보았던 델파이 기법 결과를 공사 종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농촌건축전문가의 역할 강화가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비록 크지 않은 차이지만, 2014년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보다 2015년의 경우가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2015년 시범사업에서 총괄계획가의 역할에 기획설계업무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음
  - 특히 신축의 경우가 더욱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했기 때문에 농촌건축전문가의 역량이 더 크게 발휘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었음
  -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질적 개선 효과가 적었다고 분석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결과는 농촌건축전문가의 참여와 역할 강화가 농촌지역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농촌건축전문가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더불어 농촌건축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함

## (6) 거점형 농촌고령자 공동생활홈의 제안

### 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분류 배경

-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과소화·공동화되는 마을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실제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 20호 미만인 행정리를 과소화 마을로 지칭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과소화 마을 수는 총 3,091개로 전체 농어촌 마을(3만 6,496개)의 8.5%로 나타남<sup>38)</sup>
  - 과소화 마을은 주로 대도시 주변을 제외한 농어촌 읍·면 지역에서 이제는 농어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냄
  
-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마을의 소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소멸 가능성이 높은 마을이라도 복지·의료 등의 기초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음<sup>39)</sup>
  - 행정적 개편·기능적 개편·공간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이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견을 보여 마을의 이전 및 주민의 이주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 읍·면단위 중심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마을단위 중심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음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산어촌 거점 읍면지역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소재지종합정비로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정비, 주거환경개선,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익, 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위와 같이 농촌마을의 과소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지만, 마을단위에 대한 복지·의료 서비스지원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대한 의견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설문결과도 앞으로의 방향성은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공동목욕탕 모두에 대해 읍면 단위별 1개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38)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농어촌 정주성 향상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방안 연구용역, 2015

39)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마을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 2014



&lt;표 4-28&gt;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양적인 소요량(지자체 공무원 설문)

구분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공동목욕탕	
	빈도	%	빈도	%	빈도	%
시/군/구 단위별 1개소	9	17.3	9	17.3	8	15.4
읍/면 단위별 1개소	14	26.9	13	25.0	26	50.0
행정리 단위별 1개소	9	17.3	10	19.3	3	5.8
마을 단위별 1개소	8	15.4	6	11.5	-	-
마을 단위별 2개소 이상	-	-	-	-	-	-
무응답	12	23.1	14	26.9	15	28.8
계	52	100	52	100	52	100

- 따라서 농촌의 현실, 공무원들의 의견, 사업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lt;표 4-29&gt;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위치 기준

구분		적정 위치	비고
공동 생활홈	거점형	읍/면 단위별	중심지로 노인주거를 집중시켜 의료·문화·복지 등의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제공(향후 검토)
	마을형	마을 단위별	마을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음(시범사업 유형)
공동 급식시설	거점형	읍/면 단위별	무료급식시설에 해당(적용 제외)
	마을형	마을 단위별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음(시범사업 유형)
공동 목욕탕	거점형	읍/면 단위별	서비스 집중과 유지관리비용 감안(시범사업 유형)
	마을형	마을 단위별	운영 및 유지관리 곤란(시범사업 유형, 적용 제외)

## ② 공동생활홈의 분류

- 공동생활홈은 위치, 마을의 규모, 인구 구성, 입주 수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유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정형화 할 수는 없지만 마을형과 거점형으로 유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마을형은 행정리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공동생활공간을 조성하는 형태로서 입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마을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농촌마을의 과소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마을단위에 대한 복지·의료 서비스 지원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음
  - 거점형은 읍·면 단위로 공동생활공간을 조성하여 행정구역 내의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형태로서 이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표 4-30> 공동생활홈의 비교 및 시설물의 개요

구분	마을형 공동생활홈	거점형 공동생활홈	비 고
공동생활홈의 위치	마을 단위	읍·면 소재지	
대상인원	3~5명	10~20명	
건축물의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
행위별 분류	리모델링 (용도변경, 대수선, 수선)	신축	권장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신축의 경우 권장
층수	지상1층	지상1층	고령자 특성 고려
지붕형태	경사지붕	경사지붕	신축의 경우
편의사양	무장애디자인 적용		필수
기타사항	관계 법령 및 농촌의 경관 고려		

- 농촌고령자를 위한 공동생활홈은 내용적으로 주거공간에 해당하지만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마을회관과  
유사한 성격도 포함되어 있음
  - 마을형 공동생활홈은 사업추진 주체, 입주자 선정, 시설의 활용, 유지관리 등  
에서 마을공동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주민공동시설’  
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거점형 공동생활홈은 집합주거의 성격이 강하므로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동주택으로 분류될 정도의 규모로 건축하는  
것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발전방향**

- 농촌고령자를 위한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에 대한 용어의 정의  
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이해가 요구됨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은 단순한 주민공동시설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로 인식  
되어야 함
  - 공동생활홈은 주거시설이므로 건축기본법에 따른 최소한의 주거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 공동급식시설은 마을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과 공동부양을 위해 시작된 경우

- 가 대부분이었고, 마을공동의식을 유지시켜주는 수단 중 하나임으로, 노숙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도시의 무료급식시설과는 구분되어야 함
- 작은목욕탕은 위생적인 생활과 편의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마을단위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은 필요성과 수요 및 복지시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급식시설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소규모의 공동생활홈을 조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마을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단위 마을별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역단위나 읍면 단위별로 중규모 공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시설 집적, 통합 관리 등으로 운영관리의 효율화가 기대됨
    -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공동생활홈 20여 가구·공동급식이 가능한 식당·이용하기 편리한 목욕탕·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다목적 공간·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체육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에서, 노인·장애인·유아·유학생 등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로 계획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일본의 사례 참조)

## (7) 소결

- 농촌고령자의 주거, 영양, 위생 등의 문제는 일부 지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사안이며, 그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농촌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촌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은 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높은 수준의 운영관리방안 등을 필요로 하는 특수 목적사업이므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만을 대상으로 삼아 사업의 내용과 체계를 특화시켜 다른 사업과 구분되도록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특화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을 제안하였음

- 사업의 목적과 취지 및 운영관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대상을 독립거주형 공동생활홈. 하나의 침실에 2인 이하가 거주하는 독립침실형의 공동생활홈, 읍면단위에 조성하는 거점형 작은목욕탕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일반적인 농촌고령자시설과 구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특화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을 대비하기 위함임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진절차 및 평가지표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농촌고령자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에 맞는 공동시설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농촌지역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 건축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일반적인 건축기준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시설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사업비는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주거·영양·위생·복지 기능이 집적화된 시설에서 노인·장애인·유아·유학생 등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 기능의 거점형 공동생활홈 도입을 제안함

### 3. 사후관리 방안

#### (1) 사업선정 후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전국적인 조직력을 갖춘 유관단체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면, 한국농촌건축학회·대한건축사협회·한국노인복지학회·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등 전문성을 갖춘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상시적 관리·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때와 장소와 국한되지 않는 자문, 교육, 모니터링, 컨설팅이 가능할 것이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임
  - 업무협력체계 구축방식은 해당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업무 위·수탁 계약, MOU 체결, 재능기부 협정, 농촌봉사활동과의 연계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공과정, 준공, 운영실태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표 4-3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주요 내용

구분	모니터링 및 컨설팅 내용	비고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담당공무원/총괄계획가 간담회로 계획수립 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 의견 개진</li> <li>- 사업계획 신청서 내용과 현장 상황의 실태를 점검</li> <li>- 건물의 노후도 및 안정성, 리모델링의 가능성, 이용자의 접근성 등</li> <li>-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유/무와 주민참여 방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적 방식의 마을 회를 진행하고 있는지</li> <li>-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과 시공사 선정 방법 점검</li> </ul>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도면의 검토 및 사업시행 과정의 투명성</li> <li>-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디자인, 베리어 프리 계획</li> <li>- 친환경 소재 사용,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li> <li>- 마을경관을 고려한 외관 디자인은 되어 있는지</li> </ul>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시설의 운영 추진계획 수립 점검</li> <li>- 지방자체의 자체 조례가 수립되었는지</li> <li>- 입주자 선정과정은 주민회의에서 선정하고 입주자의 규칙 제정</li> <li>- 마을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 조례</li> <li>-마을 규약</li> </ul>

-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풀(pool)을 구성(건축, 마을계획, 복지, 문

화, 행정 등)하여 권역별로 지원(충청, 호남, 영남, 경기·강원·제주)하는 맞춤형·현장형 모니터링과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함

- 모니터링과 컨설팅은 연간 3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1~2년간 비정기적 모니터링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시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 효과적 운영관리 체계

- 운영관리는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시행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본적인 지침은 통일되어야 함
  - 시범사업에서도 지자체별로 운영 및 관리의 주체와 체계가 각기 달라서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고, 만족도에 대한 편차도 크게 난 바 있음
  - 통일된 지침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운영관리의 주체, 운영관리 비용의 조달, 운영관리 규정 마련 등을 들 수 있음
- 운영관리의 주체
  - 기본적으로 총괄적인 운영관리는 지자체에서 담당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업무의 분담 및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독도 지자체에서 담당하여야 함
  - 운영 및 관리의 주체는 이용자 중심의 자치기구(마을회, 입주자회, 부녀회 등)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 지자체는 공동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 운영비용의 조달
  - 운영관리비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각 지자체별 실정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특히, 공동생활홈의 경우 입주자가 임대료와 관리비 및 각종 사용료를 부담하게 하여야 하며, 공동생활홈 운영비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마을회관 지원비와 경로당 지원비를 공동생활홈 운영비 등으로 전용할 경우, 마을주민과 입주자 간 마찰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금지하여야 함
  - 주민합의에 의해 마을기금이나 각종 지원금 또는 기부금 등을 공동시설 운영비로 전용할 경우는, 주민합의 근거와 공동시설 운영비 내역 등은 상시 열람이 가능토록 해야 함

- 지자체는 공동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조례를 제정해야 함
  - 공동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을 규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공동시설 조성에 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음
  - 지자체가 부담하는 시설관리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함
  - 성격이 유사한 조례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준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을 통해 기존의 조례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관련 조례에 대한 예시(안)은 제3장 본문 참조

&lt;표 4-32&gt;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총칙	- 근거 법률 및 목적 - 용어의 정의 또는 적용 범위 - 지자체장의 책무 -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공동시설의 설치	-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준 - 입주자 등 이용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법 - 설치지원 기준과 범위 및 절차 - 설치신고 또는 등록	
운영관리 지원	- 운영관리의 범위 및 관리책임 -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이용자 부담 기준 - 운영관리비 지원기준 또는 지원시기 - 운영지원 대상 또는 범위 - 지원 중단 및 취소	
시설물 관리	- 시설물 이용자의 의무 및 권리 - 시설물 유지관리의 책임 및 범위 -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 - 운영규정 제정 및 준수	
관련 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운영위원회 기능 또는 역할 - 회의 개최 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지도 및 감독	- 지도감독, 현황보고, 권한의 위임 등	
부칙	- 시행일 기준, 경과 조치 등	

- 입주 또는 이용 자격기준, 입주자 또는 이용자 선정 방식, 비용부담 기준, 퇴출 기준 등은 마을규약에 반영해야 함
  -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약 또는 위탁관리 협약서 등은 마을규약이라 볼 수 없음
  - 관련 마을규약에 대한 예시(안)은 제3장 본문 참조

<표 4-33>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관련 마을규약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총칙	- 목적 - 용어의 정의 또는 적용 범위	
운영관리	- 운영관리의 범위 및 관리책임 - 시설물 이용자의 의무 및 권리 - 입주자 등 이용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법 -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이용자 부담 기준 - 관리비 관리 및 회계감사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준 - 이용자 자치회 구성 및 역할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운영위원회 기능 또는 역할 - 회의 개최 기준 및 절차	
지도 및 감독	- 지도감독, 현황보고 등	
부칙	- 시행일 기준, 경과 조치 등	

### (3) 사업성과의 선순환체계

- 성과평가 및 성과지표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 계획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함
  - 아울러 주민과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체크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표 4-34> 공동생활홈 성과평가 및 성과지표

성과 평가	성과 지표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이용자)가 실거주 형태에 따른 평가로 완전거주 유형과 부분거주형(한시적)</li> <li>- 운영방법 : ①공동생활홈 ②공동생활홈 + 경로당 ③공동생활홈 + 마을회관 ④기타</li> <li>- 유니버설 디자인의 반영 사항 평가</li> <li>- 배리어프리 무장애디자인 반영 사항</li> <li>-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선정 및 개선 방안을 반영</li> <li>- 개인적 공간과 공적공간의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li> <li>- 공공의 시설로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계획의 반영 (재료, 색채, 지역성 등)</li> <li>- 이용자 준수 사항과 마을 규약, 지자체 조례 유무</li> <li>- 관리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li> <li>- 다양한 복지, 문화, 의료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입주율(공시율)이 70%이상 준수 하고 연차적으로 공시율을 줄여 3년 후에는 90%이상 상회한다.</li> <li>- 투명성 있는 관리운영방안을 위한 추진위회 구성과 민주적인 주민회의가 진행되도록 한다.</li> <li>-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li> <li>- 연차적으로 장애요인을 개선하여 3년 후에는 무장애디자인 건축으로 인증 받는다.</li> <li>- 다양한 문화·복지·의료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조례</li> <li>- 마을 규약</li> </ul>



- 평가 내용은 체크를 통해 피드백 하여 개선할 수 있으며 성과 지표는 마을에서 운영방안과 활용의 목표를 설정하여 수요와 공급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함

&lt;표 4-35&gt; 공동급식시설 성과평가 및 성과지표

성과 평가	성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방과 식당을 분리 하였는지</li> <li>- 위생관리를 위한 사항은 준수하고 있는지</li> <li>- 소방 및 안전관리는 잘 되었는지</li> <li>- 환기시설과 배수는 잘되고 있는지</li> <li>- 동선 관계는 잘 계획되었는지(서비스 동선과 이용자동선)</li> <li>- 급식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지</li> <li>- 이용자의 준수 사항과 마을 규약, 지자체 조례가 있는지</li> <li>- 수납공간의 청결 및 다목적공간의 활용이 되고 있는지</li> <li>- 지자체의 다른 연계 프로그램 지원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주민의 이용률</li> <li>- 주민 1인당 월간 이용횟수</li> <li>- 분기별 이용률(봄,여름,가을,겨울)</li> </ul>

&lt;표 4-36&gt; 작은목욕탕 성과평가 및 성과지표

성과 평가	성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의 접근성</li> <li>- 노약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디자인으로 계획되었는지</li> <li>-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계획이 반영 되었는지</li> <li>- 위생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계획되어 있는지 (물관리 및 청소)</li> <li>-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의 유무</li> <li>- 탕내의 청결과 위생관리는 철저한지</li> <li>-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재료를 선정하였는지</li> <li>- 탈의실의 청결관리 및 수납공간계획이 잘 되었는지</li> <li>- 지자체의 다른 연계 프로그램 지원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주민의 연간 이용횟수</li> <li>- 주민 1인당 연간 이용횟수(연중 주1회 이상 12개월×4주=48주)를 70%이상</li> <li>- 관리운영비 자급율과 유지관리비</li> </ul>

#### (4) 소결

-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직력을 갖춘 유관단체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세부적인 운영관리는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은 중앙정부 주도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4. 연계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 방안

### (1) 중앙부처의 관련사업

- 정부중앙부처의 지원제도 및 정책
  - 정부중앙부처의 농촌지역 노인주거복지 관련 정책은 주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노후주택의 개량 등을 중심으로 지원됨
  - 대표적인 정부지원 사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들 수 있음
  - 농촌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주택개량 외에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등 다방면에서 개선되고 있으나, 주로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시행됨
  - 최근에 들어 농촌지역 노인 주거복지가 단순히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농촌고령자의 정신적·육체적·사회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결합된 형태가 나타남

- 정부중앙부처의 연계사업
  - 농촌고령자 이용시설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원제도 및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중앙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의 3개 부처를 중심으로 전개됨

#### ①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고령자이용시설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법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이 있음
- 삶의질법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 계획의 내용, 농어촌주택개량자금조성, 자금지원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지원제도 및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 집고쳐주기 사업’, ‘농어촌마을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음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2010년부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으로 단일화되어 시행되

고 있으며, 사업목적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어촌 정주의욕 고취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표 4-37>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개요

구분	내용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10호(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제55조(생활환경정비 계획의 내용),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 조성), 제108조(자금지원)
시행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
용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 및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민 주민 (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자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대상지역	·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조건	· 지원조건 : 변동금리 또는 연리2~2.7% 고정금리,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신축은 2억원 이내/세대, 부분개량은 신축은 1/2
대출대상	· 세대 당 주택 건축면적 150㎡ 이하

####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농어촌 고령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7년 (사)한국농촌건축학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07년 11월에는 농어촌의 ‘노후주택고쳐주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을 설립하였다. 현재, (사)한국농촌건축학회와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이 연계하여 매년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이 시행되고 있음

#### ○ 농어촌 마을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 2008년부터 (재)다솜동지복지재단에서는 매년 농어촌 마을의 낡은 마을회관, 노인회관, 보건진료소 등 기능이 상실되어 비어있는 공공건축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함. 사업방식은 (재)다솜동지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2014년, 2015년에 걸쳐 농식품부 공모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음

## ②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의 농촌고령자이용시설과 관련한 정책 및 법안으로는 고령자 주거안정법이 있음. 이 법에서는 ‘고령자 주거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고령자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자를 위한 임대사업자 지원 사업’, ‘고령자 주택개조지원’, ‘고령자 주거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고령자 임대 주택 및 고령자 주택개조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농촌고령자 이용시설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주요 지원제도 및 사업은 ‘해피 하우스 시범사업’과 2012년 종료된 ‘사회취약계층 자가 주택 개보수사업’ 등이 있었음
-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은 2010년부터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단독 및 다세대 등 기존 주택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 해피하우스를 설치하여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기존주택의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임
- 사회취약계층 자가 주택 개·보수사업- 사회취약계층 자가 주택 개·보수사업은 주거여건이 열악한 사회취약 계층의 자가 주택을 개·보수하여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2012년 종료사업)으로, 시행주체는 대한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 부엌으로의 개조, 지붕 보수, 세대 내부 수장공사 등이 있음.

## ③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 농촌고령자이용시설과 관련한 정책 및 법안으로는 노인복지법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가 가장 대표적임. 복지프로그램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전국적인 소득보장정책이나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 건강보험 제도 등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일반적인 복지서비스가 대부분임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로 구분됨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

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공동생활홈

- 공동생활홈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공유주거의 개념은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지만 오래 전부터 사용된 개념으로 사용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유주택’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역사적으로는 20세기 초반 북유럽에서 시작되어 미국과 일본을 거쳐 대중화되었고, 각 나라의 문화나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과 달리 주거공간의 일부를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공유하는 주거유형을 의미함
- 서구에서 시작된 전통적 개념의 공유주거나 공유주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농촌의 물리적 현황이나 주민들의 생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동생활공간을 포함하는 대안적 주거형태로서 ‘공동홈(=그룹홈, Group H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공동홈은 학술적으로 ‘치매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유형’을 의미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진이나 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함께 상주하는 방식으로 주택보다는 복지시설의 의미가 크고, 전문인력이 상주한다는 점에서 ‘지원주택’ 개념과 유사함

- 보건복지부의 주요 지원제도는 소득지원, 식생활지원, 건강지원, 주거지원, 보호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령자 관련 주요정책사업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고령친화모델지역, 노인가구 형태별 주요 정책사업 등이 있음

- 소득지원 : 크게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으로 구분되며, 현금 지원은 기초노령연금지원, 무의탁 노인 명절 위로금 지원, 장수 수당,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등이 있고, 서비스 지원은 일자리 지원서비스가 있음
- 식생활지원 : 식사 제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과 재가배달 지원서비스로 구분되며, 시설지원사업에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지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이 있고, 재가배달 지원서비스에는 무료도시락 배달서비스, 독거노인 대상 건강음료배달 서비스 등이 있음

- 건강지원 : 의료비 지원과 돌봄 서비스지원으로 구분되며, 의료비 지원은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원하는 제도이고, 돌봄서비스 지원은 의치보철사업 지원, 치매조기진단 서비스,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있음
- 주거지원 : 주거비를 직접 제공해 주거나 주거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사업으로 구분된다. 주거비 제공은 무주택 저소득 노인주거비 지원,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화장실 개선사업, 독거노인 가정환경 개선 등이 있음
- 보호지원 : 기타, 노인 찾아주기 종합센터 운영, 노인보호 전문기과 운영, 노인 상담소 운영지원, 사회안전망 시스템 설치운영 등이 있음
- 지역사회 복지계획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2005년부터 지역사회 복지계획(4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주민의 복지요구와 지역특성 등 지역 전반의 복지문제를 파악하여 과제로 설정, 주민참여를 토대로 한 중장기계획임
- 고령친화모델지역 : 보건, 복지, 생활, 문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고령자에게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고령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였음
- 노인가구 형태별 주요 정책사업 : 독거노인의 정책사업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독거노인 안전 확인, 건강음료 배달·발굴 지원, 명절위로금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있음

## (2)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와의 공동사업 포함)의 관련사업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사업의 시설명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사랑의 집,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임대주택, 노인보금자리, 공동거주제(의령군), 한울타리 행복의 집(김제시) 등이 있음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충청남도에서 2010년에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설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지원”을 목적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추진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시설임. 독거노인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자연마을 단위의 경로당, 마을회관, 유희주택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사랑의 집’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노인을 위해 나눔 경영실천 및 경로사상 고취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부지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립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시설

- 임. 노인 전용의 공동주택의 형태로 만들어진 시설로 현재까지 2007년 용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건축되고 있으며, 입주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한 무주택 독거노인임
- 한편, 이와 관련하여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강원도 인제군의 ‘사랑의 집’은 농촌형 임대주택 시범사업 제안에 따른 사업으로써 인제군의 지원에 의해 (사)문화도시연구소가 실시하는 농촌 집짓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사례임
  -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임대주택’은 경북 봉화군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워 집이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인에게 무료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임. 본 시설은 봉화노인복지센터내에 노인 그룹 홈, 노인요양시설과 함께 위치하고 있어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음
  - ‘노인보금자리’는 충북 단양군에서 수몰 이주민 중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임대주택 제공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로 생활안정 지원을 시행한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음
  - 상기 외에 마을회관을 활용한 공동생활홈은 경남 의령군 ‘공동거주제’ 및 전북 김제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이 있음

<표 4-38>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사업

시설명칭	시행주체	사업 내용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충남	2010년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경로당, 마을회관, 유희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하였으며, 천안, 공주, 예산, 서산의 네 곳에 조성하였음
사랑의 집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해당 지자체	노인 전용의 공동주택 형태이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조성·운영 중
	강원 인제군	‘농촌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의해 (사)문화도시연구소가 실시하는 농촌 집짓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 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임대주택	경북 봉화군	봉화군의 자체사업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인에게 무료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봉화노인복지센터 내에 조성하였음
노인보금자리	충북 단양군	수몰 이주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무료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에 위탁관리 중임
공동거주제	경남 의령군	2007년부터 기존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공동주거시설로 개보수 등을 통하여 활용한 사례로, 기존 마을회관 내부공간의 변경은 최소화하여 조성 하고 있는 사업
한울타리 행복의 집	전북 김제시	



## (3) 고령자 공동시설 연계 가능 의료·복지 프로그램

- 농촌고령자 이용시설과 관련한 직접적인 의료·복지 프로그램 및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의 3개 부처를 중심으로 전개됨(가이드북참조)

&lt;표 4-39&gt; 고령자 공동시설 연계 가능 의료·복지 프로그램사업

부처	사업명	주요 내용
복지부	건강100세 노인운동서비스 (건보공단)	○ 건강100세 운동교실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경로당 등에 전문 강사 파견하여 건강운동프로그램 등 지도(주 1~2회)
	경로당 활성화지원 서비스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관에서 관련인력 파견, 경로당이 지역의 노인복지·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평생교육(한글교실,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실 등) • 정서생활지원(노인문제상담, 복지정보 및 상담, 심리상담, 죽음준비교육 등)
	생활터전 건강지원서비스 (보건소)	○ 보건소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건강증진프로그램 기획→어르신이 모여계신 곳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 치매조기검진, 만성질환 관리방법 교육, 영양관리 교육 등
문화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을 통해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방문화원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마을에 어르신 대상 품물강습을 지원 • 어르신 문화학교, 찾아가는 문화학교, 문화동아리 지원 등
	문화 이모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지역문화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자기진단 및 학습을 통한 창의적 능력 향상 • 주요내용 : (교육)기초과정→(교육)집중과정→(지원·컨설팅)기획사업·지식실행공동체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아동·노인 복지시설(경로당 포함) 등 대상, 버스 활용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국민생활체육회)	○ 노인복지시설 순회지도 및 용품 보급, 노인맞춤형 체조 보급 등 • 주요내용 : 어르신 생활체육종목 보급, 노인주거복지시설 체력관리 집중지원 등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국민생활체육회)	○ 노인 생활체육 방향 정립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주요내용 : 65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지도 활동 제공
농식품부	가사도우미 (지역농협)	○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기초적인 가사생활유지를 위해 가사도우미를 지원
	농촌사랑 의료지원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의료낙후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촌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으로 의료활동 지원

#### (4) 의료·복지 프로그램 우수사례

##### 가. 진천군 복지정책 현황

###### ① 기초노령연금정책

-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2009년)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주어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임
-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고, 노인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임
-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지급함
  -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 , 부부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600,000원 이하임(2016년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 ② 경로우대정책

- 도시, 산업화에 따른 노인문제 대처를 위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 전통적 미덕을 기려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사상 양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정('81. 6. 5 법률 제3453호),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조(경로시설의 종류)을 시행하고 있음
- 충북, 충남, 경기 등에서 이발, 목욕, 버스 등에 대하여 노인 할인제 실시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개 업종에 대하여 경로우대 제도화('80. 5. 8)하였음
- 또한 노인교통비 지급, 수도권전철 국철구간 전액할인 실시, 국·공립미술관 100%, 국·공립국악원 50% 할인 실시, 새마을열차 및 KTX 3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③ 경로당 지원정책

- 대부분의 경로당이 전문 프로그램 부족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이 화투놀이나

밥을 함께 지어먹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어 경로당 활성화를 통하여 생산적이고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육성, 노인여가시설로서의 역할수행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임

- 경로당을 활기찬 노후생활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형 노인종합복지시설로 기능을 쇄신하며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 조성 및 확산의 토대 형성, 지역사회의 세대 간 유대 강화 및 노인세대 내 교류 증진과, 일하면서 봉사하는 노인상을 정립하고자 함
- 사회참여서비스 제공(노인자원봉사, 노인부업, 지역후원회, 지역사회자원간 연계서비스), 건강서비스 제공(건강예방 및 증진, 치매노인보호등), 보건(지)소, 지역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 방문간호사 등 의료인을 경로당에 파견하여 각종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 교양·문화정보 확산, 다양한 교양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 소식지 발행, 경로당 환경개선, 각종 상담 및 욕구파악(통계자료로도 활용) 활동도 병행

#### ④ 재가노인 복지증진정책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임
- 정책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곤란하여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으로 정하였음
- 주간보호시설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 등을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 회복을 도모함. 단기보호시설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이용대상으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독거노인으로서 낮동안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자,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정함. 구체적 서비스 내용으로는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임

## 나. 진천군 복지사업 현황

### ① 소득지원사업

- 소득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 연금지원과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에 한해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있음
- 앞으로 노후시기가 더 길어지는 만큼 노인을 위한 소득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4-40> 진천군 소득지원사업 현황

기초노령 연금지원	사업예산	•예산(백만원) : 6,261(국비5,009 도비250 군비1,002)
	사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6,395명</li> <li>• 수행방식 : 65세 이상 일정소득이하 저소득노인에 대한 급여지급</li> <li>• 급여형태 : 생활안정지원</li> <li>• 사업시기 : 연중</li> </ul>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예산	• 예산(백만원) : 400(국비200 도비60 군비140)
	사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300명</li> <li>• 수행방식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취업희망노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1인 200,000원내외/월)</li> <li>• 급여형태 : 월급</li> <li>• 사업시기 : 3월 ~ 12월(10개월 정도)</li> </ul>

### ② 소외계층 노인지원사업

- 소외계층 노인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저소득노인무료급식,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보청기지원, 독거노인 One-Stop지원 센터운영사업임
- 세부적인 예산현황은 사업별 백만원 정도이며, 소외계층을 중점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향후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의 예산확충과 운영확대를 통해, 수행방식에 있어 적극적 서비스지원이 요구됨

<표 4-41> 소외계층 노인지원사업 현황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사업예산	•예산(백만원) : 63(도비16 군비47)
	사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70명</li> <li>• 수행방식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 대한 무료식사 제공(1식 3,000원)</li> <li>• 급여형태 : 급식지원</li> <li>• 사업시기 : 연중</li> </ul>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	사업예산	• 예산(백만원) : 77(도비19 군비58)
	사업활동	• 대 상 자 : 85명 • 수행방식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 에 대한 식사배달 (1식 3,000원) • 급여형태 : 급식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저소득 재가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예산	• 예산(백만원) : 5(도비2.5 군비2.5)
	사업활동	• 대 상 자 : 5명 • 수행방식 : 보청기를 지원하여 주어 기능회복을 통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 (1인 1백만원) • 급여형태 : 물품 지원(신체적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1회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운영	사업예산	• 예산(백만원) : 130(군비100%)
	사업활동	• 대 상 자 : 저소득 독거노인 • 수행방식 :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진천군 독거노인 관리 및 보호, 민간자원발굴 및 연계(진천군노인복지관내 설치) • 급여형태 : 운영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 ③ 노인행사 지원사업

- 노인행사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어버이날 기념경로잔치, 노인의 날 행사지원, 노인체육행사 출전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지원사업 추진방식이 예산지원이 주가 되고 있지만, 차후 기업 및 기관과 관내 노인단체(노인회)와의 연계를 통해 1회성 지원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지속적 교류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임

<표 4-42> 노인행사 지원사업 현황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사업예산	• 예산(백만원) : 60(군비100%)
	사업활동	• 대상자 : 각 읍면(노인회분회), 관내노인 • 수행방식 : 경로잔치 등을 위하여 예산지원(인구수 비례 차등지원) • 급여형태 : 행사 지원 • 사업시기 : 5월중
노인의 날 행사지원	사업예산	• 예산(백만원) : 5(군비100%)
	사업활동	• 대상자 : 대한노인회 진천군 지회(관내 노인) • 수행방식 :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한 예산지원 • 급여형태 : 행사지원 • 사업시기 : 10월중(1회)
노인 체육행사 출전지원	사업예산	• 예산(백만원) : 1.6(군비100%)
	사업활동	• 대상자 : 대한노인회진천군지회 • 수행방식 : 노인게이트볼 대회 출전 등에 대한 훈련비 등 지급 • 급여형태 : 행사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④ 노인사회참여 활동지원사업

- 노인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으로 노인자율봉사활동지원, 지역노인봉사대운영 등이 운영되고 있음
-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서 공익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과 사업의 적극적 예산확충이 요구됨

<표 4-43> 노인사회참여 활동지원사업 현황

노인자율 봉사활동 지원	사업예산	• 예산(백만원) : 6(도비1 군비5)
	사업활동	• 대상자 : 50명 • 수행방식 : 진천군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자율봉사 • 급여형태 : 활동비 지원(매월 10,000원) • 사업시기 : 연중
지역노인 봉사대 운영	사업예산	• 예산(백만원) : 80(도비16 군비64)
	사업활동	• 대상자 : 166명 • 수행방식 : 노인봉사대원의 청소년선도, 노인교통봉사, 자연보호 활동 등 수행(주1회, 월4회 봉사) • 급여형태 : 활동비 지원(매월 40,000원) • 사업시기 : 연중

⑤ 경로당 및 복지관 지원사업

- 경로당 및 복지관 지원사업으로 경로당운영지원, 경로당운영전담인력 지원, 경로당기능개선사업, 경로당 및 노인보기시설가스시설정기검사,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확대, 노인복지관위탁운영 등이 있음
- 경로당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로당 시설지원사업과 프로그램 및 인력지원사업의 특성화가 요구된다. 특히 경로당 인력지원을 확충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 및 생활프로그램 구성의 내실화가 요구됨

<표 4-44> 경로당 및 복지관 지원사업 현황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예산	• 예산(백만원) : 380(도비57 군비323)
	사업활동	• 대상자 : 관내 경로당 260개소 • 수행방식 :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운영비 : 개소당 년864천원(월72천원) - 난방비 : 개소당 년600천원(동절기 5개월 지급) • 급여형태 : 운영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사업예산	• 예산(백만원) : 21(도비4 군비17)
	사업활동	• 대상자 :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1명(사회복지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행방식 : 경로당 이용노인 욕구조사 분석,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수립과 운영, 경로당 임원교육, 만족도조사, 생활교육 등</li> <li>급여형태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li> <li>사업시기 : 연중</li> </ul>
경로당 기능개선 사업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백만원) : 400(균비100%)</li> </ul>
	사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경로당 43개소</li> <li>수행방식 :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신축, 보수, 기능보강 등 사업 실시</li> <li>경로당 신축 : 3개소/180백만원</li> <li>경로당 보수 : 20개소/120백만원</li> <li>경로당 기능보강 : 20개소/100백만원</li> <li>급여형태 :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li> <li>사업시기 : 연중</li> </ul>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가스시설 정기검사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백만원) : 40(균비100%)</li> </ul>
	사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270개소</li> <li>수행방식 :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검사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li> <li>급여형태 : 검사비 지원</li> <li>사업시기 : 5월~6월경</li> </ul>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확대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백만원) : 4(균비100%)</li> </ul>
	사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진천읍 다중이용시설(테마공원) 및 관내 경로당</li> <li>수행방식- 진천읍 테마공원 내 해충포획기 5대 설치 - 관내 마을경로당 2주/1회(총14회)방역소독 실시</li> <li>사업시기 : 4~10월</li> </ul>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백만원) : 430(균비100%)</li> </ul>
	사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대한노인회진천군지회</li> <li>수행방식 : 노인관련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li> <li>급여형태 : 운영 지원</li> <li>사업시기 : 연중</li> </ul>

#### ⑥ 치매 및 재가노인지원사업

- 치매 및 재가노인지원사업 현황은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음
- 점차 군내의 치매노인의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치매상담센터 운영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될 것임
- 현재 치매가족용 소책자, 리플렛 지급과 같은 소극적 대처에서 벗어나, 치매 치료 전문병원과의 연계 및 치매노인 상담사의 육성 및 가정 파견과 같은 사업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됨

<표 4-45> 치매 및 재가노인지원사업 현황

치매상담 센터운영	사업예산	•예산(백만원) : 5(도비2.5 군비2.5)
	사업활동	•대상자 : 65세 이상 치매환자 80여명 •수행방식 : 리플렛, 치매가족용 소책자 등 제작 및 치매관련 용품 지급 •급여형태 : 현물(서비스) 지원 •사업시기 : 연중
재가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업예산	• 예산(백만원)
	사업활동	•대상자 :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 인원 100명 •수행방식 : 위탁을 통한 재가복지서비스 등 수행 •급여형태 : - •사업시기 : 연중

다. 진천군 노인복지 프로그램 현황

① 노인돌봄 프로그램

- 노인돌봄 프로그램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이 있음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경우 군민이 대상자가 되며,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과 복지욕구조사와 같은 중요한 프로그램이 운영됨
- 실질적으로 독거노인과 1:1로 대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이 요구됨. 또한 노인들의 복지욕구조사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사업설계에 적극 반영해야 함

<표 4-46> 노인돌봄 프로그램 현황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사업예산	• 예산(백만원) : 166(국비116 도비25 군비25)
	사업활동	• 대상자 : 430명 • 수행방식 :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복지욕구조사, 서비스 연계 등 • 급여형태 : 관리자 - 월급/ 독거노인 - 관련 서비스 제공 • 사업시기 : 연중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사업예산	• 예산(백만원) : 60(국비42 도비9 군비9)
	사업활동	• 대 상 자 : 19명 • 수행방식 :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인 노인의 가구 소득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급여형태 : 현물(서비스)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 ② 치매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

- 치매 및 건강검진프로그램 현황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 저소득노인건강진단 실시, 중풍제로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있음
- 현재 저소득노인건강진단 경우 년 간 1회(6월 중)으로 향후 년간 2회 이상으로 확충이 요구됨

<표 4-47>치매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 현황

치매조기 검진사업	사업예산	• 예산(백만원) : 10(기금5 도비2.5 군비2.5)
	사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60세이상 모든 노인</li> <li>• 수행방식 :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업대상자를 파악하고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선별검사를 실시(보건소) 선별검사 결과 진단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거점병원을 통하여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제고</li> <li>• 급여형태 : 현물(서비스) 지원</li> <li>• 사업시기 : 연중</li> </ul>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실시	사업활동	• 예산(백만원) : 3(도비0.45 군비2.55)
	사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노인 중 건강검진 희망자</li> <li>• 수행방식 : 관내 병원과 협약을 통한 1차 진단 후 질병 의심자에 대한 2차 진단 실시</li> <li>• 급여형태 : 현물(서비스) 지원</li> <li>• 사업시기 : 6월중</li> </ul>
중풍제로 마을만들기 사업	사업활동	• 예산(백만원) : 7 (군비100%)
	사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 상 자 : 관내 12개 마을 630여명</li> <li>• 수행방식 : 교육</li> <li>• 사업시기 : '10. 1. ~ 12</li> </ul>

## ③ 경로당 활성화 사업

- 경로당활성화 경우 군비 100%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상주하는 곳이므로 향후 경로당복지사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됨
- 건강한 노인문화 형성을 위하여 전문가인 경로당 복지사를 파견하여 생활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사업의 연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 4-48>경로당 활성화 사업 현황

사업예산	• 예산(백만원) : 15(군비100%)
사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관내 경로당 9개소</li> <li>• 수행방식 :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에 전문 프로그램(민요, 가요, 미술놀이, 건강체조 등)을 도입하여 노인문화 조성 ※ 수행처 - 진천군노인복지관</li> <li>• 급여형태 :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li> <li>• 사업시기 : 연중</li> </ul>

## (5) 의료·복지 프로그램사업 연계 활성화 방안

### ① 복지네트워크 연계방안

-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농촌의 복지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위한 개별프로그램이기 보다는 노인을 위한 개괄적인 프로그램이므로 실제로 공동생활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함
  - 단, 경로당 활성화 방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해볼 수 있음
-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인 복지네트워크 구축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인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공동생활홈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 노인복지주택 내에서는 복지 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과 시행규칙에 시설설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농어촌 노인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무료 혹은 실비의 요양시설 등과 관련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행정단위에서 제공하여 노인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공동생활홈 자체 시설운영에 필요한 노인치료 및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 단위 이하 읍·면·리 마을지역까지 연계 과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② 공동생활홈 내에서의 프로그램 제시

- 공동생활홈 내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얼마든지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 여가서비스
  - 각종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본가에서 생활하며 행해왔던 취미를 되살리도록 돕고 이동복지관 프로그램과 접목시키면 노래교실, 체조교실 등을 통해 활기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소외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활기를 되찾게 되면 지역사회의 분위기 역시

밝아지고 이미지가 개선되게 됨

○ 교육서비스

- 건강 및 교양강좌,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치료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아 퇴화되어가는 잔존능력을 되살리거나 유지하도록 함
- 적은 교육비용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여 입원, 요양 등의 고비용 지출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보건의료서비스

- 방문간호사 혹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연계받아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본건강 체크를 행함으로써 안심하고 건강을 유지 관리하도록 함

○ 요양서비스

-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상호 부조적 유대감이 형성되고 서로 간에 공존, 공생의 생활능력이 형성
- 가벼운 요양상태에 놓여있는 동반자라 할지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그룹 홈에서 생활이 가능하며 방문 요양사를 통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③ 공공과 민간간 협의체운영 활성화 방안**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은 시설건립에 따른 유형연구, 시설 규모,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련하며, 시설의 건립이후는 민간단체와의 협업 및 위탁 운영을 통한 운영활성화를 도모
-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민간 운영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기본계획 및 운영관리방안을 수립

**(6) 지방 내 부서 및 기관 간 협의체 운영활성화 방안**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주무부처가 건설과, 주민복지과 및 도시과를 비롯해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본 사업이 지속성을 지니지 못하고 한시적인 시범사업으로 진행됨으로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임.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 만족도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타부서 유사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인지도를 잃고 있는 결과임

- 타부서 유사사업을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고령자시설의 건립이후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연계프로그램의 발굴 및 융합이 요구됨

## 제5장 요약 및 제언

---

1. 시범사업의 현황 및 공동시설 현황
2. 시범사업의 성과
3. 시범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4.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방향



## 제5장 요약 및 제언

### 1. 시범사업의 현황 및 공동시설 현황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고령자 및 노인독거가구의 증가, 농촌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의 취약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농촌지역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적 노인복지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기존 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제안되었음
- '14년과 '15년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공동시설의 수는 총 152개였으나 사업을 포기 혹은 사업을 반납한 경우가 7개('14년 3개, '15년 4개)로서,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은 총 145개에 해당함
-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0개 지역에서 총 145개소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경북이 가장 많은 36개소(24.8%), 다음은 경남과 전북이 각각 29개소(20.0%)가 분포하여, 전체사업 중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종은 1개소, 경기도가 4개소, 제주가 5개소로 낮게 나타남
- 공동시설의 이용자 현황을 보면, 공동생활홈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45개소에 총 27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급식시설은 하루에 총 1,608명, 한달을 기준으로 보면 20,54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작은목욕탕은 월 8,710명으로 한 목욕탕 당 월 평균 512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마을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마을이장이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마을 구성원의 배경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공동시설의 관리주체의 책임자로서는 긍정적이라 판단됨
- 연계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시설은 총 128개소 중 56개소(43.8%)로 나타났으며, 연계 프로그램의 내용은 문화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의 3가지의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음. 진행되는 프로그램 수는 약 118개로서 이 중 복지·건강 프로그램이 78개(66.1%)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여가프로그램이 36개로서 약 30.1%로 나타남

## 2. 시범사업의 성과

-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에서 실질적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시범사업에 선정된 총 53개소의 고령자 공동시설의 이용자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만족율은 평균 86.7%로 나타남

<표 5-1>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종합만족도

시설명	전반적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 평균	시설 수	설문 및 인터뷰 수
	만족도	만족율(%)			
공동생활홈	4.49	91.0	4.26	25	89
공동급식시설	4.29	83.7	4.06	18	135
작은목욕탕	4.16	85.4	3.96	10	96
평균 / 합계	4.31	86.7	4.09	53	320

- 공동생활홈 입주 후 식사, 목욕, 청소, 세탁 횟수에서 전체적으로 ‘횟수가 증가’하여, 영양과 위생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특히 정서 및 친밀감 측면에서 높은 만족감이 나타났음
- 공동급식시설 이용으로 반찬 가지 수가 증가하고, 개인별 월 평균 식사비용이 감소하여 영양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여하였음
- 작은목욕탕이 마을에 설립됨에 따라 목욕횟수가 증가하였고, 비용을 좀 더 지출하더라도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보장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확인됨
- 공동생활홈의 경우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마을에서는 여건에 따라 부부용, 남녀거주 가능한 유형, 다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유형 등 새로운 모델이 적용되고 있음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은 지역의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리더들에 의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생활밀착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공동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농촌복지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음
  - 특히 공동생활홈의 경우, 마을에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홈이 생겨나면서 마을 주민 모두가 사회적 부양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됨
  - 현재 농촌지역에 나타난 문제점은 고령화, 과소화, 열악한 정주환경, 유희시



설의 증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본 시범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 형식의 하드웨어를 제시하였음

- 각 지자체에서 농촌고령자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의 특성과 지자체의 역량에 맞는 사업을 창출하는데 토대를 마련함
  - 본 시범사업에서 국비와 더불어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면서 고령자 공동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전남 함평군)가 있으며, 이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자체에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본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지자체(전라남도)도 있으며, 이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와 노하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마을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주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는데 기여함.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이 마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시범사업은 마을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방치된 건물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농촌건축문화를 새롭게 변화시켰음
-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야가 다른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관점이 내재되어 있는 전문가들의 협업시스템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음
  - 특히 고령자를 위한 건축설계 확산 등을 위해 총괄계획가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의 시도는 높게 평가될 필요가 있음

### 3. 시범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 공동생활홈의 경우, 시범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여 주민만족도와 시설의 활용도가 시설의 용도와 맞지 않는 결과가 나타남
  - 공동생활홈의 경우 입주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독립거주형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극히 미비하게 나타남

- 독립거주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 공동생활홈의 사업 취지와 달리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음
  - 공동생활홈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착하지 못하여 공동생활홈을 “개별적인 거주”가 아니라 “마을 주민이 예전의 공간처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취침이 가능한 공간”의 개념으로 해석되면서 마을의 경로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개인 거주자의 사적생활이 보장된 공간임을 사업의 시작단계에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마을 주민들의 공유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주거개념의 인식부재는 거주자들에게는 본인의 주택이 노후화되더라도 마을 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주공간인 공동생활홈의 거주비용을 부담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등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음
- 공동급식시설은 마을에 존재하는 공동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이므로 사업을 포기하여 반납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공동급식이 이전부터 이루어지던 마을은 사업 선정 시 시설의 중복에 대한 현장조사가 요구됨
    - 농번기에는 마을공동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시기는 마을 주민 모두가 바쁜 시기이므로 식사를 준비해줄 인력이 없음. 따라서 농번기에 공동급식시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번기만이라도 가사도우미 같은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함
  - 작은목욕탕의 경우, 초기시설비용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초기에는 규모의 축소, 값싼 자재 이용, 사업 포기 등의 사례가 나타나며, 이후에는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함
    - 작은목욕탕은 다른 공동시설에 비해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더 요구되고, 유지관리비가 더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규모를 계획해야 하고, 신청 및 선정 시부터 현실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시설물의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건축계획상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유희건축물의 재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구조적·안전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은 건축형태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본 시범사업으로 마을경관(정주여건)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낮게 책정된 사업비로 인하여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발생하며, 건축물의 질적 향상이나 농촌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이 요구됨
- 본 시범사업은 마을과 리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을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을 이장이 2년마다 교체되면서 이전 이장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거나, 책임 회피, 혹은 본인의 재임기에 치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남
-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은 본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사업담당부서가 통일되지 못하고, 사업 도중에 담당공무원이 교체됨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강화된 공무원이 교체됨으로 인하여 그 강화된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됨
- 총괄계획가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함에 따라 자문내용에 대한 구속력이 보장되지 않아, 총괄계획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나타났음.

#### 4.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방향

- 농촌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촌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다만,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활용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은 농촌지역 고령자 및 거주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이므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함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은 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높은 수준의 운영관리방안 등을 필요로 하는 특수 목적사업이므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만을 대상으로 삼아 사업의 내용과 체계를 특화시켜 다른 사업과 구분되도록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특화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을 제안하였음
- 사업의 목적과 취지 및 운영관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주요 대상시설을 독립거주형 공동생활홈. 하나의 침실에 2인 이하가

거주하는 독립침실형의 공동생활홈, 읍면단위에 조성하는 거점형 작은목욕탕으로 제안하였음.

- 공동생활홈 보급시 거주용도의 주거시설 외에 공동거실, 공동작업실, 공동텃밭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 거주자들의 공동생활에 다양성이 부여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해야 함
- 독립거주형의 경우는 개별거주공간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공동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공동공간의 확보가 요구됨
- 독립침실형의 경우는 개별공간과 공동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평면계획이 요구됨
- 작은목욕탕은 수요 예측 및 유지관리 적정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시설의 규모가 결정되도록 해야 하며, 대부분 수익창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그 규모는 최소화해야 함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진절차 및 평가지표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농촌고령자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에 맞는 공동시설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농촌지역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건축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역량강화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에 대한 책임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마을리더의 역할과 주민들의 의식으로 인해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시설의 운영관리 및 운영규정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거점으로 복지·의료·문화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부처간·지자체간 협업 체계 구축과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필요함
- 농촌고령자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에 맞는 공동시설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농촌지역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촌건축전문가의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시설의 위치 및 이용대상에 따라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마을형)과 권역단위나 읍면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거점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시설조성(H/W)과 운영관리(S/W)로 분리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본 시범사업을 통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농촌고령자 뿐만아니라 농촌지역의

- 복지라는 틀 안에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노하우가 형성되었으므로, 중앙 정부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즉, 마을단위의 공동시설(마을형)은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권역단위나 읍면단위에 복합시설(거점형)로서의 복지사업 모델을 창출할 것을 제안함
  - 내용적으로는 마을형과 거점형이 유사하나, 위치 및 이용대상은 상이하므로 그에 따라 운영관리 프로그램의 지원도 연계 또는 차별화되어야 함
- 본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주거·영양·위생·복지 기능이 집적화된 시설에서 노인·장애인·유아·유학생 등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 기능의 거점형 공동시설의 도입을 제안함

## <참고문헌>

- 1) 2010년 주거실태조사
- 2) 2015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2016.09.
- 3) KREI 현장서베이 2호,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조사 자료
- 4)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농어촌 정주성 향상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방안 연구용역, 2015
- 5) 권오정 외, 스웨덴 치매노인 그룹홈 모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6(5), 2000.5.
- 6)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2016.4.
- 7) 김승근, 재생을 통한 농어촌 마을형 공동생활 홈 조성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5(1), 2013.
- 8) 김연호, 독립생활을 위한 노인 주거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론, 2003
- 9) 김진환 외 2인,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4). 2015.
- 10) 김현진 외 1인, 농촌노인의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의식 및 요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3), 2006.
- 11) 김현진 외 2인, 고령자 그룹홈의 운영과 거주자의 생활 실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6, 2005
- 12) 남윤철,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사례와 개선방향,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4(2), 2012.
- 13) 남윤철, 농촌지역 고령자 공동시설의 추진방향;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1), 2015.
- 14) 남윤철, 농촌형 고령자 그룹홈의 사례와 제안,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4), 2015.
- 15) 농림부,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2013. 12
- 16) 농림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 2015
- 17) 농림부·농어촌연구원, 농촌임대주택의 도입방안 및 사업 운영체계 연구, 2007.
- 18) 농림부·농어촌연구원, 농촌임대주택의 도입방안 및 사업 운영체계 연구, 2007.
- 19) 농림부·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 매뉴얼 개발, 2007.

- 20) 농림부·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기획설계 및 유형별 운영모델 개발, 2015.
- 21) 농림부·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건축계획기준 개발, 2014.
- 22) 농림부·한국농어촌공사, 농촌마을 리모델링 기법개발에 관한 연구, 2007.
- 23) 농림부·한국농어촌공사, 농촌마을 리모델링 기법개발에 관한 연구, 2007.
- 24)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고령자 지원시설 현황, 2014.
- 25) 박현춘외 2인,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실태조사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13(2), 2011.
- 26) 방점숙, 그룹홈의 실태와 개선방안, 영남대 석론, 2005.
- 27) 보건복지부,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 28) 오찬옥,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3), 2008.
- 29) 유종옥, 노인주거 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요인 분석을 통한 시설기준 제안에 관한 건축 계획적 연구, 2012
- 30) 이기용, 고령화시대 농촌마을 공동생활공간 개발에 관한 연구, 동신대 석론, 2015.
- 31) 이진혁, 일본 도시형 유료노인 홈의 건축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2(2), 2006.
- 32) 조부철, 농촌노인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목포대 박론, 2007.
- 33) 조원석외 1인, 독거노인용 경로 홈의 유형개발과 계획기준의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4(4), 2012.
- 34) 최명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주거대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9), 2000.
- 35) 최명규, 농촌지역 내 노인 단독가구의 주거환경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3(2), 2001.
- 36)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마을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 2014
- 37)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개발 연구, 2010
- 38) 한승엽, 농촌지역의 고령자를 위한 소규모지역 이용시설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2008.





## 〈부록 1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조사표〉

---

공동생활홈 인터뷰지

공동급식시설 설문지

행정전문가 설문조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실태조사표



<공동생활홈 인터뷰지>

전체번호		건물번호		설문번호	
공동생활홈 유형		1. 공동거주형 2. 독립침실형 3. 독립거주형 4. 혼합형			
조사일시		조사자		시·군·명	

< 공동생활홈 >

안녕하십니까?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봄기운을 느껴지는 이 계절에 가정에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인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 마을에 조성된 공동생활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을 받고 진행하고 있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향후 보다 나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지원과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은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며, 마을 및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소중한 자료가 되므로 아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연구 이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사항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전혀 해가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자 : 김승근(강동대 / 031-400-1765) · 도현학(영남대 / 053-810-2596)

서재형(건축사사무소 선 / 062-432-0824) · 변경화(가톨릭관동대 / 033-649-7423)

[일반적인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            )세 / (            )년생
3. 귀하는 공동생활홈에는 언제부터 생활하였습니까?    년    월부터
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
5.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① 자녀용돈    ② 연금·저축    ③ 일을 하거나 부업    ④ 정부보조금    ⑤ 기타(            )



**[공간구성]**

번호	평가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동생활홈까지의 거리는 만족한다.	1	2	3	4	5
	걸어서 ( )분 / 걸어오면서 불편한 점:					
2	공동생활홈의 위치는 만족한다.	1	2	3	4	5
	내용 :					
3	공동생활홈의 외부공간은 만족한다.	1	2	3	4	5
	내용 :					
4	공동생활홈의 전체적인 내부공간은 만족한다	1	2	3	4	5
	내용 :					
5	공동생활홈의 크기는 만족한다.	1	2	3	4	5
6	공동생활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수는 적당하다.	1	2	3	4	5
7	공동생활홈 내부공간의 밝기는 만족한다.	1	2	3	4	5
8	공동생활홈의 수납공간은 적당하다.	1	2	3	4	5
9	공동생활홈의 공간배치(동선)은 만족한다.	1	2	3	4	5
10	공동생활홈의 마감재는 만족한다.	1	2	3	4	5
11	공동생활홈의 거실은 만족한다.	1	2	3	4	5
	내용:					
12	공동생활홈의 부엌은 만족한다.	1	2	3	4	5
	내용 :					
13	공동생활홈의 화장실은 만족한다.	1	2	3	4	5
	내용 :					
14	공동생활홈의 개인공간은 만족한다.	1	2	3	4	5
	내용 :					
15	기타공간( )은 만족한다.	1	2	3	4	5
	내용					



[영양 및 위생]

	공동생활홈 입주 전		공동생활 입주 후	
식사 횟수	( 회/일)		( 회/일)	
목욕 횟수	여름	( 회/월)	( 회/월)	
	겨울	( 회/월)	( 회/월)	
청소 횟수	( 회/주)		( 회/주)	
세탁 횟수	( 회/주)		( 회/주)	

번호	평가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식 사	공동생활홈 입주 후 삼시세끼를 꼭 챙겨먹는다	1	2	3	4	5
	식사는 만족한 편이다.	1	2	3	4	5
	식사준비방법 :					
	식사준비 방법은 만족한다.	1	2	3	4	5
	식사재료 조달 방식 / 재료 :					
	식사재료 조달방법은 만족한다.	1	2	3	4	5
목 욕	공동생활홈 입주 후 목욕횟수가 늘었다	1	2	3	4	5
	목욕은 만족한다.	1	2	3	4	5
	목욕방법 :					
	목욕방법은 만족한다.	1	2	3	4	5
	목욕순서 :					
	목욕순서는 만족한다.	1	2	3	4	5
청 소	공동생활홈 입주 후 청소횟수가 늘었다	1	2	3	4	5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깨끗하다	1	2	3	4	5
	공동공간 청소방식 :					
	공동공간 청소방식은 만족한다.	1	2	3	4	5
	개인으로 사용하는 방은 깨끗하다	1	2	3	4	5
	개인공간 청소방식 :					
	개인공간 청소방식은 만족한다.	1	2	3	4	5
빨 래	공동생활홈 입주 후 세탁횟수가 늘었다	1	2	3	4	5
	예전과 비해 옷빨래는 만족한다.	1	2	3	4	5
	빨래방법 :					
	빨래 너는 장소 :					
	빨래 방법은 만족한다.	1	2	3	4	5

◆ [영양 및 위생]에 대한 기타 :

[유지관리]

	공동생활홈 입주 전	공동생활홈 입주 후
거주비용	공동생활홈 입주 전 월 평균 거주비용 ( 원/월)	공동생활홈 입주 후 월 평균 거주비용 ( 원/월)
난방방식	떨감 / 연탄 / 기름 / 전기 / ( )	화목 / 기름 / 전기 / ( )
겨울철 난방비	( 원/월)	( 원/월)
냉방방식	에어컨 / 선풍기 / 창문열기 / ( )	에어컨 / 선풍기 / 창문열기 / ( )
여름철 평균 전기세	( 원/월)	( 원/월)

번호	평가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동생활홈 입주 후에 겨울철 난방비가 절약되었다	1	2	3	4	5
2	그럼 겨울철에 난방비는 적당하다. (절약하기 위해 추위도 사용을 하지 않는지를 확인)	1	2	3	4	5
3	공동생활홈 입주 후에 여름철 냉방비가 절약된다.	1	2	3	4	5
4	그럼 여름철 냉방비는 적당하다. (절약하기 위해 더위도 사용을 하지 않는지를 확인)	1	2	3	4	5
5	평상시 전기사용료(전구, 티비 등)는 적당하다.	1	2	3	4	5
6	공동생활홈 거주비용에 만족한다.	1	2	3	4	5
7	쓰레기 처리 방식 :					
	쓰레기 처리 방식에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공동생활홈 운영방식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9	나는 공동생활홈 입주 후 지자체 복지서비스에 만족한다.	1	2	3	4	5
	만족이나 불만족의 내용 :					

◆ 공동생활홈 전반적인 사항에서 개선사항 :

◆ 우리마을에 공동생활홈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나는 이곳 공동생활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중에 (            )점 입니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동급식시설 설문지>

전체번호		건물번호		설문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시·군·명	

< 공동급식시설 >

안녕하십니까?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봄기운을 느껴지는 이 계절에 가정에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인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 마을에 조성된 공동급식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을 받고 진행하고 있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향후 보다 나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지원과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은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며, 마을 및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소중한 자료가 되므로 아래 문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체크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연구 이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사항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전혀 해가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자 : 김승근(강동대 / 031-400-1765) · 도현학(영남대 / 053-810-2596)

서재형(건축사사무소 선 / 062-432-0824) · 변경화(가톨릭관동대 / 033-649-7423)

◆ 급식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            )세 / (            )년생
3.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
4. 이 마을에서 생활하신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            )년
5. 이 마을에는 어떻게 해서 살게 되었습니까?  
 ① 이 마을에서 태어났음 ② 시집왔음 ③ 이사왔음 ④ 귀농·귀촌 ⑤ 기타(            )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나는 급식시설까지의 거리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급식시설의 위치는 적당하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나는 주방의 크기에 만족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나는 식당의 크기에 만족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나는 급식시설의 밝기에 만족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나는 주방과 식당이 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급식시설에서 물건들을 보관해두는 장소는 적당하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나는 급식시설에서 함께 식사하는 인원수에 만족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급식시설에서 식사하시면서 귀하께서 느끼는 번호에 ○해 주십시오.

1. 급식시설에서 식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 친해졌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급식시설에서 식사 한 후에도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심심할 때는 급식시설에 놀러올 때가 많아졌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다른 사람들과 급식시설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급식시설에 있으면 마을 사정을 잘 알게 되어서 좋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급식시설에 있는 물건들을 사용하기에 편하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다른 사람들은 급식시설에 있는 물건들을 너무 아무렇게나 사용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내 자녀들은 급식시설에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급식시설에서 식사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좋게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급식시설의 식사에 대하여 귀하께서 느끼는 번호에 ○해 주십시오.

1. 우리마을에 공동급식시설이 생긴 후 하루 세끼를 꼭 챙겨먹는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나는 급식시설에서 식사를 할 때 반찬의 가지 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급식시설을 이용하기 이전 반찬 가지 수는? (            가지)
4. 급식시설을 이용한 이후 반찬 가지 수는? (            가지)
5. 나는 급식시설에서 식사하는 음식의 맛과 질에 만족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나는 급식시설에서 식사하는 금액에 만족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급식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1개월 식사비용은 약 얼마정도인가요?  
 (            )원/월
8. 현재 급식시설을 이용하면서 드는 식사비용은 1개월에 얼마인가요?  
 (            )원/월
9. 식사당번에 따라 음식이 맛이 없어서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나는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회의나 모임에는 항상 참여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우리 마을은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잘 받아들여진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우리마을은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회의나 모임은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우리마을의 공동급식시설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서 만족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공동급식시설에서의 식사횟수는 정해져 있어서 좋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공동급식시설에서의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좋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나는 우리마을의 공동급식시설 운영방식에 만족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급식시설을 이용하면서 제공되는 건강검진, 체조, 진료, 교육, 문화활동 등의 지원에 만족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11-1. 만족하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
12. 나는 급식시설에 지원되는 시군이나 마을의 운영비용에 대해 만족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12-1 운영비용에 만족하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
13. 나는 우리마을에 있는 공동급식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나는 우리마을에 있는 공동급식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중에 ( )점 입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목욕탕 설문지>

전체번호		건물번호		설문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시·군·명	

< 작은목욕탕 >

안녕하십니까?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봄기운을 느껴지는 이 계절에 가정에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인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 마을에 조성된 작은목욕탕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을 받고 진행하고 있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향후 보다 나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지원과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은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며, 마을 및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소중한 자료가 되므로 아래 문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체크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연구 이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사항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전혀 해가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자 : 김승근 (강동대 / 031-400-1765) · 도현학(영남대 / 053-810-2596)

서재형(건축사사무소 선 / 062-432-0824) · 변경화(가톨릭관동대 / 033-649-7423)

◆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 )세 / ( )년생
3.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
4. 이 마을에서 생활하신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 )년
5. 이 마을에는 어떻게 해서 살게 되었습니까?  
 ① 이 마을에서 태어났음 ② 시집왔음 ③ 이사왔음 ④ 귀농·귀촌 ⑤ 기타( )





4. 목욕탕 내부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나는 목욕탕 건물의 규모에 만족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나는 목욕탕의 실내밝기에 만족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나는 욕실의 크기에 만족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나는 욕탕의 크기에 만족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나는 탈의실 크기에 만족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나는 휴게공간에서 여유롭게 있을 수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목욕탕 내의 욕실, 욕탕,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은 서로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나는 목욕탕의 마감재에 만족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목욕탕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번호에 ○해 주십시오.

1. 우리 마을에 목욕탕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과 더 친해지게 되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사람들과 같이 목욕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겁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내가 먼저 목욕하러 가자고 하는 경우가 많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목욕하러 가기 싫을 때, 누가 목욕가자고 하면 같이 가는 편이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목욕탕이 생기기 전보다 목욕을 더 자주 하게 되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목욕탕은 겨울에 춥지 않아서 좋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면 마을 사정을 잘 알게 되어서 좋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목욕탕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물건들을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내 자녀들은 마을에 있는 목욕탕에서 가서 자주 목욕을 하라고 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목욕탕내의 위생, 설비,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적당한 번호에 ○해 주십시오.

1. 목욕탕의 욕탕이 있는 곳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목욕탕의 휴게공간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목욕탕의 탈의실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목욕탕의 화장실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목욕탕의 물은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목욕탕에서 목욕할 때 물은 잘 나온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우리마을에 있는 작은목욕탕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서 만족한다.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작은목욕탕의 목욕비 내는 방식에 만족한다.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1. 목욕비가 만족하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

8. 우리마을에 있는 작은목욕탕의 운영 방식에 만족한다.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1. 만족하지 않은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9. 나는 작은목욕탕과 연계된 지자체 복지서비스에 만족한다.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1. 만족스러운 경우, 만족하고 있는 서비스 명칭은?

( )

9-2.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 )

10. 나는 우리마을에 있는 작은목욕탕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나는 우리마을에 있는 작은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좋다.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중에 ( )점입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전문가 설문조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전문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봄기운을 느껴지는 이 계절에 언제나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2014년~2015년에 걸쳐 추진되었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추진과정과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수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 첫째,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 둘째,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의 추진방향 설정
- 셋째, 사업추진 방식과 절차의 체계적인 정비와 성과제고 방안 도출
- 넷째,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운영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방향설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에 관여 또는 참여하셨거나 당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일선 행정전문가들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 수렴하고자 합니다. 응답자는 **시범사업 개소당 3인 이상**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향후 보다 나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지원과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은 마을 및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소중한 자료가 되므로 다소 내용이 길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연구 이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사항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전혀 해가 미치지 않을뿐더러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설문지는 **4월 10일(일요일)까지 [kyeong5185@naver.com]** 으로 전송해주시길 바라오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지역별 담당 연구자에게 문의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4월 / 책임연구원 김승근 배상

지역	연구자	이메일	연락처	소속
세종·충북·충남	김승근 교수	kimlaud@naver.com	010-5498-2362	책임연구원(강동대학교)
경북·경남	도현학 교수	eapb@ynu.ac.kr	010-6589-6816	공동연구원(영남대학교)
경기·강원·제주	변경화 교수	kyeong5185@naver.com	010-9124-5185	공동연구원(가톨릭관동대학교)
전북·전남	서재형 건축사	archiseo@nate.com	010-2630-0824	공동연구원(건축사사무소 선)

**응답자 인적사항**

\* 이 사항은 절대 비공개이며, 응답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 시에만 활용됩니다.

(현)소속 및 직책		성명 및 연락처	
도/시/군/구		성명	
실/과/소		이메일	
직책		사무실	
담당업무		휴대폰	

■ 응답자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시범사업에 관여하거나 참여하게 되신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바랍니다.

1) (시범사업 당시) 연령								
연 령	20대	30대	40대	50대	기타( )	성 별	남	여
2) (시범사업 당시) 소속 및 직책								
실/과/소				직 책				
직 렬				담당업무				
3) (시범사업 당시) 공직 근무경력								
총 근속년수	약 ( )년 ( )개월			해당부서 경력	약 ( )년 ( )개월			
4) 시범사업 참여 기간								
시작 시기	20( )년 ( )월	종료 시기	20( )년 ( )월	참여 기간	약 ( )개월			
5) 귀하께서 참여하신 시범사업의 유형								
선정 연도	2014년도 ( )개소			2015년도 ( )개소				
사업 종류	공동생활홈 ( )개소			공동생활홈 ( )개소				
	공동급식시설 ( )개소			공동급식시설 ( )개소				
	(작은)공동목욕탕 ( )개소			(작은)공동목욕탕 ( )개소				
6) 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실/과/소				담당(계)				
업무분장 이유는(서술)?								
7) 귀하께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역할은?								
참여 계기(서술)								
담당 역할(서술)								
8) 귀하의 경험을 토대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을 담당해야할 부서는?								
실/과/소				담당(계)				
그 이유는(서술)?								
9) 귀하의 경험을 토대로 업무상 애로사항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2. 시범사업에 관여 및 참여하신 경험을 토대로 해당사항에 다음과 같이 √해 주십시오.

질문	질문에 대한 찬반 의견과 가중치				
	5	4	3	2	1
	적극 찬성	대체로 찬성	보통	대체로 반대	적극 반대
			√		

No	질문 내용 (가중치가 높을수록 질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평가 및 의견				
		5	4	3	2	1
1)	시범사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았다.					
	응답 이유(서술)					
2)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응답 이유(서술)					
3)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꼈다.					
	응답 이유(서술)					
4)	농촌에서 고령자를 위한 공동시설은 필요하다.					
	응답 이유(서술)					
5)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응답 이유(서술)					
6)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					
	응답 이유(서술)					
7)	시범사업은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았다.					
	응답 이유(서술)					
8)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응답 이유(서술)					
9)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끼지 못했다.					
	응답 이유(서술)					
10)	농촌에서 고령자를 위한 공동시설은 필요하지 않다.					
	응답 이유(서술)					
1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응답 이유(서술)					
12)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축소되어야 한다.					
	응답 이유(서술)					

<이 문항부터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질의하고자 하오니, 앞 문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관계없이 모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에서 공공기관 역할분담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수립</li> <li>◦ 국가예산 확보 및 사업비 지원</li> <li>◦ 전문가(총괄계획가) 선정 및 지원</li> <li>◦ 사업추진 실태 모니터링 및 관리</li> <li>◦ 사업대상 심사 및 선정</li> <li>◦ 사업의 성과 분석</li> </ul>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전반에 관한 중간 관리</li> <li>◦ 중간 지원 및 매개 업무</li> </ul>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타당성 검토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li> <li>◦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li> <li>◦ 조례·규정 등 사업추진 근거 마련</li> <li>◦ 사업시행조직 구성 및 자부담 사업비 조달</li> <li>◦ 기본계획, 설계 및 감리, 시공 등 사업의 집행</li> <li>◦ 유지관리 방안 마련 및 시행</li> </ul>

3. 향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지속된다면,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은 어떤 유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향후에도 시범사업과 동일한 역할분담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적합하다.
- ② 당장 공공기관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 ③ 향후 2년~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역할분담을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4. 아래 나열된 역할은 어떤 주체가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질문 내용 (어떤 주체가 다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공공기관별 담당 역할			
		국가	시/도	시군구	기타(기재)
1)	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수립				
2)	국가예산 확보 및 사업비 지원				
3)	사업대상 심사 및 선정				
4)	전문가(총괄계획가) 선정 및 지원				
5)	사업추진 실태 모니터링 및 관리				
6)	사업의 성과 분석				
7)	사업 전반에 관한 중간 관리				
8)	중간 지원 및 매개 업무				
9)	사업타당성 검토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10)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11)	조례·규정 등 사업추진 근거 마련				
12)	사업시행조직 구성 및 자부담 사업비 조달				
13)	기본계획, 설계 및 감리, 시공 등 사업의 집행				
14)	해당 시설물의 유지보수(하드웨어 중심)				
15)	해당 시설물의 운영(소프트웨어 중심)				



■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각 주체에 대한 질의입니다.

5.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참여주체의 역할을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질문 내용 (가중치가 높을수록 질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평가 및 의견				
		5	4	3	2	1
1)	국가(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은 적절했다					
	응답 이유(서술)					
2)	광역지자체(시/도)의 역할은 적절했다.					
	응답 이유(서술)					
3)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역할은 적절했다.					
	응답 이유(서술)					
4)	주민의 역할은 적절했다.					
	응답 이유(서술)					
5)	총괄계획가의 자문은 적절했다.					
	응답 이유(서술)					
6)	컨설팅업체의 역할(주민역량강화, 기본계획)은 적절했다.					
	응답 이유(서술)					
7)	설계자의 역할은 적절했다.					
	응답 이유(서술)					
8)	감리자의 역할은 적절했다.					
	응답 이유(서술)					
9)	시공자의 역할은 적절했다.					
	응답 이유(서술)					

6. 질문의 내용에 가장 적합한 참여주체를 다음 중에서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①국가(농림축산식품부)	②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③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④주민(이용자 포함)	⑤총괄계획가	⑥컨설팅업체(기본계획)
⑦컨설팅업체(주민역량강화)	⑧설계자	⑨감리자
		⑩시공자

- 1)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역할을 가장 열정적으로 수행한 주체는? ( )
- 2)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주체는? ( )
- 3) 업무수행 능력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주체는? ( )
- 4) 업무수행 능력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주체는? ( )
- 5) 시범사업에서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이 가장 원활했던 주체는? ( )
- 6) 시범사업에서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이 가장 불편했던 주체는? ( )
- 7)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는? ( )

7.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귀하의 업무수행 능력을 자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질문 내용 (가중치가 높을수록 질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평가 및 의견				
		5	4	3	2	1
1)	당해 사업에 관한 이해도가 높다.					
2)	당해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능력이 충분하다.					
3)	당해 사업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았다.					
4)	대상지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이 충분했다.					
5)	대상지 주민들과 충분히 교감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6)	전문가(총괄계획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7)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8)	당해 사업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다.					

8. 시범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주민들의 성향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질문 내용 (가중치가 높을수록 질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평가 및 의견				
		5	4	3	2	1
1)	당해 사업에 관한 이해도가 높다.					
2)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사업이 필요하다.					
3)	당해 사업에 관한 역량강화사업에 적극 동참했다.					
4)	당해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5)	당해 사업에 대해 협조적이다.					
6)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스스로 잘 운영할 것이다.					

9.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 의견 조정 및 기술적 자문을 수행토록 했습니다. 이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질문 내용 (가중치가 높을수록 질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평가 및 의견				
		5	4	3	2	1
1)	총괄계획가 위촉은 당해 사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					
2)	총괄계획가는 당해 사업에 관한 이해도가 높았다.					
3)	총괄계획가의 업무수행 능력은 충분했다.					
4)	총괄계획가는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5)	총괄계획가의 활동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6)	총괄계획가는 당해 사업에 협조적이었다.					
7)	총괄계획가의 조정 및 자문 내용은 적절했다.					
8)	총괄계획가의 기획설계는 적절했다.(2015년 사업)					
9)	앞으로도 총괄계획가는 위촉되어야 한다..					

10. 총괄계획가는 어느 주체에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농림축산식품부      ② 광역지자체(시/도)      ③ 기초지자체(시/군/구)      ④ 주민

■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질의입니다.

1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와 구성요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No	질문 내용 (가중치가 높을수록 질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평가 및 의견				
		5	4	3	2	1
1)	시범사업의 추진절차는 적절했다.					
2)	교육, 선진지견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은 필요하다.					
3)	사업신청서의 작성 범위와 내용은 적당했다.					
4)	당해 사업을 위한 지자체의 TF팀 구성은 필요하다.					
5)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6)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설설치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7)	시설의 운영관리 체계화를 위한 규정·규약이 필요하다.					

12. 위 문항의 응답과 관계없이 시범사업에 대한 귀 지자체의 실적에 대해 응답바랍니다.

No	질문 내용 (시범사업에서의 시행 여부 및 실적)	시범사업 실적	
		시행	미시행
1)	교육, 선진지견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여부		
2)	당해 사업을 위한 지자체의 TF팀 구성 여부		
3)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의 준수		
4)	고령자 공동시설 설치 또는 운영에 관련된 조례의 제정		
5)	고령자 공동시설에 관련된 내부규정 또는 마을규약의 제정		

13. 시범사업에 대한 각 분야별 발주방식에 대해 응답바랍니다.

No	질문 내용 (시범사업에서의 시행 여부 및 발주방식)	미시행	시행한 경우의 발주방식			
			자체해결	경쟁입찰	수의계약	기타
1)	주민역량강화 용역					
2)	사업신청서 작성 용역					
3)	기본계획 수립 용역					
4)	기본설계 용역					
5)	실시설계 용역					
6)	공사감리 용역					
7)	공사 시행					
8)	기타 사항( )					

14.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사업추진 절차상의 문제점과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기술하여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추진방식 및 시설사업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15. 추진방식과 시설사업비(운영비용 별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No	질문 내용 (가중치가 높을수록 질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평가 및 의견				
		5	4	3	2	1
1)	기존 유휴 건축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방식이 적합하다.					
2)	신축, 증축, 개축 등 새롭게 구축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3)	대상지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범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책정은 적절했다.					
5)	개소당 시설사업비의 국비지원은 확대해야 한다.					
6)	시설사업비의 국비지원은 개소당으로 일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	시설사업비의 국비지원은 조건과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	시설사업비의 국비지원은 일괄 책정하고, 조건과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자부담을 증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6. 귀하께서 관여하시거나 참여하신 시범사업은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 )

- ① 규모의 증감이 없는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 ② 동일 대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없는 신축
- ③ 기존 건축물의 개축
- ④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늘린 증축
- 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도로 증축
- ⑥ 기타( )

18. 귀하께서 관여하시거나 참여하신 시범사업의 시설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재원의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주민 부담	기타( )	총사업비
금액(천원)						

19. 가장 합리적인 시설사업비는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리모델링을 기준으로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응답바랍니다.

구분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금액(천원)			

20. 가장 합리적인 시설사업비 재원의 구성비는 어떻게 분담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응답바랍니다.

재원의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주민 부담	기타( )	총사업비
구성비(%)						100

■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21. (현재의 실정)질문의 내용에 따라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군/구	② 읍/면/동	③ 이장	④ 외부 위탁	⑤ 마을 노인회
⑥ 마을 부녀회	⑦ 이용자 대표(개인)	⑧ 기타( )		

- 1) 고령자 공동시설의 시설물 유지보수 주체는? ( ), 기타의 경우( )
- 2) 이용자를 선정하고 이용자 관리하는 주체는? ( ), 기타의 경우( )
- 3) 운영비를 관리하는 주체는? ( ), 기타의 경우( )
- 4) 공동시설을 활용한 운영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체는? ( ), 기타의 경우( )
- 5) 상기 운영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주체는? ( ), 기타의 경우( )
- 6) 상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주체는? ( ), 기타의 경우( )
- 7) 고령자 공동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총책임자는? ( ), 기타의 경우( )

22. (향후 방향)질문의 내용에 따라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군/구	② 읍/면/동	③ 이장	④ 외부 위탁
⑤ 마을 노인회	⑥ 마을 부녀회	⑦ 이용자 대표(개인)	⑧ 기타( )

- 1) 고령자 공동시설의 가장 합리적인 시설물 유지보수 주체는? ( ), 기타의 경우( )
- 2) 이용자를 선정하고 이용자 관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주체는? ( ), 기타의 경우( )
- 3) 운영비를 관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주체는? ( ), 기타의 경우( )
- 4) 운영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주체는? ( ), 기타의 경우( )
- 5)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총책임자는? ( ), 기타의 경우( )

23.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고령자 공동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운영관리 제외)에 관한 질문입니다.(해당되는 유형에만 응답, 운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응답 제외)

1) 유지보수 비용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유형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금액(천원)			

2) 현재, 유지보수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재원의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주민 부담	기타( )	총 비용
구성비(%)						100

3) 고령자 공동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은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응답바랍니다.

재원의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주민 부담	기타( )	총 비용
구성비(%)						100

24.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고령자 공동시설의 월간 운영비(시설 유지보수 제외)는 얼마  
나 됩니까? (해당되는 유형에만 응답, 운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응답 제외)

1) 운영관리 비용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유형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금액(천원)			

2) 현재, 운영관리 비용은 어떻게 총당하고 있습니까?

재원의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주민 부담	기타( )	총 비용
구성비(%)						100

3) 고령자 공동시설의 운영관리 비용은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응답바랍니다.

재원의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주민 부담	기타( )	총 비용
구성비(%)						100

25. 고령자 공동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시설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 응답바랍니다. ( )

- ① 공동시설을 활용하거나 연계된 프로그램이 없음.
- ② 공동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시설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

---



---



---

■ 그밖에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기탄없이 서  
술하여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6.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



---



---



---



---



---



---



---

■ 마지막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27.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아래 보기 중에서 2가지만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 ), ( )

- ① 농촌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사업이므로 지속되어야 한다.
- ②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규모면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 ③ 농촌지역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
- ④ 농촌고령자에 대한 유사사업이 난무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 ⑤ 보완 및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으므로 당분간은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면 곤란하다.
- ⑥ 농촌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 ⑦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이 떨어지므로 타 사업에 통합 및 흡수되어야 한다.
- ⑧ 기타 의견( )

28. 다음 보기 중에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양적인 목표는 어느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느끼신 고령자 공동시설의 수요를 감안하여 응답바랍니다.

- ① 시/군/구 단위별 1개소
- ② 읍/면/동 단위별 1개소
- ③ 행정리 단위별 1개소
- ④ 마을 또는 부락 단위별 1개소
- ⑤ 마을 또는 부락 단위별 2개소 이상

- 1) 공동생활홈의 양적인 지원 목표는? ( )
- 2) 공동급식시설의 양적인 지원 목표는? ( )
- 3) (작은)공동목욕탕의 양적인 지원 목표는? ( )

29. 그밖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기탄없이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귀하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





6. 사업주체						
구분	행정기관(시·군·읍·면·동 등)		마을공동체(마을회·부녀회·이장 등)		기타(민간단체·개인 등)	
건축물 소유자	기관명		공동체명		유형	
시설사업 주체	기관명		공동체명		유형	
시설관리 주체	기관명		공동체명		유형	
운영 주체	기관명		공동체명		유형	

7. 시설사업 추진경과										
재원 조달	구분	총사업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기타( )			
	금액(천원)									
	(%)									
사업 추진 경과	구분	사업비		발주방식			참여업체		소요기간	
		금액(천원)	(%)	경쟁입찰	수의계약	기타	업체명	소재지	착공일	준공일
	기획설계									
	역량강화									
	기본계획									
	실시설계									
	공사감리									
	시공									
기타( )										
주민 참여	사업 설명회 및 주민 회의 -총 ( )회-		회수	일자	참여인원	주요 내용			비고	

8. 관리 및 운영 실태(운영기간 : 2016년 월 ~ 2016년 월, 개월 기준)											
월간 운영 비용	구분	총비용	전기료	유류비	가스비	수선비	임대료	소모품	기타( )		
	금액(천원)										
	(%)										
	부담방식	관리주체부담									
		운영주체부담									
사용자부담											
운영비 절감 노력 소개											
운영 재원 조달	구분	총비용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마을공동체	이용자부담	기타( )			
	금액(천원)										
	(%)										
	지원방식	현금 지원									
		현물 지원									
재원 다변화 노력 소개											
주민 참여	마을 내 시설관리자		직위		성명		연락처				
			점검주기		보수		관리대장	유	무		
행정 기관 업무	고령자 공동시설 제도 및 업무실태	조례 및 규정 명칭								없음.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관련서류	비치	미비치	관리대장	유	무	건축물대장	기재	미기재	
	협업 등 우수사례 소개										

9. 연계 문화복지 프로그램 현황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명칭			
운영일시			
개최장소			
운영주체			
내용			
참가자격			
참여인원			

10. 사업분야별 세부사항											
공동 생활촌	거주 유형	공동거주형		거실	개소	침실	개소	화장실	개소	기타( )	
		독립침실형		거실	개소	침실	개소	화장실	개소	기타( )	
		독립거주형		가구 수	가구	실 구성					
		기타( )				실 구성					
	거주 인원	남	인	평균연령	세	자가소유	인	생활보호 ( )인/차상위 ( )인			
		여	인	평균연령	세	자가소유	인	생활보호 ( )인/차상위 ( )인			
	입주자격										
	입주선정 방식										
입주자 월 임대료											
기타 특이사항											

공동 급식 시설	이용 시기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상시 제공
	평균이용인원	인	인	인	인
	취사 담당				
	이용요금(원)		주방면적(m <sup>2</sup> )		식당면적(m <sup>2</sup> )
	기타 특이사항				

공동 목욕탕	시설 형태	남탕, 여탕 구분			남탕, 여탕 교차사용				
	운영방식/운영시기								
	일평균이용인원	남	인	여	인	남	인	여	인
	이용요금								
	관리 인원 및 성별								
기타 특이사항									

11. 기타 참고사항 및 사진



#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